

머 리 말

1960년 이후 韓國經濟는 급속한 工業化過程을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지금까지 工業化과정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이 연구는 本院에서 1990년에 출간한 『韓國의 工業化와 勞動力 (I)』의 勞動統計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工業化과정에서의 勞動側面의 역할을 부문별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工業化과정에서 노동층의 단계별 變遷과 寄與度를 검토하였으며, 역시 철저한 통계적 뒷받침 속에서 실증분석에 치중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먼저 1960년대 工業化 이전의 勞動供給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日帝下 植民地 工業化過程에서의 産業勞動力의 量과 質을 검토하고, 그것이 解放과 6.25戰爭 등 정치적 변속에서 어떤 재편과정을 겪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農村勞動力의 都市移動現狀과 都市勞動市場의 勞動力 需給構造, 그리고 60년대 이후의 勞動力의 構造變化와 韓國産業構造와의 관계를 조명해 보았다. 각 논문들은 1960년대 이후 工業化과정에서의 노동의 변화라는 공통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각 部별 결론은 각기 독자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서울대 安秉直교수, 成均館大 李大根교수의 주도하에 放送通信大 朴德濟교수, 崇實大 曹尤鉉교수, 忠南大 朴珍道교수의 공동연구로 수행된 것이다. 이 분들의 勞苦에 深深的 謝意를 표한다. 아울러 本研究의 내용은 筆者들의 見解이며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1年 12月 日

韓國經濟研究院
院長 崔 鍾 賢

總 目 次

머리말

第 1 部

解放後 勞動力의 再編過程 1

第 2 部

工業化過程에서의 農村勞動力의 都市移動 61

第 3 部

勞動力의 構造變化와 그 特徵 121

第 4 部

工業化過程에서 나타난 勞動需要側 特性과 賃金 및
賃金構造의 決定 179

第 1 部

解放後 勞動力の 再編過程

目 次

I. 서 론	7
II. 8·15 당시의 노동력 상황	10
1. 일제하 산업노동력의 형성	10
2. 8·15 직후의 노동력 상황	12
III. 해외동포의 귀환과 노동력의 재편	21
1. 귀환동포 및 월남인구의 규모	21
2. 노동력인구의 재편	28
IV. 1950년대의 노동력 상황	35
1. 한국전쟁의 영향	35
2. 1950년대의 노동력 수급사정	39
V. 결 론	44
참고문헌	47
부 표	49

표 목 차

〈표 1-1〉	해방전 산업별 노동자수	12
〈표 1-2〉	해방전 도별·산업별 조선인 노동자구성	13
〈표 1-3〉	공업부문의 업종별 노동자구성	14
〈표 1-4〉	해방전후 지역별 노동자수의 변동	16
〈표 1-5〉	해방전후 업종별 노동자수의 변동	18
〈표 1-6〉	8·15 직후 사업체 및 노동자의 감소세	19
〈표 1-7〉	전후 재일한국인의 송환실적	22
〈표 1-8〉	8·15 후 해외동포 귀환·월남인구와 출국자수	25
〈표 1-9〉	재일조선인의 직업구성	29
〈표 1-10〉	징용노무자의 일터구성	30
〈표 1-11〉	월남인구의 직업별 구성	31
〈표 1-12〉	직종별 실업무직자 구성	33
〈표 1-13〉	한국전쟁중의 민간인 인명피해	35
〈표 1-14〉	한국전쟁중의 군인·경찰 등의 인명피해	36
〈표 1-15〉	1950년대 제조업 규모별 구성	41
〈표 1-16〉	1958년의 취업구성	42

부 표 목 차

〈부표 1-1〉	해방전후 지역별 사업체수와 노동자수의 증감	49
〈부표 1-2〉	해방전후 지역별·남녀별 노동자수의 증감	50
〈부표 1-3〉	해방후 공업부문의 업종별 노동자의 구성	51
〈부표 1-4〉	해방전후 직업별 인구구성 추이	53
〈부표 1-5〉	도별·산업별 종업원 구성	54
〈부표 1-6〉	제조업부문 직종별 종업원 구성	58
〈부표 1-7〉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중의 노동력 계획	59

I. 서 론

흔히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자본측의 기여만이 크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그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과감한 외자도입정책이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내자조달정책,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가(자본가)들의 적극적인 자세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그러나 공업화의 전개란 결코 자본 한쪽만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가능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고도의 자본 내지 기계시설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노동측의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업화를 위한 다른 한쪽의 수레바퀴, 곧 노동측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자본측의 조건도 실현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이룩한 급속한 공업화의 가능 조건의 하나로서 노동측 조건이 적어도 1950년대까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경우, 시기적으로 그것은 8·15 해방 당시에 있어서의 노동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로까지 소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은 우선 일제하에서 형성된 노동력의 양적, 질적 조건이 8·15 해방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어떻게 넘겨졌는가 하는 문제부터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기실 일제는 193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이른바 식민지공업화를 추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조선인노동력을 양성하게 된다. 일제하에서 양성된 이러한 조선인노동력은 8·15후 식민지공업화의 물적유산이라고 할 '귀속재산(vested properties)'¹⁾과 함께 인적유산으로서 이

1) '귀속재산'이란 8·15 당시 일본인이 남기고 간 공·사 재산의 자산적 가치의 총칭으로서, 미군정에 '귀속된다(vested)'고 하는 말에서 붙여진 이름인 바, 일명 敵産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① 金基元, 『美軍政期 歸屬財産에 관한 研究』(서울대 經濟學博士學位論文), 1989.

② 김윤수, 『'8·15' 이후 귀속기업체 불하에 관한 연구』(서울대 경제학석사학위논문), 1988.

③ 拙稿, 『解放後 歸屬事業體의 實態와 그 處理過程』, 『近代朝鮮의 經濟構造』(安秉直 外), 1988.

땅에 남겨지게 된다. 따라서 8·15 당시의 산업노동력의 존재조건이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첫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8·15 해방과 더불어 지난날 해외로 흘러나갔던 수많은 동포가 귀환하였고, 거기다가 북한으로부터 또한 많은 월남민이 생겨났는 바, 이들이 8·15 직후의 남한에서의 노동력의 수적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총인구의 1할 이상(약 220만명)²⁾에 달하는 이들 귀환동포 및 월남인구의 많은 부분이 가용의 노동력인구로 이루어졌다고 함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해방직후의 노동력 수급에 있어서 크나큰 공급확대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 귀환동포 및 월남인구의 경우, 그들이 갖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이미 훈련받은 산업노동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노동력인구가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6·25 전쟁을 거치고 휴전후의 노동력의 존재조건이 어떠한가를 밝히는 일이다. 전쟁은 막대한 인명살상을 통한 노동력의 손상효과와 다른 한편 북한으로부터의 막대한 피난민의 유입이라는 노동력의 증대효과를 동시에 수반하였다. 이러한 노동력의 양적 증대효과만이 아니라, 전쟁은 그 자체 노동력의 질적 변화효과도 동시에 가져왔다. 수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군대생활을 통한 집단생활의 규범을 익히고, 근대적인 각종 무기사용을 통한 기계조작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갖게 한 것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8·15 해방과 6·25 전쟁이라고 하는 두개의 시대적인 변화국면을 거치면서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동력의 팔목할만한 양적 성장과 질적 고양을 가져오

2) 1944년 5월 1일 인구센서스상에는 남한인구(경기도 및 강원도는 모두 남한에 포함)가 16,574,868명(총인구 25,133,352명의 6%, 외국인 제외)이고, 1946년 8월 25일자 미군정에 의한 이주인구조사상에는 19,369,27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중간치인 17,971천명을 8·15 당시의 총인구로 보고, 한편 8·15 해방에서부터 1948년말까지의 총해외귀환동포 및 월남인구수는 2,189,642명(『경제연감』-1949년판, p. IV-19)이므로 그 정확한 비중은 12.2%에 달하는 셈이다.

게 됨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1950년대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양·질적인 변화가 60년대에 들면서 선진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스스로 유도하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의 형성으로 되었다는 것, 곧 이것을 구명코자 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8·15 해방후 50년대까지의 노동력의 양·질적인 성장의 계기와 그것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1950년대 말에 있어서의 이러한 훈련된 잉여노동력이 스스로 결합할 자본(재)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 8·15 당시의 노동력 상황

1. 일제하 산업노동력의 형성

8·15 해방 당시의 노동력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해방전인 일제 시대에 산업노동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주지 하듯이, 일제는 1930년대에 들면서 식민지정책기조를 바꾸게 된다. 1929년의 세계대공황과 그에 연이은 일본내 농업공황의 영향으로 당시까지 추구해왔던 산미증식 계획에 의한 농업개발기조로부터 농공병진이라고 하는 공업개발기조로의 정책전환이 그것이다. 이리하여 식민지 조선에서는 비록 자생적인 공업화는 아닐지언정, 고쳐 말하여 의부로부터 강제된 이식형 공업화이기는 하지만 일제에 의한 공업화가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력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주어지게 된다.

식민지 공업화에 따른 고용구조에 관한 한 연구³⁾에 의하면, 1930년대 공업화초기에 있어서는 신홍 대공업의 등장에 대응할 조선인 노동력의 내적 공급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리자나 기술자만이 아니라 일반 공장노동자까지도 모두 일본으로부터 직접 갖고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고쳐 말하면 조선인 노동력은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비숙련의 자유노동자로서만 역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 일본인노동력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부터 조선인노동력으로의 급속한 대위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즉 1937년의 중·일전쟁과 그리고 1941년의 태평양전쟁이 잇따라 터지면서 일본인노동자에 대한 징용이 강화되고, 이에 부족해지는 일본인노동자 자리에 조선인을 대신 앉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보면, 1933~42년간의 10년 사이 공장·광산·토건노동자수가 223,115명에서

3) 安乘直, 「植民地 朝鮮의 雇傭構造에 관한 研究」, 『近代朝鮮의 經濟構造』(安乘直 외), 比峰出版社, 1989. p. 394.

744,023명으로 무려 3.3배가 증가하고 있다⁴⁾. 또한 공장노동자만의 경우, 일본인노동자의 비중이 1930년대 중반에는 10~11% 수준이었으나 1943년에는 6.9%로까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조선인노동력이 이처럼 상당한 수준으로 산업노동력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1938년까지는 적어도 공장·광산·토건의 각 노동자 구성비가 34.4 : 33.9 : 31.7로 되어있음을 발견케 된다⁵⁾. 따라서 감시적의 일용노동이라고 할 토건노동자의 비중이 아직도 전체의 1/3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또한 공장노동자에 비하여 광산노동자의 비중 역시 전체의 1/3수준으로 대단히 높다고 함을 각각 알 수 있다. 어쨌든 일용노동이 아닌 상용제의 공장노동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마도 1941년의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인 공장노동자를 조선인노동자로 급속히 대체시키면서 부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인노동자의 기술이나 기능, 숙련 등이 높아지는 것도 주로 이때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제당국도 조선인 기능인력의 수요 증대에 부응키 위하여 정규적인 학교교육은 물론, 특수한 기능공 양성계획이나 각종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조선인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어쨌든 1930년대후의 식민지공업화 과정에서 자의적이든 또는 타율에 의해서든 조선인의 산업노동력화 과정이 상당한 수준까지 나아간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해방직전 조선의 노동자총수는 전인구의 약 8.2%에 해당하는 2,122천명에 이르렀는데, 그중에서 광·공업을 비롯한 토건업 및 운수업 등 산업노동자의 비중이 전체의 74.2%인 1,575천명이었고, 그중에서 또한 공업노동자 비중이 전체의 27.9%인 592천명에 각각 달하고 있다(〈표 1-1〉 참조).

이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근대적 노동규율을 어느 정도 몸에 익히고 또 일용직의 자유노동자가 아닌 정규직의 상용노동자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조선인 노동자에 국한하여 1943년 6월 및 현재의 총독부 조사자료에 의거 산업별,

4) 같은글, p. 395.

5) 같은글, p. 396.

<표 1-1>

해방전 산업별 노동자수

(단위 : 명, %)

	노동자 수	구 성 비	조사시점 및 자료
공 업	591,494	27.9	1945. 1월, 총독부지도과 조사
토 건 업	437,752	20.6	1944. 10월, 총독부 조사
육 상 운 수	179,544	8.5	·
임 업	205,911	9.7	·
수 산 업	211,520	10.0	·
광 산	273,863	12.9	1944. 3월, 조선광산연감조사
탄 광	72,561	3.4	1944. 9월, 총독부연료과 조사
농 업	130,377	6.1	1943년말 현재, 지주 농업피용자 조사
해 상 운 수	19,352	0.9	1943년말 현재, 총독부 조사
합 계	2,122,374	100.0	

자료 : 『산업노동시보』, 제1권, 제2호 및 『조선경제통계연감』, 1949년판, p. 134.

도별 노동자구성을 보면 <표 1-2>와 같다. 공업노동자(토건업 포함)가 513천명, 광업 노동자가 179천명, 운수 80천명, 사무소 및 상점 21천명으로 합계 793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시 공장노동자(토건업 및 전기·가스·수도업 제외) 331천명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방직공업이 전체의 23.6%로 가장 많고 그다음 화학공업 16.5%, 기계공업 9%, 금속공업과 요업이 각 10.9%, 식료품공업 9.2%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표 1-3> 참조).

앞의 <표 1-3>을 통하여 우리는 해방전 조선에서의 일본인(일부 외국인 포함) 노동자 비중은 공업전체에서 6.7%, 광업에서 1.9%, 운수업에서 6.4%에 불과하여 결국 전체노동자의 94.1%가 조선인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⁶⁾. 또한 조선인노동자의 남·북한별 분포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업은 남한이 52.4%로 우세한 반면 광업은 북한이 62.2%로 우세하다. 그러나 운수업은 남·북한이 거의 반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무소 및 상점 노동자를 포함한 전노동자수는 민영사업만의 경우, 남한이 372천명으로 전체의 49.3%로서 북한의 381천명(50.7%)보다 약간 적다. 물론 여기에는 관영사업

6) 朝鮮總督府, 『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 昭和 18년 6월, pp. 2~3, 302~303, 356~357, 404~405.

노동자(전체의 5.1%)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관영사업이 서울중심의 남한에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남한측 비중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표 1-2, 1-3>과 <표 1-1>과의 수치 차이는 조사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

<표 1-2> 해방전 도별·산업별 조선인 노동자구성
(1943년 6월 현재) (단위 : 명, %)

	공업		광업		운수업		사무소·상점		합계	
	노동자수	비중	노동자수	비중	노동자수	비중	노동자수	비중	노동자수	비중
가. 관영사업	27,762	5.3	23	-	12,726	15.9	-	-	40,511	5.1
나. 민영사업	485,145	94.6	178,858	100.0	67,402	84.1	20,545	100.0	751,950	94.9
경기	116,567	22.7	4,034	2.3	12,151	15.2	9,268	45.1	142,020	17.9
충북	4,221	0.8	7,912	4.4	1,427	1.8	70	0.3	13,630	1.7
충남	9,007	1.8	7,731	4.3	2,192	2.7	233	1.1	19,163	2.4
전북	14,942	2.9	4,003	2.2	1,568	2.0	532	2.6	21,045	2.7
전남	20,801	4.1	4,832	2.7	3,877	4.8	1,773	8.6	31,283	3.9
경북	25,002	4.9	9,880	5.5	2,221	2.8	2,068	10.1	39,171	4.9
경남	45,066	8.9	4,097	2.3	7,581	9.5	708	3.4	58,052	7.3
강원	17,971	3.5	25,102	14.0	2,926	3.7	905	4.4	46,904	5.9
<소계>	254,177	49.6	67,591	37.8	33,943	42.4	15,557	75.7	371,268	46.9
황해	21,726	4.2	21,628	12.1	5,393	6.7	1,162	5.7	49,909	6.3
평남	48,293	9.4	26,592	14.9	5,798	7.2	1,570	7.6	82,253	10.4
평북	43,055	8.4	15,810	8.8	2,915	3.6	1,361	6.6	63,141	8.0
함남	60,862	11.9	17,170	9.6	8,453	10.5	565	2.8	87,050	11.0
함북	57,032	11.1	30,067	16.8	10,900	13.6	330	1.6	98,329	12.4
<소계>	230,968	45.0	111,267	62.2	33,459	41.8	4,988	24.3	380,682	48.0
합계	512,907	100.0	178,881	100.0	80,128	100.0	20,545	100.0	792,461	100.0

자료 : 朝鮮總督部,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縮刷版), 昭和 18年, 6月 10日 現在.

주 : 1) 상시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또는 조사기일에 3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대상, 단 사무소·상점은 조사기일에 10인 이상의 노동자 이외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체임.

2) 운수업은 국철(1938년, 종업원수 33,000명)이 제외됨.

으로 어렵 짐작된다. 마지막 공장노동자의 경우만 예로 든다면, 1920년의 55천명에서 1931년의 107천명으로 배증, 단 1936년의 188천명으로 또 배증, 1943년의 363천명으로 다시 배증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왔다⁷⁾.

그리고 이 일반노동자외에 기술·기능직 노동력도 어느정도 양성되어 있었다. 1943년 6월 현재의 같은 조사자료에 의하면, 공업에 있어서 기술자 1,319명, 기능인 62명을 각각 보유하고, 토건업에서는 기술·기능자를 합하여 547명, 광업에서는 1,349명, 운수업에서는 132명, 그리고 사무소·상점에서는 2,720명으로 도합 6,129명의 기술·기능인력을 보유하고 있다⁸⁾.

이들 일반노동력이나 기술·기능인력의 약 절반이 당시의 지역별 분포로 보아 남한에 소재한 것으로 되어, 1943년 6월 이후 8·15 해방 당시까지 별다른 지역적 이동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대체로 근대적 산업노동력 총 80만명의 절반인 40만명, 그중 공장노동자의 경우 20만명, 그리고 기술·기능인력의 약 3,000여명⁹⁾ 정도가 각각 남한에 소재한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남한에 소재하게 된 이들 산업노동력과 기술·기능인력은 8·15 해방과 더불어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산업노동력의 일터라고 할 산업시설이 해방 후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해방당시의 산업시설은 과거 일본인 소유의 귀속재산(귀속사업체)과 조선인 소유 재산으로 구별되지만, 대규모의 근대적인 시설은 대부분 앞의 귀속재산에 속하는 것이었다.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남한 총재산의 80~85%¹⁰⁾에 해당할 정도의 절대적 비중을 갖는 이들 귀속사업체가 해방후 말할 수 없는 경영부실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구체적으로 전 소유주인 일본인들의 퇴각과 함께 미군정의 관리아래로 들어간 이들 귀속사업

7) 朝鮮銀行, 『朝鮮經濟統計要覽』, 1949, p. 133.

8) 朝鮮總督府, 앞의책, pp. 2~3, 기타.

9) 총 기술·기능인력 6,129명중 민영사업체의 그것은, 5,645명이고, 이는 남한 3,077명(54.5%), 북한 2,568명(45.5%)로 분포되어 있다-조선총독부, 앞의책, pp. 2~3, 기타.

10) 拙著,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창작사, 1987, p. 115 참조.

체는 우선 관리체제면에서 격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위에 남북분단과 일본경제와의 단절로 말미암은 제반 재생산조건의 파괴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원료난, 동력난, 기자재조달난 등이 중첩되어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라 휴업하거나 조업단축하는 기업이 속출하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귀속사업체에서만 아니라 일반기업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표 1-4〉 해방전후 지역별 노동자수의 변동

(단위 : 명, %)

	1944년 6월(A)		1946년 11월(B)		감소율(A-B/A×100)	
	합 계	남 자	합 계	남 자	합 계	남 자
서울	66,898	47,494	35,763	24,833	46.5	47.7
경기	63,625	51,771	19,753*	13,933	69.0	73.1
충북	6,583	5,225	3,970	3,209	39.7	38.6
충남	14,219	11,324	5,550	3,353	61.0	70.4
전북	18,389	15,039	7,299	5,249	60.3	65.1
전남	24,843	18,972	10,138	7,088	59.2	62.6
경북	29,085	21,733	12,314	8,448	57.7	61.1
경남	61,565	47,809	20,378	14,612	66.9	69.4
강원	13,480	11,963	6,391	5,028	52.6	58.0
제주	1,833	1,464	603	538	67.1	63.3
합 계	300,520	232,794	122,159	86,291	59.4	62.9

자료 : 南朝鮮過渡政府, 『南朝鮮産業勞務力 및 賃金調査』, 1946年 11月 現在, pp. 19~22.

주 : 1) 전매사업체 및 국영사업체는 제외됨.

2) 휴업사업체(390개)는 제외됨.

3) 기능자(8,990명)는 제외됨.

4) 1일 8시간 취업의 정상적 노동자만 포함함.

5) * 경기도내 인천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자료가 입수되지 못하여 부정확한 수치임.

이와관련, 해방후 산업시설이 얼마나 파괴, 위축되었는가를 보면, 미군정부에 의한 사업체조사에 의할 때 공업부문(일부 토건업 및 전기·수도업 포함)의 사업체수가 1944년 6월의 9,323개에서 1946년 11월의 5,249개로 기간중 무려 43.7%가 감소하고 있다(〈부표 1-1〉 참조). 그리고 광업에 있어서도 1943년 6월의 1,239개에서 1947년 8월

의 55개로, 또 운수업에서는 같은 기간중 1,427개에서 259개로 각각 격감하였다¹¹⁾. 특히 제조업 내부의 업종별 동향에 있어서 남한내의 주력업종이라고 할 방직·식품·제재공업 등이 1943년 6월~1946년 11월간 각각 63.5%, 57.4% 및 57.0%씩의 급격한 사업체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¹²⁾.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의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위축상황에 따라 산업노동력 역시 그에 상응하는 감축현상을 가져왔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휴·폐업하는 기업보다도 조업단축하는 기업이 오히려 더욱 많았기 때문에 사업체의 감소율보다도 노동자수의 감소율이 더욱 높았다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앞의 미군정부 조사에 의할 때 1944년 6월~1946년 11월간 사업체 감소율이 43.7%인데 대하여, 노동자 감소율은 59.4%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4〉 및 〈부표 1-1, 1-2, 1-3〉 참조). 그리고 1943년 6월 대비 1947년 3월의 공업부문 노동력 감소율은 47.5%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조업중에서도 화학·금속 및 인쇄·제분공업의 감소율이 높다. 또 제조업에서 보다는 토건업의 노동자감소율이 더욱 높다고 하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표 1-5〉 참조).

제조업이나 특히 토건업에 있어서의 이러한 높은 노동력감소율은 광업이나 운수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표 1-6〉에서 보듯이, 광업의 경우, 해방전(1943년 6월)에는 67,591명에 달하던 광업노동자가 1947년 8월에는 불과 4,660명으로 해방전의 1/15수준으로 줄었다. 광업부문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운수업 역시 같은 기간중 33,943명에서 10,183명으로 줄었는데, 이 경우 특히 전자에는 국철부문의 노동자가 제외되었는 바 이를 감안한다면 기간중의 노동자감소율은 가일층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비교적 정규적인 일터를 가지고 상용의 노동자라고 할 공업·토건·광산·운수부문의 노동력이 8·15직후 1, 2년 사이에 적어도 20만명 이상의 감축을 가

11) 朝鮮銀行, 앞의책, p. 152 및 南朝鮮過渡政府勞動部, 「南朝鮮勞動統計調查結果報告」, 1947년 8월말 현재, p. 91, 111.

12) 이 기간중 방직공업은 1,683개에서 615개로, 식품공업은 1,704개에서 726개로, 제재공업은 1,359개에서 584개로 각각 줄어 들었다-같은책, p. 153.

저은 셈이다. 이밖에 비정규적인 일용노동자 역시 이에 못지않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표 1-5〉 해방전후 업종별 노동자수의 변동

(단위 : 명, %)

	1943년 6월(A)	1947년 8월(B)	감소율(B-A/A×100)
금속공업	12,578	7,948	36.8
기계기구	27,331	18,186	33.5
화학	22,869	18,910	17.3
전기·수도·가스	2,864	7,732	+270.0
유리·토석	20,616	7,464	63.8
방직공업	61,210	41,503	32.2
재림목공업	14,598	9,732	33.3
식료품	19,854	16,110	18.9
인쇄·제본	7,370	5,080	31.1
토목·건축	52,464	15,449	70.6
기타	12,423	6,417	48.3
합계	254,177	154,533	39.2

자료 : 南朝鮮過渡政府勞動部, 『南朝鮮勞動統計調查結果報告』, 1947년 8월말 現在, p. 11. 및 『朝鮮經濟年報』-1948年版, p. 1-202.

주 :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

왜냐하면 이들 일용노동자들의 일터는 기본적으로 위의 광공업이나 토건업 또는 운수업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광공업을 비롯한 기초산업에서의 상용노동자 약 20만명을 비롯하여, 토건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의 일용노동자 감소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산업노동력이 8·15직후 그들의 일터를 잃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터를 잃은 이들 노동력은 결국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

첫째는 농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그들은 대부분 일제치하에서 농촌으로부터 흘러나온 이농민들일 것이므로 외지에서의 직장생활이 곤란해진 이상, 당장의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단

<표 1-6>

8·15 직후 사업체 및 노동자의 감소세

	사업체 수 (개)			노동자 수 (명)		
	8·15이전	8·15이후	감소수(율)	8·15이전	8·15이후	감소수(율)
공업	9,323	5,249	4,704(43.7)	254,177	122,159	178,361(59.4)
광업	1,239	55	-	67,591	4,660	-
운수업	1,427	259	-	33,943	10,183	-
합계	11,989	5,563	-	355,711	137,002	-

자료 : ① 공업 : 8·15 이전은 1943년 6월 현재의 『勞勤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朝鮮總督府)에, 8·15 이후는 1946년 11월 현재의 『南朝鮮産業勞務力 및 貨金調査』(美軍政府)에 의한.

② 광업·운수업 : 8·15 이전은 1943년 6월 현재의 상기 『結果報告』, 8·15 이후는 1947년 8월 현재의 『勞勤統計調査報告』(美軍政府 勞勤部)에 의한.

주 : 광업 및 운수업은 양 비교년도의 조사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감소수(율)를 산출하기가 곤란함.

신의 출가노동형태로 이농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므로 계속 고향에 일정한 연고권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면 그들의 귀농과정은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농촌으로 되돌아갔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를테면 해방전에 비하여 해방후의 농업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로서 그 규모를 어느정도 유추해볼 수 있다(<부표 4> 참조). 구체적으로 해방전인 1943년의 직업별 인구 구성에서 농업인구 비중은 총 유업인구(有業人口)의 74.6%였었는데, 1948년에는 무려 80.2%로 늘어나고 있다.¹³⁾ 여기에는 물론 다음의 두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1943년의 수치는 남·북한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남한만 떼어내어 보면 그 수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둘째로는 비교시점으로 서의 1948년이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1948년이면 해방후 일차 귀농했던 사람도 다시 도시로 흘러나오는 등 직업별 인구구성이 다시한번 재편될

13) 『經濟年鑑』, 1949년판, p. IV-18.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¹⁴⁾ 이 두가지 점은 서로 상쇄효과를 갖는 것이지만 비록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두 시점에 있어서의 농업인구 비중의 증가는 부정키 어려울 정도로 큰 것임에 틀림없고 그러한 증가배경에는 앞서 제기한 해방을 전후하여 일터를 잃은 많은 산업노동력의 귀농현상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의 길은 도시룸펜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일터를 잃은 이들 노동력 가운데는 이미 농촌에 연고가 없는 사람, 또는 연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농을 원치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도시에서 완전 실업자로 되거나 또는 반실업상태의 룸펜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뒤의 <표 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6년 11월 현재 110만명의 총실업자 가운데 42.2%인 47만명이 순수히 경제적 이유로 실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위에서 본 해방직후의 산업시설의 파괴, 위축으로 말미암은 일터의 상실에서 오는 실업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예컨대 1947년 서울, 경기,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업자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의 실업율이 29.9%로서 인천시 및 개성시를 뺀 경기도의 23.9%, 그리고 청주시를 뺀 충북의 21.0% 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점¹⁵⁾, 그리고 1948년의 총인구중의 유업자(실업자 및 기타 부양인구 제외) 비율이 1943년의 42.3% 보다 많이 낮아진 38.8%에 불과하다는 점¹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한마디로 해방후 일터를 잃은 산업노동자들의 도시룸펜화 과정을 나타내는 지표들일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14) 이 점과 관련하여, 비록 불완전한 통계값이나 1946년의 농업인구 비중이 총인구의 77.0%라고 하는 수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1944년의 동 비중 69.8%보다 무려 7.2%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朝鮮經濟年報』, 1948년판, p. Ⅲ-19.

15) 같은책, p. I-204.

16) 『經濟年鑑』, 1949년판, p. IV-18.

Ⅲ. 해외동포의 귀환과 노동력의 재편

1. 귀환동포 및 월남인구의 규모

1946년 11월 현재, 남한의 총실업자수는 약 110만명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중 42.2%인 46만명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실업이고, 나머지 57.8%인 64만명이 사회적 요인에 의한 실업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13〉 참조). 그리고 이 후자의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방직후에 찾아온 해외동포의 귀환과 북한동포의 월남이라고 함은 두 말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들 해외동포귀환자와 월남인구는 양적으로 얼마나 되었는가? 또 그것은 다시 남한의 노동력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점이 우선 우리들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첫째, 일본으로부터의 교포송환문제부터 살펴보자. 일찌기 제일 조선인문제 전문가인 元容德, 朴在一씨 등의 추계에 의하면,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내 조선인수는 약 2,100천명으로 잡히고 있다¹⁷⁾. 이는 1910년 합방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본으로의 이주인구 1,845,669명과 일본내에서의 자연증가수 254,331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앞의 이주인구 1,846천명은 주로 1939년 이후의 이른바 전쟁준비를 위한 강제징용기에 일어난 것이다¹⁸⁾.

이 2,100천명에 대하여 일본측은 전후 곧바로(1945년 9월 2일자) 한국으로의 송환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일본정부 발표에 의하면 1945년 12월말까지 약 639천명이 한국으로 송환되고, 다시 1948년 4월까지 약 937천명이 송환되어 당초의 송환목표에 거의 도

17) 박재일, 『在日本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 1957. p. 32. 元容德씨는 이밖에 군사동원수 32만명을 넣으면 해방 당시 총제일조선인수는 약 24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18) 이주인구 1,845,669명의 57.9%인 1,068,634명이 1939년 이후의 강제징용기에 또 강제징용자의 76.9%인 822,111명이 노동자 징용으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박재일, 앞의책, p. 33.

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표 1-7〉 참조). 그러나 일본측의 이 송환자수는 실제의 송환 실적에는 크게 미달하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전후 일본의 국세조사 결과치에 의하면, 재일 조선인수가 1947년 10월 1일 현재로 508,905명 또 1950년 10월 10일 현재로 464,277명으로 각각 되어 있는데¹⁹⁾, 여기에 〈표 1-7〉상의 송환인구를 보탠다고 하면 대체로 1945년 8월 해방 당시의 재일 한국인수는 15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210만명과 이 150만명과의 차, 곧 60만명 정도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송환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의 해방 당시의 한국인 총수 210만명이 과대평가되었거나, 아니면 전후 일본의 국세조사 결과치가 그만큼 과소평가되었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²⁰⁾

〈표 1-7〉 전후 재일한국인의 송환실적

(단위 : 명)

	남	한	북	한	계
A. 기본 송환대상수	938,640		351		938,991
B. 시기별 송환실적(누계)					
1) 1945. 9월~1946. 5월	883,543		0		883,543
2) 1945. 9월~1946. 12월말	929,772		0		929,772
3) 1945. 9월~1947. 6. 1일	933,351		233		933,584
4) 1945. 9월~1947. 12. 27일	937,323		351		937,674
5) 1945. 9월~1948. 4. 1일	937,323		351		937,674
	(99.9)		(100.0)		(100.0)

자료 : 日本總理府 統計局, 『日本經濟年鑑』, 朴在一, 앞의책, p. 34에서 再引用.

주 : ()내는 B/A(送還達成率, %)임.

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전자의 비공식 루트로의 송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8·15 해방전에 이미 재일

19) 같은책, p. 34.

20) 이 해방 당시의 한국인수 210만이 과대평가 될 소지는 어느정도 있다. 1945년 1월~8월간의 한국인 정용자수가 밝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박재일씨가 그것을 160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해방후 비공식루트로 송환된 사람이 약 44만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선인의 자발적인 귀국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한창인 1942년부터 한국인의 대일도항이 급격히 줄고 반대로 한국으로의 귀환자가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1944년에는 최소한 16만명²¹⁾ 이상의 귀환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어쨌든 이 937천명의 일본측 귀환자 통계는 한국측에서 잡은 공식적인 귀환자수보다도 18만명 정도가 부족하다. 즉 한국측 통계에 의하면 8·15후 1948년말까지 일본으로부터 귀환한 동포수가 1,117,81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 그러나 이 숫자 역시 당시 사회부 및 외무부에서 잡은 공식 집계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밖에 상당한 수의 비공식 루트로 송환된 사람까지 감안하면 양자간의 차이는 이 18만명을 훨씬 초과할 것이 틀림없다.

아무튼 해방후 일본으로부터 귀환한 인구수는 일부 8·15전에 귀환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30만명에는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만주 및 중국으로부터의 동포귀환이다. 김철씨의 추계에 의하면, 1942년 현재 재만 한국인수는 1,511,570명인 바, 1942~45년 8월까지의 새로운 만주로의 인구유출입이 없었다고 보고, 단지 자연증가율(20.9%, 이는 1936~40년간 조선에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임)에 의한 인구증가만 감안하면 1945년 8월 당시의 재만한국인수가 1,608,411명에 이른다고 한다.²³⁾ 그에 의하면, 이 가운데서 약 662천명이 해방과 더불어 남·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 약 317천명이 남한쪽으로 송환되었다고 하면(〈표 1-8〉 참조), 결국 나머지 345천명은 북한쪽으로 송환된 셈이 된다. 다음 중국으로부터의 송환자는 일본 관청통계에 의할 때 해방전에 약 10만명의 재중 한국인이 있었고 그들은 일본패전과 더불어 대부분 송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이 역시 한국측 공식 통계로는 72,848명 밖에 남한으로 송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표 1-8〉

21) 박계일, 앞의책, pp. 31~32.

22) 『경제연감』, 1949년판, p. IV-19.

23) 김 철,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1965, p. 45.

24) 같은책, p. 46.

<표 1-8>

8·15후 해외동포 귀환·월남인구와 출국자수

(1948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입 국 인 구		출 국 인 구	
가. 해외동포귀환(해상)		가. 국적별 출국자	
일 본	1,117,819	일본인(민간인)	709,064
중 국	59,372	· (군인)	179,920
만 주	10,572	중국인(본토인)	1,948
대 만	3,440	· (대만인)	103
오스트랄리아	3,051	오끼나와인	274
하와이	2,642	소 계	891,309 ²⁾
유 구	1,755		
남양군도	14,058		
홍콩	302		
기 타	7,616		
소 계	1,220,627		
나. 북한경유동포귀환(육상)		나. 밀항자	
중국동포	13,476	일본에서 체포되어 송환된 자	26,300
만주동포	306,755	한국근해에서 체포된 자	416
소 계	320,231	소 계	26,716
다. 월남인구(연도별)		다. 합 계(가+나)	
1946년	648,784		918,025
1947년	185,208 ¹⁾		
1948년	163,233 ¹⁾		
계(가+나+다)	116,107 ¹⁾		
	2,189,642		
라. 일본인입국자(해방후)			
중국에서의 입국자	19		
만주에서의 입국자	51,718		
북한에서의 입국자	288,535		
소 계	340,272		
마. 합계(가+나+다+라)			
	2,529,914		

자료 : 조선은행조사부, 『경제연감』, 1949년판, p. IV-19.

주 : 1)은 수용소를 거친 수입.

2)는 원 자료상에는 887,309명으로 되어 있음.

참조), 만약 한국측 공식 통계가 맞다면 이상의 만주 및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송환된 동포는 모두 372천명(만주 345천명 + 중국 27천명)에 달하는 셈이지만, 이는 아무래도 과대평가된 감을 금할 수 없다.

과대평가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만큼은 결국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남한으로의 밀입국에 의한 송환을 가리킬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수용소를 거치지 않고 밀입국한 이들 교포수가 약 20만명에 달한다는 지적²⁵⁾을 받아들여 이를 앞의 공식적인 송환자에 보태면 해방후 만주·중국으로부터의 총 교포귀환자수는 약 590천명(만주 317천명 + 중국 73천명 + 비공식 200천명)에 달하는 셈이다. 아무튼 만주·중국으로부터의 귀환은 전체거주자 약 1,608천명의 1/3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 점이 제일교포의 경우에 있어 전체의 3분의 2수준에 달하는 본국귀환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는 바라고 할 것이다.

셋째,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귀환이다. 이상의 일본 및 만주·중국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동포귀환은 <표 1-8>에서 보듯이 매우 적은 수라 할 수 있다. 다만 3,440명, 호주 3,051명, 하와이 2,642명 정도의 귀환자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밖에 남양군도로부터의 14,058명이나 오키나와 1,755명 등은 대체로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귀환일 것이다. 어쨌든 이들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총귀환자는 32,864명에 이른다.

이상의 3가지를 보탠 총 해외동포의 귀환자수는 정부공식통계로는 약 1,541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당한 수의 비공식 루트를 통한 귀환자가 있을 것은 물론이다.

넷째로는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인구이다. 이상의 해외동포 귀환의 경우보다도 이 월남인구를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것은 처음부터 정치적, 사상적 동기에 의하여 대부분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월남인구만이 아니라 월북인구도 동시에 알아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월남자의 경우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다음의 두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우선 해방후 월남자나 해외동포 귀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기관이 설치된 것이 1945년 10월 15일이기 때

25) 『경제연감』, 1949년판, p. 1-158.

문에 그 이전에 넘어온 월남인구에 대한 파악이 벽에 부딪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해방직후 4, 5일 사이에 북한을 비롯하여 만주, 중국, 일본 등지로부터 수십만의 동포가 홍수처럼 밀려들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²⁶⁾, 이 시기에 월남한 사람수가 대단히 많았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1945년 10월 이후에 넘어온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래는 정부의 구호대책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외무부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유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다음 <표 1-8>에서 보는 공식적인 월남자 총수 648,784명은 너무 적게 잡힌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우선 공식적인 통계에 의한 월남자 추이부터 보자. 외무부 집계에 의하면, 연도별 월남자수는 1946년에 185,208명, 1947년에 163,233명, 1948년에 116,107명으로 되고, 1948년말까지의 총월남자수는 648,784명이기 때문에 1945년중의 그것은 184,236명으로 된다. 이 수치가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45년 10월 15일 이후 그해 연말까지의 2개월 반 동안의 것이라고 하면 같은 해 8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의 2개월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월남자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945년중에 얼마나 격렬한 남·북간의 인구이동이 있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공식적인 월남인구 649천명은 너무 과소평가되었다는 전제 아래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적용하여 실제 월남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하는 것을 측정해 보자.

일제하 마지막 인구센서스(1944년 5월 1일자) 결과치를 가지고 통계국이 별도로 산출해낸 남한측 인구는 15,879천명(남북한 총수 25,133천명의 63.2%)이며, 일제하 최초의 인구센서스 해인 1925년부터 1944년까지의 평균 인구증가율 15.3%를 적용하여 1949년 5월 1일 현재의 남한측 인구를 추정해보면 17,132천명이 된다²⁷⁾. 한편 해방후 1949년 5월 1일자 인구센서스 결과치는 20,189천명이고 여기에서 해방후 공식적인 해

26) 같은책, p. 1-157.

27) 같은책, p. 1-159.

외동포귀환자 및 월남자수 2,190천명(1948년 12월말 현재, <표 1-8> 참조)을 빼면 899천명이 된다. 따라서 위의 자연증가에 의한 추정치 17,132천명과는 약 867천명의 차이가 생긴다. 이 867천명이, 예컨대 1948년말 이후 1949년 5월 1일까지는 새로운 해외동포귀환이나 월남자가 없었다고 보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월남한 사람의 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단순한 월남자수가 아니라 기간중 월북자수를 차감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의 월남자수는 여기에 월북자수를 보탠 값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의 월남자수를 예컨대 15만명 정도만 잡아도 비공식적인 월남자수는 100만명을 넘어서게 되고, 또 여기에 앞의 공식적인 월남인구 65만명을 보태면 약 165만명의 인구가 해방정국을 이용,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추정이 일단 가능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몇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우선 추정의 기초가 되는 1944년도 센서스결과치가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보다 매우 낮게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센서스의 목적자체가 전시하의 징병·징용인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특히 男子의 경우 의도적인 신고기피가 많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요인으로는 일제하의 평균 인구증가율 15.3%가 해방후의 자연증가 추세치에 비추어 너무 낮게 잡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이것을 20.9%(앞의 재만인구 추정의 예)만 적용한다고 하면 비공식적인 월남자의 수는 앞의 867천명에서 389천명으로 격감하게 되고, 따라서 총월남자수는 공식적인 649천명을 보탠 1,188천명(월북자 150천명 포함)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의 월남인구추정치 165만명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²⁸⁾.

28) 혹자는 월남자수를 176만명+월남자수로 높여잡는 수도 있으나 이는 추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너무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경제연감』, 1949년판, p. I-159). 다른한편 월남인구를 뺀 순월남인구를 15만명 선으로 좁혀잡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김 철, 앞의책, p. 50.).

2. 노동력인구의 재편

아무튼 8·15 해방을 맞아 남한의 총인구는 크게 늘어났음에 틀림없다. 앞의 <표 1-8>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식적인 수치만 갖고 보더라도 1948년까지 약 182만명(군인 제외)의 인구순증가를 가져왔다. 여기에 비공식적인 루트로 유입된 인구까지 포함한다면(비록 비공식적인 유출인구까지 충분히 감안하고서도) 인구의 순증가가 이보다 더욱 컸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렇게 급증한 인구의 노동력 측면에서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방후 유입인구의 노동력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그동안 해외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어떠한 일에 종사했는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먼저 일제하 조선인의 일본이민 경우와 만주이민간의 성격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민의 경우가 일본내 산업자본의 저임금노동력의 수요에 부응키 위한 산업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대하여, 만주이민의 경우는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수전개척을 위한 농업이민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만주로의 이주는 탈농할 수 밖에 없는 한국빈농들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솔가이민(率家移民)’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일본으로의 이주는 유학을 논외로 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젊은 층의 ‘단신이주’의 성격이 강하였다. 즉 전자의 경우는 한국농촌 내부에서의 ‘푹쉬요인’이, 후자의 경우는 일본내에서의 ‘풀요인’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었다.²⁹⁾

이러한 점은 다음 <표 1-9>의 재일 조선인 직업구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1930년에만 하더라도 재일 조선인 가운데 노동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였고 농·어민은 전체의 0.5%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1945년에 와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왜냐하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업자가 대부분 노동자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업자 비중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일본내에서의 조선인노동력에 대한 풀요인을 설명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9) 朴在-， 앞의책， pp. 10~11.

<표 1-9>

재일조선인의 직업구성

(단위 : %)

	1920	1930	1940	1945
노동자	76.6	60.0	42.1	45.1
상업	1.6	3.6	5.8	3.1
농·어업	1.6	0.5	0.7	0.8
전문기술직 ³⁰⁾	0.3	0.1	0.3	0.5
기타직	2.3	8.1	2.6	1.6
무업자	17.6	27.5	48.5	48.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滿國敏行 梅村又次,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추계 및 분석), 동양경제신보사, 1988, p. 95.

주 : 1)은 원 표상에는 '유기력 직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자가 표현을 바꿈.

이처럼 재일 거주자는 일단 무직의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들 노동자의 내부구성은 어떠한가? 1933년 12월말 통계에 의하면, 재일 거주자 456천명의 50.4%인 230천명이 노동자로 분류되고, 이 노동자의 내부구성은 다시 자유노동자가 전체의 과반인 54.9%를 차지하고, 그다음 공업노동자라고 할 직공이 29.9%, 광부 4.0%, 해원 1.5%, 교통·운수 종사자 1.4% 및 고인(雇人) 8.3%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³⁰⁾ 따라서 광공업부문 노동자는 전체의 1/3수준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설·토목관계의 비숙련의 자유노동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업노동자의 직종별 구성을 보면, 1930년 당시에는 요업(36.2%), 금속(20.4%), 섬유(16.0%)의 3개 업종이 전체의 72.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이밖에 화학, 목제품, 기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³¹⁾. 그러나 이상의 직업별 노동자 구성은 1939년 강제징용이 행해지면서부터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즉 <표 1-10>에서 보듯이, 1939~45년 6월간의 징용노동자 668천명은 탄광노동자 47.7%, 금속광부 11.3%, 토건노무자, 16.1%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이 그를 말해준다.

이상의 재일 조선인 직업 구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8·15후 귀환하는 재일동

30) 朴慶植,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全5卷), 三一書房, 1975, p. 1410.

31) 같은책, p. 1204.

포들의 노동력의 성격은 비록 공업부문의 숙련된 노동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산업노동자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은 수긍할 만한 일이다. 즉 이상의 비율을 단순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해방후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자수 1,118천명중 504천명(45.1%)이 노동자로, 그리고 다시 그중의 29.9%인 151천명이 공업노동자로 각각 분류되어 그만큼 해방후 노동력수급, 특히 공업노동력의 수급에 있어서 공급초과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표 1-10>

징용노무자의 일터구성

(단위 : 명)

	탄 광	금속광산	토 건 업	공업·기타	합 계
1939	24,279	5,042	9,379	-	38,700
1940	35,431	8,069	9,898	1,546	54,944
1941	32,099	8,988	9,540	2,865	53,492
1942	74,576	9,483	14,848	13,100	112,007
1943	65,208	13,660	28,280	15,089	122,237
1944	85,953	30,507	33,382	130,462	280,304
1945 ¹⁾	1,000	-	2,000	3,000	6,000
합 계	318,546 (47.7)	75,749 (11.3)	107,327 (16.1)	166,062 (24.9)	667,684 (100.0)

자료 : 朝鮮研究所, 『在日朝鮮人渡航史』, (研究資料 第一集), 1957, p. 24.

주 : 1)은 1945년 4~6월간의 추계임.

한편 만주로부터의 귀환자 경우에는 그 노동력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만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다만 1930년대초 만주사변 이전의 만주이주의 경우는 거의 농업관계 이민이라 볼 수 있고, 1930년대 후반 들어 일제의 만주경영 필요성에 따른 적극적인 이민장려정책이 실시될 때부터는 농업 이외의 여러 다른 직종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주로 間島省, 吉林省, 奉天省, 安東省 등에 정착하게 된 이주자들은 스스로 농경지개간을 하거나, 아니면 동척이나 만척 등 대토지사회에 소작인으로서의 관계를 맺거나 하여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³²⁾. 따라서 해

32) 『경제연감』, 1949년판, p. 1-158.

방후 만주로부터 귀환한 약 32만명의 교포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송환된 뒤에 반드시 농업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귀환할 터전을 이미 상실한 경우, 그들은 도시에 주저앉게 되어, 앞서의 일본 귀환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해방후 노동력의 초과공급요인으로 작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로는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자에 대한 성격 분석이다. 앞에서 우리는 공식적 통계에 의한 월남인구 약 65만, 그리고 비공식 루트를 통한 월남인구 상당수를 포함하여 적어도 100만 이상의 월남자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어쨌든 이들 월남자에 대한 직업이나 직종별 구성을 알 수 있는 적당한 통계는 찾기 어렵다. 단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에 반대하는 지식인층이나 자산가계급이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점과 관련, <표 1-11>은 1947년중의 월남자 일부를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전직을 조사한 내용이다. 여기서 보면 전체의 과반인 53.5%가 무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요구되는 바이지만, 바로 이 무직자 가운데 기실 위에서 지적한 지식인, 자산가계급 등의 반공세력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그리고 유직자중에서는 그래도 농업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고, 그다음 상업이 17.4%, 광업 16.8%,

<표 1-11>

월남인구의 직업별 구성
(1947년 5월~12월간 월남자)

(단위 : 명 %)

	인 구 수	비 율		인 구 수	비 율
농 업	13,948	10.9	서 기	1,557	1.2
상 업	10,348	8.1	청 부 업	2,009	1.6
직 공	9,146	7.2	관 사	1,012	0.8
광부·광업	9,957	7.8	운 수 업	287	0.2
어 부	670	0.5	의 사	309	0.2
교 사	1,954	1.5	기타직업	1,431	1.1
학 생	5,348	4.2	무 직	68,248	53.5
목 수	1,439	1.1	합 계 ¹⁾	127,663	100.0

자료 : 『朝鮮經濟年報』-1948년판, p. 1-9.

주 : 1947년중의 연간월남자수는 165,074명임.

직공 15.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표는 우선 포괄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전제민 수용소에서의 입국수속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통계의 신뢰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월남인구 전체의 직업구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단지 여기서 한가지 강조해 둘 것은 노동자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전체 유업자의 무려 62.6%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1930년대 후반 북한지방을 중심으로 한 일제의 군수공업화 과정에서 남쪽의 노동력이 북쪽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코자 한다. 이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 없으나, 이를테면 193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남·북한간의 인구증가에서의 현저한 갭이 이를 어느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1935~44년간 북한인구는 연평균 20.7%씩 늘어나는데 남한인구는 불과 12.3%밖에 늘어나지 않았다³³⁾. 물론 여기에는 양자간 인구의 자연증가를 그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기간중 남쪽에서는 일본 등지로 더욱 많은 인구가 흘러나갔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하고서도 당시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의 인구이동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경에 특히 격렬하게 일어나는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인구이동은 일제의 大陸兵站基地化정책의 소산임에 틀림없지만, 이 인구이동의 특징은 어디까지나 가족단위의 출가이동이 아니고 남자노동자만의 出稼型 이동이라고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 단신의 월남으로의 이동노동자는 8·15 해방과 함께 곧바로 귀향의 형태³⁴⁾로 월남하였을 것이고, 이들이 앞에서 본 월남자의 직업구성에 있어서의 노동자 비중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해방후 해외동포의 귀환 및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인구 가운데는 어느정도 숙련된 광·공업 노동자를 포함하여 비록 수치로는 정확히 밝히기 어려우

33) 간은책, p. 1-159. 1935~44년간 북한지역은 7,187천명에서 8,558천명으로 19.1%의 인구증가를, 남한지역은 15,021천명에서 16,575천명으로 10.3%의 인구증가를 가져왔다.

34) 1947년 5-6월간의 월남자 31,859명을 대상으로 한 월남이유(동기)조사에 의하면 '귀향'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29.5%인 9,400명에 이르고 있다-『朝鮮經濟年鑑』, 1948년판, p. 1-9.

나 상당한 규모의 산업노동력이 많이 포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일제하 국내에서 형성된 산업노동력과 함께 노동력인구의 양적, 질적 재편을 가져오는 기초로 된다. 고쳐 말하면, 우선 그만큼의 노동력인구의 양적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적 수준도 그만큼 제고시키게 되었다. 특히 일본과 북한으로부터의 유입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산업노동력과 함께 해방정국속에서 일터를 찾기 어려웠던 이들 유입노동력은 일시적으로는 농촌으로 귀농하는 길도 택하지만, 결국 다시 도시로 흘러나와 도시룸펜화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표 1-12>는 1946년 11월 현재의 실업·무직자 통계이지만, 이 표에서 '전재'에 의한 실업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해외동포귀환 및 월남인구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한 실업자수이다. 반면 그냥 '실업'은 해방후 기업의 도산이나 조업단축 등 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은, 곧 국내에서 형성된 산업노동력의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케 하는 것은 1946년 11월 현재,

<표 1-12> 직종별 실업무직자 구성
(1946. 11. 15. 현재) (단위 : 명, %)

실업전직업	전 재 (A)	실 업 (B)	실업 계 (A+B)
공 장 사 업 장	106,877(56.9)	81,078(43.1)	187,955(17.1)
광 산 사 업 장	79,353(64.7)	43,245(36.3)	122,598(11.1)
토 진 사 업 장	67,599(47.7)	74,185(52.3)	141,784(12.9)
운 수 사 업 장	18,794(47.0)	21,171(53.0)	39,965(3.6)
사무소·상점	62,983(56.6)	48,364(43.4)	111,347(10.1)
농 업	125,594(59.7)	84,693(40.3)	210,287(19.1)
기 타	176,003(61.1)	111,784(38.9)	287,787(26.1)
합 계	637,203(57.8)	464,520(42.2)	1,101,723(100.0)

자료 : 『朝鮮經濟年報』, 1948년판, pp. 1-203~204.

주 : 전재 및 실업란의 ()내 수치는 실업계를 100.0으로 한 구성비임.

35) 같은책, p. 1-203.

전재에 의한 실업자수가 637천명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하여 경제적 이유에 의한 순수한 국내실업자수 465천명(42.2%) 보다도 더욱 많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로써 이 무렵 해외귀환동포나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인구가 남한에 있어서의 노동력수급 사정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공급증대요인, 곧 나아가 실업증대의 요인으로 작용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 1946년 11월 현재의 실업자수 1,102천명은 같은 시점에서의 광공업 및 토건·운수업에의 취업노동자수 137천명(〈표 1-6〉 참조)의 8배 이상에 달할 만큼 놀라운 규모이다. 그리고 이 실업규모는 1946년 11월 이후에도 해외귀환동포나 월남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더욱 증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49년 5월 현재의 실업규모는 1946년 11월보다도 40만명이나 늘어난 약 1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말이다³⁶⁾.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해방후 막대한 해외동포의 귀환과 월남인구로 말미암은 남한내에서의 노동력인구의 양적 재편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노동력의 질적 재편의 측면에 있어서도, 앞에서 검토한 바대로 일본으로부터의 귀환동포와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자의 경우에 특히 산업노동력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력 수준의 질적 계고를 가져왔다고 일단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광공업을 비롯한 각 산업체 종업원의 직종별 구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예컨대, 1948년 1월 현재 기술자로 분류되는 종업원의 비중이 전산업의 경우 5.2%, 제조업의 경우 5.1%로서 해방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자 수에 있어 해방 당시의 3,000명 수준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1,000명(제조업만 8,000명)에 달하고 있으니 말이다(〈부표 1-5, 1-6〉 참조).

36) 『경제연감』, 1949년판, p. 1-157. 단 이무렵 ECA원조당국에서는 남한의 실업규모를 889천명으로 추정하였다.

IV. 1950년대의 노동력 상황

1. 한국전쟁의 영향

해방정국하에서의 해외동포귀환 및 남·북한간의 인구이동이 해방후 노동력인구의 재편을 가져온 제1차적 국면이었다면, 그것의 제2차적 국면은 1950~53년간의 한국전쟁 기간에 있어서의 인구이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쟁을 통한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그리고 '1·4후퇴' 과정에서 넘어온 북한인구의 제2차 월남이 그것이다.

우선 전쟁기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인명피해부터 보자. 다음 <표 1-13>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기간에서의 민간인 인명피해는 남자 764,281명, 여자 226,687명으로 도합 990,968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부상이 229,625명이므로 이를 뺀 나머지 사망, 학살, 납치, 행방불명 등을 인명손실로 보면 전쟁중 약 761천명의 인구감소를 가져 온 셈이다. 여기에 군인·군속·경찰 등의 인명피해를 보태면 한국 전쟁중의 인구감소규모는

〈표 1-13〉 한국전쟁중의 민간인 인명피해

(단위 : 명, %)

원 인 별	남 자	여 자	합 계
사 망	166,104(21.7)	78,559(34.7)	244,663(24.7)
학 살	97,680(12.8)	31,256(13.8)	128,936(13.0)
부 상	168,849(22.1)	60,776(26.8)	229,625(23.2)
납 치	78,377(10.3)	6,155(2.7)	84,532(8.5)
행 방 불 명	253,271(33.1)	49,941(22.0)	303,212(30.6)
합 계	764,281(100.0)	226,687(100.0)	990,968(100.0)

자료 : 公報部統計局, 『6·25 事變綜合被害調査表』, 1953. 7. 27일 현재.

무려 974천명에 이르는 셈이다. 즉 <표 1-14>는 UN군 발표³⁷⁾에 의한 1952년 4월 현재의 군인·군속의 인명피해와 내무부 발표에 의한 1953년 7월 현재의 경찰 및 청년단(경찰의 보조기관)의 인명피해를 가리킨다. 각기 조사시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군사관계 통계이므로 그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더우기 군인·군속의 경우 통계시점인 1952년 4월 이후에도, 경찰·청년단의 경우에는 1953년 7월 이후에도 각각 전투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규모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4> 한국전쟁중의 군인·경찰 등의 인명피해

(단위 : 명, %)

	군인·군속 ¹⁾	경찰 ¹⁾	청년단 ²⁾	합 계
전 사	29,494	2,894	664	33,052(10.3)
부 상	101,097	6,349	761	108,207(33.7)
포 로·납 치	65,601	323	1,008	66,932(20.8)
행 방 불 명	105,672	7,140	266	113,078(35.2)
합 계	301,864(94.0)	16,706(5.2)	2,699(0.8)	321,269(100.0)

자료 : 韓國銀行, 『經濟年鑑』, 1955년판, 統計編 p. 17. 國防部政訓部, 『韓國戰亂三年誌』, 1954, 統計編 p. 2.

주 : ① 1)은 1952. 4. 30 현재, 2)는 1953년 7월 현재임.

② 1)은 UN본부 발표의 UN군 인명피해중 한국군의 수치, 2)는 내무부 발표 수치임.

어쨌든 군인·군속의 경우 총인명피해 301,864명중 부상자 101,097명을 뺀 200,767명의 인명손실을, 경찰·청년단의 경우 총 19,405명중 부상자 7,110명을 뺀 12,295명의 인명손실을 가져온 셈이고, 이를 앞의 민간인 인명손실 761,343명과 합하면 모두 974,405명, 다시 말하여 100만명에 가까운 전쟁으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인구감소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37) 유엔본부 비공식 발표에 의하면, 1952년 4월말 현재 한국군 301,864명, 미국군 107,666명, 영국군 3,025명 등 모두 419,350명의 유엔軍 인명피해를 밝히고 있다-『경제연감』, 1955년판, 통계편 p. 17.

둘째로는 전쟁기간에 있어서의 남·북으로의 상호 피난민 이동과 관련해서이다. 우선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피난민은 앞의 <표 1-13, 1-14>상의 납치나 포로 외에도 자발적인 월남·북의 경우, 또는 강제적인 피납의 경우 등이 상당히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중에서 다른 것은 일단 제쳐두고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넘어온 피난민만을 알아보도록 하자. 내무부치안국 통계에 의할 때, 1952년 12월말까지 총 685,316명의 월남피난민이 집계되고 있다³⁸⁾. 남자 308,918명, 여자 376,398명으로 구성되는 이 피난민수는 1952년 12월 이후에는 더이상 피난민이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을 곧 전쟁기간의 총피난민수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주로 '1·4후퇴' 당시에 넘어온 이들 월남피난민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수치인 바, 이밖에 비공식적인 월남민도 많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 비공식적인 월남피난민과 함께 다른편으로는 상당한 수의 월북피난민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것들이 서로 상쇄된다고 보면, 결국 6·25 전쟁기간에 있어 총 974,405명의 인명피해와 다른 한편 685,316명의 인구유입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약 289천명의 인구순감을 가져온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식적인 월남피난민 685천명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가까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테면 전쟁중의 남하인구가 무려 150만명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³⁹⁾. 그러나 이는 전쟁 전후의 총인구조사 결과치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즉 1949년 5월의 센서스인구 20,167천명은 1955년 5월 센서스 때 까지 6년간 약 1,335천명이 늘어났다. 이 기간중 15.0%의 인구증가율을 상정하면 인구의 자연증가수는 1,884천명에 달하고 여기서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 974천명을 차감하고 보면 전쟁기간의 월남인구수는 결국 425천명(1,335천명+974천명-1,884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⁴⁰⁾. 따라서 전쟁은 상당한 규모의 월남피난민의 유

38) 國防部政訓部, 『韓國戰亂三年誌』, 1954, 통계국 D7.

39) 韓國産業銀行調査部, 『韓國産業經濟十年史』, 1955, p. 339.

40) 필자는 지난번 작업에서 전쟁중의 남하인구를 약 400천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한국의 공업화와 노동력(工)』, 1990. 7, p. 56. 일찌기 박재빈씨도 같은 방법으로 약 400천명의 남하인구를 추정하였다-朴在彬, 「한국인구통계에 관한 검토」, 『한국통계월보』, 1962년 1,2월호.

입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자연증가추세에도 못미치게 하는 총인구의 억제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이 인구억제효과는 노동력인구의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전쟁의 직접적인 인명피해의 경우에 그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두말할 것 없이 청·장년층의 남성인구 일 것이다. 게다가 월남피난민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인구가 전체의 54.9%⁴¹⁾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것과 유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력의 질적변화의 측면에서는 한국전쟁은 오히려 나름대로의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중요시해야 할 것이 젊은 노동력인구의 군대 경험이다. 젊은층의 군대생활은 규칙적인 단체생활의 습관을 기른다는 점과 또 각종 근대적인 기계제품으로서의 무기류를 직접 다루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문자 및 한자의 해독, 시간 개념의 중요성 체득 등을 통하여 농촌 젊은이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전통적 삶의 방식으로부터 산업노동자로서의 근대적 삶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생활규범을 몸에 배게 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둘째로는 고등교육의 보급과 관련한 문제이다. 해방후 자유로운 교육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학교교육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속에서 전쟁은 여기에 가일층의 박차를 가하였다. 왜냐하면 전쟁중 대학생에게는 병역상의 특혜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누구나 자식을 고등학교나 대학에 보내고자 하였다. 이에 많은 사립대학의 설립과 학생수의 급증을 가져왔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보더라도 1947년말 현재의 대학교(대학원 포함) 25개는 1953년말 현재 58개로, 학생수는 같은 기간중 19,023명에서 무려 41,064명으로 2배 이상씩 늘어났다. 이는 중등학교(중학 및 고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중 학교수에서는 2.4배, 학생수에서는 2.2배가 각각 늘어났다⁴²⁾. 물론 이러한 중·고등교육의 급속한 보급이 전쟁에 연유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고쳐 말하면 시대적 변천에 따라 교육 그 자체의 본래적 요구의 반영으로 그

41) 國防部政調部, 앞의책, 통계편, p. D7.

42) 『경제연감』, 1949년판, p. IV-221 및 1955년판, 통계편 p. 264 참조.

렇게 된 점도 물론 있겠지만, 전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학교 수·학생 수의 급증을 가져오게 된 데에는 전쟁 그 자체의 요구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2. 1950년대의 노동력 수급사정

이처럼 전쟁기간에 또 한차례의 격심한 노동력인구의 변화를 겪고난 다음, 다시 말하면 1953년 7월 휴전 이후의 노동력사정은 어떠하였는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쟁기간중에 노동의 수요측 사정과 직결되는 산업시설이 얼마나 파괴, 훼손되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은 이상에서 본 바대로 막대한 인적피해와 함께 그에 못지않는 물적피해를 또한 안겨다 주었다. 이를테면 광공업 및 전력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의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주택을 비롯하여 병원·학교, 상·하수도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기반까지도 크게 파괴시켰다⁴³⁾. 그중에서도 특히 근대적 시설을 갖춘 대규모적인 섬유, 화학, 기계공업 등에서의 전쟁피해가 우심한 바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전쟁전(1948년)의 3,808개 제조공장중 그 68%인 2,602개 공장이 전파 내지 반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⁴⁾. 그 결과 1952년말 현재의 공장수는 전쟁전인 1948년말(3,808개)의 84%에 불과한 3,208개에 머물고 있다⁴⁵⁾.

이러한 산업시설의 파괴는 당해 산업의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킬 것임은 물론이다. 실제로 1952년말 현재의 공업부문 종업원 수는 114,965명으로서 1948년말의 131,116명

43) 6·25 전쟁의 종합피해상황에 대해서는 拙著,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까치사, 1987, pp. 96~113 참조.

44) 『經濟年鑑』, 1955年版, p. I-118. 그리고 전쟁이 교착상태에 들어가는 1951년 8월말 현재, 제조업부문 종합피해상황은 대체로 건물 44%, 시설 42%의 원상에 대한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다-줄져, 앞의책, p. 104.

45) 같은책, p. I-118.

에 비하여 88%에 불과하다⁴⁶⁾. 제조업 이외의 여타 산업에 있어서도 사정은 이와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수급사정 자체는 더욱 팍박해졌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팍박해진 노동력수급 사정은 1953년 7월의 휴전무렵부터 바뀌게 된다. 우선 미국 원조물자의 도입으로 파괴된 시설의 복구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또한 전시하의 局地的 市場圈에 바탕을 둔 지방중소공업이 크게 발흥함으로써 새로운 노동력수요를 창출하는 국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지방중소공업 발흥과 관련하여 이럴테면 전쟁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기술, 시장, 수송 등의 측면에서 그 경영조건을 불리하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국지적 시장권에 기초한 소규모 생산의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준다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이무렵 특히 식료품, 섬유류 등 일반국민의 생필품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급속한 발흥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 준다⁴⁷⁾.

이럴테면 1955년 10월 현재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우선 제조업체수가 총 8,810개—그중 종업원 10인 이상 업체는 4,855개—로서 전쟁중인 1952년말의 3,208개(종업원 10인 이상)에 비하면 1.5배로 늘어났고, 종업원수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 중 114,965명에서 190,936명(종업원 10인 이상)으로 1.7배로 늘어났다(〈표 1-15〉 참조). 다만 한가지 특기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업체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규모별 구성에 있어서는 종업원 49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광업의 경우 전체의 62.5%, 제조업의 경우 92.1%에 각각 이르고, 더우기 종업원 19명 이하의 영세기업의 비중도 광업 30.4%, 제조업 73.3%에 이르고 있어⁴⁸⁾, 이러한 점에서는 1952년이나 또는 전쟁전인 1948년 당시와 비교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⁹⁾.

46) 같은책, pp. 1-118, 1-127~128.

47) 전시하의 지방중소공업 발흥조건에 대해서는 줄지 앞의책, pp. 158~160 참조.

48) 한국은행조사부,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명부』, 1955. 10월말 현재, pp. 6~8.

49) 1948년말 현재 제조업 종업원 29인 이하 소규모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72.8%였으나, 1955년 10월말에는 오히려 83.9%(『사업체명부』, 1955. 10, p. 6)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시하 또는 전후의 복구과정에서 이처럼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설립이 활발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산업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늘어나는 노동력 공급량을 모두 커버하기란 물론 불가능하였다. 이 무렵 도시지역에서의 산업노동력의 공급증대는 자연인구증가에 따른 노동력화의 몫 이외에, 농촌으로부터 유출되는 이촌향도적인 탈농인구의 도시유입도 이미 거기에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농업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은데다가 그위에 미국 잉여농산물의 대량 도입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적자영농, 농가부채에 허덕이던 농촌의 막대한 유휴노동력은 그 많은 부분이 탈농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표 1-15〉 1950년대 제조업 규모별 구성

종업원	기업체수(개)			종업원수(명)		
	1952. 12(A)	1955. 10(B)	B/A(%)	1952. 12(A')	1955. 10(B')	B'/A'(%)
~ 9인	-	(3,955)	(-)	-	(31,254)	(-)
10 ~ 49인	2,750(85.7)	4,161(85.7)	151.3	49,335(42.9)	90,825(47.6)	184.1
50 ~ 99인	312(9.7)	450(9.3)	144.2	21,341(18.6)	31,946(16.7)	149.7
100인 이상	146(4.6)	244(5.0)	167.1	44,289(38.5)	68,165(35.7)	153.9
합 계	3,208(100.0)	4,855(100.0) (8,810)	151.3	114,965(100.0)	190,936(100.0) (222,190)	166.1

자료 : 『經濟年鑑』, 1955년판, pp. 1-127~128,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명부』, 1955. 10월말 현재.

주 : 1955년 10월의 합계란의 ()내 수치는 종업원 9인 이하의 것을 포함한 총수입.

그러나 도시쪽에서의 노동력 수요사정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1957년을 고비로 미국의 원조도입은 감축되기 시작하고, 이에 영향받아 1958년부터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3白工業 중심의 소비재공업,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경기침체는 더욱 우심하였다. 때이른 생산과잉현상으로 조업단축과 가동률의 저하를 가져오고 그결과 실업률도 높아졌다. 이를테면 1958년중의 실업자수가 1,433천

명에 달하고, 공식적인 실업률이 15.4%에 이르렀다⁵⁰⁾.

1958년 당시의 노동력수급상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표 1-16>과 같다. 1958년의 노동력인구는 9,321천명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것의 84.6%인 7,879천명만이 취업한 상태였다. 취업인구 7,879천명은 다시 제1차산업에 70.8%, 제2차산업에 5.9%-그중에서 특히 제조업은 4.3%-, 제3차산업에 23.3%로 구성되어 아직도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업의 고용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인구의 15.4%인 1,433천명의 실업자 구성에 있어서도 전체의 60.3%가 제1차산업에서의 실업임을 찾아볼 수 있다(<부표 1-7> 참조). 이 점 한가지만을 갖고서도 당시 농촌지역의 유휴노동력은 도시지역으로부터의 풀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촌내부에서의 뜻쉬요인에 의하여 흘러나올 수 밖에 없게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6> 1958년의 취업구성

(단위 : 천명, %)

	노동력인구(A)	취업자(B)	실업자(C)	실업률(C/A×100)
제1차산업	6,444(69.2)	5,580(70.8)	864(60.3)	13.4
농 립 업		5,368		
어 업		212		
제2차산업	582 (6.3)	470 (5.9)	112 (7.9)	19.3
광 업		38		
제 조 업		337		
건 설 업		95		
제3차산업	2,286(24.5)	1,829(23.3)	457(31.8)	20.0
교 통		113		
통 신		12		
전 력		8		
상 업 등		857		
행정·국방		839		
합 계	9,312(100.0)	7,879(100.0)	1,433(100.0)	15.4

자료 : 부흥부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3개년계획』, pp. 144~149.

50)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3개년계획』-1960년, pp. 604~663.

1958년 당시의 이러한 노동력인구의 구성은 1960년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동없이 그대로 지속된다. 즉 1960년 12월 1일자 인구센서스자료에 의하면, 취업자수가 1958년에 비하여 오히려 7,164천명으로 10% 정도나 줄어들고 있다. 또한 그것의 산업별 구성도 농림업이 66.8%로 역시 압도적이고, 그다음 상업 8.2%, 제조업 7.2%, 각종 서비스 종사자 13.2%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⁵¹⁾. 이렇게 볼 때 1950년대의 노동력인구의 수급 사정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휴전후의 활발한 전재복구 및 산업건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력수요가 공급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고, 둘째, 노동력수요의 70% 정도를 아직도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셋째, 농촌으로부터 유휴노동력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나, 도시에서 그것을 흡수할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끝으로 농업·비농업할 것 없이 현실의 취업 역시 불완전 취업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 등을 그 특징적인 양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51) 경제기획원, 『인구주택국세조사속보』-추출집계결과, 1960년 12월 1일 현재, p. 36.

V. 結 論

이상으로 우리는 1950년대말에 약 150만명의 완전실업자와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막대한 규모의 불완전취업자를 안고있는, 그야말로 유향노동력의 과잉상태에 놓여있음을 알았다. 양적으로 이러한 노동력인구의 과잉상태는 어떻게 하여 초래되었는가?

우선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해방직후의 혼란기 및 6·25전쟁기에는 적어도 일제하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15.3%씩의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휴전후 1960년까지는 연평균 22.0%(경제개발 3개년계획상의 수치)씩의 인구증가를 가져왔다고 가정하면, 1960년의 총인구는 21,208천명으로 되고, 이것은 1944년 5월 센서스상의 15,879천명보다 5,329천명이 늘어난 셈이다. 그리고 총인구에 대한 노동력인구의 비율을 41.3%(1958년 수치)로 잡으면 1960년의 노동력인구는 8,759천명에 이르러 기간중 2,201천명에 이르는 자연적 노동력인구증가를 가져온 셈이다. 그런데 1960년 12월 인구센서스상에는 총인구가 24,989천명으로 잡히고 있어 여기에 같은 노동력인구비율(41.3%)을 적용하면 1960년 당시의 노동력인구는 10,320천명이 되어, 앞의 자연적 증가만을 감안한 노동력인구 8,759천명을 뺀 나머지 약 1,561천명이 이른바 사회적 요인에 의한 노동력인구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1944년 5월에서 1960년 12월까지 약 376만명의 노동력인구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으며, 그중 사회적 요인에 의한 156만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해방직후의 해외동포귀환이나 월남인구, 또는 6·25전쟁중의 월남인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방직후의 월남인구나 6·25전쟁중의 월남인구 또는 전쟁희생자 등이 그만큼 상쇄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월북인구나 사망자를 차감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분이 1960년 당시의 완전실업규모(150만명)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유휴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앞에서 우리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의 경우, 산업노동력으로 훈련된 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지만, 이점을 논의로 하더라도 1950년대에 실업상태로 있는 이러한 노동력인구 역시 산업노동력으로 가용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1955년 9월 인구센서스상에 나타난 18세이상 완전실업자 117,695명의 학력별 구성을 보면, 國文不解得者는 전체의 7.7%에 불과하고 국졸이하의 국문해독자가 전체의 62.8%, 중·고졸이 26.5%, 대졸이상이 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⁵²⁾. 이는 1948년 1월 당시의 산업노동자(농·수산업 제외)의 학력별 구성에서 중·고졸이 전체의 12.9%, 대졸이상이 1.7%인 것⁵³⁾과 비교하면 6·25를 경과하는 7년여의 이 기간에 있어 일반국민의 학력수준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⁵⁴⁾. 이 점은 5년후인 1960년경에 이르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믿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휴전후 국민의 교육열이 더욱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각종 학교수나 학생수도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⁵⁵⁾.

이렇게 볼 때, 1950년대말의 노동력인구의 존재양태는 양·질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산업노동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는 갖추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노동력으로 동원가능한 막대한 규모의 유휴노동력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대량으로 밀려드는 외국자본과 순조롭게 결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과정에서 자본축 조건과 함께 그것을 가능케 한 다른 한쪽 축을 담당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52) 내무부통계국, 『간이총인구조사보고』(전국편)-1955. 9. 1일 현재, pp. 158~159.

53) 『경제연감』, 1949년판, p. IV-179.

54) 우선 13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에 있어, 1947년 7월의 41.3%(『경제연감』, 1948년판, p. I-12)에서 1960년 12월의 28.6%(『인구주택센서스』, 1960, p. 31)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55) 휴전후 중·고등 및 대학의 학교 및 학생수의 증가추세는 아래 표와 같다. 특히 대학생의 증가세가 현저함을 볼 수 있다.

(단위 : 교, 명)

	중 학		고 등		대 학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1952. 12월(A)	607	312,071	359	133,286	49	31,342
1953. 12월	621	324,114	416	172,456	48	38,411
1956. 12월	999	458,905	610	288,516	56	106,818
1957. 12월(B)	1,034	439,571	629	288,536	56	106,818
B/A(倍)	1.7	1.4	1.8	2.2	1.1	3.4

자료 : 문교부, 『문교행정통계일람』, 1959. 3. 31 현재, pp. 24~25.

參 考 文 獻

- 경제기획원통계국, 『人口 및 住宅國勢調査』, 1960年 12月 1日 현재.
- 南朝鮮過渡政府, 『南朝鮮産業勞務力 및 貨金調査』, 1946年 11月 現在.
- 내무부통계국, 『간이총인구조사보고』(제1회), 1955년 9월 1일 현재.
- 復興部産業開發委員會, 『經濟開發 三個年計劃』, 1960.
- 商工部, 『상공행정개관』, 1959.
- 李大根, 『韓國戰爭과 1950年代의 資本蓄積』, 까치사, 1987.
- 韓國經濟研究院, 『韓國의 工業化와 變動力(Ⅰ)』-勞動統計의 整備·解說篇一, 1990.
- 韓國産業銀行調査部, 『韓國産業經濟十年史』, 1955.
- 韓國銀行調査部, 『鑛業 및 製造業事業體名簿』, 1955年 10月말 현재.
- , 『經濟年鑑』, 1948, 1949, 1955年版.
- 金 哲,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1965.
- 南膏三郎, 『韓國の人口と經濟分析』, アジア經濟研究所, 1972.
-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의 記錄』, 未來社, 1981.
- 朴在一, 『在日朝鮮人에 關する 綜合調査研究』, 新經元社, 1957.
- 石南國, 『韓國の人口增加의 分析』, 劉草書房, 1972.
- 安秉直, “日本窒素에 於ける朝鮮人勞動者階級の 成長에 關する 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
集』, No. 25, 綠蔭書房, 1988.
- , 『1930年代에 於ける朝鮮人勞動者階級의 特質』, 『朝鮮近代의 歷史錄』, (中村哲 의
편), 日本評論社, 1988.

李智皓, 『南韓人口の増減形態』, 『韓國統計月報』-1962, 8월호.

朝鮮總督府, 『國勢調査結果要約』, 昭和 15年 10月 1日 현재.

_____, 『人口調査結果報告』, 其の一, 昭和 19年 5月 1日 현재.

_____,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 昭和 18年 6月 10日 現在.

Tai Hwan Kwon Et al, *The Population of Korea*, SUN, 1975.

<부표 1-1>

해방전후 지역별 사업체수와 노동자수의 증감

	사 업 체 (개) ¹⁾			노 동 자 (명) ²⁾		
	1946. 6(A)	1946. 11 ³⁾ (B)	B/A(감소율, %)	1946. 6(A)	1946. 11 ⁴⁾ (B)	B/A(감소율, %)
서 울	2,337	1,123	51.9	66,898	35,763	46.5
경 기	1,159	698	39.8	63,625	9,753	84.7
인천시 ⁵⁾	422	143	67.4	31,345	7,858	74.9
개성시	109	92	15.6	2,570	1,885	26.7
충 북	222	137	38.3	6,583	3,970	39.7
청주시	79	52	34.2	1,976	1,219	39.3
충 남	441	209	52.6	14,219	5,550	61.0
대전시	153	38	65.2	4,809	2,106	56.2
전 북	679	437	35.6	18,389	7,294	60.3
군산시	105	129	+ 22.9	3,854	2,628	31.8
전주시	81	59	27.2	2,163	1,888	12.7
전 남	1,040	581	44.1	24,843	10,138	59.2
목포시	101	76	24.8	3,091	1,393	54.9
광주시	184	116	37.0	6,586	3,925	40.4
경 북	1,424	788	44.7	29,085	12,314	57.7
대구시	446	293	34.3	12,694	7,071	44.3
경 남	1,618	1,032	36.2	61,565	20,375	66.9
부산시	749	375	49.4	33,467	12,325	63.2
마산시	91	65	28.6	3,038	1,242	59.1
진주시	88	91	+ 3.4	1,129	776	31.3
강 원	331	212	36.0	13,480	6,391	52.6
춘천시	60	41	31.7	1,908	1,429	25.1
제 주	72	32	55.6	1,833	603	67.1
합 계	9,323	5,249	43.7	300,520	122,159	59.4

자료 :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남조선산업노무력 및 임금조사」, 1946. 11월 현재.

주 : 1) 산업범위 : 금속, 기계기구, 화학, 공익사업(전기·가스·수도), 요업, 방직, 제재, 식료품, 인쇄·제본, 토목건축 및 기타공업. 단 전매사업장 및 관영사업장은 제외함.

2) 전시간(1일 8시간) 취업하는 노동자만임.

3) 390개의 휴업사업장 제외함.

4) 총수입 27,566천원에 해당하는 기술자 8,990명 제외함.

5) 이 지역에서는 신고서가 충분히 접수되지 아니하였음.

<부표 1-2>

해방전후 지역별·남녀별 노동자수의 증감

(단위 : 명, %)

	남자노동자			여자노동자		
	1946. 6(A)	1946. 11 (B)	B/A(감소율)	1946. 6(A)	1946. 11 (B)	B/A(감소율)
서울	47,494	24,833	47.7	19,404	10,930	43.7
경기	51,771	13,933	73.1	11,854	5,820	50.9
인천시 ⁵⁾	26,922	5,690	78.9	4,423	2,168	51.0
개성시	1,566	970	38.1	1,004	915	8.9
충북	5,225	3,209	38.6	1,358	761	44.0
청주시	1,324	687	48.1	652	532	18.4
충남	11,324	3,853	66.0	2,895	2,197	24.1
대전시	3,083	1,035	66.4	1,726	1,071	37.0
전북	15,039	5,249	65.1	3,350	2,050	38.8
군산시	2,963	2,102	29.1	891	526	41.0
전주시	1,161	875	24.6	1,002	1,013	1.1
전남	18,972	7,088	62.6	5,871	3,050	48.6
목포시	2,411	1,148	52.4	680	245	64.0
광주시	3,001	1,982	34.0	3,585	1,943	45.8
경북	21,733	8,448	61.1	7,352	3,866	47.4
대구시	7,301	3,834	47.5	5,395	3,237	40.0
경남	47,809	14,612	69.4	13,756	5,766	58.1
부산시	23,210	7,952	65.7	10,257	4,373	57.4
마산시	1,941	837	56.9	1,097	405	63.1
진주시	862	539	37.5	267	237	11.2
강원	11,963	5,028	58.0	1,517	1,363	10.2
춘천시	1,126	597	47.0	782	832	6.4
제주	1,464	538	63.3	369	65	82.4
합계	232,794	86,291	62.9	67,726	35,868	47.0

자료 : <부표 1-1>과 같음.

주 : <부표 1-1>과 같음.

〈부표 1-3〉 해방후 공업부문의 업종별 노동자의 구성
(1946년 11월 현재)

(단위 : 명, %)

	식품공업	방직공업	제재공업	인쇄·제본	요업	화학공업
서울	1,767(4.9)	9,901(27.7)	1,302(3.6)	2,875(8.0)	730(2.0)	7,286(20.4)
경기	1,832(7.5)	6,436(32.6)	731(3.7)	153(0.8)	2,309(11.7)	2,182(20.4)
인천시	589(7.5)	2,647(33.8)	521(0.7)	58(0.7)	243(3.1)	494(6.3)
개성시	81(4.3)	1,078(57.2)	18(1.0)	28(1.5)	22(1.2)	168(8.9)
충북	240(6.0)	939(23.7)	170(4.3)	86(2.2)	355(8.9)	60(1.5)
청주시	86(7.1)	699(57.3)	54(4.4)	62(5.1)	63(5.2)	4(0.3)
충남	376(4.3)	2,388(43.1)	146(2.6)	95(1.7)	404(7.3)	265(4.8)
대전시	93(4.4)	1,178(56.0)	53(2.5)	19(0.9)	5(0.2)	192(9.1)
전북	618(8.5)	1,764(24.2)	443(6.1)	159(2.2)	588(8.1)	1,767(24.2)
군산시	147(5.6)	182(6.9)	150(5.7)	62(2.4)	127(4.8)	969(36.9)
전주시	44(2.3)	1,282(67.9)	85(4.5)	53(2.8)	3(0.2)	96(5.1)
전남	874(8.6)	3,556(35.1)	808(8.0)	217(2.1)	180(1.8)	1,195(11.8)
목포시	113(8.1)	256(18.4)	96(6.9)	33(2.4)	48(3.4)	279(20.1)
광주시	99(2.5)	2,671(68.2)	180(4.6)	110(2.8)	75(1.9)	100(2.5)
경북	661(5.4)	4,440(36.1)	990(8.0)	415(3.4)	39(0.3)	1,274(10.3)
대구시	241(3.4)	3,782(53.5)	194(2.7)	338(4.8)	25(0.4)	694(9.8)
경남	1,606(7.9)	5,758(28.3)	943(4.6)	411(2.0)	191(0.9)	2,851(14.0)
부산시	352(2.9)	4,285(34.9)	410(3.3)	182(1.5)	41(0.3)	1,673(13.6)
마산시	159(12.8)	506(40.8)	45(3.6)	62(5.0)	84(6.8)	34(2.7)
진주시	92(11.9)	244(31.5)	50(6.4)	72(9.3)	18(2.3)	115(14.8)
강원	337(5.3)	1,068(16.7)	950(14.9)	129(2.0)	368(5.8)	2,003(31.3)
춘천시	50(3.5)	970(67.9)	132(9.2)	36(2.5)	28(2.0)	85(5.9)
제주	72(11.9)	19(3.2)	19(3.2)	22(3.6)	16(2.7)	288(47.8)
합계	8,383(6.9)	36,269(29.8)	6,502(5.3)	4,540(3.7)	9,693(3.7)	19,171(15.7)

자료 : 〈부표 1-1〉과 같음.

주 : 〈부표 1-1〉과 같음. 단, *는 전기·가스·수도업임.

<부표 1-3> 계속

(단위 : 명, %)

	금속공업	기계공업	기타공업	공익사업*	토목·건축	합계(전공업)
서 울	2,494(7.0)	6,172(17.3)	1,350(3.8)	1,355(3.8)	531(1.5)	35,796(100.0)
경 기	2,264(11.5)	2,704(13.7)	494(2.5)	116(0.6)	532(2.7)	19,753(100.9)
인천시	1,437(18.3)	1,528(19.4)	0(0.0)	95(1.2)	246(3.1)	7,858(100.0)
개성시	104(5.5)	44(2.3)	311(16.5)	15(0.8)	16(0.8)	1,885(100.0)
충 북	55(1.4)	173(4.4)	77(1.9)	30(0.8)	1,785(44.9)	3,970(100.0)
청주시	35(2.9)	106(8.7)	77(6.3)	18(1.5)	15(1.2)	1,219(100.0)
충 남	303(5.5)	536(9.7)	132(2.4)	146(2.6)	705(12.7)	5,544(100.0)
대전시	22(1.0)	197(9.4)	108(7.8)	104(4.9)	80(8.8)	2,100(100.0)
전 북	567(7.8)	826(11.3)	101(1.4)	270(3.7)	196(2.7)	7,299(100.0)
군산시	317(12.1)	545(20.7)	22(0.8)	0(0.0)	107(4.1)	2,628(100.0)
전주시	133(7.0)	109(5.8)	52(2.8)	31(1.6)	0(0.0)	1,888(100.0)
전 남	652(6.4)	1,007(9.9)	139(1.4)	180(1.8)	310(3.1)	10,138(100.0)
목포시	139(10.0)	321(23.0)	0(0.0)	48(3.4)	13(0.9)	1,393(100.0)
광주시	224(5.7)	271(6.9)	124(3.2)	75(1.9)	46(1.1)	3,925(100.0)
경 북	921(7.5)	1,811(14.7)	127(1.0)	39(0.3)	581(4.6)	12,314(100.0)
대구시	382(5.4)	1,136(16.1)	88(1.2)	25(0.4)	25(0.4)	7,071(100.0)
경 남	1,384(6.8)	3,758(18.4)	417(2.0)	191(0.9)	268(3.8)	20,378(100.0)
부산시	1,020(8.3)	2,822(22.9)	278(2.2)	41(0.3)	298(2.4)	12,325(100.0)
마산시	128(10.3)	181(15.1)	10(0.8)	84(6.8)	9(0.7)	1,242(0.7)
진주시	29(3.7)	92(11.9)	39(5.0)	18(2.3)	7(0.9)	766(100.0)
강 원	326(5.1)	354(5.5)	13(0.2)	368(5.8)	178(2.8)	6,391(100.0)
춘천시	8(0.6)	120(8.4)	0(0.0)	28(2.0)	0(0.0)	1,429(100.0)
제 주	0(0.0)	54(8.9)	27(4.5)	340(6.9)	22(3.6)	603(100.0)
합 계	8,968(7.3)	17,394(14.2)	2,932(2.4)	2,711(2.2)	5,598(4.6)	122,159(100.0)

<부표 1-4>

해방전후 직업별 인구구성 추이

(단위 : 천명)

	총인구 ¹⁾	유업인구									무업자 ²⁾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무자유업	기타	계	
1938 남	11,128	4,474	92	86	162	371	50	158	419	5,812	5,316
1938 여	21,951	7,963	145	115	213	546	60	209	570	9,825	12,125
1940 남	11,572	4,315	103	125	200	401	62	181	496	5,884	5,688
1940 여	22,955	7,688	153	162	253	57	73	228	656	9,783	13,172
1943 남	12,890	4,373	134	164	407	355	107	262	639	6,441	6,449
1943 여	25,827	8,149	206	204	501	502	127	338	892	10,918	14,909
1948 남	10,188	2,743	72	32	237	289	72	397	233	5,070	5,061
1948 여	20,167	6,271	89	34	266	370	74	416	298	7,818	12,206
1949 남	10,131	3,743	72	32	237	289	72	392	233	5,070	5,061
1949 여	20,024	6,271	89	34	266	370	74	416	298	7,818	12,206
1952 남	10,083	4,869	156	33	274	683	113	517	926	7,571	2,512
1952 여	20,527	9,300	24	36	362	1,280	144	705	1,597	13,670	6,856
1953 남	10,643	3,341	62	19	177	273	64	347	319	4,602	6,039
1953 여	21,546	5,695	73	21	205	405	67	380	446	7,292	14,255

<도별, 1953>

서울	1,010	25	-	-	29	57	10	44	56	221	789
경기	2,500	527	5	1	20	36	7	40	55	690	1,810
충북	1,374	359	-	2	8	17	2	19	18	425	948
충남	2,378	643	4	2	16	39	5	29	39	777	1,601
전북	2,287	779	3	-	14	35	4	35	33	903	1,384
전남	3,203	1,237	19	1	18	43	7	41	42	1,408	1,794
경북	3,522	837	8	3	32	64	8	55	53	1,060	2,462
경남	3,679	827	20	2	57	92	21	93	117	1,229	2,449
강원	1,302	349	12	9	9	20	2	20	30	451	851
제주	292	112	2	-	2	3	1	5	2	127	165
합계	21,546	5,695	73	21	205	405	67	380	446	7,292	14,255
		(78.1)	(1.0)	(0.3)	(2.8)	(5.6)	(0.9)	(5.2)	(6.1)	(100.0)	

자료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및 公報處統計局.

주 : 1)은 한국인만이며, 1943년까지는 남북한, 1948년 이후는 남한만임.

2)는 실업자, 학생, 어린이, 노인층 등으로 이루어지고, 총인구에서 유업인구를 뺀 것임.

<부표 1-5>

도별·산업별 종업원 구성
(1948년 1월말 현재)

(單位 : 名)

		사 업 체 수	기 술 자			직 공		
			남	여	계	남	여	계
서 울	공 업	836	1,760	57	1,817(5.0)	17,185	9,220	26,405(72.8)
	광 업	1	21	3	24(19.7)	4	-	4(3.3)
	운 수 업	26	222	-	222(9.4)	648	-	648(27.3)
경 기	회사·상점	111	714	93	807(8.6)	963	75	1,038(11.1)
	계	974	2,717	153	2,870(6.0)	18,800	9,295	28,095(58.4)
충 북	공 업	594	1,977	97	2,074(8.5)	12,032	5,093	17,125(70.2)
	광 업	10	85	-	85(5.3)	1,150	38	1,188(74.0)
	운 수 업	59	162	-	162(12.2)	288	-	288(21.7)
충 북	회사·상점	72	20	-	20(1.5)	65	-	65(5.0)
	계	735	2,244	97	2,341(8.2)	13,535	5,131	18,666(65.2)
충 북	공 업	155	199	33	232(5.7)	1,768	1,215	2,983(72.8)
	광 업	8	41	-	41(2.3)	1,052	5	1,057(59.2)
	운 수 업	38	101	-	101(9.2)	672	4	676(61.8)
충 북	회사·상점	14	21	1	22(11.5)	41	3	44(22.9)
	계	215	362	34	396(5.5)	3,533	1,227	4,760(66.4)
남 전	공 업	259	185	-	185(2.0)	5,215	623	5,838(61.6)
	광 업	15	37	-	37(3.4)	896	17	913(83.4)
	운 수 업	44	116	-	116(10.6)	240	-	240(21.9)
남 전	회사·상점	88	91	-	91(6.1)	60	2	62(4.2)
	계	406	429	-	429(3.3)	6,411	642	7,053(53.6)
북 전	공 업	324	705	156	861(7.8)	4,904	1,643	6,547(59.1)
	광 업	2	25	-	25(78.1)	-	-	-
	운 수 업	35	89	1	90(5.4)	402	-	402(24.1)
북 전	회사·상점	5	3	-	3(3.9)	1	-	1(1.3)
	계	366	822	157	979(7.6)	5,307	1,643	6,950(54.1)

(단위 : 명)

사 무 원			기 타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064	358	4,422(12.2)	2,975	629	3,604(9.9)	25,984	10,264	36,248(100.0)
56	8	64(52.5)	27	3	30(24.6)	108	14	122(100.0)
719	38	757(31.9)	674	73	747(31.5)	2,263	111	2,374(100.0)
4,688	877	5,565(59.6)	1,341	582	1,923(20.6)	7,706	1,627	9,333(100.0)
9,527	1,281	10,808(22.5)	5,017	1,287	6,304(13.1)	36,061	12,016	48,077(100.0)
2,733	156	2,889(11.8)	2,083	216	2,299(9.4)	18,825	5,562	24,387(100.0)
77	3	80(5.0)	229	23	252(15.7)	1,541	64	1,605(100.0)
362	13	375(28.3)	496	6	502(37.8)	1,308	19	1,327(100.0)
837	43	880(67.3)	299	43	342(26.2)	1,221	86	1,307(100.0)
4,009	215	4,224(14.8)	3,107	288	3,395(11.9)	22,895	5,731	28,626(100.0)
500	12	512(12.5)	217	156	373(9.1)	2,684	1,416	4,100(100.0)
82	-	82(4.6)	597	7	604(33.9)	1,772	12	1,784(100.0)
172	9	181(16.6)	130	5	135(12.4)	1,075	18	1,093(100.0)
82	8	90(46.9)	35	1	36(18.8)	179	13	192(100.0)
836	29	865(12.1)	979	169	1,148(16.0)	5,710	1,459	7,169(100.0)
889	23	912(9.6)	2,473	68	2,541(26.8)	8,762	714	9,476(100.0)
89	-	89(8.1)	55	1	56(5.1)	1,077	18	1,095(100.0)
265	12	277(25.3)	461	-	461(42.1)	1,082	12	1,094(100.0)
980	44	1,024(68.8)	278	33	311(20.9)	1,409	79	1,488(100.0)
2,223	79	2,302(17.5)	3,267	102	3,369(25.6)	12,330	823	13,153(100.0)
880	16	896(8.1)	2,427	341	2,768(25.0)	8,916	2,156	11,072(100.0)
7	-	7(21.9)	-	-	-	32	-	32(100.0)
420	6	426(25.5)	743	9	752(45.0)	1,654	16	1,670(100.0)
37	1	38(49.4)	34	1	35(45.5)	75	2	77(100.0)
1,344	23	1,367(10.6)	3,204	351	3,555(27.7)	10,677	2,174	12,851(100.0)

〈부표 1-5〉 계속

		사 업 체 수	기 술 자			직 공		
			남	여	계	남	여	계
전	공 업	393	437	25	462(4.1)	5,547	3,224	8,771(77.5)
	광 업	4	49	-	49(1.7)	2,515	-	2,515(87.3)
	운 수 업	38	92	-	92(5.4)	948	-	948(56.0)
	회사·상점	14	22	-	22(3.5)	300	-	300(47.2)
	계	449	600	25	625(3.8)	9,310	3,224	12,534(75.8)
경	공 업	830	387	19	406(1.9)	12,621	2,821	15,442(72.4)
	광 업	15	56	-	56(1.5)	2,281	114	2,395(64.9)
	운 수 업	47	137	-	137(7.7)	649	4	653(36.8)
	회사·상점	97	155	3	158(7.3)	418	102	520(24.0)
	계	989	735	22	757(2.6)	15,969	3,041	19,010(65.6)
북	공 업	839	1,134	23	1,157(4.0)	13,479	7,573	21,052(73.3)
	광 업	11	33	-	33(1.9)	1,147	310	1,457(82.3)
	운 수 업	173	304	-	304(2.4)	1,920	3	1,923(15.0)
	회사·상점	51	174	-	174(10.6)	238	40	278(16.9)
	계	1,074	1,645	23	1,668(3.7)	16,784	7,926	24,710(54.9)
제	공 업	29	23	-	23(3.2)	345	67	412(56.4)
	광 업	-	-	-	-	-	-	-
	운 수 업	4	1	-	1(1.0)	9	-	9(8.7)
	회사·상점	-	-	-	-	-	-	-
	계	33	24	-	24(2.9)	354	67	421(50.5)
강	공 업	126	744	1	745(7.7)	2,734	1,145	3,879(40.1)
	광 업	9	500	4	504(5.0)	4,561	110	4,671(46.6)
	운 수 업	18	127	-	127(6.6)	250	-	250(12.9)
	회사·상점	10	21	1	22(9.1)	19	-	19(7.9)
	계	163	1,329	6	1,398(6.4)	7,564	1,255	8,819(40.3)
합	공 업	4,385	7,551	411	7,962(5.1)	75,830	32,624	108,454(69.1)
	광 업	75	847	7	854(3.7)	13,606	594	14,200(61.8)
	운 수 업	482	1,351	1	1,352(5.2)	6,026	11	6,037(23.3)
	회사·상점	462	1,221	98	1,319(7.7)	2,105	222	2,327(13.6)
	합 계	5,404	10,970	517	11,487(5.2)	97,567	33,451	131,018(58.7)

자료 : 社會部勞動局, 『經濟年鑑』, 1949년판, p. IV-178.

주 : 1)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체 기준임.

2) 공업에는 토건업 및 전기·가스·수도업이 포함됨.

(단위 : 명)

사 무 원			기 타			합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57	56	1,213(10.7)	736	141	877(7.7)	7,877	3,446	11,323(100.0)
119	-	119(4.1)	198	-	198(6.9)	2,881	-	2,881(100.0)
393	13	406(24.0)	245	2	247(14.6)	1,678	15	1,693(100.0)
270	19	289(45.5)	23	1	24(3.8)	615	20	635(100.0)
1,939	88	2,027(12.3)	1,202	144	1,346(8.1)	13,051	3,481	16,532(100.0)
2,338	50	2,388(11.2)	2,924	169	3,093(14.5)	18,270	3,059	21,329(100.0)
245	4	249(6.8)	910	78	988(26.8)	3,492	196	3,688(100.0)
359	23	382(21.5)	582	22	604(34.0)	1,727	49	1,776(100.0)
915	49	964(44.5)	465	60	525(24.2)	1,953	214	2,167(100.0)
3,857	126	3,983(13.8)	4,881	329	5,210(18.1)	25,442	3,518	28,960(100.0)
2,737	114	2,851(9.9)	3,014	643	3,657(12.7)	20,364	8,353	28,717(100.0)
90	-	90(5.1)	188	2	190(10.7)	1,458	312	1,770(100.0)
1,134	45	1,179(9.2)	9,345	87	9,432(73.5)	12,703	135	12,838(100.0)
717	102	819(49.8)	339	34	373(22.7)	1,468	176	1,644(100.0)
4,678	261	4,939(11.0)	12,886	766	13,652(30.4)	35,993	8,976	44,969(100.0)
83	8	91(12.5)	186	18	204(27.9)	637	93	730(100.0)
-	-	-	-	-	-	-	-	-
24	5	29(27.9)	65	-	65(62.5)	99	5	104(100.0)
-	-	-	-	-	-	-	-	-
107	13	120(14.4)	251	18	269(32.3)	736	98	834(100.0)
940	36	976(10.1)	3,684	381	4,065(42.1)	8,102	1,563	9,665(100.0)
852	17	869(8.7)	3,721	253	3,974(39.7)	9,634	384	10,018(100.0)
281	17	298(15.4)	1,249	11	1,260(65.1)	1,907	28	1,935(100.0)
134	10	144(59.8)	50	6	56(23.2)	224	17	241(100.0)
2,207	80	2,287(10.5)	8,704	651	9,355(42.8)	19,867	1,992	21,859(100.0)
16,321	829	17,150(10.9)	20,719	2,762	23,481(15.0)	120,421	36,626	157,047(100.0)
1,617	32	1,649(7.2)	5,925	367	6,292(27.4)	21,995	1,000	22,995(100.0)
4,129	181	4,310(16.6)	13,990	215	14,205(54.8)	25,496	408	25,904(100.0)
8,660	1,153	9,813(57.4)	2,864	761	3,625(21.2)	14,850	2,234	17,084(100.0)
30,727	2,195	32,922(14.8)	43,498	4,105	47,603(21.3)	182,762	40,268	223,030(100.0)

<부표 1-6>

제조업부문 직종별 종업원 구성
(1948년말 현재)

(단위 : 명, %)

	기업체수(개)	종업원 수			
		사무원	기술자	노무자	합계
식품공업	646	1,564(17.4)	528(5.9)	6,893(76.7)	8,985(100.0)
남자		1,487	517	5,716	7,720(85.9)
여자		77	11	1,177	1,265(14.1)
섬유공업	1,325	3,996(6.6)	21,233(3.7)	54,177(89.7)	60,406(100.0)
남자		3,585	1,880	18,377	23,842(39.5)
여자		411	353	35,800	36,564(60.5)
인쇄·출판	72	364(15.1)	221(9.2)	1,819(75.7)	2,404(100.0)
남자		336	210	1,662	2,208(91.8)
여자		28	11	157	196(8.2)
요업	115	521(9.4)	419(7.5)	4,628(83.1)	5,568(100.0)
남자		481	387	3,828	4,696(84.3)
여자		40	32	800	872(15.7)
화학공업	767	3,098(9.5)	2,553(7.8)	26,979(82.7)	32,630(100.0)
남자		2,874	2,135	17,501	22,510(69.0)
여자		224	418	9,478	10,120(31.0)
금속공업	206	678(13.8)	395(8.0)	3,856(78.2)	4,929(100.0)
남자		639	395	3,760	4,794(97.3)
여자		39	0	96	135(2.7)
기계공업	543	1,964(13.7)	2,055(14.3)	10,367(72.1)	14,386(100.0)
남자		1,875	2,037	10,171	14,083(97.9)
여자		89	18	196	303(2.1)
공예공업	134	88(4.9)	143(7.9)	1,577(87.2)	1,808(100.0)
남자		84	134	1,261	1,479(81.8)
여자		4	9	316	329(18.2)
제조업합계	3,808	12,273(9.4)	8,547(6.5)	110,296(84.1)	131,116(100.0)
남자		11,361	7,695	62,276	81,332(62.0)
여자		912	852	48,020	49,784(38.0)

자료 : 『경제연감』, 1949년판, pp. 1-47~48.

주 : () 내는 직종별, 남녀별 구성비(%)임.

<부표 1-7>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중의 노동력 계획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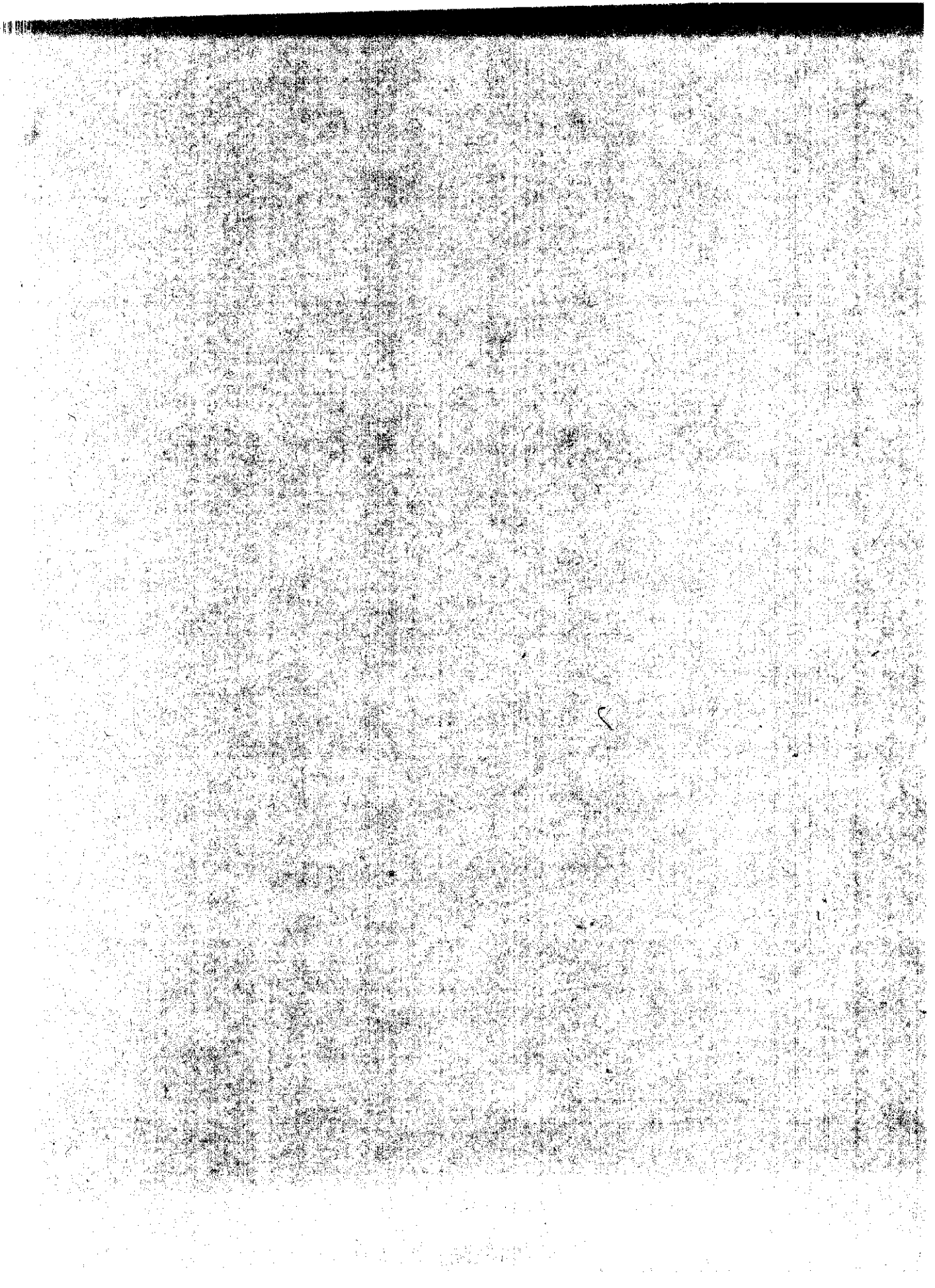
	기준연도 (1958)	제1차연도 (1960)	제2차연도 (1961)	목표연도 (1962)
A. 총 인 구	22,559	23,563(2.2)	24,081(2.2)	24,611(2.2)
B. 생산연령인구	12,791	13,195(2.2)	13,485(2.2)	13,782(2.2)
*생산연령인구비율 (B/A, %)	56.7	56.0	56.0	56.0
C. 노 동 력 인 구	9,312	9,427(1.2)	9,540(1.2)	9,656(1.2)
1)제1차산업	6,444	6,389(-0.9)	6,386(-0.05)	6,375(-1.0)
2)제2차산업	582	678(16.5)	738(8.8)	804(8.9)
3)제3차산업	2,283	2,360(3.2)	2,416(2.4)	2,477(2.5)
*노동력인구비율 (C/B, %)	72.8	71.4	70.7	70.1
D. 취 업 인 구	7,879	8,083(2.6)	8,188(1.2)	8,295(1.3)
1)제1차산업	5,580	5,594(0.3)	5,597(0.05)	5,599(0.04)
농림업	5,368	5,378	5,379	5,379
어 업	212	216	218	220
2)제2차산업	470	563(19.8)	612(8.7)	664(8.5)
광 업	38	54	60	66
제조업	337	407	445	488
건설업	95	102	107	110
3)제3차산업	1,829	1,926(5.3)	1,979(2.7)	2,032(2.6)
일반행정·국방	839	839	839	839
교통·통신	125	137	142	148
전 력	8	8.7	8.9	9
기 타	857	941	989	1,036
E. 실 업 인 구	1,433	1,344(6.2)	1,352(0.6)	1,361(0.7)
1)제1차산업	864	795(-8.0)	739(-0.8)	776(-1.6)
2)제2차산업	112	115(2.7)	126(9.6)	140(11.0)
3)제3차산업	457	434(-5.0)	437(0.2)	445(2.3)
*실업율(E/C, %)	15.4	14.3	14.2	14.1

자료 : 부흥부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3개년계획』-1960년판, pp. 600-605.

주 : ()내는 연간 증가율(%)임.

第 2 部

工業化過程에서의 農村勞動力의
都市移動



目 次

I. 서 論	67
II. 농촌인구의 이촌추이	68
1. 농촌인구의 이촌량 추이	68
2. 이촌인구의 연령별구성	73
III. 농촌노동력의 이촌추이 및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	75
1. 농촌노동력의 이촌추이 및 이촌노동력의 인적 구성	75
2. 이촌노동력의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	77
IV. 이촌노동력의 도시정착과정	79
1. 이촌노동력의 도시취업구조	79
2. 농촌노동력의 도시노동시장 정착경로	82
V. 농촌도시간의 인구(노동력)이동에 관한 사례연구	87
1. 농촌인구의 동향	88
2. 농촌인구의 유출구조	90
3. 농촌인구의 유입구조	100
4. 농촌인구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와 노동력 유출의 가능성	105
VI. 요약	108
참고문헌	111
부표	113

표 목 차

〈표 2-1〉 도시인구 및 비농업취업자 비율의 추이	68
〈표 2-2〉 주요 신흥공업국의 도시인구 성장률 비교	69
〈표 2-3〉 농촌인구의 순도시이동량의 추이	71
〈표 2-4〉 농촌도시간 및 도시농촌간의 인구이동 추이	72
〈표 2-5〉 이촌인구의 성별 구성	74
〈표 2-6〉 15세 이상 농촌도시간 이촌자의 추이(이촌시 기준)	75
〈표 2-7〉 15세 이상 이촌인구의 연령별 구성(이촌시 기준)	76
〈표 2-8〉 이촌자 교육수준	77
〈표 2-9〉 이촌농촌노동력의 도시노동시장 기여도	78
〈표 2-10〉 도시유입 노동력의 경제활동상황 추이(1965~80)	79
〈표 2-11〉 도시유입 노동력의 직업별·산업별 취업구조	80
〈표 2-12〉 농촌도시간 이동자의 전입직후 경제활동상태(14세이상)	83
〈표 2-13〉 도시전입자(1978~83년, 14세이상)의 경제활동의 변화	85
〈표 2-14〉 농촌인구의 동향	89
〈표 2-15〉 농촌세대의 동향	90
〈표 2-16〉 성별·연령별 이촌자(1981~90년)	91
〈표 2-17〉 세대이촌의 내역	92
〈표 2-18〉 성별·연령별 부분이촌자의 실태(1981~90년)	96
〈표 2-19〉 성별·주거지별 부분이촌자의 실태(1981~90년)	97
〈표 2-20〉 교육수준별 부분이촌자의 실태(1981~90년)	98

<표 2-21> 부분이촌자의 직업별 실태(1981~90년)	99
<표 2-22> 소유지구모별 성별 부분이촌자의 실태(1981~90년)	100
<표 2-23> 유입자의 연령별 구성	101
<표 2-24> 15세 이상 유입자의 성별 직업구성	102
<표 2-25> 1980년 이후 귀촌자의 실태(1990년 기준)	104
<표 2-26> 농촌인구의 연령구성의 변화	106
<표 2-27> 소유지구모별 연령 분포(1990년)	107

부 표 목 차

<부표 2-1> 경지구모별 성별 부분유출자의 실태(1981~90)	113
<부표 2-2> 영농종별 성별 부분유출자의 실태	113
<부표 2-3> 연령별 비동거가족 실태(1990년 현재)	114
<부표 2-4> 거주지별 비동거가족 실태(1990년 현재)	114
<부표 2-5> 교육수준별 비동거가족 실태(1990년)	115
<부표 2-6> 직업별 비동거가족 실태(1990년)	115
<부표 2-7> 1990년 현재 비동거가족의 경지구모별 분포	116
<부표 2-8> 1990년 비동거가족의 소유지구모별 분포	117
<부표 2-9> 1990년 현재 비동거가족의 영농종별 분포	117
<부표 2-10> 경지구모별 연령별 분포(1990년)	118
<부표 2-11> 영농종별 연령별 분포(1990년)	119

I. 서 론

한국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이른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양질의 저임금노동력이다. 그리고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은 도시 노동시장에서 재생산되기도 하였지만, 많은 부분은 농촌에서 공급되었다. 특히 공업화의 초기에는 농촌부문에서 공급된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글에서는 50년대 후반 이후의 농촌노동력의 도시이동의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농촌인구의 이촌추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제3장에서는 노동력인구의 이촌추이 및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이촌노동력의 도시 노동시장 정착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농촌노동력 이촌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전국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의미를 보완하고자 한다.

II. 농촌인구의 이촌추이

1. 농촌인구의 이촌량 추이

일반적으로 공업화는 인구 및 산업의 도시집중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더구나 60년대이후의 공업화과정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의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표 2-1>은 1950년 이후의 도시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에 도시인구는 전체인구의 18.4%에 지나지 않았고, 비농업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6%였다. 50년대의 공업화를 통해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1960년의 한국사회는 도시인구의 비중이 28.3%, 비농업취업자의 비중이 34.1%에 지나지 않는 여전히 농업중심의 사회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공업화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크게 변모시켰다. 도시인구의 비중은

<표 2-1> 도시인구 및 비농업취업자 비율의 추이

(단위 : %)

	1950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88
총인구	18.4	28.0	33.6	41.2	50.9	57.3	65.4	69.9
경제활동인구	-	24.6	32.7	37.8	42.6	52.5	63.3	-
총취업자	-	21.9	29.7	36.9	4.6	50.6	62.5	-
비농업취업자	20.6	34.3	42.8	49.2	51.0	62.2	72.2	79.3

주 : 1)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총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도시지역의 비중.

2) 1985년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는 1986년의 수치임.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각년판.

—————, 「통계연감」, 각년판.

—————, 「제2차 고용구조 특별조사 결과보고」 1987년.

1970년에 43.1%, 1980년에 57.3%로 증대하였고, 1988년 현재 전체 인구의 70%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비농업취업자의 비중도 1970년에 49.5%, 1980년에 66%로 크게 증대하였고, 1988년 현재는 취업자의 약 80%가 비농업에 취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및 총취업자의 도시집중도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도시화는 <표 2-2>에서 보듯이 다른 신흥공업국에 비해서도 급격한 편이었다.

인구 및 취업자의 도시집중은 말할 필요도 없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60년대 이후의 공업화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이촌)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인구의 이촌규모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인구센서스의 자료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추계할 수

<표 2-2> 주요 신흥공업국의 도시인구 성장률 비교 (단위 : %)

	1965-1973			1973-1984		
	도시인구	총인구	도시인구	도시인구	총인구	도시인구
	증가율	증가율	순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순증가율
한 국	6.5	2.2	4.3	4.6	1.5	3.1
브 라 질	4.5	2.5	2.0	4.0	2.3	1.7
멕 시 코	4.8	3.3	1.5	4.0	2.9	1.1
말 레 이 시 아	3.3	2.6	0.7	3.6	2.4	1.2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6.

밖에 없다. 인구 센서스는 전국의 인구를 시부, 군부(읍부와 면부)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농촌인구는 군부의 인구이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이촌규모는 인구 센서스의 자료에서 군부로부터 시부로의 인구이동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인구 센서스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년전 거주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자료는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용상에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표 2-14〉

농촌인구의 동향

(단위 : 인, %)

총 인 구	이촌인구(율)	유입인구(율)	자연증가인구(율)
81년 85년	합계 세대 부분	합계 세대 부분	증가수 출생 사망
호탄 302 294 (100) (97.3)	101 26 75 (33.4) (8.6) (24.8)	64 39 25 (21.2) (12.9) (8.3)	29 34 5 (9.6) (11.3) (1.7)
화정 350 312 (100) (89.1)	107 34 73 (30.6) (9.7) (20.9)	58 25 33 (16.6) (7.1) (9.4)	11 18 7 (3.1) (5.1) (2.0)
총 인 구	이촌인구	유입인구	자연증가인구
85년 90년	합계 세대 부분	합계 세대 부분	증가수 출생 사망
호탄 294 226 (100) (76.9)	91 46 45 (31.0) (15.6) (15.3)	22 11 11 (7.5) (3.7) (3.7)	1 14 13 (0.3) (4.8) (4.4)
화정 312 263 (100) (84.3)	83 32 51 (26.6) (10.3) (16.3)	38 16 22 (12.2) (5.1) (7.1)	-4 10 14 (-1.3) (3.2) (4.5)

주 : ()의 숫자는 81년과 85년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

둘째로, 인구의 이동률보다는 낮지만 세대수의 변동률도 대단히 높다. 1981-85년 사이에 호탄리에서는 9세대가 유출되고 9세대가 유입되었다. 여기에 분가 2호를 합치면 인구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오히려 2호 증가하였다. 화정리에서는 11호가 이농하고 6호가 유입되고 1호가 분가하였다.

이러한 80년대 전반의 인구동향과 대비한 80년대 후반의 인구동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의 이촌은 80년대 전반과 비교할 때 약간 둔화된 반면에, 인구의 유입과 자연증가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에는 두 지역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1985년에 비해 호탄리의 인구는 77%, 화정리의 인구는 84%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유출에서 차지하는 세대이촌의 비중도 80년대 전반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다. 1980년대 전반에 이촌인구의 26%(호탄리)와 32%(화정리)에 지나지 않던 세대이촌의 비율이 80년대 후반에는 호탄리의 경우 세대이촌(51%)이 부분이촌을 능가하고 있고, 화정리의 경우는 세대이촌이 39%로 증가하고 있다.

〈표 2-3〉

농촌인구의 순도시이동량의 추이

기 간	이 동 량(1,000인)			이 동 률(%)		
	계	남	여	계	남	여
1955-60	584	258	327	-	2.8	3.6
1960-65	953	471	482	-	4.9	5.1
1965-70	2522	1281	1241	-	13.8	13.5
1970-75	1873	868	1005	10.5	9.6	11.4
1975-80	2573	1304	1269	16.1	16.2	16.0
1980-85	1861	879	981	13.3	12.4	14.2

주 : 1) 전방센서스 생존비율법 (forward census survival ratio method)에 의해 추정된 것임.

2) 이동률은 기간 동안의 이동량을 나중 센서스의 인구로 나눈 값.

자료 : Kwon(1975), (1978), (1988)에서 인용.

원자료는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각 연도.

따라서 여기서는 위의 권태환교수의 추계를 기초로 하면서 인구 센서스의 5년전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도시간의 이농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2-4〉는 5년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농촌도시간 및 도시농촌간의 인구이동추이를 본 것이다.

〈표 2-3〉과 〈표 2-4〉에 나타난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인구의 도시이촌은 60년대 후반에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는데, 70년 전반에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다가 70년대 후반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 순이농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표 2-3) 1965-70년에 연평균 약 5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순이동하였는데, 이는 50년대 전반의 약 12만명 그리고 60년대 전반의 19만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숫자이다. 70년대 전반에 순이동인구는 약 37만명으로 약간 둔화되지만, 70년대 후반에 다시 51만명으로 급증하였다. 80년대 전반에는 다시 연평균 약 37만명으로 이농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농촌도시간의 이촌자를 기준으로 할 때(표 2-4) 1965년의 농촌거주자 중에서 1970년에는 183만명이 이촌하였는데, 이는 1966년 센서스의 농촌인구의 9.4%에 해당한다. 그리고 1970-75년에는 약 175만명(연평균 35만명)이 이촌하였는데, 이는 1970년 센서스의 농촌인구의 약 9.5%에 해당한다. 1975-80년에는 약 250만명(연평균 약 50만명)의 농촌

<표 2-4>

농촌도시간 및 도시농촌간의 인구이동 추이

(단위 : 1000인, %)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65-85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농촌도시간	886	940	1827	806	949	1754	1190	1334	2524	1125	1300	2424	4006	4523	8529
서울	384	429	813	288	359	647	352	423	775	327	396	723	1351	1607	2959
(비율)	43.3	45.7	44.5	35.7	37.8	36.9	29.6	31.7	30.7	29.1	30.5	29.8	33.7	35.5	34.7
수도권	439	490	929	370	463	833	502	595	1097	498	594	1092	1809	2142	3951
(비율)	49.5	52.1	50.8	45.9	48.8	47.5	42.2	44.6	43.5	44.3	45.7	45.0	45.2	47.3	46.3
도시농촌간	199	188	387	264	294	558	324	358	681	430	459	889	1217	1298	2515
순이농	688	752	1440	541	655	1196	866	977	1843	694	841	1535	2789	3224	6014

주: 1) 1980년 센서스를 제외하면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인구로의 편입을 조정하지 않았음.

2) 5년전 거주지 기준.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인구이동편) 1970, 1975, 1980, 1985년.

인구가 도시로 이촌하였는데, 이는 1975년 센서스의 농촌인구의 14.1%에 해당한다. 1980-85년에는 약 242만명(연평균 485,000명)의 농촌인구가 이촌하였는데, 이는 1980년 센서스의 농촌인구의 15.1%에 해당한다¹⁾.

위의 4기간의 농촌인구의 이촌추이가 보여주는 것은 이농이 기본적으로는 공업화에 따른 도시 노동시장의 확대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농촌인구의 이농은 단순히 도시의 흡인력(pull)에 의해서만 규정된 것은 아니고, 농촌의 밀어내는 힘(push)에 의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60년대 후반이후의 농촌인구의 이동량이 농촌의 경제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60년대 후반의 '연속 흉작과 농가경제의 악화' = '이농의 급증', 70년대 전반의 '농가경제의 상대적 안정' = '이농의 둔화',

1) <표 2-3>과 <표 2-4> 사이에는 순유출인구수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표 2-3>은 전수 조사의 결과를 이용한 것이고 <표 2-4>는 5-10%의 표본조사의 결과이다.

70년대 후반이후의 ‘농가경제의 악화’ = ‘이농의 급증’이라는 대응 관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은 남자의 이촌인구가 여자에 비해서 시기별로 커다란 변동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즉 남자의 시기별 이촌량은 농가경제의 상태와 대응하고 있다.

둘째로, 1965-85년 20년간의 이촌인구의 약 35%가 서울로 유입되었는데, 이 서울로의 유입비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즉 서울유입자의 비율은 60년대 후반의 45%에서 70년대 전반에 37%, 70년대 후반에 31%, 그리고 80년대 전반에는 30%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이촌인구의 이출지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과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의 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로의 유입비율은 60년대 후반에 비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45% 수준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다. 수도권의 확대에 따라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 외곽 지역을 경유해서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²⁾.

셋째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동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특히 80년대 전반의 도시농촌간의 이동자의 증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농가)으로의 귀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거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의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였다. 예를 들어 1970년 센서스의 5년전 거주지별 인구이동자료를 보면, 1965년에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1970년 10월1일 현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취업자 중에서 농림어업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1.4%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同比率은 75년 센서스에서는 27.9%, 80년 센서스에서는 22.7%, 85년 센서스에서는 21.4%이다.

2. 이촌인구의 연령별 구성

〈표 2-5〉는 이촌시를 기준으로 한 이촌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1965-85년의 20년간 이촌자의 약 4할이상은 14이하이고 15-19세를 포함하면, 전체 이촌

2) 경기도의 市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하고 있는 인구는 1965-70년의 5.5만명에서 1970-75년에는 8.9만명, 1975-80년에는 11.5만명, 1980-85년에는 20.7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2-5〉

이혼인구의 성별 구성

(단위 : %)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65-85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4	44.0	42.6	43.3	47.9	44.7	46.2	43.3	39.2	41.1	38.0	35.1	36.4	42.9	39.9	41.3
15-19	12.5	18.3	15.5	11.3	20.6	16.3	14.3	24.4	19.6	14.9	24.8	20.2	13.5	22.4	18.2
20-24	14.2	13.3	13.7	14.9	12.2	13.5	16.9	14.2	15.5	20.7	16.6	18.5	17.0	14.3	15.5
25-29	12.0	8.1	10.0	9.5	5.6	7.4	10.0	6.1	7.9	10.0	6.4	8.0	10.3	6.5	8.3
30-39	10.8	8.2	9.4	9.7	7.4	8.5	9.4	6.9	8.1	9.3	6.7	7.9	9.7	7.2	8.4
40-49	3.9	4.2	4.0	3.7	4.0	3.9	3.6	3.7	3.7	4.0	3.9	3.9	3.8	3.9	3.9
50-59	1.8	3.3	2.5	1.9	3.2	2.6	1.6	2.9	2.3	1.7	3.3	2.6	1.7	3.1	2.5
60-	0.9	2.0	1.4	1.1	2.3	1.7	1.1	2.5	1.8	1.4	3.2	2.4	1.1	2.6	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연령은 이혼시를 기준으로 한 것.

자료 : 〈표 2-4〉와 동일.

자의 약 6할 이상이 20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 20대의 비중은 24%, 30대의 비중은 12%이고, 40대 이상의 비중은 8%에 지나지 않는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20대와 30대에서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이혼자가 많은 반면에, 여자는 15-19세의 이혼비중이 높다.

시기별로 보면, 남녀 모두 14세이하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15-24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자 15-24세의 비중 증대가 현저하다. 또한 남녀 모두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Ⅲ. 농촌노동력의 이촌추이 및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

1. 농촌노동력의 이촌추이 및 이촌노동력의 인적 구성

(1) 15세 이상 이촌인구의 추이 및 성별 연령별 구성

〈표 2-6〉에 따르면 1965-85년 20년간 약 500만명의 15세 이상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었다. 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도시노동시장의 주요한 공급원을 이룬다. 15세 이상 농촌인구의 이촌은 60년대 후반에 급증하였고, 70년대 전반에 일시 둔화되었다가 70년대 후반 다시 격증하였다. 15세 이상의 시기별 이촌의 패턴도 전체 농촌인구의 이촌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표 2-7〉은 이들의 연령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2-6〉과 〈표 2-7〉로부터 알 수 있는 15세이상 이촌자의 유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촌자 중 여자의 비중(약 54%)이 남자(약 46%)에 비해 상당히 높다. 둘째, 여자 이촌자 중에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5-19세의 연령층으로 이들의 비중은 80년까지 계속 증대하여 1975-80년에는 전체 15세 이상 여자 이촌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80년대 전반 이 연령층의 비중은 약간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38%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표 2-6〉 15세 이상 농촌도시간 이촌자의 추이(이촌시 기준)

(단위 : 1,000명, %)

	1965-70	1970-75	1975-1980	1980-1985	1965-1985
남	501 (47.9)	419 (44.4)	675 (45.4)	697 (45.2)	2293 (45.7)
여	545 (52.1)	525 (55.6)	810 (54.6)	843 (54.8)	2723 (54.3)
계	1045	944	1486	1541	5016

자료 : 〈표 2-4〉와 동일.

이 연령층의 이혼자수가 20대 여성 전체의 이혼자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우리나라 공업화가 얼마나 이들 어린 여성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였는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세제, 남자 이혼자 중에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20대이고 그 가운데서도 20대 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전반이 15세 이상의 남자 이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70년의 25%에서 꾸준히 증대하여 1980-85년에는 남자 전체 이혼자의 3분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70대이후의 중화학 공업화의 추진에 따라 이 연령층의 노동력 수요가 증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7〉 15세 이상 이혼인구의 연령별 구성(이혼시 기준)

(단위 : %)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65-85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5-19	22.4	31.9	27.4	21.7	37.2	30.3	25.2	40.2	33.4	24.0	38.2	31.7	23.6	37.3	31.0
20-24	25.3	23.2	24.2	28.6	22.1	25.0	29.8	23.4	26.3	33.5	25.6	29.1	29.7	23.8	26.5
25-29	21.4	14.2	17.6	18.2	10.2	13.8	17.5	10.0	13.4	16.0	9.8	12.7	18.1	10.8	14.1
30-39	19.3	14.3	16.7	18.7	13.3	15.7	16.5	11.4	13.8	15.0	10.4	12.5	17.1	12.0	14.3
40-49	6.9	7.3	7.1	7.1	7.3	7.2	6.3	6.1	6.2	6.4	6.0	6.2	6.6	6.6	6.6
50-59	3.2	5.7	4.5	3.6	5.8	4.8	2.7	4.7	3.8	2.8	5.1	4.0	3.0	5.2	4.2
60-	1.5	3.5	2.5	2.0	4.1	3.2	1.9	4.1	3.1	2.3	5.0	3.8	2.0	4.2	3.2

자료 : 〈표 2-4〉와 동일.

(2) 15세 이상 이혼인구의 교육수준의 추이

이들 15세 이상 이혼자의 노동력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그들의 교육수준인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인구 센서스의 교육정도별 농촌도시간 인구이동 자료(센서스 조사년도 기준 6세이상)에서 재학생과 15세미만의 미취학자를 제외하고 이혼자의 학력수준을 나타낸 것이 〈표 2-8〉이다³⁾.

〈표 2-8〉에 따르면 이혼자의 학력은 60대 후반에 국졸이하가 전체의 약 57%이상을 차지하

3) 〈표 2-8〉은 센서스 조사시점의 이혼자의 학력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혼 당시의 학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표 2-8〉

이촌자 교육수준

(단위 : %)

	1965-70			1970-75			1975-80			1980-85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무 학	4.8	13.4	9.5	4.0	10.2	7.7	3.1	8.6	6.2	2.3	7.7	5.4
국졸·퇴	36.9	56.9	47.9	33.1	48.9	42.4	23.0	33.5	29.1	12.1	17.7	15.3
중졸·퇴	27.3	20.6	23.6	30.1	28.3	29.1	31.2	35.9	33.9	25.4	32.4	29.4
고졸·퇴	23.0	8.0	14.7	24.9	11.4	16.9	34.2	20.2	26.2	47.3	38.6	42.3
대졸·퇴	8.1	1.1	4.2	7.8	1.2	3.9	8.5	1.8	4.7	12.9	3.5	7.6

자료 : 〈표 2-4〉와 동일.

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여성 이촌자의 경우 국졸 이하가 60년대 후반에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70년대 전반에도 여전히 약 60%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이후 크게 개선되어 중졸이상의 여성 이촌자가 70년대 후반에는 전체 여성 이촌자의 약 60%, 80년대 전반에는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남자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여자에 비해서는 높지만, 70년대 전반까지는 이촌자의 약 40%가 국졸이하의 학력이었다. 70년대 후반이후 남자의 학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80년대 전반에는 남자 이촌자의 약 60%가 고졸이상의 고학력을 지니고 있다.

2. 이촌노동력의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

〈표 2-9〉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르면 1965-80년간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에서 취업한 사람은 약 270만명으로 같은 기간동안의 도시노동자의 총증가수 약 420명에 대한 기여도는 총기여율로 약 65%, 순기여율로 46%이다.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율은 70년대 전반에 낮아졌다가 70년대 후반에는 61%(순기여율)까지 높아졌다⁴⁾.

4) 다시 최근에는 농촌노동력의 유출력 저하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여율은 낮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9>

이촌농촌노동력의 도시노동시장 기여도

(단위 : 1000인, %)

기간	도시이동 노동력수 (A)*	농촌이동 노동력수 (B)**	도시순유입 노동력수 (C=A-B)	도시노동자 증가수 (D)***	총기여율 (A/D)	순기여율 (C/D)	
경제 활동 인구	1965-70	839	195	644	1214	69.1	53.0
	1970-75	865	295	570	1759	49.2	32.4
	1975-80	1180	337	843	1456	81.0	57.9
취 업 자	1965-70	810	192	618	1501	54.0	41.2
	1970-75	811	286	525	1407	57.6	37.3
	1975-80	1095	320	775	1267	86.4	61.2

주 : * 현재 도시지역 취업자 또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서 5년전 거주지가 군부인 자.

** 현재 농촌지역 취업자 또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서 5년전 거주지가 시부인 자.

*** 5년간의 도시지역의 취업자 또는 경제활동인구의 총증가수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70년, 1975년, 1980년, 경제활동편 및 인구 이동편.

IV. 이촌노동력의 도시정착과정

1. 이촌노동력의 도시취업구조

〈표 2-10〉은 도시에 유입된 노동력의 경제활동상태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도시 거주자 전체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유입자의 약 6할 가까이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75% 수준이고, 여자는 약 4할 수준이다. 이는 남녀 모두 도시거주자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특히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도시 거주자 전체에 비하여 10% 포인트 이상 현저하게 높다. 도시유입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율은 70년대 후반에 약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 전체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표 2-10〉 도시유입 노동력의 경제활동상황 추이(1965-80) (단위 : %)

		1965-70*			1970-75**			1975-80***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도 시	경제활동인구	56.7	78.7	36.9	58.8	75.1	45.8	55.6	71.2	42.4
유 입 자	취 업 자	54.7	75.5	36.0	55.1	69.4	43.7	51.6	65.8	39.7
14세이상	실 업 자	2.0	3.2	0.9	3.7	5.7	2.1	4.0	5.4	2.7
인 구	비경제활동인구	43.3	21.3	63.1	41.2	24.9	54.2	44.4	28.8	57.6
도 시	경제활동인구	47.0	68.6	26.0	51.6	74.4	30.9	49.3	70.6	29.8
거 주 자	취 업 자	44.8	65.2	25.0	46.8	67.3	28.1	44.3	63.9	26.4
14 세이상	실 업 자	2.2	3.4	1.0	4.8	7.1	2.8	5.0	6.7	3.4
전체인구	비경제활동인구	53.0	31.2	74.0	48.4	25.6	69.1	50.7	29.4	70.2

주 : *는 1970년 기준, **는 1975년 기준, ***는 1980년 기준.
 자료 : 〈표 2-9〉와 동일.

〈표 2-11〉은 도시유입노동력의 직업별, 산업별 취업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직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남녀 모두 도시유입노동력의 최대부분은 생산·운수·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이 직종의 비중은 1980년까지 높아졌다가, 80년대 전반에는 약간 낮아지고 있다. 즉 1970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5년전에는 농촌에 거주하였으나 1970년 현재 도시노동자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약 46%(남자취업자의 49%와 여자취업자의 39%)가 생산·운수·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직종의 비중은 1975년 센서스에서는 54%(남자의 55%와 여자의 53%) 그리고 1980년 센서스에서는 58%(남자의 57%와 여자의 58%)로 높아졌다가, 1985년 센서스에서는 55%(남자의 55%와 여자의 55%)로 약간 낮아진 것이다.

〈표 2-11〉 도시유입 노동력의 직업별·산업별 취업구조

(단위 : %)

	1965-70년			1970-75년			1975-80년			1980-85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직업	전문기술직	4.1	2.7	3.6	4.2	2.2	3.4	5.4	3.4	4.6	6.8	5.1	6.1
	행정관리직	0.8	0.1	0.6	0.7	0.1	0.4	0.6	0.0	0.4	0.6	0.0	0.4
	사무직	9.6	4.4	7.8	10.2	6.5	8.6	12.1	12.0	12.1	14.3	16.7	15.3
	판매직	16.6	12.0	15.0	15.4	9.6	12.9	13.7	9.4	11.9	13.2	9.3	11.5
	서서비스직	9.1	38.7	19.4	9.2	25.9	16.5	8.6	15.7	11.5	7.8	12.6	9.8
	농림어업	3.5	2.8	3.3	3.8	2.4	3.2	2.2	1.3	1.8	2.2	1.1	1.7
	생산·운수·노무직	49.3	39.0	45.7	55.0	53.3	54.3	57.4	58.2	57.7	55.1	55.1	55.1
기타	6.9	0.4	4.7	1.4	-	-	-	-	-	-	-	-	
산업	농림어업				3.9	2.4	3.3	2.5	1.3	2.0	2.6	1.1	2.0
	광업				0.4	0.0	0.3	0.3	0.0	0.2	0.7	0.0	0.4
	제조업				40.9	54.7	47.0	42.5	61.8	50.5	41.5	61.9	50.1
	전기, 가스, 수도업				0.6	0.1	0.4	0.5	0.1	0.3	0.7	0.1	0.4
	건설업				8.7	0.5	5.1	10.6	0.9	6.6	11.0	1.2	6.9
	도소매, 음식, 숙박업				20.3	17.0	18.8	18.7	18.3	18.5	17.9	18.2	18.1
	운수, 창고 및 통신업				7.4	2.3	5.1	7.3	3.4	5.7	7.8	2.3	5.5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1.5	0.6	1.1	4.1	1.6	3.0	3.5	2.5	3.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6.2	22.4	18.9	13.7	12.6	13.2	14.3	12.6	13.6

자료 : 〈표 2-4〉와 동일.

직업별 취업구조의 변화를 남녀별로 볼 때,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여자의 경우 서서비스직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60년대 후반에 도시유입 여성노동자의 약 40%를 점하고 있던 서서비스직 종사자는 70년대 후반이후 급격히 낮아져 1980년대 전반에는 13%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위에서 본 생산직 종사자 이외에 사무직 종사자가 많이 늘어났고, 전문기술직 종사자는 비중 그 자체는 낮지만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여자의 직업별 취업구조의 변화가 현저한 것에 반해, 남자의 경우는 70년대 전반 이후 판매직과 서서비스직의 비중이 약간 낮아지고 전문기술직 및 사무직의 비중이 약간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취업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

한편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유입 노동자의 약 절반은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 센서스의 비농업취업자 가운데서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에 29%, 1975년에 34.2%, 1980년에 35.4%, 1985년에 3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도시유입노동력이 제조업발전에 얼마나 커다란 기여를 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서서비스업의 순으로 농촌노동력이 도시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남녀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그리고 서서비스업에 도시유입노동자의 대부분이 취업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같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훨씬 높고, 위의 세 산업에 90%이상이 취업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75년 센서스와 80년 센서스에서 제조업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서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남자의 경우도 위의 세개 산업에 70%이상이 취업하고 있으나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도 20%이상이 취업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농림어업 및 서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약간 줄고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이 약간 늘기는 했지만 취업구조가 시기별로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다.

2. 농촌노동력의 도시노동시장 정착경로

〈표 2-12〉는 1978년에서 1983년 사이에 농촌에서 도시로 전입한 사람들의 전입직후의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입자 2511명의 성별 구성은 남자가 45%이고 여자가 55%이다. 연령별로는 14-24세가 51%, 25-44세가 38%, 45-64세가 8%, 65세 이상이 3%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는 전입자의 약 6할이 경제활동인구인데, 5할은 취직을 했지만 1할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 취업자의 약 절반은 피고용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 종사자로 취업하였다. 남자 전입자의 약 34%는 비경제활동인구인데 그들의 거의 대부분은 학생이다. 여자의 경우 전입자의 약 4할이 경제활동인구인데, 18%는 취직을 했지만 22%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 취업자의 약 절반은 피고용자이고 나머지 절반이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이다. 다만, 남자의 경우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거의 같은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여자 전입자의 약 6할이 비경제활동인구인데,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과 주부이다.

연령별로 볼 때, 남자의 경우 14-24세는 전입자의 약 57%가 학생이다. 취업자는 18%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피고용자의 비율은 취업자의 3할에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은 무급가족종사자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약 4할은 취직을 하지 못하였다. 25-44세의 남자 전입자의 9할 이상은 경제활동인구로 전입자의 82%가 취직을 하였다. 취업자의 약 절반은 피고용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거의 같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45-64세는 전입자의 거의 전부가 경제활동인구로 전입자의 93%가 취업을 하였고, 전입자의 54%가 피고용자로 34%가 자영업주로 취업하였다. 이 연령층의 실업자는 전체 전입자의 3%로 매우 낮다. 65세 이상의 전입자는 약 절반이 경제활동인구로 그들 전부가 자영업에 취업하였다.

여자의 경우 14-24세는 전입자의 42%가 경제활동인구로 14%는 취업을 한 반면에

〈표 2-12〉

농촌도시간 이동자의 전업직후 경제활동상태(14세이상)

(단위 : %)

	합 계		14-24세		25-44세		45-64세		65세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총 전업인구 ¹⁾	100.0	44.8 55.2	50.9 22.1 28.9		38.1 18.5 19.6		8.0 3.2 4.7		3.1 1.0 2.1	
경제활동인구	49.1	60.6 39.7	36.6 29.1 42.3		66.4 92.1 42.2		54.1 98.3 24.1		24.6 47.4 13.2	
취업자	32.2	50.4 17.5	15.3 17.5 13.6		51.3 82.1 22.2		51.4 93.2 23.0		24.6 47.4 13.2	
피고용자	15.2	24.0 8.1	7.0 4.9 8.5		25.9 42.6 10.0		22.6 54.2 1.1		- - -	
자영업주	7.0	12.3 2.8	0.6 1.0 0.4		11.4 20.0 3.3		21.2 33.9 12.6		19.3 47.4 5.3	
고용주	0.5	0.9 0.2	- - -		0.9 1.5 0.3		2.1 3.4 1.1		- - -	
가족종사자	9.5	13.3 6.5	7.7 11.6 4.7		13.1 17.9 8.6		5.5 1.7 8.0		5.3 - 7.9	
실업자	16.8	10.2 22.2	21.3 11.6 28.7		15.1 10.0 20.0		3.4 5.1 2.3		- - -	
비경제활동인구	47.3	34.3 57.8	56.3 60.5 53.0		33.4 7.6 57.8		45.9 1.7 75.9		73.7 52.6 84.2	
학생	25.1	29.1 21.8	48.0 57.3 40.9		1.4 2.1 0.8		0.7 0.0 1.1		- - -	
사가	18.1	0.1 32.6	7.0 0.2 12.1		29.3 - 56.9		37.0 0.0 62.1		15.8 - 23.7	
노령, 질병	2.5	1.3 3.4	- - -		- - -		8.2 1.7 12.6		57.9 52.6 60.5	
평균인	1.7	3.9 0.0	1.4 3.2 -		2.9 5.9 -		- - -		- - -	
미상	3.6	5.1 2.5	7.1 10.1 -		0.1 0.3 -		- - -		1.8 - 2.6	

주 : 1) 총전업인구 2511명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나타냄.

2) 나머지 숫자는 성별 연령별 전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비율을 나타냄.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인구이동특별조사』(제1차보고서).

28%는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 취업자의 약 63%는 피고용자이고 35%는 무급가족종사자이다. 25-44세의 전입자의 42%가 경제활동인구인데 약 절반이 취업을 하고 절반이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 취업자의 약 45%는 피고용자이고 약 4할은 무급가족종사자이다. 45-64세는 24%가 경제활동인구로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였는데, 피고용자는 거의 없고 취업자의 55%가 자영업주로 35%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하였다. 65세이상의 여성 전입자의 거의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표 2-12〉를 종합해 볼 때, 24세 이하의 젊은 층의 도시전입자는 전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학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실업을 하면서 적당한 직장을 찾은 후에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형태로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25-64세의 남자의 경우 그들의 대부분은 전입 직후 바로 취업을 하는데, 약 절반은 피고용자로 그리고 나머지의 거의 대부분은 자영업주나 가족종사자로 취업을 하고 있고 나이가 많을 수록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취업기회가 제약되어 있고, 취업자 중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가 많다.

그러면 이들 농촌도시간 전입자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보기로 하자. 〈표 2-13〉은 농촌도시간 전입자만의 통계는 아니고 도시전입자 전체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1978-83년)를 본 것이다.

〈표 2-13〉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전입당시와 현재(조사시점인 1983년)의 경제상태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율이 70%에서 75%로 높아졌고, 피고용자의 비율이 43%에서 54%로 증대한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6.7%에서 0.7%로 낮아졌다. 여자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율이 39%에서 35%로 낮아졌고, 피고용자의 비율이 15%에서 24%로 높아진 반면에 실업자의 비율이 17%에서 4%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입인구의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 표에 따르면 남자 피고용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자의 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피고용자의 8할이 피고용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피고용자내부의 변화는 알 수 없음), 남자 자영업주와 고용주, 여자 피고용자의 절반이상이 그리

〈표 2-13〉 도시전입자 (1978~83년, 14세이상)의 경제활동의 변화

(%)

			전입시	변화의내역								현재
				1	2	3	4	5	6	7	8	
경제활동인구	1	피고용인	43.2	81.4	8.1	2.1	-	6.2	0.8	-	1.1	54.3
	2	자영업주	10.4	30.4	49.2	3.8	-	4.3	0.5	-	10.3	10.5
	3	고용주	1.5	25.9	7.4	44.5	3.7	18.5	-	-	-	2.5
	4	무급가족	6.7	69.7	12.6	3.4	3.4	8.4	1.7	-	0.8	0.7
	5	실업	8.7	69.7	7.1	-	-	15.5	5.8	-	0.7	7.1
비활동인구	6	학생	21.6	13.2	-	-	-	6.2	79.5	-	-	22.0
	7	군인	3.1	61.9	3.6	3.6	1.8	10.9	20.0	-	-	-
	8	기타	4.8	-	-	-	-	-	-	-	-	2.9
		계	100.0	54.3	10.5	2.5	0.7	7.1	22.0	-	2.9	100.0

(%)

			전입시	변화의내역								현재
				1	2	3	4	5	6	7	8	
경제활동인구	1	피고용인	15.0	47.7	3.3	-	3.3	5.3	-	39.4	-	24.2
	2	자영업주	2.5	26.0	32.0	-	6.0	2.0	-	26.0	6.0	3.7
	3	고용주	0.1	-	-	-	-	-	-	-	-	0.4
	4	무급가족	4.5	31.1	6.7	2.2	15.6	1.1	-	42.2	-	3.3
	5	실업	16.5	42.6	1.5	-	1.8	8.2	-	44.7	-	3.6
비활동인구	6	학생	16.3	27.5	-	-	-	6.7	60.6	4.0	-	11.8
	7	군인	39.9	7.6	4.5	-	4.1	-	-	81.0	-	49.2
	8	기타	5.2	-	-	-	-	-	-	-	-	3.7
		계	100.0	24.2	3.7	0.4	3.3	3.6	11.8	49.2	3.7	100.0

주 : 변화의 내역은 전입시의 경제활동상태를 100으로 했을때의 현재의 경제활동상태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 〈표2-12〉와 동일. 腹部民夫(1987), p.181에서 재인용.

고 여자 자영업주의 7할, 여자 무급가족종사자의 85%, 남자무급가족종사자의 거의 전부가 취업상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의 경우도 남자의 85%, 여자의 9할이상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변화의 방향은 남자의 경우 한마디로 피고용자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전입당시의 경제활동인구의 약 42%가 비경제활동인구화(가사종사)하였지만, 전입당시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약 21%는 경제활동인구화하였고, 이들의 약 6할은 피고용자가 되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내부의 변화방향도 피고용자화가 뚜렷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비경제활동인구(가사종사)로 되는 여자를 제외하면 도시전입자의 전입후의 경제활동상태는 피고용자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자 피고용자의 약 8%가 자영업주 그리고 약 6%가 실업자로 바뀐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농촌도시간의 인구(노동력)이동에 관한 사례연구

우리는 지금까지 인구센서스 등 전국적 자료를 이용해서 공업화과정에서의 농촌인구의 이촌에 관한 통계적 관찰을 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마을 수준에서의 이농의 실태를 관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충청남도의 두개의 마을(호탄리와 화정리)에 대해 1980년 이후 5년간적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각 세대의 영농상황, 취업상황, 가족상황(비동거가족포함)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1981년2월(화정리는 10월)과 1985년10월 그리고 1990년2월 세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⁵⁾. 따라서 이 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계열 조사자료는 그 어느 사례연구보다 자료의 신뢰도는 높지만, 관찰의 대상이 1980년 이후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은 한국의 공업화 전과정에서의 이농에 관한 사례연구는 아니고, 공업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그 결과 농촌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되고 난 이후인 1980년 이후의 이농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 절의 통계적 분석과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 마을인 호탄리(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는 서울-대전간의 국도변에 위치한 면소재지 대평리로부터 도보로 20분정도 떨어져 있다. 대전시와 대평리 사이에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다니고 유성에서 차로 약 20-30분 정도의 거리이다. 그리고 대평리와 호탄리 사이에는 1984년에 세계은행의 차관사업에 의해 버스도로가 포장되어 마을 입구까지 버스가 다닌다. 호탄리는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대전시의 근교라고 할 수 있다.

5) 1981년의 조사보고는 박진도 「농촌주민의 계층구조 및 그 성격에 관한 사례연구」 충남대학교 『경상논집』 제2권2호, 1981년 참조. 그리고 1985년의 조사 보고는 朴珍道, 『現代韓國農民層分解の研究』, 東京大學博士學位論文, 1987년을 참조.

또 하나의 조사대상 마을인 화정리(충청남도 논산군 채운면)는 순수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화정리는 연무읍과 강경읍간의 지방도로에 인접해 연무와 강경간에는 시내버스가 약 30분마다 운행되고 있다(화정리까지의 소요시간은 어느 쪽에서나 약 15분이 소요됨). 연무읍은 대전시와 시외버스로(급행으로 약1시간) 그리고 서울과는 고속버스로(소요시간 약 2시간반) 연결되어 있다. 화정리는 교통은 비교적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도시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취업구조에 있어서는 호탄리와 화정리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차이가 없다(1990년 현재 농업주종사자의 비율은 호탄리 67%, 화정리 73%). 다만 이러한 위치의 차이는 나중에 보듯이 농촌인구의 이촌구조의 지역차로 나타난다.

1. 농촌인구의 동향

〈표 2-14〉는 1981-85년과 1985-90년의 호탄리와 화정리의 주민수(인구) 동향을 정리한 것이고, 〈표 2-15〉는 농촌세대수의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1980년 전반의 농촌인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첫째로, 인구의 이동률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호탄리는 겨우 4년반 동안에 주민의 약 3분의 1이 유출되었고, 주민의 21%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입되었다. 화정리는 4년 동안에 주민의 31%가 유출되었고, 주민의 17%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입되었다. 농촌인구의 이촌은 세대전부가 이촌하는 경우와 세대의 일부(표에서는 부분이촌)가 이촌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80년대 전반의 농촌인구유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부분이촌이다(호탄리는 이촌인구의 75%, 화정리는 68%). 농촌인구의 유출에 있어서는 두 지역에 별 차이가 없지만 유입률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전 근교에 위치하는 호탄리의 경우 비농가의 유입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의 자연증가율에 있어서도 호탄리가 화정리보다는 높다.

〈표 2-14〉

농촌인구의 동향

(단위 : 인, %)

총 인 구	이촌인구(율)	유입인구(율)	자연증가인구(율)
81년 85년	합계 세대 부분	합계 세대 부분	증가수 출생 사망
호탄 302 294 (100) (97.3)	101 26 75 (33.4) (8.6) (24.8)	64 39 25 (21.2) (12.9) (8.3)	29 34 5 (9.6) (11.3) (1.7)
화정 350 312 (100) (89.1)	107 34 73 (30.6) (9.7) (20.9)	58 25 33 (16.6) (7.1) (9.4)	11 18 7 (3.1) (5.1) (2.0)
총 인 구	이촌인구	유입인구	자연증가인구
85년 90년	합계 세대 부분	합계 세대 부분	증가수 출생 사망
호탄 294 226 (100) (76.9)	91 46 45 (31.0) (15.6) (15.3)	22 11 11 (7.5) (3.7) (3.7)	1 14 13 (0.3) (4.8) (4.4)
화정 312 263 (100) (84.3)	83 32 51 (26.6) (10.3) (16.3)	38 16 22 (12.2) (5.1) (7.1)	-4 10 14 (-1.3) (3.2) (4.5)

주 : ()의 숫자는 81년과 85년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

둘째로, 인구의 이동률보다는 낮지만 세대수의 변동률도 대단히 높다. 1981-85년 사이에 호탄리에서는 9세대가 유출되고 9세대가 유입되었다. 여기에 분가 2호를 합치면 인구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오히려 2호 증가하였다. 화정리에서는 11호가 이농하고 6호가 유입되고 1호가 분가하였다.

이러한 80년대 전반의 인구동향과 대비한 80년대 후반의 인구동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의 이촌은 80년대 전반과 비교할 때 약간 둔화된 반면에, 인구의 유입과 자연증가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에는 두 지역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1985년에 비해 호탄리의 인구는 77%, 화정리의 인구는 84%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유출에서 차지하는 세대이촌의 비중도 80년대 전반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다. 1980년대 전반에 이촌인구의 26%(호탄리)와 32%(화정리)에 지나지 않던 세대이촌의 비율이 80년대 후반에는 호탄리의 경우 세대이촌(51%)이 부분이촌을 능가하고 있고, 화정리의 경우는 세대이촌이 39%로 증가하고 있다.

<표 2-15>

농촌세대의 동향

(단위 : 호, %)

	총세대			이촌(율)		유입(률)		분가(율)	
	81	85	90	81-85	85-90	81-85	85-90	81-85	85-90
호탄리	70	72	65	9 (12.9)	12 (16.6)	9 (12.9)	3 (4.2)	2 (2.9)	1 (1.4)
화정리	88	84	75	11 (12.5)	14 (13.1)	6 (6.9)	4 (4.8)	1 (1.1)	1 (1.2)

주 : 1) ()는 81년과 85년의 세대수에 대한 비율.

2) 이촌세대에는 1985-90년 사이에 세대주의 사망으로 세대자체가 소멸된 것이 호탄리에 1호, 화정리에 3호 포함되어 있음.

둘째로, 세대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세대의 이촌은 80년대 전반에 비해 늘어난 반면에 세대의 유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 결과 호탄리는 세대수가 72호에서 65호로, 화정리는 84호에서 75호로 두 지역에서 세대수가 모두 1할 정도 감소하였다. 80년대 후반에 주목해야 할 것은 노령세대가 세대주 또는 부부의 사망으로 인해 세대 자체가 소멸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화정리에서는 85-90년 사이에 없어진 세대 14호 가운데서 3호가 소멸된 세대이다.

2. 농촌인구의 유출구조

(1) 이촌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표 2-16>은 1981-85년과 85-90년에 호탄리와 화정리를 떠난 사람(사망자포함)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80년대 전반을 보면 이촌자의 성별구성은 남녀가 거의 같은 비율이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화정리의 장년층의 이촌비중이 호탄리에 비해서 약간 높기는 하지만, 두 지역에서 모두 30세 미만의 젊은 층의 이촌이 대부분(호탄리 전체 이촌자의 79%, 화정리는 73%)을 차지하고 있다. 1981년 현재의 농촌인구에 대한 이촌자의 비율을 계산한 이촌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33%의 수준이지만 놀랍게도 15-29세의 연령층

은 두 마을에서 63-70%를 보이고 있다.

<표 2-16>

성별·연령별 이혼자(1981-90년)

(단위 : 인, %)

연령	1981 - 1985년						1985 - 1990년					
	호탄리			화정리			호탄리			화정리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14	14	11	25(30.1)	9	13	22(25.3)	25	20	45(46.4)	15	23	38(45.8)
15-19	7	8	15(57.7)	23	16	39(81.3)	4	4	8(53.3)	5	2	7(29.2)
20-24	11	11	22(78.6)	7	13	20(62.5)	3	2	5(26.3)	6	7	13(81.3)
25-29	7	8	15(53.6)		3	3(37.5)	5	6	11(61.1)	3	1	4(22.2)
30-34	2	3	5(35.7)		1	1(8.3)	1	2	3(15.0)	2	3	5(50.0)
35-39	3	2	5(35.7)	1		1(6.7)	4	2	6(37.5)	3	2	5(31.3)
40-44		2	2(11.1)	3	4	7(28.0)	2	2	4(30.8)	1	1	2(11.1)
45-49				3	2	5(15.2)	1	1	2(10.5)		1	1(5.3)
50-54	3		3(20.0)		2	2(9.5)	1	2	3(25.0)	5		5(15.6)
55-59	2		2(13.3)	3	2	5(25.0)	1	2	3(21.4)	1	2	3(15.8)
60-64		4	4(26.7)	3	1	4(22.2)		2	2(15.4)	2	3	5(33.3)
65-	3	4	7(21.9)	3	3	6(20.0)	4	8	12(31.6)	3	5	8(19.5)
미상	1		1							1		1
합계	53	53	106(35.1)	55	60	115(32.9)	51	53	104(35.4)	47	50	97(31.1)

주 : 1) 이혼자에는 사망자도 포함하고 있음.

2) ()는 이혼율(이혼인구÷이혼전 농촌인구×100)을 나타냄.

80년대 전반과 비교한 80년대 후반의 특징은 15-29세의 젊은 층의 이혼비중이 상당히 낮아지고 이혼율도 현저하게 둔화되었다(이혼율은 41-46%). 이는 80년대 전반에 이 연령층의 이혼이 지나치게 많았고, 세대이혼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표 2-17〉

세대이촌의 내역

	1981 ~ 1985년				1985 ~ 1990년					
	세대주의 이촌시 연령 (가족수)	이촌전의 직업 (소유지면적)	이동지	현직업	참고 (이촌이유 등)	세대주의 이촌시 연령 (가족수)	이촌전의 직업 (소유지면적)	이동지	현직업	참고 (이촌이유 등)
호	남33세(4인)	중학교 교사	대전시	교사	전근	남35세(3인)	운전기사	대전	운전기사	부친사망
	남39세(4인)	성남공장 노동자	도내의 농촌	농업	귀향	남55세(4인)	농업(순소작)	이웃마을	농업 (산지기)	
탄	여65세(1인)	지주(5100평)	대전		과부·아들 집에감	남33세(6인)	농업(2400평) 건축업	대전	건축업	부친사망 빛도주
	남41세(6인)	철도공무원	대전	철도 공무원	전근	여63세(1인)	무직	청주	무직	남편사망
리	여51세(1인)	무직	행방불명		복신 정신이상	남34세(4인)	농업(800평)	대전	구멍가게	
	남62세(3인)	고물장사	본인사망	아이들은	고아원	남84세(2인) 남47세(7인)	성남공장노동	부부사망 논산	개장사	세대소멸
	남40세(4인) 여69세(1인)	농업(순소작) 무직	이웃마을 이웃마을	농무 직업		남39세(6인) 여48세(3인)	교사 무직	대전 이웃마을	교사 무직	전근 장남 귀향
	남42세(2인)	농업(800평)	대전	상업		남54세(2인) 남39세(6인) 남42세(4인)	염소사육 문방구점 중학교	충주 이웃마을	? 농업 중학교	

1981 - 1985년		1985 - 1990년							
세대주의 이혼시 연령 (가족수)	이혼전의 직업 (소유지면적)	이동지	현직업	참고 (이혼이유 등)	세대주의 이혼시 연령 (가족수)	이혼전의 직업 (소유지면적)	이동지	현직업	참고 (이혼이유 등)
여84세(1인)	지주(10000평)	대전	旅館主	과부·아들 집에 감	여89세(1인)	무직	본인사망		세대소멸
남43세(5인)	농업(3200평)	서울	회사 경비원	전근	남42세(5인)	농업(순소작)	군산	공장노동	
남50세(6인)	목사	이웃면	목사	전근	여61세(1인)	농업(3000평)	본인사망		세대소멸
남41세(2인)	중학교사	대전시	교사	전근	남46세(4인)	농업(1000평)	서울	인부	
남56세(2인)	(2000평, 지주 농업(3600평)	부산시	茶房主	재혼	여71세(1인)	농업(2400평)	서울		남편사망 아들에게감
여58세(1인)	농업(5000평)	?	?		여72세(1인)	농업(1200평)	대전	쌀장사	아들에게감
남46세(5인)	농업(600평)	대전	牧夫	과부·아들 집에 감	남66세(2인)	무직	본인사망	아들자살	세대소멸
여62세(4인)	농업(3100평)	서울	무직		남41세(5인)	농업(800평)	서울	목장사	빛도주
남48세(4인)	농업(8000평)	서울	상업	처사망	남40세(5인)	납품판이	대전	철도역 인부	
남58세(3인)	농업(1500평)	서울	건설 일고	딸집에 감	남63세(3인)	무직	공주		아들에게감
여69세(1인)	농업(3400평)	서울	상업	과부·아들 집에 감	여70세(1인)	무직	서울		아들에게감
남34세(4인)	농업(7000평)	대전	건설 일고	분가이혼	남73세(2인)	무직	서울		아들에게감
					여57세(1인)	납품판이	?		아들에게감
					남45세(4인)	목사	이웃읍면	목사	떠돌이 진근

호탄리에서는 15-19세층과 25-29세층은 50-60%의 이촌율을 보이고 있고, 화정리에서는 20-24세층이 81%라는 높은 이촌율을 보이고 있다.

(2) 세대이촌의 구조

어떤 세대가 어떠한 이유로 마을을 떠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표 2-17>. 먼저 1980년대 전반의 세대이촌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호탄리는 대도시(대전) 근교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비농가의 이출입이 빈번한데, 80년대 전반에 이촌한 9호 가운데서 농업종사자는 3호(지주1호 포함)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6호는 비농가이다. 비농가의 가운데 2호는 전근으로 마을을 떠났고, 3호는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어야 할 빈민이다. 1호는 호탄리에 살면서 공장노동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촌 농가 2호는 전혀 땅이 없거나 아주 적은 땅 밖에 갖지 못한 빈농이다. 1호는 이웃마을로 옮겨 소작을 하고 있고 1호는 대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호탄리의 세대이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동지의 거의 대부분이 대전 또는 인근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순수 농촌지역인 화정리의 경우 80년대 전반에 이촌한 12호 가운데서 농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세대는 1호(목사)에 지나지 않고, 농지소유 규모를 보면 영세농보다는 일정 규모이상의 농지소유농가가 많다. 2정보 이상의 대농의 이농도 3호나 있다. 그런데 이들 농가의 이농에서 특징적인 것은 세대주가 고령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자식의 집으로 이농한 세대가 4호나 된다는 사실이다. 전근으로 이촌한 2호를 제외하면, 이촌 세대는 도시에서 자영업(여관, 다방, 상업)이나 잡업부문(건설일고, 목부, 경비원)에 취업하고 있다. 화정리의 세대이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동지가 대전과 서울에 집중해 있는데, 거리가 가까운 대전보다 오히려 서울로의 이동이 많다. 이것은 이촌세대의 연고(자식 등)가 서울에 더 많은 것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80년대 전반의 세대이촌과 대비한 80년대 후반의 세대이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호탄리의 경우 여전히 비농가가 세대이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근에 따른 이촌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세대가 거의 없고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정리의 경우 이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농가보다는 비농가이다. 그리고 이농한 농가 4호는 모두 농지 소유규모가 1정보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농으로 2호는 고령으로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하기 위해 이농하였고, 1호는 농사 빛으로 야반도주하였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에서 전업을 위해 이농한 농가는 1호(소유지1000평) 뿐이다. 80년대 후반의 화정리의 이촌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노령으로 자식에게 의탁하기 위해 이촌하는 세대가 80년대 전반에 비해 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80년대 전반과 후반의 두 마을의 세대이촌을 검토해보았는데, 그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다. 즉 농촌에서 일정한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노동능력도 있는 한 농민들은 도시로 나가기 보다는 농촌에 머물려고 한다. 자식에게 의탁하기 위해 이농한 고령농가의 경우에도 그 대부분이 남편과 사별한 과부세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에 나가더라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자식에게 의탁하는 것도 수월치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분이촌의 구조

〈표 2-16〉의 부분이촌자 가운데서 재촌세대와 부모 자식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성별 연령별로 정리한 것이 〈표 2-18〉이다. 따라서 이 표에서는 세대의 일부 이촌에 따른 손자나 손녀 또는 형제, 자매의 이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표 2-18〉에 따르면 1981-85년의 부분이촌자는 남녀간에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2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남녀별로 볼 때, 남자는 상대적으로 25-29세의 이촌자가 많은 반면에, 여자는 상대적으로 20-24세의 이촌자가 많다. 이촌의 목적은 크게 취업, 학업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80년대 전반에 학업을 위해 이촌한 사람은 호탄리 5인(여자3인, 남자2인)과 화정리 9인(여자3인, 남자6인)이다. 나머지는 취업을 위한 이촌이고, 여자 20대의 일부는 결혼에 따른 이촌이다.

80년대 전반과 대비한 80년대 후반의 부분이촌의 특징은 남녀 모두 부분이촌자가 감소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부분이촌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에, 30대 이상의 부분이촌자는 약간 증가하였다. 그리고 80년대 전반과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의 부분이촌자는 절대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여자이다.

〈표 2-19〉는 1981-85년과 1985-90년에 이촌한 부분이촌자의 현거주지를 정리한 것이다. 80년대 전반의 부분이촌자의 최대의 이동지는 대전을 비롯한 충남도내이다(거주지가 확인된 사람을 기준으로 호탄리 전체 이촌자의 55%, 화정리는 45%). 다음은 서울을

<표 2-18>

성별·연령별 부분이혼자의 실태(1981-90년)

(단위 : 인, %)

연령	1981 - 1985년						1985 - 1990년					
	호탄리			화정리			호탄리			화정리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14										1		1
15-19	6	2	8	5	3	8	5	2	7	2	2	4
20-24	7	7	14	16	7	23	3	3	6	7	10	17
25-29	7	8	15	5	10	15	4	4	8	4	5	9
30-34	3	5	8		2	2	2	4	6	4	4	8
35-39		2	2		1	1		2	2			
45-49		1	1									
50-54							1		1			
55-59	1		1									
60-64							1		1			
65-										1	1	2
합계	24	25	49	26	23	49	16	15	31	19	22	41

비슷한 수도권 지역이다. 도시로 이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호탄리는 85%이고 화정리는 93%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도시(특히 서울)로의 이동이 현저하다.

80년대 후반에는 호탄리의 경우 이동지가 충남도내(대전을 포함해서 이혼자의 63%)와 수도권(37%)에 집중되고 있다. 화정리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55%로 80년대 전반에 비해 높아진 반면에, 충남도내로의 이동은 약 30%로 80년대 전반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다. 도시로 이혼한 사람의 비율은 호탄리가 81%, 화정리가 94%이다. 이동지에서 차지하는 도시 전체의 비중은 별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부분 이혼자의 현거주지와 최초의 이동지를 비교해 보면 85-90년 사이에 이혼한 사람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거주지를 바꾼 사람은 호탄리는 25인 중 4인이고, 화정리는 32인 중 10인이다. 이들에게는 수도권 집중 등의 일정한 경향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표 2-19〉 성별·주거지별 부분이촌자의 실태(1981-90년)

(단위 : 인)

거주지	1981 - 1985년						1985 - 1990년					
	호 탄 리			화 정 리			호 탄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서울	5	4	9	12	2	14	3	5	8	8	6	14
수도권도시				1	2	3	2		2	1	4	5
대전	4	5	9	7	7	14	5	5	10	6	2	8
충남내도시	1	3	4		1	1	1		1			
같은 읍면		1	1					1	1			
다른 읍면		1	1	2	1	3	1	1	2		2	2
도내 타군	3		3				3		3			
부산		2	2								1	1
대구		1	1									
인천					1	1				2	1	3
기타 도시	1	2	3		4	4					1	1
미상	10	6	16	4	5	9	1	3	4	2	5	7
합계	24	25	49	26	23	49	16	15	31	19	22	41

〈표 2-20〉은 부분이촌자의 교육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1980년대 전반에 현재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이촌자의 학력수준을 보면 호탄리는 중졸이하가 56% 고졸이상이 44%인 것에 반해, 화정리는 중졸이하가 21% 고졸이상이 79%로 심한 지역차를 나타내고 있다. 고졸이상의 이촌자의 비율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훨씬 높다.

80년대 전반에 비해 80년대 후반에 이촌자의 학력수준은 향상되고 있지 않다. 호탄리는 고졸이상이 50%로 80년대 전반에 비해 약간 높아졌지만, 화정리는 76%로 오히려 낮아졌다.

〈표 2-21〉은 부분이촌자의 직업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80년대 전반의 부분이촌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군입대나 학생,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무직자는 많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하고 있다. 호탄리의 부분이촌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은 생산직 종사자(8인)이고 다음은 사무직 종사자(5인), 농림어업직(3인), 건설노동자와 운수종사자 그리고 판매직 종사자 각 2인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화정리는 사무직 종사자가 14인으로 가장 많지만, 사무관리직은 한 명도 없고 모두 하위 사무직 종사자이다. 그

<표 2-20>

교육수준별 부분이촌자의 실태(1981-90년)

(단위 : 인)

	1981 - 1985년						1985 - 1990년					
	호 탄 리			화 정 리			호 탄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무 학										1	1	2
국 졸	6	6	12	1	3	4	5	3	8	1	1	2
중 재										1		1
중 졸	6	5	11	1	3	4	1	3	4		4	4
고 재	3	2	5	1	1	2	1	1	2			
고 졸	5	10	15	19	9	28	4	3	7	12	9	21
대 재				2	5	7	2	2	4	2	2	4
대 졸	1	2	3	2	1	3	2	3	5	1	3	4
미 상	3		3		1	1	1		1	1	2	3
합 계	24	25	49	26	23	49	16	15	31	19	22	41

다음으로는 판매직 종사자 7인, 생산직 종사자 6인의 순으로 되어 있다.

80년대 후반의 부분이촌자도 대체로 80년대 전반과 비슷한 직업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두 마을을 통틀어서 보면 생산직 종사자의 비중이 약간 높아진 것에 대해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약간 낮아졌다.

끝으로 부분이촌자의 계층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분이촌자의 재촌세대의 농지소유규모를 파악해 본 것이 <표 2-22>이다⁶⁾. 80년대 전반에 부분이촌자의 약 6할 이상이 농지소유 규모 1ha미만 세대의 출신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 부분 이촌자의 재촌세대의 농지소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적이다. 80년대 전반에 비한 80년대 후반의 부분이촌자의 계층성의 특징은 1ha미만 세대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대한 것이다. 85-90년의 부분이촌자 가운데서 1ha미만 세대의 비중은 호탄리에서 94%, 화정리에서 73%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81-90년의 부분이촌자의 이촌구조는 그 이전에 부분 이촌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 특질이 분명히 들어 나는데, 여기서는 그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로 90년 현재의 비동거가족 388인의 실태를 <부표 2-3>에서 <부표 2-9>로 처리하였다.

6) 정지규모별 및 영농종별 부분이촌자의 분포는 <부표 2-1과 2-2>를 참조.

<표 2-21>

부분이촌자의 직업별 실태(1981-90년)

(단위 : 인)

직업		1981-85년				1985-90년				
대분류	중분류	호탄리		화정리		호탄리		화정리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전문·기술직	교직					2	2			
	공무원	1	1	1	1			1	1	
	간호원					1	1			
관리직	기업경영		1	1						
	사무직	2	2	4	9	3	12	1	2	3
판매직	회사직원	1	1	2	2			2	2	
	경리사원									
	경영주	1	1	1	1	1	1	1	1	1
서비스직	점원	1	1	2	2	4	1	1	2	1
	외판원				2	2				
	가사서비스	1		1			1	1		
농림어업	농업	2	1	3				1	1	
	생산직									
건설노동자	기능공	2	2	2	2	2				
	공장노동	4	2	6	1	3	4	4	2	6
운수종사자	건설노동자	2		2	1	1				
	운수종사자							1	1	1
군복무								1	1	3
		3	3							3
학생		3	2	5	3	6	9	2	2	4
무직		2	3	5	7	1	8	3	1	4
기타			1	1				2	2	
미상		6	4	10	1	2	3	2	1	3
합계		24	25	49	26	23	49	16	15	31
								19	22	41

<표 2-22> 소유지규모별 성별 부분이촌자의 실태(1981-90년)

(단위 : 인)

	1981-85년						1985-90년					
	호 탄 리			화 정 리			호 탄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소유지없음	3	3		2	6	8	3	2	5	2	5	7
-0.1ha				1	1	2	1		1			
0.1-0.3ha	1	2	3	2		2	6	2	8	1	2	3
0.3-0.5ha	3	6	9	3	1	4	1	4	5	1	3	4
0.5-0.7ha	4	4	8	2	2	4	4	3	7	7	3	10
0.7-1.0ha	6	4	10	5	5	10	1	2	3	2	4	6
1.0-1.5ha	5	3	8	4	3	7		2	2	1	4	5
1.5-2.0ha				2	2	4				1		1
2.0-2.5ha		1	1	1	3	4				3	1	4
2.5-3.0ha	1	1	2							1		1
3.0-4.0ha	3		3	2		2						
4.0-5.0ha	1	1	2	2		2						
합 계	24	25	49	26	23	49	16	15	31	19	22	41

3. 농촌인구의 유입구조

(1) 유입자의 연령별 구성

<표 2-23>에서 보듯이 1981-85년에 호탄리에 총64명(세대39명과 부분 25명)이, 화정리에 58명(세대25명과 부분33명)이 유입하였다. 이에 반해 1985년에는 호탄리에 22명(세대11명과 부분11명)이, 화정리에 38명(세대16명과 부분22명)이 유입하였다. 유입자의 절대수가 세대와 부분 모두 크게 줄어들었고, 세대유입의 비중이 낮아졌다.

유입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표 2-23>, 1980년대 전반에 호탄리의 경우 20대가 31%, 20세 미만이 30%, 30대가 22%, 40대가 9%, 50대 이상이 8%이다. 화정리의 경우는 20세 미만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20대가 22%, 30대가 17%, 40대가 10%, 50대 이상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두 마을에서 모두 유입자의 8할 이상이 40세미만의 젊은 층이다.

<표 2-23>

유입자의 연령별 구성

(단위 : 인)

	1981-85년		1985-90년	
	호탄리	화정리	호탄리	화정리
-14	15	21	4	9
15-19	4	2		3
20-24	8	7	1	4
25-29	12	6	5	8
30-34	7	5	4	5
35-39	7	5	4	1
40-44	4	4	3	1
45-49	2	2		3
50-54	1	4		
55-59	1			2
60-64				1
65-	3	2	1	1
합 계	64	58	22	38

80년대 전반에 비교해 후반에는 호탄리의 경우 20세미만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25-44세에 유입자가 집중하고 있다(유입자의 73%). 화정리의 경우 20세미만이 여전히 높은 비중(32%)을 차지하고 있으나 80년대 전반에 비해 낮아졌고, 그 대신에 20대의 비중(32%)이 높아졌다. 연령구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40세 미만의 젊은 층이 유입자의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유입자의 성별 직업별 구성

<표 2-24>는 유입자 가운데서 15세이상인 사람의 직업별 구성을 본 것이다. 1981-85년에 호탄리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15세이상 유입자의 절반이 농업에 취업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농업취업자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남자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활동인구로 농업 또는 기타의 직업에 취업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절반은 비경제활동인구(무직 포함)이고, 취업자의 대부분은 농업에 취업하고 있다. 화정리의 경우 전체 유입자의 약 40%가 농업에 취업하고 있다. 화정리의 특징은 남자 유입자의 절대수가 적고 그 가운데서도 농업취업자의 비중이 대단히 낮은 것이다(유입자의 36%). 여자 유입자의 약 38%는 비경제활동인구

<표 2-24>

15세 이상 유입자의 성별 직업구성

(단위 : 인)

	1981-85년						1985-90년					
	호 탄 리			화 정 리			호 탄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농 업	14	11	25	11	4	15	2	2	4	4	5	9
농 업 일 고										1	2	3
축 산		2	2									
진 축 업		1	1									
운 수 업											1	1
문 방 구		1	1									
구 판 장	1	1	2									
이 발 사					1	1						
목 행 상				1		1						
피아노교습				1		1						
공 장 노 동	1		1		1	1	1	4	5			
공 장 일 고				1		1						
막 노 동 인 부					1	1					1	1
목 사					1	1					1	1
교 사	1	1	2									
학 교 소 사		1	1					1	1			
학 생	1	2	3	2	1	3				2	1	3
가 사	2		2	4		4	2		2	3		3
무 직	7	1	8	6	1	7	4	1	5	6	2	8
군 입 대					1	1	1		1			
미 상	1		1									
합 계	28	21	49	26	11	37	10	8	18	16	13	29

이고, 유입자의 약 40%가 농업에 취업하고 있다.

80년대 전반과 비교할 때, 80년대 후반에는 호탄리의 경우 15세 이상의 유입자가 격감하였을 뿐 아니라 남녀 모두 농업취업자의 비중(22%)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여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아졌고, 남자의 경우에는 공장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화정리의 경우도 호탄리 정도는 아니지만 유입자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농업취업자의 비중이 낮아졌다. 여자 유입자의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이고, 남자 유입자의 약 4할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유입자 가운데서 1980년 이후의 귀촌자만을 대상으로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 농지소유지규모, 귀촌시기, 귀촌시의 직업, 현재의 직업 등을 파악한 것이 <표 2-25>이다.

<표 2-25>으로부터 알 수 있는 귀촌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 보면 귀촌자의 거의 대부분은 남자이다. 여자는 28명의 귀촌자 중에서 3명에 지나지 않고, 이들은 농촌에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은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일시 본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로 엄밀한 의미에서 귀촌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귀촌자들의 귀촌전의 직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육체노동이나 잡업부문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즉 도시에서의 정착에 실패한 사람들이 귀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화정리의 부농의 후계자 2명은 도시 정착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부모의 권유(?)에 따라 귀농한 사람들로 현재 한명은 약 26,000평을 경작하고 있고(소유지는 7800평), 다른 한명은 9400평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귀농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다. 귀농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 이상은 한명도 없고, 거의 대부분이 20대나 30대이다. 20대의 미혼 귀촌자의 상당수는 다시 도시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마을 사이에는 귀촌자의 현재의 직업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탄리의 귀촌자는 현재 농업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3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화정리의 경우는 귀촌남자의 약 7할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두 마을의 지역성의 차이와 본가의 농지소유규모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5>

1980년 이후 귀촌자의 실태(1990년 기준)

	성	연령	혼인여부	교육	소유지면적	귀촌시기	귀촌시의 직업	현직업
호 탄 리	남	51	결혼	중졸	2000평	85년	막노동	농업
	남	42	결혼	국졸	0	86년	사우디건설노동	공장노동
	남	45	결혼	국졸	0	82년	목수	목수
	남	35	결혼	고졸	1400평	86년	리비아건설노동	공장노동
	남	38	결혼	중졸	800평	80년	방범대원	농업
	남	29	결혼	중졸	500평	85년	무직	무직
	남	35	결혼	무학	1500평	80년	우유배달원	농업
	남	33	결혼	고졸	4400평	82년	체신공무원	축산중개업
	남	40	결혼	고졸	0	82년	상업	농업
	남	35	결혼	중졸	0	85년	옷장사	개인택시
	남	23	미혼	중졸	600평	89년	공장노동자	군입대
	남	29	미혼	중졸	300평	82년	자가용운전수	무직
	여	25	미혼	대졸	1600평	89년	유아원교사	유아원교사
여	26	미혼	대졸	4000평	89년	학원강사	무직	
화 정 리	남	28	결혼	국졸	0	89년	공장노동자	농업
	남	41	결혼	고졸	2800평	84년	공장노동자	농업
	남	32	결혼	중졸	2000평	85년	화물운전수	농업
	남	34	결혼	고졸	7400평	84년	체신공무원	농업
	남	46	결혼	국졸	3200평	81년	주물공장노동자	농업
	남	38	결혼	중졸	200평	86년	목장관리	운수업
	남	38	결혼	대졸	7800평	84년	석유화학회사원	농업
	남	59	결혼	고졸	3300평	81년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남	30	결혼	국졸	0	86년	재단공	막노동인부
	남	31	결혼	국졸	0	88년	노동자	농업
	남	29	미혼	고졸	7400평	88년	점원	농업
	남	27	미혼	고졸	300평	89년	철물점점원	무직
	남	28	미혼	고졸	4200평	84년	잠수부	농업
여	29	미혼	고졸	2000평	89년	병원경리사원	무직	

4. 농촌인구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와 노동력 유출의 가능성

〈표 2-26〉은 지금까지 살펴본 농촌인구의 이촌과 유입이 농촌인구의 구성에 어떠한 변화를 미쳤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1981년과 비교한 농촌인구 구성의 변화의 제1 특징은 전체로 볼 때 30세미만의 젊은 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50세 이상층의 비중이 증대한 것이다. 30세미만의 비중은 호탄리에서는 55%에서 44%로 약10%포인트 낮아졌고, 화정리에서는 50%에서 41%로 약 9%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반해 50세 이상은 호탄리에서 26%에서 32%로, 화정리에서는 25%에서 40%로 높아졌다. 순수 농촌지역인 화정리에서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20-29세의 비중 저하가 두드러지고, 여자는 20세 미만의 비중저하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농촌인구 구성의 변화가 앞으로 농촌인구의 이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농촌인구의 이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대원 개인의 인적 속성(연령과 교육수준 등)과 농지 소유규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7〉에서는 1990년 현재의 두 마을의 주민에 대해서 연령과 소속 세대의 농지소유규모를 살펴보았다⁷⁾.

농촌인구의 이촌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연령상으로는 40세미만층 그리고 농지 소유 규모로는 1ha미만층에 집중된다고 가정하고 1990년의 농촌인구 중에서 40세 미만의 비중과 1ha미만층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세미만의 비중은 호탄리에서 58%, 화정리에서 약50%이다. 1ha미만층의 비중은 호탄리에서 84%, 화정리에서 66%이다. 그리고 연령이 40세미만이면서 세대의 농지소유가 1ha미만인 농촌인구의 비중은 호탄리가 52%, 화정리가 32%이다.

7) 정지규모별 및 영농종별 연령분포는 〈부표 2-10〉과 〈부표 2-11〉로 처리하였다.

<표 2-26>

농촌인구의 연령구성의 변화

(단위 : 인, %)

연령	호 탄 리						화 정 리					
	1981년			1990년			1891년			1990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미상	1	1	2									
-14	49	34	83	28	36	64	35	52	87	30	25	55
15-19	10	16	26	7	7	14	26	22	48	12	19	31
20-24	13	15	28	5	2	7	12	20	32	6	3	9
25-29	13	15	28	8	7	15	3	5	8	5	8	13
30-34	6	8	14	7	5	12	4	8	12	8	6	14
35-39	8	6	14	8	11	19	9	6	15	3	5	8
40-44	9	9	18	6	7	13	17	8	25	6	6	12
45-49	4	8	12	5	5	10	17	16	33	7	9	16
50-54	14	1	15	9	7	16	12	9	21	13	6	19
55-59	8	7	15	3	7	10	8	12	20	17	12	29
60-64	5	10	15	11	1	12	11	7	18	11	7	18
65-	16	16	32	20	14	34	16	14	30	21	18	39
합계	156	146	302	117	109	226	171	179	350	139	124	263
미상	0.6	0.7	0.7									
-14	31.4	23.3	27.5	23.9	33.0	28.3	20.5	29.1	24.9	21.6	20.2	20.9
15-19	6.4	11.0	8.6	6.0	6.4	6.2	15.2	12.3	13.7	8.6	15.3	11.8
20-24	8.3	10.3	9.3	4.3	1.8	3.1	7.0	11.2	9.1	4.3	2.4	3.4
25-29	8.3	10.3	9.3	6.8	6.4	6.6	1.8	2.8	2.3	3.6	6.5	4.9
30-34	3.8	5.5	4.6	6.0	4.6	5.3	2.3	4.5	3.4	5.8	4.8	5.3
35-39	5.1	4.1	4.6	6.8	10.1	8.4	5.3	3.4	4.3	2.2	4.0	3.0
40-44	5.8	6.2	6.0	5.1	6.4	5.8	9.9	4.5	7.1	4.3	4.8	4.6
45-49	2.6	5.5	4.0	4.3	4.6	4.4	9.9	8.9	9.4	5.0	7.3	6.1
50-54	9.0	0.7	5.0	7.7	6.4	7.1	7.0	5.0	6.0	9.4	4.8	7.2
55-59	5.1	4.8	5.0	2.6	6.4	4.4	4.7	6.7	5.7	12.2	9.7	11.0
60-64	3.2	6.8	5.0	9.4	0.9	5.3	6.4	3.9	5.1	7.9	5.6	6.8
65-	10.3	11.0	10.6	17.1	12.8	15.0	9.4	7.8	8.6	15.1	14.5	14.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1.7)	(48.3)		(51.8)	(48.2)		(48.9)	(51.1)		(52.9)	(47.1)	

주 : ()의 숫자는 성별구성

<표 2-27>

소유지규모별 연령분포(1990년)

(단위 : 인)

		소 유 농 지 규 모 (ha)											
연 령 (세)		없음	-0.1	0.1- 0.3	0.3- 0.5	0.5- 0.7	0.7- 1.0	1.0- 1.5	1.5- 2.0	2.0- 2.5	2.5- 3.0	합계	
호	-14	32	2	13	8	4		4	1			64	
	15-19	6		4	1			1	2			14	
	20-24	1		2	1		1		2			7	
	25-29	2		4	4	3		2				15	
	30-34	6		1	3	1		1				12	
	35-39	8	2	4	3	1			1			19	
	40-44	7		4				1	1			13	
	45-49	2		2	1		3	1	1			10	
	50-54	2		4	1	3	3	2	1			16	
	55-59	2		2	3	1	1	1				10	
리	60-64	3			3	1	2	2			1	12	
	65-	7		2	4	8	2	5	2	3	1	34	
	합 계	78	4	42	32	22	12	20	11	3	2	226	
	화	-14	11	2	2	3	8	9	12		4	4	55
		15-19	10			3	3	2	10			3	31
		20-24	3			1	4	1					9
		25-29	3	1	1		3	1	3		1		13
		30-34	2	1		1	4	1	1		3	1	14
		35-39		1		1		2	2		1	1	8
		40-44	2		1		2	3	3			1	12
45-49		6			1	2	3	3			1	16	
50-54		5		2	4	3	2	3				19	
55-59		9		2	5			9		3	1	29	
리	60-64	1	1	3	2	4	1	3		2	1	18	
	65-	5	2	2	6	6	4	9		2	3	39	
	합 계	57	8	13	27	39	29	58		16	16	263	

VI. 요약

이 글은 1960년대이후의 공업화과정에서의 농촌도시간의 노동력이동의 실태를 전국적 통계자료와 사례연구를 통해서 개관해 본 것이다. 전국적 통계자료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공업화는 도시화와 등치할 수 있을 만큼 급속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을 수반하였다. 도시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85년에 28%에서 65%로 증대하였고, 도시의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63%로 증대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현저하다. 한국의 도시화는 같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한 다른 신흥공업국에 비해서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의 수출 주도형의 공업화가 대도시와 임해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간의 심한 격차를 수반하면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1960-85년 사이에 약 1000만명(연평균 약 40만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純移動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다만 농촌인구의 유출은 시기별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년대 전반까지는 농촌인구의 유출은 농촌인구의 자연증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유출은 6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여, 70년대 전반에 일시 둔화되었다가, 70년대 후반 이후 다시 급하고 있다. 이것은 농촌인구의 유출이 단순히 도시의 흡인력(pull)에 의해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농가경제의 상태(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셋째, 농촌인구의 유출은 주로 20세 이하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5세 이상의 노동력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의 이촌이 훨씬 많았고, 연령별로는 여자 15-19세와 남자 20대전반의 이촌이 많았다. 이는 한국의 공업화가 젊은 저임금노동

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이촌자의 학력수준은 70년대 전반까지 약 절반이 국졸이하의 저학력이었지만, 70년대 후반에는 학력수준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다섯째, 유출 농촌노동력의 도시노동시장에 대한 기여율은 대단히 높다.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노동력이 도시노동자 증가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60년대 후반에 54%, 70년 전반에 58%, 그리고 70년 후반에는 실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도시유입 농촌노동력은 도시 거주자에 비해 훨씬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여자 유입노동력의 경우 도시거주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도시유입노동자의 절반이상은 제조업에 취업하였고, 그외에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많이 취업하였다.

여덟째, 70년대 후반이후의 도시유입노동자를 보면, 24세이하의 경우 전입과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 보다는 학업에 종사하거나 일시적으로 실업을 하면서 적당한 직장을 찾은 후에 취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30대이상층은 어떤 형태로든 즉시 일자리를 구한다.

아홉째, 도시 유입노동력의 취업상태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많은 사람이 5년이내에 취업상태를 바꾸고 있고, 취업상태변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피고용자화이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통해서 본 1980년대이후의 농촌인구 유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80년대 이후에도 농촌인구는 빠른 속도로 도시로 유출하고 있다. 80년대 전반에 조사지역의 주민의 30%이상이 유출되었고, 80년대 후반에는 약간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30% 가까운 주민이 유출하였다.

둘째, 80년대 전반에 농촌인구의 유출의 주류를 이룬 것은 부분이촌이었는데, 80년대 후반에는 세대이촌이 급증하여 부분이촌과 거의 같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셋째, 이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30세미만층이고, 15-29세층은 80년대 전반에 놀랍게도 60% 이상의 이촌율을 보이고 있고, 80년대 후반에 약간 둔화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이촌율이 대단히 높다.

넷째, 세대이촌이 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도시에서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농촌주민은 자녀들은 도시로 내보내면서도, 자신은 일정한 정도의 농지를 갖고 있고 노동능력이 있는 한 도시로 나가기 보다는 농촌에 머물려고 한다.

다섯째, 부분이촌자의 경우 군입대나 학생,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무직자는 많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하고 있다. 그들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생산직에 취업하고 있다.

여섯째, 부분이촌자의 6할 이상은 농지소유규모 1ha미만 세대의 출신이고, 80년대 후반에는 이 계층의 부분이촌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일곱째, 농촌인구의 유출은 농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40세미만이면서 세대의 농지 소유규모가 1ha미만인 농촌인구(이촌의 가능성이 높은 농촌인구)의 비중은 여전히 40% 전후를 점하고 있다. 이는 농촌인구의 절대수의 감소화와 노령화 추세로 인해 농촌노동력의 유출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농촌노동력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인구이동 특별조사』(제1차보고서), 1985년.
문팔용외, 『한국의 농촌개발』, 한국개발연구원, 1981년.
민상기외, 『이농 탈농의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년.
박진도, 「농촌주민의 계층구성 및 그 성격에 관한 사례연구」, 충남대학교 『경상논집』, 제2권2호, 1981년.
———, 『現代韓國農民層分解の研究』, 東京大學 經濟學 博士學位論文, 1987년.
윤진호, 『한국의 불안정 취업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 논문, 1990년.
R.레페트의, 『한국의 경제개발과 인구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3년.
윤여덕외, 『이농민의 도시적응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년.
이용교, 『이촌 청소년의 도시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89년.
최재석,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일지사, 1988년.
服部民夫編, 『韓國の工業化:發展の構圖』, アジア經濟研究所, 1987年
倉持和雄, 「韓國における農村農家人口の流出」, 『アジア經濟』, 제24권 제5호, 아시아經濟研究所, 1983년.
Kwon, Tai Hwan, “Estimates of Net Internal Migration of Korea 1955-70”,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4, 1975.
———, “Estimates of Net Internal Migration of Korea 1970-75”,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7, 1978.
———, “Estimates of Net Internal Migration of Korea 1975-85”,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17, 1988.

Lee, Bun Song, "Urbanization in a Rapidly Growing Economy: An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Aspects of Korean Urbanization Problems", Final Report submitted to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une 1991.

Todaro, M.P.,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New York: Longman, 1985.

<부표 2-1>

경지규모별 성별 부분유출자의 실태(1981-90)

(단위 : 인)

	1981-1985						1985-90					
	호 탄 리			화 정 리			호 탄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경지없음				2	3	5	2		2			
-0.1ha				1		1						
0.1-0.3ha		2	2	1	3	4	1		1	1		1
0.3-0.5ha	1	6	7	3	1	4	2	5	7	2	3	5
0.5-0.7ha	2	5	7	1	2	3	1	1	2	5	3	8
0.7-1.0ha	7	5	12	5	6	11	1	1	2	3	4	7
1.0-1.5ha	5	2	7	6	3	9	7	2	9	1	10	11
1.5-2.0ha	3	3	6	2	2	4	2	6	8	1		1
2.0-2.5ha	2	1	3	1	3	4				2	1	3
2.5-3.0ha	4	1	5							1		1
3.0-4.0ha				2		2				2		2
4.0-5.0ha				2		2				1	1	2
합계	24	25	49	26	23	49	16	15	31	19	22	41

<부표 2-2>

영농종별 성별 부분유출자의 실태

(단위 : 인)

	1981-85년						1985-90년					
	호탄리			화정리			호탄리			화정리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여	남	계
비농업				2	3	5	2		2			
순지주				1		1						
경작지주	7	5	12				1	3	4		1	1
자작	9	9	18	18	16	34	1	1	2	11	7	18
자소작	2	4	6	3		3	1	4	5	3	6	9
소자작	6	4	10	2	1	3	10	5	15	3	3	6
순소작		3	3		3	3	1	2	3	2	5	7
합계	24	25	49	26	23	49	16	15	31	19	22	41

<부표 2-3>

연령별 비동거가족 실태(1990년 현재)

연 령	호 탄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미 상	2	1	3	1		1
15-19	5	4	9	2	2	4
20-24	10	8	18	12	14	26
25-29	12	20	32	33	21	54
30-34	17	21	38	33	36	69
35-39	10	19	29	14	15	29
40-44	6	10	16	9	9	18
45-49	3	4	7	2	4	6
50-54	3	5	8	2	5	7
55-59				3	2	5
60-64	2		2	1	1	2
65-	2	1	3	1	1	2
합 계	72	93	165	113	110	223

<부표 2-4>

거주지별 비동거가족 실태(1990년 현재)

거 주 지	호 탄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서울시	19	25	44	53	38	91
수도권도시	4	4	8	13	15	28
대전	16	21	37	20	16	36
내도시	3	5	8	2		2
같은읍면	3	7	10	1	2	3
동일군읍면	2	4	6	8	8	16
내타군	5	3	8	1	2	3
부산지	2	6	8		2	2
광주	2	1	3	1	1	2
인천	1	2	3	5	5	10
타도도시	7	9	16	4	12	16
타도읍면	1		1	2	3	5
외국				1	1	2
미상	7	6	13	2	5	7
합 계	72	93	165	113	110	223

<부표 2-5>

교육수준별 비동거가족 실태(1990년)

교육수준	호 탄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미 상	6	4	10	1	1	2
무 학	2	1	3	4	5	9
국 졸	32	20	52	32	15	47
중 졸	11	14	25	8	13	21
고 재	1	2	3			
고 졸	15	29	44	58	44	102
대 재	2	4	6	3	6	9
대 졸	3	19	22	7	26	33
합 계	72	93	165	113	110	223

<부표 2-6>

직업별 비동거가족 실태(1990년)

직업		호 탄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전문·기술직	교 직	2	6	8	3	3	6
	공 무 원	1	2	3	3	3	6
	간 호 원	1		1			
	건축 기술 자		3	3		1	1
	연 구 직 인					2	2
	종 교 인					3	3
	소 계	4	11	15	6	12	18
관 리 직	공 장 경 영		2	2		2	2
사 무 직	사 무 관 리 직		2	2		2	2
	회 사 직 원	1	11	12	10	21	31
	경 리 사				4	2	6
	소 계	1	13	14	14	25	39
판 매 직	경 영 주	1	6	7	2	5	7
	점 원		2	2	3	5	8
	외 판 원		2	2			
	소 계	1	10	11	5	10	15

서어비스직	영양사				1		1
	가사서비스 중개인 이·미용사	2		2	1		1
	소계	1		1		1	1
	소계	3		3	2	1	3
농림어업	농업	4	4	8		2	2
생산직	기능공		7	7		5	5
	공장노동	12	14	26	8	17	25
	소계	12	21	33	8	22	30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1		1		7	7
운수종사	운수조사자		5	5		7	7
군복무			3	3		4	4
학생		2	4	6	3	8	11
무직		36	5	41	66	2	68
기타		1	8	9	2	2	4
미상		7	7	14	7	6	13
합계		72	93	165	113	110	223

<부표 2-7>

1990년 현재 비동거가족의 경지규모별 분포

	호 단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경지없음	21	23	44	11	27	38
0.1-0.3ha	5	14	19	12	6	18
0.3-0.5ha	4	6	10	8	7	15
0.5-0.7ha	4	8	12	21	19	40
0.7-1.0ha	15	14	29	6	9	15
1.0-1.5ha	13	17	30	20	18	38
1.5-2.0ha	6	6	12	9	9	18
2.0-2.5ha	4	2	6	10	3	13
2.5-3.0ha		3	3	6	7	13
3.0-4.0ha				9	2	11
4.0-5.0ha					1	1
5.0ha 이상				1	2	3
합계	72	93	165	113	110	223

<부표 2-8>

1990년 비동거가족의 소유지규모별 분포

	호 단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경지없음	13	20	33	19	27	46
-0.1ha					1	1
0.1-0.3ha	13	12	25	21	8	29
0.3-0.5ha	11	10	21	13	17	30
0.5-0.7ha	11	13	24	16	14	30
0.7-1.0ha	13	17	30	3	5	8
1.0-1.5ha	5	8	13	24	25	49
1.5-2.0ha	1	2	3			
2.0-2.5ha	3	6	9	7	10	17
2.5-3.0ha				10	3	13
3.0-4.0ha	2	5	7			
합 계	72	93	165	113	110	223

<부표 2-9>

1990년 현재 비동거가족의 영농종별 분포

	호 단 리			화 정 리		
	여	남	계	여	남	계
비 농 업	6	3	9	5	15	20
순 지 수	15	20	35	4	12	16
경 작 지 수	5	16	21	10	4	14
자 작	19	20	39	45	35	80
자 소 작	7	7	14	13	10	23
소 자 작	13	10	23	22	22	44
순 소 작	7	17	24	14	12	26
합 계	72	93	165	113	110	223

<부표 2-10>

경지규모별 연령별 분포(1990년)

(단위 : 인)

		경 지 규 모												
연 령 (세)		없음	0.1- 0.3	0.3- 0.5	0.5- 0.7	0.7- 1.0	1.0- 1.5	1.5- 2.0	2.0- 2.5	2.5- 3.0	3.0- 4.0	5.0-	합계	
호	-14	19	6	2	10	12	8	1		6			64	
	15-19	3	2		4		1	2		2			14	
	20-24	2		1	1			1		2			7	
	25-29	3	3	3	2	3	1						15	
	30-34		2		5	3	2						12	
	35-39	3	1		2	7	2	1		3			19	
	40-44	8	1		1		1	1		1			13	
	45-49	1	1	3	2		1	1		1			10	
	50-54		3	2	1	3	5		1	1			16	
	55-59	1		1	2		1	4	1				10	
리	60-64	1	1	1	1	4	3						12	
	65-	12	5		4	8	3	2					34	
	합 계	53	25	13	35	40	28	13	2	17			226	
	화	-14	4	4	4	5	9	5	7		8	7	2	55
		15-19	8		1	5	2	3	3	5	3	1		31
		20-24	1		3	4	1							9
		25-29	1		1	3	1	2	2			1	2	13
		30-34	1	1	1	2	1	1	1		2	1	3	14
		35-39		1	1		2		1		1	2		8
		40-44	2	1			3		3		2	1		12
45-49		6			2	3		2	2	1			16	
50-54		2	2	2	5	3	2		1		2		19	
55-59		2	1	4	5	1	10	1	1	1	2	1	29	
리	60-64	1	1		5	2	3	2	1	2		1	18	
	65-	7	5	1	5	5	4	7	1	2	2		39	
	합 계	35	16	18	41	33	30	29	11	22	19	9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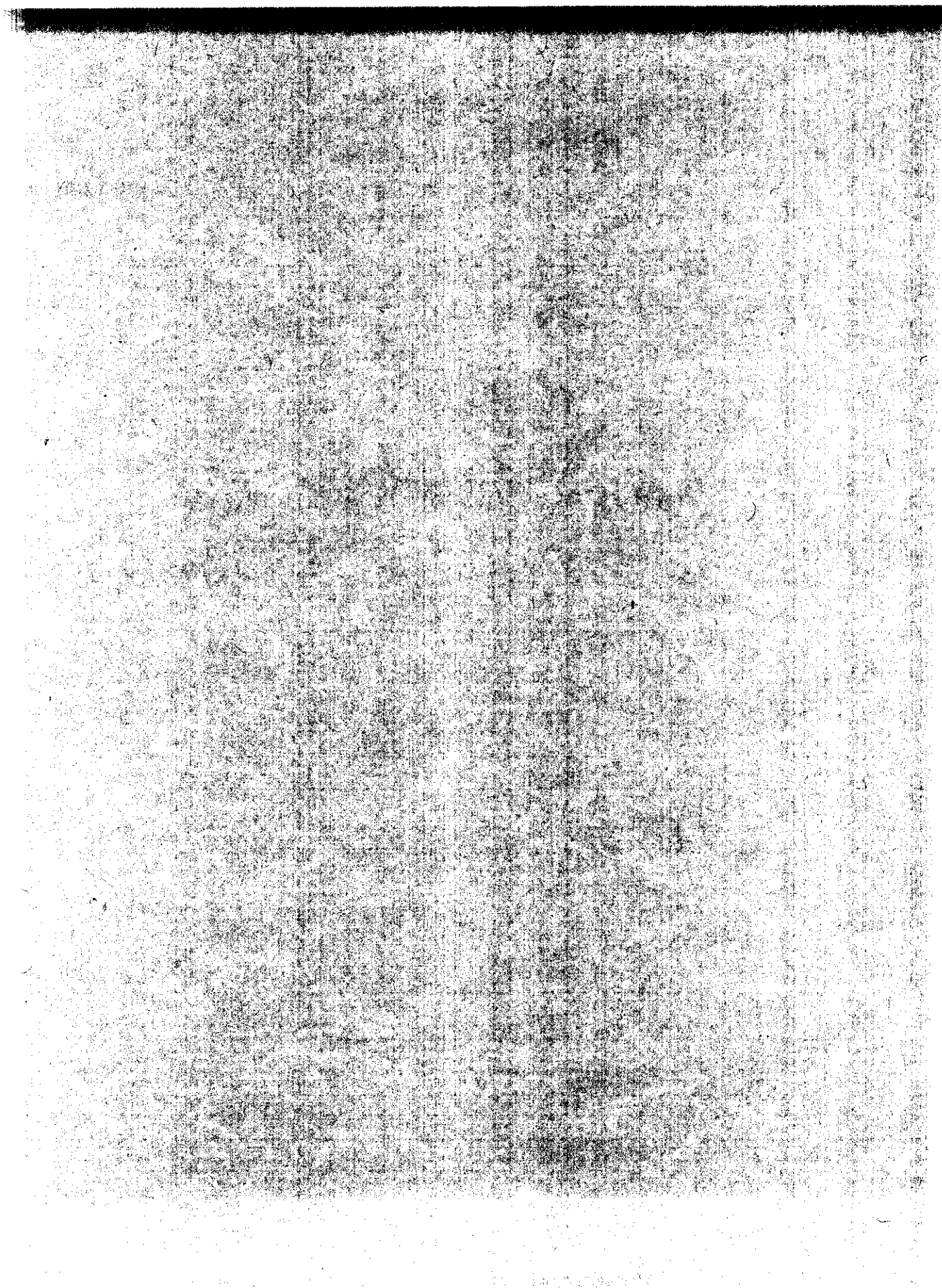
<부표 2-11>

영농종별 연령별 분포(1990년)

		영 농 종 별								
연 령		비농가	지주	지주겸 자 작	지주겸 자소작	자작	자소작	소자작	순소작	합계
호 만 리	-14	17	2		8	10	3	7	17	64
	15-19	2	1		1	2	1	3	4	14
	20-24	1	1	1			2	2		7
	25-29		3		5	5			2	15
	30-34				1	1	1	3	6	12
	35-39	3			3	2	2	2	7	19
	40-44	6	2			3		1	1	13
	45-49	1		2		2	1	3	1	10
	50-54			1	1	7	4	1	2	16
	55-59	1				1	2	5	1	10
	60-64		1	1		6	1		3	12
	65-	1	11	4	3	2	5	2	6	34
합 계		32	21	9	22	41	22	29	50	226
화 정 리	-14	3			3	20	10	11	8	55
	15-19	6	1			11	7	2	4	31
	20-24	1				5	1		2	9
	25-29	1				4		6	2	13
	30-34	1			1	5	2	4	1	14
	35-39				1	3	3	1		8
	40-44	2				5	2	3		12
	45-49	6				5	4	1		16
	50-54	1	1			7	2	4	4	19
	55-59	1		2		10	2	6	8	29
	60-64	1				9	1	7		18
	65-	2	4	3	2	12	7	6	3	39
합 계		25	6	5	7	96	41	51	32	263

第 3 部

勞動力의 構造變化와 그 特徵



목 차

I. 서 론	127
II. 노동력의 양적증가	128
III. 고령 및 여자노동자의 증가	134
IV. 고학력화	143
V. 노동력의 질과 기능의 고도화	152
VI. 직업별·산업별 취업구조 변화	161
VII. 일본의 노동력 구조변화와 비교한 한국의 특징	171
참고문헌	178

표 목 차

〈표 3-1〉 경제활동인구 변동 추이	128
〈표 3-2〉 해방후의 인구 변동 추이	128
〈표 3-3〉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129
〈표 3-4〉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	130
〈표 3-5〉 상급학교 진학률 추이	132
〈표 3-6〉 각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132
〈표 3-7〉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전국 남자)	134
〈표 3-8〉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전국 여자)	135
〈표 3-9〉 연령계층별 인구 추이	136
〈표 3-10〉 산업별·연령계층별 취업자 분포 (남자)	137
〈표 3-11〉 산업별·연령계층별 취업자 분포 (여자)	138
〈표 3-12〉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구성	141
〈표 3-13〉 여자 취업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141
〈표 3-14〉 여자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와 구성비	142
〈표 3-15〉 여자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와 구성비.....	142
〈표 3-16〉 학력별 취업자 (남자)	143
〈표 3-17〉 학력별 취업자 (여자).....	144
〈표 3-18〉 학력별·산업별 취업자 분포 (남자).....	145
〈표 3-19〉 학력별·산업별 취업자 분포 (여자).....	146

<표 3-20>	학력별·직업별 취업자 (남자)	147
<표 3-21>	학력별·직업별 취업자 (여자)	148
<표 3-22>	대졸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150
<표 3-23>	대졸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151
<표 3-24>	직업훈련을 이수한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152
<표 3-25>	직업훈련을 이수한 취업자가 집중된 주요 산업 (중분류)	153
<표 3-26>	직업훈련을 이수한 취업자가 집중된 주요 직업 (중분류)	154
<표 3-27>	기능공 양성과정 훈련인원	155
<표 3-28>	기술인력 유형별 공급체계	155
<표 3-29>	기술·기능인력 등급과 자격검정체계	157
<표 3-30>	기능사의 등급별 주요 기능	157
<표 3-31>	기능자격검정 합격자 현황	158
<표 3-32>	등급별·분야별 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159
<표 3-33>	직업별 취업자수 추이	162
<표 3-34>	직업별 취업자수 연평균 증가율	162
<표 3-35>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163
<표 3-3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164
<표 3-37>	산업별 국민총생산 구성비	165
<표 3-38>	제조업 업종별 (중분류) 취업자 추이	166
<표 3-39>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168
<표 3-40>	제조업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168
<표 3-41>	제조업 기술계 근로자의 직종별 변화	169
<표 3-42>	제조업 전문기술직 및 생산직 취업자의 학력별 분포	169
<표 3-43>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 추이	171
<표 3-44>	일본의 직업별 취업자 비율 추이	173

〈표 3-45〉 일본의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추이	174
〈표 3-46〉 한국과 일본의 철강, 금속, 기계산업의 제조업에 대한 비중 추이 (부가가치 기준)	175
〈표 3-47〉 한국과 일본의 학력별 취업자 구성비중 추이	176

그림 목 차

〈그림 3-1〉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	131
〈그림 3-2〉 남자의 연령계층별 취업자 비율	140
〈그림 3-3〉 여자의 연령계층별 취업자 비율	140
〈그림 3-4〉 남자 취업자의 직업별 학력 분포	149
〈그림 3-5〉 여자 취업자의 직업별 학력 분포	149

I. 서 론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의 노동력 구조도 급격히 변화해 왔다. 이 변화는 노동력의 양적 증가와 고령노동자, 여자노동자의 증가, 평균 학력 및 숙련도의 증가, 산업·직업별 구성의 변화로 요약된다.

여기서는 60년대 이후 이러한 노동력의 구조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를 본다. 그리고 이 특징이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상의 특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구명해 본다.

II. 노동력의 양적 증가

노동활동인구의 양적 변동추이를 보면, 1957년 약 820만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1955년의 2.2배인 약 1,800만명에 이르고 있다. <표 3-1>에서 보듯이 1960~1965년 기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도 했으나 그 밖의 시기에는 계속 증가하여 1955년 이후 34년간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 경제활동인구 변동 추이

(단위 : 1,000명, %)

연 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연 도	경제활동인구	활동인구
1955	8,170	-	1975	12,340	3.9
1960	8,956	1.9	1980	14,454	3.2
1965	8,859	-0.2	1985	15,554	1.5
1970	10,199	2.9	1989	17,975	3.7

자료 : 내무부 통계국,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보고』, 1959 내무부 통계국, 『노동력조사』, 1961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주 : 증가율은 기간중의 연평균 증가율임.

<표 3-2> 해방후의 인구 변동 추이

(단위 : 1,000명, %)

	인 구	증 가 율		인 구	증 가 율
1949	20,167	-	1970	31,435	1.9
1955	21,502	1.1	1975	34,679	2.0
1960	24,989	3.1	1980	37,407	1.5
1966	29,160	2.6	1985	40,420	1.6

자료 : 경제기획원, 각연도 인구 센서스에서 계산

주 : <표 3-1>과 같음.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첫째 이유로는 기간중의 인구증가를 들 수 있다. <표 3-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인구는 1949년의 약 2천만명에서 1985년에는 약 4천만명으로 2배 증가하여, 36년간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이유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을 들 수 있다. <표 3-3>에서 체계적인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이루어진 1963년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면 1963년의 55.3%에서 1989년에는 59.5%로 약 4% 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인 경제활동가율 상승은 전적으로 여자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의한 것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1989년의 증가율이 1963년에 비해 약 3% 포인트 정도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 여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동안 10% 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간의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추이가 이처럼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1974년과 1989년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나타내는 <표 3-4>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1989년에는 1974년에 비해 남자의 경우 25~29세 계층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여자의 경우 20세 미만의 저연령층에

<표 3-3>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 %)

	총 수	남 자	여 자
1963	55.3	76.4	36.3
1965	55.6	76.6	36.5
1970	55.9	75.1	38.5
1975	56.5	74.5	39.6
1980	57.1	73.6	41.6
1985	54.6	69.6	40.6
1989	59.5	73.3	46.5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주 : 1963~1985년은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1989년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

서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저연령층의 이러한 참가율 저하현상은 중·고교 및 대학 진학의 증가에 기인한다.

남자의 경우 전체 연령계층에서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 1989년에는 1974년에 비해 20세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10%층에서 여자의 경우 20세 미만의 저연령층에서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저연령층의 이러한 참가율 저하현상은 중·고교 및 대학 진학의 증가에 기인한다.

남자의 경우 전체 연령계층에서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 1989년에는 1974년에 비해 20세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10% 포인트 정도나 높아지고 있다. 20세 이후 연령계층의 이러한 참가율 상승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는 저연령층의 참가율

〈표 3-4〉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

(단위 : %)

연령계층	남 자		여 자	
	1974	1989	1974	1989
전년령	76.0	73.3	41.1	46.5
14세	17.1	-	20.3	-
15-19	41.9	11.6	41.5	18.6
20-24	79.4	59.9	51.2	63.5
25-29	95.2	90.7	31.4	43.0
30-34	98.6	97.1	38.5	49.5
35-39	98.4	97.0	48.6	57.3
40-45	97.8	95.3	54.1	61.0
45-49	96.2	93.6	54.0	63.5
50-54	91.6	89.6	50.4	60.3
55-59	83.4	82.4	42.8	52.7
60세이상	48.1	49.2	17.9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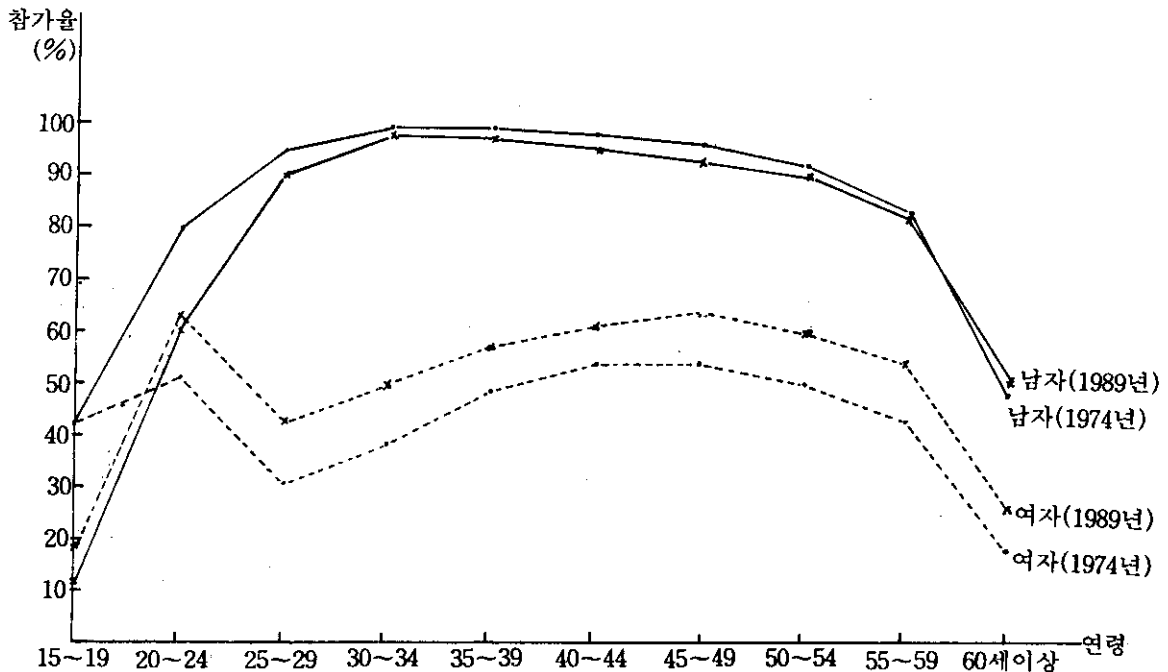
자료 : 경제기획원, 『특별고용통계조사』, 『1974 및 경제활동인구연보』, 1990.

주 : 1989년에는 14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에 관한 조사가 없음.

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참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에는 중고년층에서도 이같은 참가율 상승현상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저하하고 있다(<그림 3-1>참조).

저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취학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은 <표 3-5>의 상급학교 진학율 추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남자의 경우 1965년에서 1988년 사이에 중학교 진학율은 53.0%에서 100.0%로, 고등학교 진학률은 74.3%에서 91.5%로, 대학진학률은 37.6%(1970년)에서 62.0%로 증가하며, 여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진학율이 각각 36.2%에서 99.5%, 76.9%에서 83.5%, 27.4%(1970년)에서 38.6%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진학률 상승으로 나타나는 취학인원의 증가 때문에 저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3-1>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표 3-6>에서 보듯이 선진국들 간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에 상당히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고 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제도나 취업훈련제도 등에 따라 같은 발전단계내에서도 상당한 차이

<표 3-5> 상급학교 진학을 추이

(단위 : %)

	남 자			여 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5	53.0	74.3	-	36.2	76.9	-
1970	71.1	69.7	37.6	51.8	69.0	27.4
1975	82.7	77.9	27.6	67.5	68.9	18.9
1980	97.8	87.4	58.1	94.4	79.4	29.7
1985	99.4	91.3	72.1	98.9	84.1	39.8
1988	100.0	91.5	62.0	99.5	83.5	38.6

자료 : 문교통계연보 각년도.

주 : 진학률 = $\frac{\text{당해 년도의 해당학교 1학년 학생수}}{\text{전년도의 하급학교 최고학년 학생수}}$

<표 3-6> 각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총 수	남	여
한 국('89)	59.5	73.3	46.5
프랑스('87)	55.2	65.4	45.8
서 독('87)	56.1	71.7	42.0
일 본('87)	62.6	77.3	48.6
스웨덴('87)	83.4	85.8	81.1
미 국('87)	63.7	73.9	54.2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88.

경제기획원, 「1989경제활동 인구연보」, 1990.

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스웨덴, 미국 등의 경제활동참가율, 특히 여자의 그것이 우리나라의 참가율 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여성의 참가율 상승과 함께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고령 및 여자노동자의 증가

노동력 구성의 변화에 있어서 우선 확인되는 사실은 고령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증가 현상이다. 남자 노동력의 경우 <표 3-7>을 보면 고령화 현상을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1963년에는 20세 미만인 12.4%, 20~39세가 51.3%로서 40세 미만이 64%를 차지하고 40~59세가 31.8%, 60세 이상이 4.4%로서 40세 이상이 36%였다. 1989년에는 20세미만이 전체의 2.5%로 1963년에 비해 그 비중이 10% 포인트 감소하고 절대 수도 41만명이나 감소하였다. 1989년 현재 20~39세가 54%로 가장 많고, 40세 미만 57%, 40세 이상이 43%를 차지하게 되었다.

<표 3-7>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전국남자)

(단위:1,000명, %)

	총 수	20세미만	20-39세	40-59	60세이상
1963	5.462(100.0)	680(12.4)	2.803(51.3)	1.736(31.8)	243(4.4)
1965	5.808(100.0)	761(13.1)	2.953(50.8)	1.861(32.0)	233(4.0)
1970	6.516(100.0)	819(12.6)	3.236(49.7)	2.169(33.2)	292(4.5)
1975	7.884(100.0)	843(10.7)	4.106(52.1)	2.545(32.3)	390(4.9)
1980	9.020(100.0)	576(6.4)	4.832(53.6)	3.141(34.8)	461(5.1)
1985	9.585(100.0)	319(3.3)	5.383(56.2)	3.351(35.0)	532(5.6)
1989	10.716(100.0)	270(2.5)	5.793(54.1)	3.996(37.3)	659(6.1)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여자의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을 보면 1963년에는 20세 미만 17.1%, 20~39세 50.0%, 40~59세 29.5%, 60세 이상 3.4%로서 40세 미만이 67%, 40세 이상이 33%를 차지하였다. 1989년에는 이러한 比率이 크게 변하여, 20세 미만은 5.4%로 그 비중과 절대수가 감소하고, 20~39세는 51.5%, 40~59세는 35.6%, 60세 이상은 7.4%로 비중이 증가한다. 그 결과 남자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40세 미만은 이제 57%, 40세 이상은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력의 연령별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그림 3-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저연령층의 경제활동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인구의 연령별 구성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3-9>를 보면 20세 미만 인구 구성비율은 1949년의 51.6%에서 1985년에는 40.6%로 11% 포인트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20~39세는 27.9%서 34.7%로 7% 포인트, 40~59세는 15.1%에서 17.9%로 3% 포인트, 60세 이상은 5.5%에서 6.8%로 1%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연령계층에 따라 취업자가 주로 어떤 산업에 취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표 3-10> 및 <표 3-11>과 같이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농림어업에서는 50대가 가장 높

<표 3-8>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전국여자)

(단위: 1,000명, %)

	총 수	20세미만	20-39세	40-59세	60세이상
1963	2,881(100.0)	493(17.1)	1,441(50.0)	850(29.5)	97(3.4)
1965	3,051(100.0)	569(18.6)	1,471(48.2)	914(30.0)	97(3.2)
1970	3,683(100.0)	730(19.8)	1,695(46.0)	1,109(30.1)	149(4.0)
1975	4,456(100.0)	832(18.7)	1,951(43.8)	1,460(32.8)	213(4.8)
1980	5,435(100.0)	659(12.1)	2,573(47.3)	1,946(35.8)	257(4.7)
1985	5,969(100.0)	406(6.8)	3,072(51.5)	2,145(35.9)	346(5.8)
1989	7,259(100.0)	393(5.4)	3,739(51.5)	2,586(35.6)	540(7.4)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 인구연보」, 각 연도.

은 30%를 차지하며, 60세 이상의 고령층도 22%를 점하고 있어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잘 나타낸다. 광업에서도 30대 35%, 40대 27%, 50대 18%로서 농림어업보다는 덜하지만 노동력이 다소 고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도 30대 35%, 40대 27%, 50대 16%로서 광업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에는 광업과 건설업에 비해 30대의 비중이 7%높고, 50대의 비중이 7% 포인트 낮은 점을 제외하면 여타 연령층의 분포는 광업 및 건설업과 비슷하다.

가장 젊은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은 제조업이다. 제조업에서는 20대가 37%로서 가장 높고 그 외에 30대 33%, 40대 17%인데, 이들을 제외한 연령층은 13% 밖에 안 된다.

제조업 다음으로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여기서는 20대 25%, 30대 32%, 40대 24%로서 이들이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표 3-9〉

연령계층별 인구 추이

(단위 : 1,000명, %)

	총 수	20세미만	20~39세	40~59세	60세이상
1949	20,167(100.0)	10,415(51.6)	5,621(27.9)	3,050(15.1)	1,111 ¹⁾ (5.5)
1955	21,502(100.0)	11,260(52.4)	5,751(26.7)	3,297(15.3)	1,194(5.6)
1960	24,989(100.0)	13,101(52.4)	6,914(27.7)	3,615(14.5)	1,359(5.4)
1966	29,160(100.0)	15,392(52.8)	8,256(28.3)	4,200(14.4)	1,512(5.2)
1970	31,435(100.0)	16,330(51.9)	8,775(27.9)	4,626(14.7)	1,705(5.4)
1975	34,679(100.0)	17,356(50.0)	10,044(29.0)	5,336(15.4)	1,944(5.6)
1980	37,407(100.0)	16,896(45.2)	11,878(31.8)	6,365(17.0)	2,268(6.1)
1985	40,420(100.0)	16,411(40.6)	14,012(34.7)	7,243(17.9)	2,756(6.8)

자료 : 경제기획원, 각년도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계산.

주 : 1)연령 미상 포함.

<표 3-10>

산업별·연령계층별 취업자 분포 (남자)

(단위 : 1,000명, %)

	총 수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 산업	10,391 (100.0)	249 (2.4)	2,404 (23.1)	3,158 (30.4)	2,320 (22.3)	1,603 (15.4)	657 (6.3)
농림어업	1,876 (100.0)	22 (1.2)	178 (9.5)	304 (16.2)	385 (20.5)	568 (30.0)	421 (22.4)
광업	84 (100.0)	0	15 (17.9)	29 (34.5)	23 (27.4)	15 (17.9)	1 (1.2)
제조업	2,782 (100.0)	139 (5.0)	1,022 (36.7)	906 (32.6)	483 (17.4)	200 (7.2)	33 (1.2)
전기·가스·수도사업	51 (100.0)	0	10 (19.6)	24 (47.1)	14 (27.5)	5 (9.8)	0
건설업	1,029 (100.0)	10 (1.0)	181 (17.6)	358 (34.8)	280 (27.2)	167 (16.2)	34 (3.3)
도·소매·음식·숙박업	1,780 (100.0)	45 (2.5)	445 (25.0)	572 (32.1)	432 (24.3)	221 (12.4)	66 (3.7)
운수·창고·통신업	794 (100.0)	4 (5.0)	142 (17.9)	332 (41.8)	215 (27.1)	85 (10.7)	12 (1.5)
금융·보험·부동산업	540 (100.0)	10 (1.9)	116 (21.5)	148 (27.4)	134 (24.8)	98 (18.1)	35 (6.5)
사회·개인서비스업	1,455 (100.0)	18 (1.2)	298 (20.5)	485 (33.3)	353 (24.3)	247 (17.0)	56 (3.8)

자료 : 경제기획원, 『1989경제활동인구연보』, 1990.

주 : 4사5입한 것이므로 1,000단위 미만은 각 구성항목의 합계와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3-11〉

산업별·연령계층별 취업자 분포 (여자)

(단위 : 1,000명. %)

	총 수	20세미만	20~29세	30~39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 산업	7,125 (100.0)	362 (5.1)	1,975 (27.7)	1,677 (23.5)	1,487 (20.9)	1,085 (15.2)	540 (7.6)
농림어업	1,544 (100.0)	5 (0.3)	84 (5.4)	251 (16.3)	377 (24.4)	496 (32.1)	331 (21.4)
광업	9 (100.0)	0	2 (22.2)	1 (11.1)	3 (33.3)	2 (22.2)	0
제조업	2,059 (100.0)	178 (8.6)	758 (36.8)	532 (25.8)	348 (16.9)	175 (8.5)	70 (3.4)
전기·가스·수도사업	8 (100.0)	0	4 (50.0)	0	1 (12.5)	0	0
건설업	111 (100.0)	9 (8.1)	30 (27.0)	21 (18.9)	26 (23.4)	21 (18.9)	4 (3.6)
도·소매·음식·숙박업	1,975 (100.0)	70 (3.5)	473 (23.9)	569 (28.8)	509 (25.8)	265 (13.4)	88 (4.5)
운수·창고·통신업	73 (100.0)	9 (12.3)	41 (56.2)	14 (19.2)	6 (8.2)	3 (4.1)	1 (1.4)
금융·보험·부동산업	319 (100.0)	41 (12.9)	141 (44.2)	58 (18.2)	47 (14.7)	29 (9.1)	3 (0.9)
사회·개인서비스업	1,028 (100.0)	49 (4.8)	441 (42.9)	232 (22.6)	170 (16.5)	95 (9.2)	42 (4.1)

자료 및 주 : 〈표 3-10〉과 같음.

금융·보험·부동산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에서는 남자 노동력의 평균적 연령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20대~40대의 노동력이 각각 전체의 74%와 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에서 여자 취업자의 경우를 보면 농림어업에서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의 여성취업자는 50대가 32%, 60대가 21%, 40대가 24%로서 40대 이상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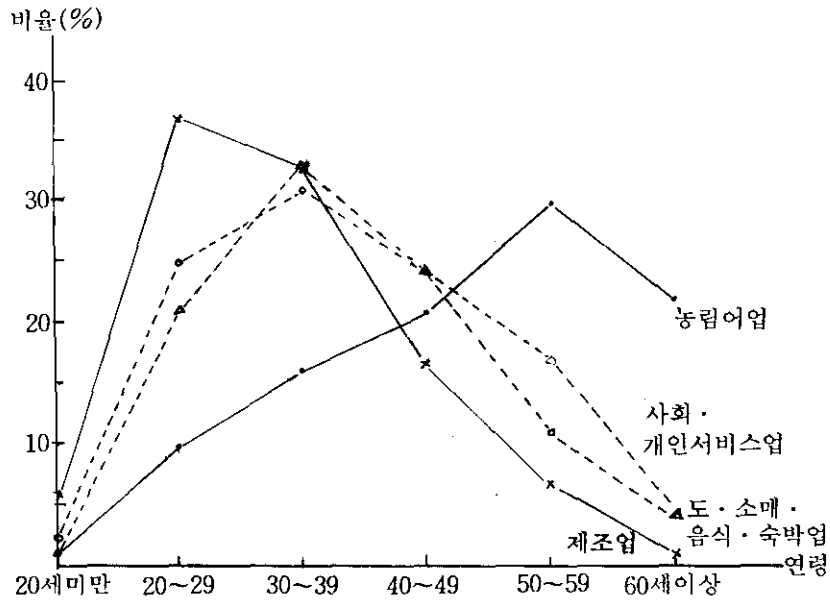
젊은 여자 노동력의 구성비율이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부동산업이다. 여기서는 20대 미만 13%, 20대 44%, 30대 18%, 40대 15%로서 30대이하가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젊은 여자 노동력의 비율이 높고, 절대수에 있어서는 젊은 여자 노동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이다. 여기서는 20대가 37%로서 가장 많고, 30대 26%, 40대 17%로서 이들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50~59세 계층이 20세 미만 계층과 거의 같은 비중인 9%를 나타내고 있어 중년 이상인 가정주부의 제조업 취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젊은 여자 노동력의 구성비가 높은 산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이다. 여기서는 20대가 43%, 30대 23%, 40대 17%로서 이들이 82%를 차지한다. 제조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여자 노동력이 취업하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20대 24%, 30대 29%, 40대 26%, 50대 13%로서 각 연령계층의 취업자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산업의 여성취업자 분포가 전체 여성취업자의 분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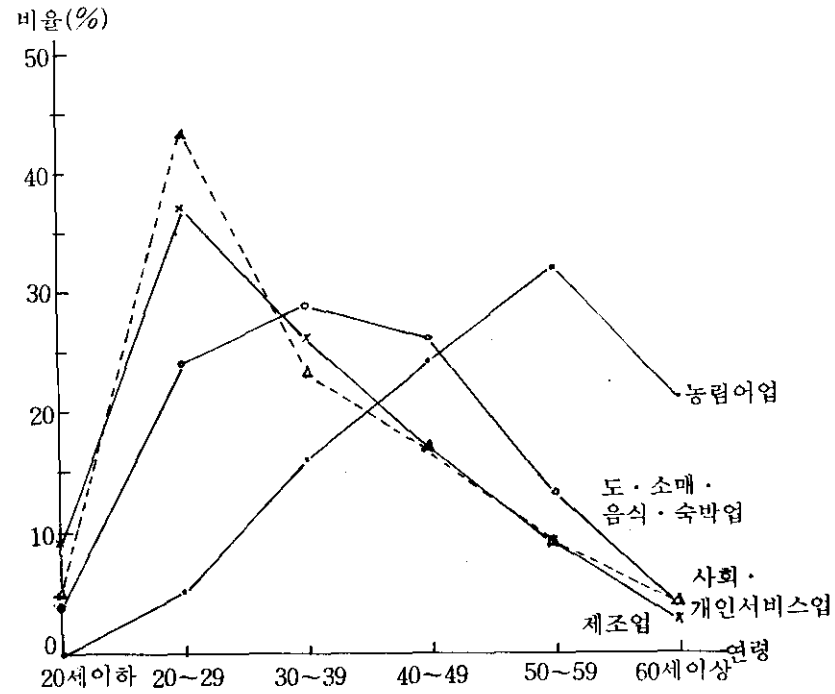
앞에서 본 주요 직종별 남자 및 여자 연령계층별 취업자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림 3-2〉 및 〈그림 3-3〉과 같다.

노동력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향은 〈표 3-12〉에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1963년에는 경제활동 인구의 65.5%가 남자였으나 1989년에는 그 비율이 59.6%로 약 6% 포인트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여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34.5%에서 40.4%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3-2〉 남자의 연령계층별 취업자 비율



〈그림 3-3〉 여자의 연령계층별 취업자 비율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자 경제활동인구는 어떤 속성의 노동력이며, 어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가? 먼저 여자 취업자의 가정내 지위를 보면 <표 3-13>과 같다. 즉 여자 취업자의 18.3%는 가구주, 56.4%는 배우자가 있는 주부, 14.0%는 자녀, 11.4%는 기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자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분포 상태는 <표 3-14>와 <표 3-15>에서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여자 취업자는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표 3-12>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구성

(단위 : 1,000명, %)

	총 수	남 자	여 자
1963	8,343(100.0)	5,462(65.5)	2,881(34.5)
1965	8,859(100.0)	5,808(65.6)	3,051(34.4)
1970	10,199(100.0)	6,516(63.9)	3,683(36.1)
1975	12,340(100.0)	7,884(63.9)	4,456(36.1)
1980	14,454(100.0)	9,020(62.4)	5,435(37.6)
1985	15,554(100.0)	9,585(61.6)	5,969(38.4)
1989	17,975(100.0)	10,716(59.6)	7,259(40.0)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표 3-13> 여자 취업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1,000명, %)

	총 수	가구주	배우자	자녀	기타
인원	5,610	1,027	3,163	783	637
비율	100.0	18.3	56.4	14.0	11.4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특별조사』, 1987.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집중해 있으며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직과 농·림 어업직 및 판매직에서 여자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4〉 여자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와 구성비

(단위 : 1,000명, %)

산 업	총 수	여 자	비 율
전 산 업	17,515	7,125	40.7
농·림·어업	3,420	1,544	45.2
광 업	93	9	9.7
제 조 업	4,841	2,059	42.5
전기·가스·수도사업	59	8	13.6
건 설 업	1,140	111	9.7
도·소매·음식·숙박업	3,755	1,975	52.6
운수·창고·통신업	867	73	8.4
금융·보험·사업서비스	859	319	37.1
사회·개인서비스업	2,483	1,028	41.4

자료 : 경제기획원 『1989 경제활동 인구연보』, 1990.

주 : 비율은 총수에 대한 여자의 비율임.

〈표 3-15〉 여자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와 구성비

(단위 : 1,000명, %)

직 업	총 수	여 자	비 율
전 직 업	17,515	7,125	40.7
전문기술직	1,204	488	40.5
행정관리직	248	11	4.4
사 무 직	2,180	849	38.9
판 매 직	2,568	1,211	47.2
서 비 스 직	1,883	1,154	61.3
농·림·수산직	3,388	1,536	45.3
생 산 직	6,046	1,876	31.0

자료 및 주 : 〈표 3-14〉와 같음

IV. 고 학 력 화

해방후 우리나라의 노동력 구성에서 가장 괄목할 변화는 노동력의 고학력화이다. <표 3-16>을 보면 남자 취업자의 경우 1960년에는 국졸 이하 80%, 중졸 9%, 고졸 8%, 대졸이 3%의 분포로서 국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1989년에 오면 각각 22%, 20%, 41%, 1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고졸 취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기간중 각 학력별 취업자의 변동 상황을 보면, 국졸은 1960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1,683천명 (43%) 이 감소하고 중졸은 4.6배, 고졸은 10.9배, 대졸은 11.6배 증가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학력이 향상된 가운데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증가율이 더욱 높게

<표 3-16> 학력별 취업자 (남자)

(단위 : 1,000명, %)

	총 수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60	5,006 (100.0)	3,986 (79.5)	454 (9.1)	392 (7.8)	157 (3.1)
1970	6,578 (100.0)	3,854 (58.6)	2,155 ¹⁾ (32.8)		568 (8.6)
1980	8,044 (100.0)	3,262 (40.6)	3,928 ²⁾ (48.8)		854 (10.6)
1989	10,391 (100.0)	2,303 (22.2)	2,072 (19.9)	4,262 (41.0)	1,754 (16.9)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조사보고』, 1960,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 1970 및 1980,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9.

주 : 1) 중·고등학교 졸업자임.

2) 1960년 國勢調査에서는 수학년만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를 학력으로 환산하였음.

3) 총수에는 학력미상 취업자가 포함되어 있음.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의 고학력화 현상은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7〉을 보면 1960년 여자 취업자의 학력은 국졸 이하 95%, 중졸 3%, 고졸 2%, 대졸은 불과 0.2%로서 국졸 이하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것이 1989년에 와서는 각각 42%, 20%, 30%, 8%의 분포로 바뀌었다. 1989년에도 국졸이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중졸과 고졸을 합한 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여자 노동력도 고학력화가 진척되었다.

1960년~1989년 사이에 각 학력별 여자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면 국졸이하 1.6배, 중졸 26.0배, 고졸 51.8배, 대졸 67.4배로 나타난다. 즉 여기서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대졸 취업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졸의 증가율이 높으며, 이들 노동력은 50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 현재 각 학력별 취업자들이 산업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면 남자의 경우 〈표 3-18〉과 같다. 여기서 보면 국졸이하의 절대수에 있어서는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 비중에서보면 농림어업,

〈표 3-17〉

학력별 취업자 (여자)

(단위 : 1,000명, %)

	총 수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1960	2,022	1,906	56	41	9
	(100.0)	(94.3)	(2.8)	(2.0)	(0.4)
1970	3,575	2,990	529 ¹⁾		55
	(100.0)	(83.6)	(14.8)		(1.5)
1980	4,638	2,963	1,532 ¹⁾		143
	(100.0)	(63.9)	(33.0)		(3.1)
1989	7,125	3,008	1,456	2,122	539
	(100.0)	(42.2)	(20.4)	(29.8)	(7.6)

자료 및 주 : 〈표 3-16〉과 같음.

광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중졸 취업자는 절대수에 있어서는 제조업, 농림어업, 건설업에 다수 분포되어 있으나 상대적 비중에서 보면 광업, 군수·창고·통신업, 건설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

고졸 남자취업자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회·개인서비스업이다. 상대적 비중에서는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의 순으로 고졸취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는 절대수에 있어서는 사회·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다수 분포되어 있으나 상대적 비중면에서 보면 사회·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3-18〉 학력별·산업별 취업자 분포 (남자)

(단위 : 1,000명, %)

	계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 졸
전 산 업	10,392(100.0)	2,304(22.2)	2,072(19.9)	4,262(41.0)	1,752(16.9)
농림어업	1,876(100.0)	1,163(62.0)	347(18.5)	325(17.3)	40(2.1)
광 업	85(100.0)	33(38.8)	24(28.2)	24(28.2)	1(1.2)
제 조 업	2,782(100.0)	328(11.8)	647(23.3)	1,366(49.1)	442(15.9)
전기·가스·수도사업	51(100.0)	3(5.9)	4(7.8)	29(56.9)	15(29.4)
건 설 업	1,029(100.0)	279(27.1)	264(25.7)	371(36.1)	113(11.0)
도·소매·음식·숙박업	1,780(100.0)	242(13.6)	340(19.1)	872(49.0)	325(18.3)
운수·창고·통신업	794(100.0)	88(11.1)	212(26.7)	407(51.3)	87(11.0)
금융·보험·부동산업	540(100.0)	43(8.0)	62(11.5)	262(48.5)	174(32.2)
사회·개인서비스업	1,455(100.0)	125(8.6)	172(11.8)	606(41.6)	552(37.9)

자료 : 경제기획원, 『1989 경제활동인구연보』, 1990.

여자취업자의 학력별, 산업별 분포는 <표 3-19>와 같다. 국졸이하의 경우, 절대수에 있어서는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의 순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전체 취업자수는 제조업이 도·소매·음식·숙박업보다 많지만, 국졸이하 취업자는 제조업이 약간 적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는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졸의 경우는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에 다수 취업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는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이 평균보다 높은 분포비율을 나타낸다.

고졸의 경우에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 사회·개인서비스업에 다수의 취업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 비중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보험·부동산업,

<표 3-19> 학력별·산업별 취업자 분포 (여자)

(단위 : 1,000명,%)

	계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 졸
전 산 업	7,126(100.0)	3,009(42.2)	1,457(20.4)	2,123(29.8)	538(7.5)
농 립 어 업	1,545(100.0)	1,329(86.0)	156(10.1)	57(3.7)	3(0.2)
광 업	9(100.0)	6(66.7)	0	2(22.2)	1(11.1)
제 조 업	2,059(100.0)	681(33.1)	624(30.3)	695(33.8)	58(2.8)
전기·가스·수도사업	7(100.0)	1(14.3)	1(14.3)	5(71.4)	1(14.3)
건 설 업	111(100.0)	53(47.7)	14(12.6)	39(35.1)	4(3.6)
도·소매·음식·숙박업	1,975(100.0)	686(34.7)	477(24.2)	716(36.3)	97(4.9)
운수·창고·통신업	73(100.0)	8(11.0)	6(8.2)	48(65.8)	10(13.7)
금융·보험·부동산업	319(100.0)	39(12.2)	42(13.2)	211(66.1)	28(8.8)
사회·개인서비스업	1,028(100.0)	206(20.0)	137(13.3)	350(34.0)	336(32.7)

자료 : <표 3-18>과 같음.

운수·창고·통신업 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졸 취업자는 대부분 사회·개인 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에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 비중은 사회·개인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는 학력에 따른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자. <표 3-20>은 남자 취업자는 학력별, 직업별 분포를 나타낸다. 먼저 국졸이하 취업자의 경우 절대수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업과 생산직이 다수를 차지하며, 상대적 비중면에서는 농림수산업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졸 취업자는 생산직, 농림수산업, 판매직에 다수 취업해 있으며, 상대적 비중면에서도 이들 세 부문의 중졸 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졸자는 생산직, 판매직, 사무직에 다수 취업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는 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 생산직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전문기술직, 판매직에 다수 취업자가 분포되어 있으나, 상대적 비중면에서 보면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

<표 3-20>

학력별·직업별 취업자 (남자)

(단위 : 1,000명. %)

	계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 졸
전 직 업	10,392(100.0)	2,302(22.2)	2,072(19.9)	4,264(41.0)	1,755(16.9)
전문기술직	716(100.0)	13(1.8)	22(3.1)	185(25.8)	496(69.3)
행정관리직	236(100.0)	10(4.2)	17(7.2)	82(34.7)	128(54.2)
사 무 직	1,332(100.0)	22(16.5)	55(4.1)	648(48.6)	607(45.6)
판 매 직	1,357(100.0)	197(14.5)	249(18.3)	669(49.3)	242(17.8)
서 비 스 직	729(100.0)	121(16.6)	176(24.1)	355(48.7)	77(10.6)
농림수산업	1,852(100.0)	1,162(62.7)	341(18.4)	315(17.0)	34(1.8)
생 산 직	4,170(100.0)	777(18.6)	1,212(29.1)	2,010(48.2)	171(4.1)

자료 : <표 3-18>과 같음

다.

여자 취업자의 학력별, 직업별 분포는 <표 3-21>에 나타나 있다. 먼저 국졸이하의 경우를 보면 취업자의 대부분이 농림수산업, 생산직, 서비스직, 판매직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농림·수산업과 생산직에 전체의 2/3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 비중면에서는 농림수산업이 86%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직, 생산직, 판매직의 순이다. 중졸의 경우 생산직, 서비스직, 판매직에 다수 분포되어 이들 세부분의 취업자가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상대적 비중면에서도 위 세 부분의 중졸자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졸의 경우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의 비중이 높아 이들 세 부분 취업자가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그러나 비유면에서는 사무직, 행정관리직, 판매직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사무직에서는 고졸이 82%의 다수를 차지한다. 대졸자의 경우에는 전문기술직, 사무직에 다수의 취업자가 분포되어 있어 이 두 부분의 취업자가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상대적 비중면에서는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

<표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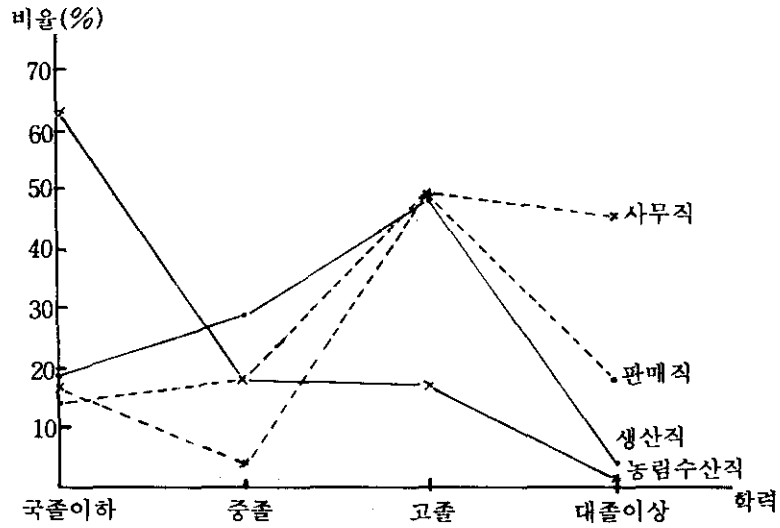
학력별·직업별 취업자 (여자)

(단위 : 1,00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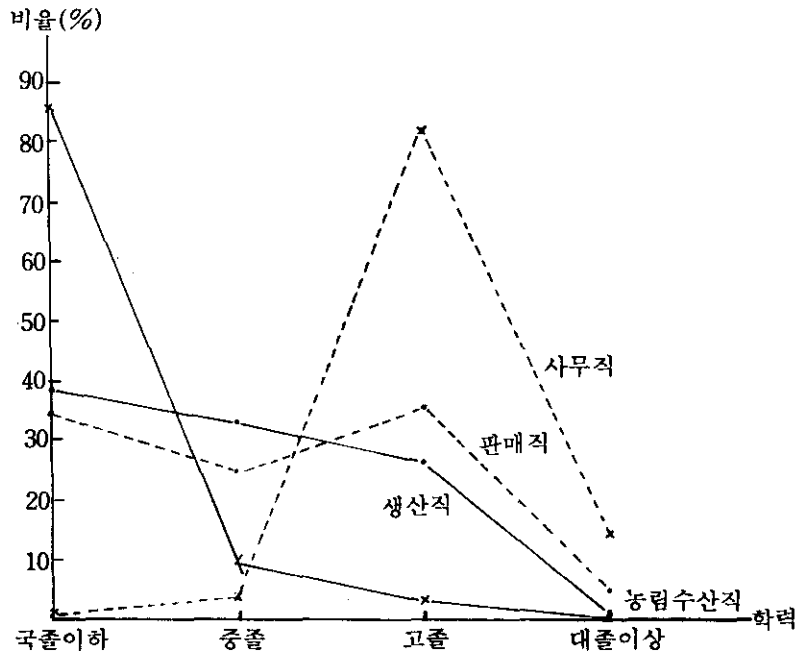
	계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 졸
전 직 업	7126(100.0)	3,010(42.2)	1,457(20.4)	2,124(29.8)	539(7.5)
전문기술직	488(100.0)	29(5.9)	13(2.7)	123(25.2)	325(66.6)
행정관리직	11(100.0)	2(18.2)	2(18.2)	4(36.4)	3(27.3)
사 무 직	849(100.0)	6(0.7)	32(3.8)	694(81.7)	117(13.8)
판 매 직	1,211(100.0)	423(34.9)	301(24.9)	435(35.9)	53(4.4)
서 비 스 직	1,155(100.0)	492(42.6)	329(28.5)	313(27.1)	21(1.8)
농림수산업	1,536(100.0)	1,323(86.1)	156(10.2)	55(3.6)	3(0.2)
생 산 직	1,876(100.0)	735(39.2)	624(33.3)	500(26.7)	17(0.9)

자료 : <표 3-18>과 같음.

<그림 3-4> 남자 취업자의 직업별 학력 분포



<그림 3-5> 여자 취업자의 직업별 학력 분포



고 있다 (<그림 3-4> 및 <그림 3-5>참조).

<표 3-23>은 대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 보면 남자는 사무직이 35%로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그 다음으로 전문기술직 28%, 판매직 14%, 생산직 10%, 행정관리직 7%의 순이며 농림수산업이 2%로서 가장 낮다. 여자의 경우는 전문기술직이 60%로서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 22%, 판매직 10%, 농·림·수산업 6%, 서비스직 4%이며, 생산직은 불과 3%, 행정관리직은 0.6% 밖에 안 된다.

1989년 현재의 대졸자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표 3-22>와 같다. 이를 보면 남자의 사회·개인 서비스업 취업자가 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25%, 도·소매·음식·숙박업 19%, 금융·보험·부동산업 10%의 순이며 광업 취업자가 0.2%로 가장 낮다. 여자인 경우는 과반수인 63%가 사회·개인서비스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18%, 제조업 11%, 금융·보험·부동산업 5%의 순이다.

<표 3-22>

대졸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단위 : 1,000, %)

	총수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광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회·개인 서비스업
총수	2,292 (100.0)	43 (1.9)	5 (0.2)	500 (21.8)	16 (0.7)	119 (5.2)	421 (18.4)	99 (4.3)	202 (8.8)	887 (38.7)
남자	1,752 (100.0)	40 (2.3)	4 (0.2)	442 (25.2)	15 (0.9)	113 (6.4)	325 (18.6)	87 (5.0)	174 (9.9)	552 (31.5)
여자	538 (100.0)	3 (0.6)	1 (0.2)	58 (10.8)	1 (0.2)	4 (0.7)	97 (18.0)	10 (1.9)	28 (5.2)	336 (62.5)

자료 : 통계기획원, 『1989 경제활동인구연보』, 1990.

주 : 100명이하는 4사5입 하였으므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23>

대졸 취업자 직업별 분포

(단위 : 1,000명, %)

	총수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업	생산직
총수	2,294 (100.0)	819 (35.7)	131 (5.7)	724 (31.6)	295 (12.9)	99 (4.3)	37 (1.6)	189 (8.2)
남자	1,755 (100.0)	496 (28.3)	128 (7.3)	607 (34.6)	242 (13.8)	77 (4.4)	34 (1.9)	171 (9.7)
여자	539 (100.0)	325 (60.3)	3 (0.6)	117 (21.7)	53 (9.8)	21 (3.9)	3 (5.6)	17 (3.2)

자료 및 주 : <표 3-22>와 같음.

V. 노동력의 질과 기능의 고도화

앞에서 본 것처럼 교육의 확대에 의해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진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노동력의 기능고도화가 진척되기도 했다.

1986년에 실시된 경제기획원의 고용구조 특별조사에서는 취업자중 현 직장에 취업하기 이전에 사설학원, 공공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업체부설 직업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취업자를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집계된 직업훈련을 이수한 취업자는 1,12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15,446천명의 7.3%에 달한다.

<표 3-24>는 직업훈련을 이수한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나타낸다.

<표 3-24> 직업훈련을 이수한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단위 : 1,000명, %)

	계	남자	여자
전산업	1,122(100.0)	836(100.0)	259(100.0)
농림어업	23 (2.0)	22 (2.6)	1 (0.4)
광업	18 (1.6)	17 (2.0)	0
제조업	282(25.1)	226(27.0)	56(21.6)
전기·가스·수도업	7 (0.6)	6 (0.7)	0
건설업	71 (6.3)	69 (8.3)	2 (7.7)
도·소매·음식·숙박업	100 (8.9)	75 (9.0)	2.5 (9.7)
운수·창고·통신업	236(21.0)	224(26.8)	12 (4.6)
금융·보험·용역업	72 (6.4)	47 (5.6)	26(10.0)
사회·개인서비스업	313(27.9)	117(14.0)	136(52.5)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 특별조사결과보고」, 1987.

주 : 100이하는 4사5입하였으므로 남자와 여자의 합계가 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를 보면, 남자 이수자의 경우 제조업에 가장 많은 27.0%의 취업자가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이 운수·창고·통신업의 26.8%, 사회·개인서비스업의 14% 순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사회·개인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53%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22%, 금융·보험·용역업 10%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어떤 종류의 취업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위해 직업훈련을 이수한 취업자가 집중된 주요 산업(중분류)과 직업(중분류)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보았다. <표 3-25>를 보면 남자 취업자가 집중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사회서비스업(주로 학교 및 의료기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주로 전기제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이발소, 미장원, 사진촬영업)의 순이며, 여자의 경우는 사회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

이를 중분류 직업별로 보면 남자는 운전수, 기계공, 전기·전자공, 연판공, 교원 등의 직종에서 주로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취업하며, 여자의 경우는 미용사, 간호원 등의

<표 3-25> 직업훈련을 이수한 취업자가 집중된 주요 산업 (중분류)

(단위 : 1,000명)

남 자		여 자	
산업	인원	산업	인원
운수 및 창고업	212	사회서비스업	65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97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58
사회서비스업	67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29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50	소매업	14
공공행정 및 보국방	49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12
종합건설업	47	보험업	12
섬유,의복및가죽산업	44	금융업	10

자료 : <표 3-24>와 같음.

서비스직종사자가 다수이며, 제조업 종사자는 약 2만명이 취업한 봉제공이 유일한 직 종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 직업훈련국에서 관장하는 광공업 취업(예정)자 대상의 기술·기 능훈련 이수현황을 통해서 광공업부문 노동력의 기술·기능의 향상 정도를 엿볼 수도 있다. 노동부에서는 1988년 현재 공공직업훈련소 75개소, 사업장내 직업훈련소 107개 소, 인정직업훈련소 80개소, 합계 262개 직업훈련소와, 그 밖의 技能大學, 職業訓練大 學 등의 직업 훈련기관을 통해 노동력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¹⁾

1988년의 경우 이러한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한 인원을 주요 과정별로 보면, 기능공과정이 49,248명(73.4%), 기능장과정이 267명(0.4%), 훈련과정이 4,552명(6.

〈표 3-26〉 직업훈련을 이수한 취업자가 집중된 주요 직업(중분류)

(단위 : 1,000명)

남 자		여 자	
직업	인원	직업	인원
수송장비 운전자	268	이발사, 미용사, 및 관련 종사자	55
기계설비공, 조립공 및 정밀기구제작공	42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	25
전기설비공 및 전기전자공	39	의복제조공, 재봉공	20
연관공, 용접공, 판금공	31	가구내장공 및 관련종사자	
교원	31	교원	18
건축·공학 기술자	22	저작가, 조각가, 화가	12
판매원, 점원 및 관련직 종사자	10	사진사 작곡가	

자료 : 〈표 3-24〉와 같음.

1)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9, p.362.

8%), 취업근로자 훈련과정이 12,936명(19.3%)으로서 훈련의 중심은 기능공 훈련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²⁾.

〈표 3-27〉 기능공 양성과정 훈련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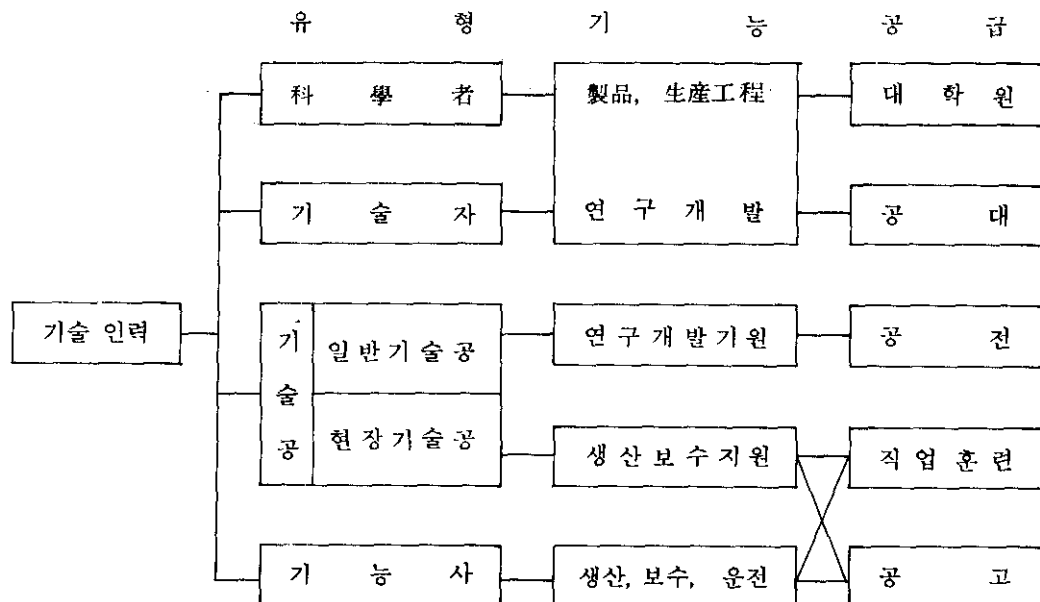
(단위 : 1,000명)

	총 계	1967~70	1971~75	1976~80	1981~85	1986~88
계	1,355	87	248	537	302	181
공공직업훈련기관	449	31	112	114	125	67
사업내직업훈련기관	813	55	136	397	144	81
인정직업훈련기관	91	-	-	25	33	33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주 : 100단위 이하는 4사5입하였으므로 각 훈련기관별 훈련인원을 합한 것이 합계와 다를 수 있음.

〈표 3-28〉 기술인력 유형별 공급체계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1989. p.19.

2) 앞의 책, p.362.

노동부 주관의 기술·기능인력에 대한 훈련은 1967년에 직업훈련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3-27>에서 보듯이 1967~88년까지 각 훈련기관의 기능공 훈련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1,355천명에 달한다. 훈련기관별 이수자수를 보면 사업내 직업훈련기관 이수자가 60%인 813천명, 공공직업훈련기관 이수자가 33.1%인 449천명, 인정직업훈련기관 이수자가 6.7%인 91천명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수자의 61.9%인 839천명이 1976~85년의 10년사이에 훈련을 이수하여, 이 기간중에 가장 활발한 훈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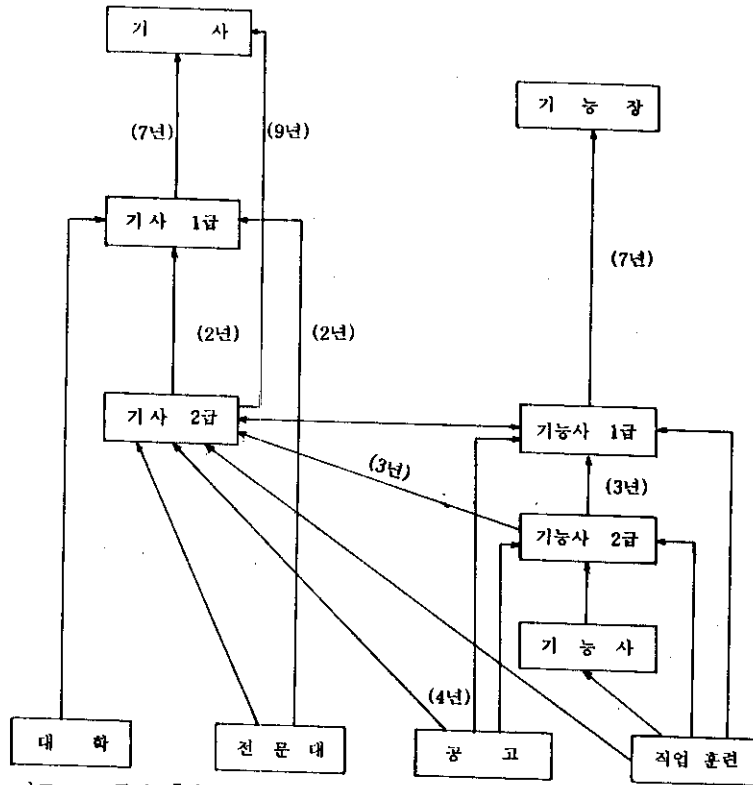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기술인력은 기술자와 기능사로 대변된다. <표 3-28>에서 보듯이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의 대학졸업생이 과학기술자나 기술공(technician)이 되는 데 반하여 직업훈련 이수자와 공업계고교 졸업자들은 기능사(craftman)로서 생산현장의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직업분류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자와 기술공은 전문기술직, 기능사는 생산직으로 분류되어 구분되고 있다.

이공계통 학교와 직업훈련기관에서 배출된 기술·기능인력은 경력이 쌓이고 각 단계의 검정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그 기술·기능의 정도가 높아져 간다. <표 3-29>에서 보듯이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대학졸업후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 7년이 경과한 후에는 검정에 의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전문대 졸업자는 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 2년이 경과하면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며, 다시 7년후에는 대학졸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고 졸업자와 직업훈련과정 이수자는 기능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3년이 있으면 기능사1급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사1급으로 7년의 경력이 있으면 이 부문의 최고 자격인 기능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능인력의 각급 자격은 해당 부문의 기능에 대한 숙달 정도를 나타낸다. <표 3-30>에서 보듯이 기능사보는 단능공, 기능사2급은 준(準)다능공, 기능사1급은 다능공으로 간주되며, 기능장은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처럼 그 분야 기능인의 최고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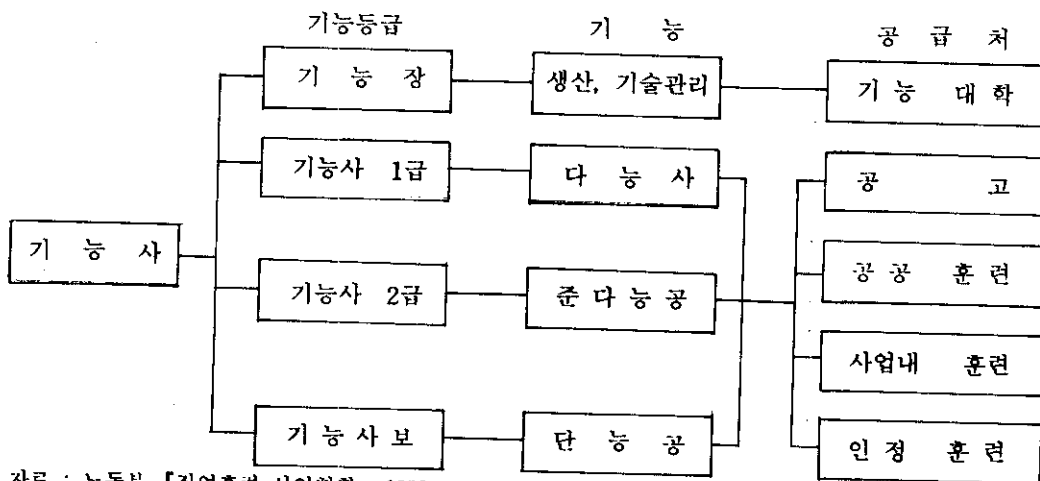
〈표 3-29〉 기술·기능인력 등급과 자격검정체계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 사업현황』, p.29.

주 : ()는 실무경력 연수임.

〈표 3-30〉 기능사의 등급별 주요 기능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 사업현황』, 1989, p.19.

으로서 탁월한 기능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로서 2년제 대학인 창원대의 기능 대학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³⁾.

1988년까지의 기술·기술인력에 대한 기능검정합격자는 <표 3-31>과 같다. 이를 보면 기술사 약 5천명, 기사1급 약 186천명, 기술2급 295천명으로 기술계 자격검정 합격자는 약 486천명에 이른다. 기능계 인력은 기능장 314명, 기능사1급 72천명, 기능사 2급 1,384명, 기능사보 312천명으로서 총 1,768천명에 이른다.

<표 3-31>

기능자격검정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기술계				기능계				
	계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계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
계	485,728	5,233	185,995	294,497	1,767,915	314	72,085	1,383,595	311,921
1978년이전	157,639	2,419	45,434	109,786	478,790	0	28,624	316,365	133,801
1979	39,115	236	9,094	29,785	125,900	0	3,333	94,764	27,803
1980	31,680	242	8,683	22,755	107,035	0	3,952	75,385	27,698
1981	36,891	369	12,940	23,582	97,393	0	4,456	71,043	21,894
1982	51,465	598	19,422	31,445	109,911	45	2,750	84,684	22,432
1983	44,934	107	23,100	21,727	112,211	46	4,122	88,514	19,529
1984	18,620	274	8,927	9,419	136,790	23	3,796	117,985	14,986
1985	24,710	227	14,194	10,289	143,873	23	4,390	125,443	14,017
1986	26,102	234	13,762	12,106	149,773	23	5,031	133,355	11,364
1987	27,291	284	16,705	10,302	157,874	64	5,015	143,351	9,444
1988	27,278	243	13,734	13,301	148,365	90	6,616	132,706	8,953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 사업현황』, 1989, pp.158-161

3)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한국직업훈련발전사』, 1989, pp.321-323.

<표 3-32>

등급별·분야별 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분야	계	기 술 계			기 능 계					기능사보
		소 계	기능사	기사1급	기사2급	소 계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계	2,253,640	485,725	5,233	185,995	294,497	1,767,915	314	72,085	1,383,595	311,921
기계	777,152	52,164	471	14,065	37,628	724,988	223	46,122	545,057	133,586
금속	54,051	9,218	93	3,928	5,197	44,833	36	1,738	39,395	3,664
화학	143,127	17,120	232	5,242	11,646	126,007	-	8,515	116,119	1,373
전기	224,708	55,291	168	16,615	3,508	169,417	35	4,200	140,965	24,217
전자	154,295	16,569	30	5,143	11,396	137,726	16	3,100	105,802	28,808
통신	203,595	23,215	30	4,749	18,436	180,380	-	444	173,221	6,715
조선	4,951	2,182	71	953	1,158	2,769	-	6	2,437	326
항공	2,896	1,051	11	638	402	1,845	-	296	1,549	-
토목	86,667	36,510	1,830	20,518	14,162	50,157	-	1,205	45,116	3,836
건축	186,307	52,451	1,305	24,462	26,684	133,856	-	681	71,077	62,098
유선	25,464	4,180	67	1,639	2,474	21,284	-	125	13,711	7,448
광업	33,147	1,879	85	972	822	31,268	2	42	25,603	5,621
정보처리	37,903	23,663	63	9,777	13,823	14,240	-	573	13,293	374
에너지	7,983	7,983	76	7,821	86	-	-	-	-	-
국토개발	25,317	25,317	135	12,130	13,052	-	-	-	-	-
해양	3,364	1,948	12	652	1,284	1,416	-	55	1,240	121
안전관리	74,639	74,639	98	25,081	49,460	-	-	-	-	-
생산관리	31,729	31,729	38	14,809	16,882	-	-	-	-	-
산업응용	148,620	20,891	299	5,834	14,758	127,729	-	4,983	89,010	33,734
환경관리	27,716	27,716	113	10,964	16,639	-	-	-	-	-
교통	9	9	6	3	-	-	-	-	-	-

자료 : 노동부, 『직업관련 사업현황』, 1989, pp. 164-165

또 연도별로 보면 기술계 인력의 자격증은 70년대 후반기~80년대 초반에, 기능계 인력의 경우는 80년대 후반기에 자격증 취득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기술자격증 취득자를 각 분야별로 보면 <표 3-22>와 같다. 여기서 보면 기술계 자격취득자는 안전관리 75천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 55천명, 기계와 건축이 각각 52천명, 토목 31천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기능계 자격취득자는 기계분야가 725천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통신 180천명, 전기 169천명, 전자 138천명, 건축134명, 환경관리 128천명 화공 126천명 등이 자격취득자 십만명 이상인 분야에 해당한다.

이상의 기술자격증 취득자 현황에서 볼 때 화공 등 소재산업과 기계, 전기, 전자등 조립금속산업의 자격증 취득이 특히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그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노동공급의 변화와 연관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 직업별·산업별 취업구조 변화

해방후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진전됨에 따라서 취업자의 직업별·산업별 구성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반영하는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노동력의 고학력화 및 기술고도화와 동시에 이루어진 취업구조의 변화이다.

〈표 3-33〉은 1960년 이후 우리나라 직업별 취업자수와 그 구성비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1960년 당시 농림어업직이 4,601천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생산직이 13%, 여타 직종은 22%에 불과하였다. 그후 공업화의 진전으로 농림어업직 비율은 감소하고 생산직 및 사무직의 증가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이 되면 농림어업직 종사자는 51%로 감소하나, 생산직은 22%, 사무직은 6%로 증가한다.

1980년에는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38%로 감소하지만 생산직은 28%, 판매직은 12%, 사무직은 10%로서 이들 부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86년에는 농림어업직은 28%로서 생산직 30%보다 낮아지고, 판매직도 15%에 달하게 된다. 1989년에는 생산직이 35%로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직은 19%로 크게 낮아졌으며, 사무직과 서비스직도 각각 12%, 11%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3-34〉는 각 직업별 취업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낸다. 1960~89년까지의 변화율을 보면 사무직이 가장 큰 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문기술직 7.0%, 생산직 6.7%, 판매직과 서비스직이 각각 5.3%, 기술관리직 3.6%이며 농림어업직이 10%로 유일하게 취업자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60년대에는 사무직, 생산직, 전문기술직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9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취업자 증가경향이 둔화되고 있다. 1980년대 특히

<표 3-33>

직업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1,000명, %)

		총수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60	취업자	7,036	166	90	186	582	424	4,601	929
	구성비	100.0	2.4	1.3	2.6	8.3	6.0	65.4	13.2
1966	취업자	7,963	224	69	340	849	426	4,525	1,528
	구성비	100.0	2.8	0.9	4.3	10.7	5.4	56.8	19.2
1970	취업자	10,153	323	96	593	1,028	679	5,148	2,198
	구성비	100.0	3.2	0.9	5.8	10.1	6.7	50.7	21.6
1975	취업자	12,682	417	102	844	1,317	816	6,190	2,891
	구성비	100.0	3.3	0.8	6.7	10.4	6.4	48.8	22.8
1980	취업자	12,682	581	134	1,203	1,531	895	4,768	3,570
	구성비	100.0	4.6	1.1	9.5	12.1	7.1	37.6	28.1
1986	취업자	15,446	901	138	1,761	2,298	1,396	4,320	4,633
	구성비	100.0	5.8	0.9	11.4	14.9	9.0	28.0	30.0
1989	취업자	17,515	1,205	248	2,180	2,568	1,883	3,388	6,046
	구성비	100.0	6.9	1.4	12.4	14.7	10.8	19.3	34.5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각 년판, 경제기획원, 『고용구조 특별조사결과보고』, 1986.
경제기획원, 『경제활동 인구연보』, 1989

주 : 총수에는 분류미상 및 분류불능 취업자가 포함되어 있음.

<표 3-34>

직업별 취업자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총수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60~66	2.1	5.1	-4.3	10.6	6.5	0.1	-0.3	8.6
1966~70	6.3	9.6	8.6	14.9	4.9	12.4	3.3	9.5
1970~75	4.5	5.2	1.2	7.3	5.1	3.7	3.8	5.6
1975~80	0.0	6.9	5.6	7.3	3.1	1.9	-5.1	4.3
1980~86	3.3	7.6	0.5	6.6	7.0	7.7	-1.6	4.4
1986~89	4.3	10.2	21.6	7.4	3.8	10.5	-7.8	9.3
1960~89	3.2	7.0	3.6	8.9	5.3	5.3	-1.0	6.7

자료 : <표 3-33>에서 계산.

그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행정관리직, 서비스직, 전문기술직 및 생산직의 증가경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의 이러한 변화는 86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호경기의 지속과 전기, 전자, 통신 등 기술집약적 산업부문이 성장한 결과로 해석된다.

1960년 이후의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는 <표 3-35>와 같다. 이를 보면 1960년에는 농림어업이 전체의 66%인 4,620천명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는 서비스업 14%, 상업(후에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용역업으로 분리됨) 8%의 순이었고 제조업 취업자는 482천명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하였다.

그후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는 절대수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산업간 취업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농림어업은 1970년이 되면 그 비중이 51%로 낮아져 1960년에 비해 15% 포인트 감소

<표 3-35>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1,000명, %)

		총수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용역업 ¹⁾	서비 스업
1960	취업자수	7,036	4,620	49	482	122	15	590	149	-	948
	구 성 비	100.0	65.7	0.7	6.9	1.7	0.2	8.4	2.1	-	13.5
1966	취업자수	7,963	4,553	91	958	191	25	837	166	-	1,141
	구 성 비	100.0	57.2	1.1	12.0	2.4	0.3	10.5	2.1	-	14.3
1970	취업자수	10,153	5,157	100	1,448	462	31	1,280	329	97	1,222
	구 성 비	100.0	50.8	1.0	14.3	4.6	0.3	12.6	3.2	1.0	12.0
1975	취업자수	12,682	6,208	93	2,211	484	35	1,694	432	151	1,373
	구 성 비	100.0	49.0	0.7	17.4	3.8	0.3	13.4	3.4	1.2	10.8
1980	취업자수	12,682	4,795	91	2,797	664	36	2,059	551	286	1,403
	구 성 비	100.0	37.8	0.7	22.1	5.2	0.3	16.2	4.3	2.3	11.1
1986	취업자수	15,446	4,353	120	3,595	992	54	3,147	745	545	1,895
	구 성 비	100.0	28.2	0.8	23.3	6.4	0.3	20.4	4.8	3.5	12.3
1989	취업자수	17,515	3,420	93	4,841	1,140	59	3,755	867	859	2,483
	구 성 비	100.0	19.5	0.5	27.6	6.5	0.3	21.4	5.0	4.9	14.2

자료 : <표 3-33>과 같음.

주 : 1) 1960년과 1966년에는 금융·보험·용역업이 도·소매·음식·숙박업에 포함되어 있음.

2) 총수에는 분류불능 및 분류미상 취업자가 포함되어 있음.

한다. 1980년에 38%, 1989년에는 20%로 계속 비중이 감소하여 이제 제조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보다 훨씬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1970년 14%, 1980년 22%, 1989년에는 27%로서 지금까지 계속 비중이 높아져 왔으며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용역업 취업자도 대체로 제조업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각 산업별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표 3-36>과 같다. 이를 보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용역업으로 12.2%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제조업은 8.3%로서 2위이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순이다.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제조업은 1960년대~70년대 상반기까지 증가율이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⁴⁾ 이는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저하를 반영하는 것

<표 3-3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기간	총수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용역업	서비스업
1960~66	2.1	-0.2	10.9	12.1	7.8	8.9	6.0	1.8	-	3.11
1966~70	6.3	3.2	2.4	10.9	24.7	5.5	11.2	18.7	-	1.7
1970~75	4.5	3.8	-1.4	8.8	0.9	2.5	5.8	5.6	9.3	2.4
1975~80	0.0	-5.0	-0.4	4.8	6.5	0.6	4.0	5.0	13.6	4.3
1980~86	3.3	-1.6	4.7	4.3	6.9	7.0	7.3	5.2	11.3	5.1
1986~89	4.3	-6.7	-8.1	10.4	4.7	3.0	6.1	5.2	16.4	9.4
1960~89	3.2	-1.0	2.2	8.3	8.0	4.8	5.8 ¹⁾	6.3	12.2 ¹⁾	3.4

자료 : <표 3-35>에서 계산.

주 : 1) 1970~89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임.

4) 1986~89년간의 증가율은 3저 호황에 따른 예외적 현상으로 생각된다.

으로 이해된다. 건설업도 1966~70년 사이에 연평균 25%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 고속도로의 건설,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주택건설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986년 이후에는 금융·보험·용역업과 서비스업 취업자가 각각 16%, 9%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구조의 서비스부문 비중 증가, 금융기관의 신설과 점포 확대에 의한 취업구조 변동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975년까지는 오히려 절대수가 증가해 왔다. 그러나 1975년 이후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이후에는 특히 감소폭이 연평균 7% 정도로 매우 커지고 있다. 광업 취업자도 1960년에 비해 절대수는 아직 많지만 1986년 이후 연평균 8%의 비율로 감소하고 있어 멀지 않아 절대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7>

산업별 국민총생산 구성비

(단위 : %)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국민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42.3	33.7	37.6	26.8	24.9	14.6	12.8	10.2
광업	0.8	1.6	2.0	1.5	1.5	1.4	1.0	0.6
제조업	10.9	12.7	17.9	20.8	26.5	29.6	30.3	31.3
전기·가스·수도업	0.6	0.8	1.3	1.6	1.3	2.1	2.8	2.4
건설업	3.5	3.9	3.4	5.5	5.1	8.3	7.7	9.7
도·소매업	15.5	16.4	16.9	18.2	19.4	13.1	12.2	11.9
운수·통신업	2.5	5.4	4.0	6.8	6.2	7.7	7.6	7.7
금융·보험·용역업	0.8	1.6	1.9	3.0	3.4	11.0	11.8	14.1
서비스업·기타	23.1	23.9	15.0	15.8	11.7	12.2	13.8	12.8

자료 : 한국은행, 『한국통계연보』, 각연도

주 : 1)1980년 이후는 신민간 소득방식(NSNA)에 의한 것이며, 산업별 국내총생산임.

2)1980년 이후에는 정부서비스 생산자는 모두 서비스업·기타에 포함되었음.

3)각연도의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1989년은 잠정치임.

이러한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는 산업별 생산활동의 비중을 반영한다. <표 3-37>을 보면 1955년에는 국민총생산의 42%는 농림어업 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반하여 제조업은 11%로서 농림어업부문의 25%수준에 불과하였다. 1965년 이후 농림어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여 1975년이 되면 그 비중은 각각 25%, 27%로 순위가 역전된다. 1989년 현재 제조업 생산의 비중은 31.3%로서 10.2%인 농림어업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나 취업자수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농림어업의 1.4배에 머물고 있다. 또 1980년 이후부터 금융·보험·용역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도 앞에서 말한 1986년 이후의 금융업의 취업자 증가를 초래한 기본 원인이라고 평가된다.

1966년 이후의 제조업내 중분류 업종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표 3-38>과 같다. 이를 보면 1966년에는 섬유·의복·가죽제조업이 364천명으로 가장 많은 38%의 비중을 차지

<표 3-38>

제조업 업종별 (중분류) 취업자 추이

(단위 : 1,000명)

	제조업계	음식 료품· 담배	섬유· 의복· 가죽	재제· 목제품· 가구	제지· 인쇄· 출판	화학· 석탄· 프라스틱	비금속· 광물 제품	1차 금속 제품	조립금속· 기계· 장비	기타제 조업 ¹⁾	
1966	취업자수	958	153	364	61	44	93	54	12	149	27
	구 성 비	100.0	16.0	38.0	6.4	4.6	9.7	5.6	1.3	15.6	2.8
1970	취업자수	1,488	177	529	92	84	130	78	30	214	112
	구 성 비	100.0	12.2	36.5	6.4	5.8	9.0	5.4	2.1	14.8	7.7
1975	취업자수	2,211	222	827	127	101	213	90	59	451	120
	구 성 비	100.0	10.0	37.4	5.7	4.6	9.6	4.1	2.7	20.4	5.4
1980	취업자수	2,797	248	950	148	158	263	121	108	681	119
	구 성 비	100.0	8.9	34.0	5.3	5.6	9.4	4.3	3.9	24.3	4.3
1986	취업자수	3,595	353	1,053	146	193	278	153	115	1,086	218
	구 성 비	100.0	9.8	29.3	4.1	5.4	7.7	4.3	3.2	30.2	6.1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각 연판.

경제기획원, 『고용구조 특별조사 결과보고』, 1986.

주 : 1)분류미상 포함.

하였으며, 다음이 음식료품·담배의 153천명이었다. 1966년에는 조립금속·기계·장비는 149천명으로 15.6%, 1차금속제품은 불과 12천명으로 1.3%에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었다.

그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취업구조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1986년의 분포를 보면 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이 1,086천명으로 가장 큰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섬유·의복·가죽제조업은 29%로서 2위의 자리로 밀려났다. 그밖에는 음식료품·담배가 10%, 화학·석탄·플라스틱이 8%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1차금속은 3%, 제재·목제품·가구는 4%로서 상대적으로 낮다.

화학·석탄·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의 4개 분야를 일단 중화학공업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 제조업에서 이들 중화학부문의 취업자 비중을 보면 1966년 32.2%에서 1970년 31.3%로 감소하였다가, 1975년 36.8%, 1980년 41.9%, 86년 45.4%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중화학부문의 취업자는 1970년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에는 1966년에 비해 12%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39〉는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을 주요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1966~70년에는 제지·인쇄·출판, 1차금속, 기타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이때 1차금속은 포항제철의 건설⁵⁾ 기타제조업은 가발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증가율의 급등현상으로 해석된다.

1970~80년 사이에는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포항제철의 확장과 제철연관산업의 발전, 자동차·전기·전자·기계등 기계와 조립금속산업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 1980년 이후에는 석유화학, 기타제조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석유화학단지의 신설·확장과 운동용구와 악기 등 기타제조업부문 취업자 증가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5) 포항제철은 1967년 10월에 기공식을 하고, 1968년 4월에 정식 회사로서 출범하였다.

제조업 취업자의 이러한 구성 변화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관찰된다. 경제기획원이 1963년에 실시한 기술인력자원조사의 결과와 노동부가 1986년에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시했던 제조업 임금실태조사는 모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여기서 직종별 근로자수를 비교해 보면 (<표 3-40>과 같다.⁶⁾ 이를보면 노무계인력은

<표 3-39>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기간	제조업계	음식료품·담배	섬유·의복·가죽	제재·목제품·가구	제지·인쇄·출판
1966~70	10.9	3.7	9.8	10.8	17.5
1970~75	8.8	4.6	9.3	6.7	3.8
1975~80	4.8	2.2	2.8	3.1	9.4
1980~86	4.3	6.1	1.7	-0.2	3.4
1966~86	6.8	4.3	5.5	4.5	7.7

기간	화학·석탄·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조립금속·기계·장비	기타 제조업
1966~70	8.7	9.6	25.7	9.5	42.7
1970~75	10.4	2.9	14.5	16.1	1.4
1975~80	4.3	6.1	12.9	8.6	-0.2
1980~86	9.3	4.0	1.1	8.1	10.6
1966~86	5.6	5.3	12.0	10.4	11.0

자료 : <표 3-38>에서 계산

<표 3-40> 제조업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단위: 1,000, %)

	총 수	기술계	노무계	사무계
1963(A)	321(100.0)	158(49.2)	132(41.1)	31(9.7)
1986(B)	2,356(100.0)	1,884(78.2)	93(3.9)	419(17.8)
증가율(B/A)	7.3배	11.7배	0.71배	13.5배

자료 : 경제기획원, 「취업기술인적자원 조사 보고」, 1963

노동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제조업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1986

주 : 기술계는 전문기술직 및 생산직(단순 노무자 제외)합한것, 사무계는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을 합한 것, 노무계는 단순노무자와 서비스직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였음.

6) 1963년 조사는 종업원 5~49인 업체는 표본조사, 50인 이상 업체는 전수조사로 실시했으며, 1986년 조사는 종업원 5인 이상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 하였다.

1963년에 132천명에서 1986년에는 93천명으로 절대수가 감소하였고 그 비중도 41%에서 4%로 줄었다. 반면 사무계는 31천명에서 419천명으로 13.5배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의 18%, 기술계는 158천명에서 1,884명으로 11.7배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즉 기능과 지식이 낮은 노무계 근로자는 숫자나 비중이 줄어든 대신 숙련과 지식을 갖춘 기술계 및 사무계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기술계 근로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를 보면 <표 3-41>과 같다. 이를 보면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경우 4.4%에서 4.8%로 남자 근로자의 경우 6.2%에서 8.1%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직이 90% 이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 3-42>에서 보듯이 1963년과 1986년 사이에 전문기술직과 생산직의 학

<표 3-41> 제조업 기술계 근로자의 직종별 변화

(단위 : 1,000명, %)

	전 체			남 자		
	총수	전문기술직	생산직	총수	전문직	생산직
1963(A)	158(100.0)	7(4.4)	152(96.2)	97	6(6.2)	91(93.8)
1986(B)	1,844(100.0)	88(4.8)	1,756(95.2)	1,013	82(8.1)	931(91.9)
증가율(B/A)	11.7	12.6	11.6	10.4	13.7	10.2

자료 : <표 3-40>과 같음

주 : 1963년 통계의 기술자와 기술공은 전문직, 숙련공, 반숙련공 및 견습공은 생산직으로 분류하였음.

<표 3-42> 제조업 전문기술직 및 생산직 취업자의 학력별 분포

(단위 : 1,000명, %)

		총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이상
전문기술직	1963	6(100.0)	0	2(33.3)	0	3(50.0)
	1986	94(100.0)	1(1.1)	23(24.5)	19(20.2)	51(54.3)
생산직	1963	152(100.0)	139(91.4)	11(7.2)	0	1(0.7)
	1986	2,691(100.0)	1,568(58.3)	1,033(38.4)	48(1.8)	42(1.6)

자료 : 경제기획원, 『취업기술계인적자원조사보고』.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특별조사 결과 보고』, 1987.

주 : 100명 이하는 4사5입 하였으므로 각 학력의 합계와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력이 대폭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종구성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직종내 근로자의 학력과 지식수준은 1963년에 비해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Ⅶ. 일본의 노동력 구조변화와 비교한 한국의 특징

앞에서 본 우리나라 노동력 구조변화의 특징을 보기 위하여 일본의 노동력 구조변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일본과 우리나라는 과거에 식민지 침략국과 피침략국이라는 상반된 위치에 있었으나,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빈약한 부존자원, 대외지향적 공업화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비교적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으로서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표 3-43〉과 〈표 3-44〉는 1930년 이후의 일본 산업별 취업자 및 직업별 취업자의 비율

〈표 3-43〉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전산업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회· 개인 서비스업
1920	100.0	54.0	1.6	16.4	0.3	2.6	9.8	3.8	0.5	9.3
1930	100.0	49.7	1.1	15.9	0.4	3.3	13.9	3.9	0.7	10.9
1940	100.0	44.3	1.8	21.1	0.4	3.0	12.6	4.2	0.9	10.8
1947	100.0	53.4	2.0	16.3	0.6	3.9	7.4	4.6	0.8	9.7
1950	100.0	48.3	1.7	16.0	0.6	4.3	11.1	4.4	1.0	12.5
1955	100.0	41.0	1.4	17.6	0.6	4.5	11.7	4.6	1.6	14.8
1960	100.0	32.6	1.2	21.9	0.5	6.1	15.8	5.1	1.8	15.0
1965	100.0	24.6	0.7	24.5	0.6	7.1	17.8	6.0	1.6	16.2
1970	100.0	19.3	0.4	26.2	0.5	7.5	19.3	6.2	2.6	17.9
1975	100.0	13.8	0.2	24.9	0.6	8.9	21.4	6.3	3.3	20.1
1980	100.0	10.9	0.2	23.7	0.6	9.6	22.8	6.3	3.6	22.1
1985	100.0	9.3	0.2	23.7	0.6	9.1	23.1	6.1	3.8	23.9

자료 : 日本統計協會, 『日本長期統計總覽』, 1987, 에서 계산.

주 : 1) 원자료는 日本總務廳 統計局의 『國勢調査』에 의한 것임.

2) 산업분류는 우리나라 산업분류와 비슷하도록 조정된 것임.

을 나타낸다. 이들 표와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와 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표 3-33> 및 <표 3-35>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과 노동력 구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산업의 발전 역사가 매우 짧다는 점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에 속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1920년대에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6%, 1940년대에는 21%에 이르고 있고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는 1920년에 54%, 1940년에 44%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⁷⁾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농림어업 취업자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제조업 취업자는 불과 7% 밖에 되지 않았다.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비율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1975년 취업자 분포는 일본의 1930년 분포와 비슷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산업화 역사는 지극히 짧은 것이다.⁸⁾

둘째 한국의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표 3-35>와 <표 3-43>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1975년과 일본의 1950년(2차대전 이전 시기까지 포함하면 1930년)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율이 비슷하며, 한국의 1989년과 일본의 1970년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율이 거의 같다. 이처럼 일본에서 20년간에 이루어진 산업별 취업구성 변화가 한국에서는 15여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壓縮成長'⁹⁾으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에서는 1950~1970년의 20년 사이에 16%에서 26%로 10% 포인트 상승하는데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는 1970년~1989년의 19년 사이에 14%에서 28%로 약 14% 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7) 현재의 선진국중에서는 일본도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이 매우 뒤늦게 시작한 국가이다. 영국의 농림어업 종사자는 1811년에 33.0%, 1821년에 28.4%였고, 광공업 종사자는 같은 시기에 각각 30.2%, 38.4%에 이르고 있다. E.H. Hunt, *British Labour History 1815~1914*, 1981, Humanities Press, p.26에서 인용.

8) 1947년과 50년의 일본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은 종전으로 인해 제대군인이 귀국하고 식민지에서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귀국한 가운데, 광공업 부문의 생산이 급격히 축소된 경제마비상태에서 발생한 현상이었다. 隅谷三喜男·小林謙一·兵藤利, 『日本資本主義と 勞動問題』, 1981, 東京大學出版會, pp.321~30.

9) 한국의 壓縮成長에 관해서는 趙淳, 『韓國經濟發展 四十年 - 그 特性과 問題』, 서울大學敎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1988년 12月號 참조.

셋째 한국과 일본의 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표 3-33>과 <표 3-44>에서 한국의 1989년과 일본의 1970년 취업자 비중을 비교해 보면 다른 직종의 비율 차이는 별로 없지만 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의 비중은 한국이 2%정도 낮고, 판매직과 서비스직은 한국이 각각 2% 및 3% 정도 높다. 비슷한 취업구조하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고학력 직종, 고소득 직종 종사자 비율이 낮고 저학력·저소득 직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뒤에서 보게 되듯이 외형적인 취업구조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발전은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국제적 분업구조상의 상대적 열위로 인한 저생산성 산업에의 높

<표 3-44>

일본의 직업별 취업자 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전직업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생산직
1930	100.0	3.3	0.8	3.2	11.5	6.6	49.5	24.3
1940	100.0	4.3	0.6	6.3	9.6	6.6	44.2	28.5
1947	100.0	4.8	1.5	8.4 ²⁾	5.7	2.2	52.7	24.6 ¹⁾
1950	100.0	4.4	1.8	8.0	8.4	4.3	47.8	25.3
1955	100.0	4.8	2.1	8.2	10.7	6.0	40.4	27.7
1960	100.0	5.0	2.2	10.2	10.8	6.5	32.4	32.9
1965	100.0	5.5	2.9	13.1	11.7	7.2	24.5	35.1
1970	100.0	6.6	3.9	14.0	12.0	7.7	19.2	36.6
1975	100.0	7.6	4.3	16.6	13.3	8.4	13.8	35.9
1980	100.0	8.6	4.7	16.5	14.6	8.3	10.9	36.4
1985	100.0	10.5	4.0	18.4	13.9	8.5	9.2	31.6

자료 : <표 3-42>와 같음

주 : 1) 서비스직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2) 원자료는 日本 總務廳 總計局의 「國勢調査」에 의한 것이며, 직업분류는 우리나라 직업분류와 비슷하도록 조정한 것임.

은 집중 및 한국 노동력의 상대적 저학력과 저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한국은 제조업내 경공업부문 취업자 비중이 일본에 비해 훨씬 높고 중화학공업부문의 비중이 지극히 낮다. <표 3-45>를 한국의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표 3-38>과 비교해 보면, 1986년에 한국의 중화학부문 취업자 비중은 전체 제조업의 4%이나, 일본에서는 그 비율이 1960년에 48.4%, 1970년에 55.0%로 이보다 훨씬 높으며, 1985년에는 58.1%로 한국의 1986년 비중보다 13% 포인트나 높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조립 금속·기계·장비부분의 취업자 비중의 차이에 기인한다. 일본에서는 그 비중이 1950년대에

<표 3-45>

일본의 제조업 업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1,000명, %)

연도	제조업계	음식 료품· 담배	섬유· 의복· 가죽	제재· 목제품· 가구	제지· 인쇄· 출판	화학· 석탄·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제품	1차금속 제품	조립금속· 기계· 장비	기타 제조업
1950	5,690 (100.0)	775 (13.6)	1,302 (22.9)	686 (12.1)	376 (6.6)	503 (8.8)	278 (4.9)	335 (5.9)	1,226 (21.5)	209 (3.7)
1955	6,902 (100.0)	812 (11.8)	1,629 (23.6)	756 (11.0)	546 (7.9)	540 (7.8)	347 (5.0)	368 (5.3)	1,603 (23.2)	301 (4.4)
1960	9,547 (100.0)	906 (9.5)	1,901 (19.9)	853 (8.9)	723 (7.6)	705 (7.4)	475 (5.0)	609 (6.4)	2,826 (29.6)	549 (5.8)
1965	11,540 (100.0)	1,122 (9.7)	2,151 (18.6)	904 (7.8)	911 (7.9)	810 (7.0)	540 (4.7)	696 (6.0)	3,749 (32.5)	657 (5.7)
1970	13,577 (100.0)	1,099 (8.1)	2,302 (17.0)	940 (6.9)	990 (7.3)	884 (6.5)	635 (4.7)	803 (5.9)	5,148 (37.9)	776 (5.7)
1975	13,158 (100.0)	1,125 (8.5)	2,133 (16.2)	846 (6.4)	995 (7.6)	881 (6.7)	622 (4.7)	766 (5.8)	5,039 (38.3)	751 (5.7)
1980	13,039 (100.0)	1,147 (8.8)	2,015 (15.5)	770 (5.9)	1,034 (7.9)	806 (6.2)	610 (4.7)	676 (5.2)	5,203 (39.9)	778 (6.0)
1985	13,810 (100.0)	1,279 (9.3)	1,921 (13.9)	637 (4.6)	1,097 (7.9)	807 (5.8)	566 (4.1)	628 (4.5)	6,038 (43.7)	837 (6.1)

자료 : 日本 總務廳, 「國勢調査」

주 : 제조업 업종분류는 한국의 경우와 같도록 조정하였음.

20%이상, 1960~70년대에는 30%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1970년에 15%, 1980년에 24%로서 일본의 1950년대 수준에 불과하고, 1986년의 비율 30.2%는 일본의 1960년대 비율인 29.6%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내의 중분류 업종별 취업구조면에서는 한국은 1986년 현재 일본에 비해 25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 3-46>에 제시된 철강·금속·기계산업의 비중의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표 3-46>에서 그 사회의 기술발전 수준을 나타낸다고 간주되는 일반기계와 정밀기기의 생산 비중을 보면 1985년 현재 각각 5.8%, 0.9%로서 1955년의 일본의 비중인 6.5%, 1.2%를 모두 밑돌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앞에서 말한 '압축성장'도 사실은 한국의 빠른 성장 때문이라기 보다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성장 때문에 나타

<표 3-46> 한국과 일본의 철강, 금속, 기계산업의 제조업에 대한 비중 추이 (부가가치 기준) (단위 : %)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¹⁾
1차철강	한국	0.2	1.1	1.6	1.9	4.0	5.6	5.6
	일본	8.1	8.1	6.5	6.9	6.0	7.5	5.7
1차비철금속	한국	0.8	1.2	1.3	0.4	0.6	0.9	1.5
	일본	3.3	3.5	2.5	2.7	2.1	2.8	2.1
금속제품	한국	1.4	1.7	1.8	1.4	1.7	2.6	2.8
	일본	3.5	4.7	5.9	6.5	6.7	6.2	5.8
일반기계	한국	2.0	2.4	2.7	1.8	3.2	4.1	5.5
	일본	6.5	10.3	9.3	11.8	11.1	10.5	10.5
전기기	한국	0.3	0.8	1.9	2.2	6.0	9.2	11.0
	일본	5.5	10.3	9.1	11.9	9.8	12.4	16.9
운송기기	한국	2.4	2.2	3.5	3.5	4.5	4.1	8.2
	일본	5.7	9.2	9.7	9.5	10.2	9.5	10.0
정밀기기	한국	0.4	0.3	0.3	0.3	0.8	1.2	0.9
	일본	1.2	1.5	1.7	1.6	1.8	2.0	1.9
합계	한국	7.5	9.6	13.2	11.6	20.8	27.6	35.5
	일본	33.8	47.7	46.9	50.9	47.7	50.9	52.9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1984.

일본통계협회, 「日本長期統計總覽」 1987.

주 : 1) 일본은 1989년 통계임.

2) 한국은 1965년까지는 1975년 기준, 1970년 이후에는 1980년 불변시장가격 기준임.

3) 한국의 1985년 통계는 신국민소득방식(NSNA)에 의한 통계치로 계산한 것임.

4) 일본의 일반기계에는 무기가 포함되어 있음.

난 현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산업별·직업별 노동력 구성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학력별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1989년 현재의 한국은 1970년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47>을 보면 일본에서는 1968년에 취업자중의 대졸이상 학력자 비율이 10%를 차지하고, 고졸자의 비율은 34%에 이르고 있어 학력면에서 한국의 1985년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1989년의 한국 취업자의 학력별 분포는 중졸 이하 51%, 고졸, 36%, 대졸 13%로서 각각의 구성비가 51%, 36%, 12%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1971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동력 구조는 1960년대 이후 외형상 전근대적인 농림어업 종사 노동력에서 근대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으로 빠른 전환을 보이고 있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집약적 부문의 취약성과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개발초기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많은 저학력·불숙련 노동자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저학력·불숙련 노동자에 의거하는 경공업이나 단순한 조립가공형 산업으로는 금후의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율적 존립 기반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표 3-47> 한국과 일본의 학력별 취업자 구성비중 추이

(단위 :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기타
한국	1960년	91.1	6.2	2.4	0.4
	1985년	58.9	30.9	10.3	0.0
	1989년	50.5	36.4	13.1	0.0
일본	1968년	55.3	33.6	10.3	0.8
	1971년	51.2	36.1	12.0	0.7
	1982년	34.9	45.1	18.9	1.1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국세조사보고」, 1960.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5 및 1989.

日本總務廳, 「就業構造基本調査」, 각연도.

주 : 기타는 학력불명 또는 재학중인자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첨단·기술집약 산업을 건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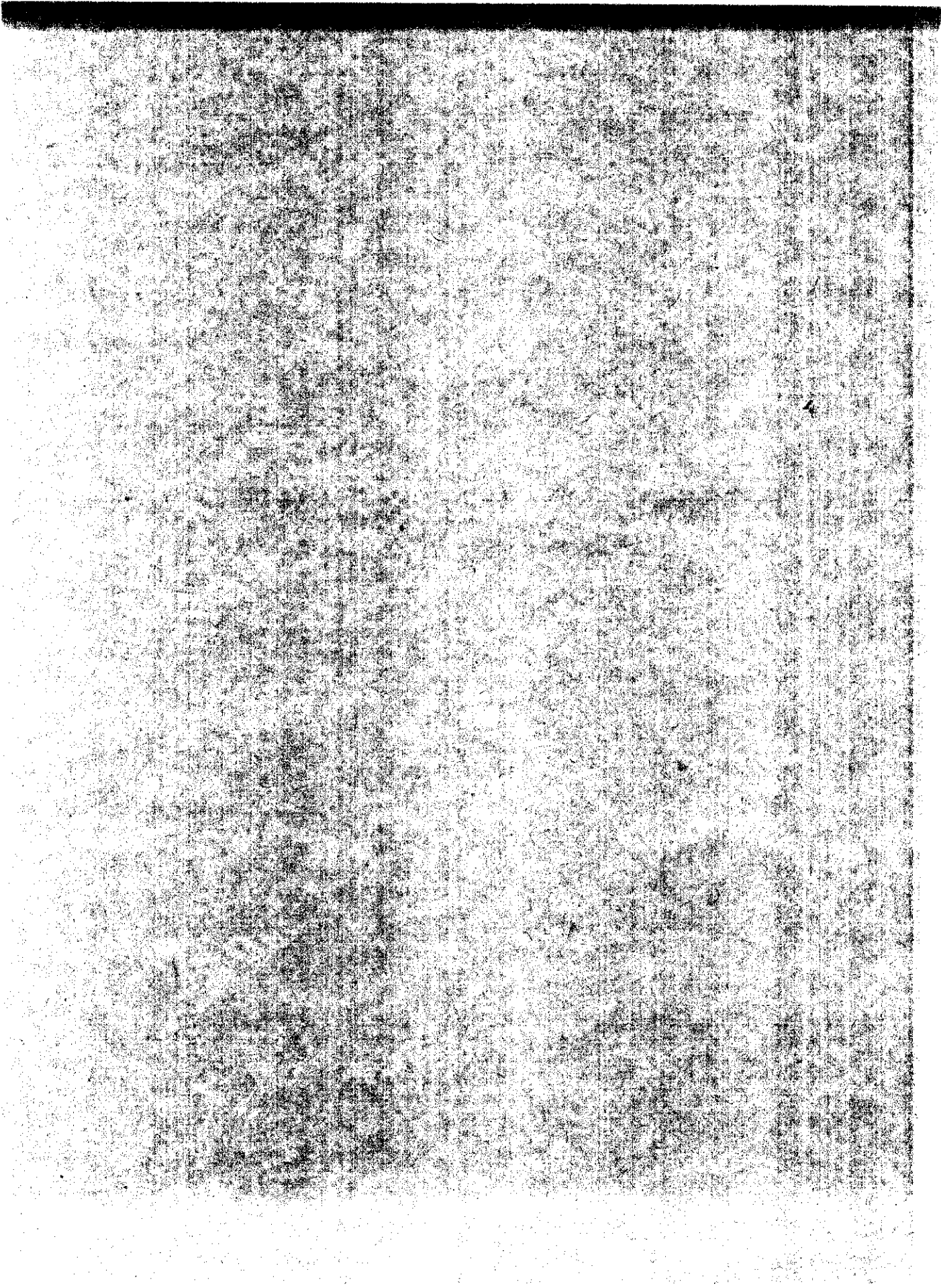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도』, 각연도.
———,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각연도.
———, 『제2차 고용구조 특별조사 보고서』, 1987.
노 동 부, 『노동통계 연감』, 1989.
———, 『직업훈련 사업현황』, 1989.
이대근 외,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력(I)』, 한국경제연구원, 1990.
조순, 「한국경제발전 40년—그 특성과 과제」,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8.
한국은행, 『한국통계연보』, 각연도.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한국직업훈련발전사』, 1989.
隅谷三喜男·小林謙一·兵藤釗, 『日本資本主義と労働問題』, 東京大學出版會, 1981.
日本總計協會, 『日本長期統計總覽』, 1987.
日本總務廳, 『就業構造基本調査』, 각연도.
E.H.Hunt, *British Labour History 1815-1914*, Humanities Press, 1981,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88*.

第 4 部

工業化過程에서 나타난 勞動需要側 特性과
賃金 및 賃金構造의 決定

— 製造業을 中心으로 —



목 차

I. 서 론	189
II. 산업화과정에서의 노동수요측 특성으로서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192
1.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 그리고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192
2. 사용된 자료와 표본추출방법	196
3. 저임금의 정의와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201
4.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 분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	202
III.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경제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	
1.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의 주요특징	209
2.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경제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	210
IV.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결정하는 요인들	
1. 산업화과정의 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량화	222
2. 회귀모형의 설정 및 추정	231
V.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작용한 방식과 노동소득불평등도의 감소	
1. 노동소득불평등도의 감소	239
2.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작용한 방식	242

VI. 노동수요측 특성인 사업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	247
1. 임금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 평가	247
2. 모형의 설정 및 추정	250
3.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임금격차의 추세와 노동시장의 힘	259
4. 노동시장의 분단	261
VII.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의 임금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	264
1. 임금구조의 분석방법	264
2.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의 직종별·연령별 임금구조	264
3.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의 직종별·연령별 임금구조에 나타난 문제점	275
4.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	280
VIII. 요약 및 향후 정책과제	289
1. 요약	289
2. 향후 정책과제	293
참고문헌	297
부 표	301

표 목 차

〈표 4-1〉	89년 직종별 임금통계에 나타난 산업별·기업규모별 사업체 분포	198
〈표 4-2〉	89년 사업체표본의 분포	200
〈표 4-3〉	저임금 수준의 정의	201
〈표 4-4〉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의 분포	203
〈표 4-5〉	노동수요특성별 피고용자 구성비	207
〈표 4-6〉	일본, 미국과 아시아 제 국가간의 생산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의 정도	211
〈표 4-7〉	공업구조의 추이 (부가가치)	226
〈표 4-8〉	중소기업 수급업체의 비율 추이	230
〈표 4-9〉	73년, 78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233
〈표 4-10〉	84년, 89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234
〈표 4-11〉	73, 78, 84, 89년 횡단면 자료의 혼용에 의한 추정결과	238
〈표 4-12〉	십분위 분위별 임금비중과 십분위분배율, 지니계수	241
〈표 4-13〉	피고용자의 직종별 구성	245
〈표 4-14〉	73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포함한 임금함수의 남녀별 추정결과	253
〈표 4-15〉	78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포함한 임금함수의 남녀별 추정결과	254

〈표 4-16〉 84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포함한 임금함수의 남녀별 추정결과	255
〈표 4-17〉 89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포함한 임금함수의 남녀별 추정결과	256
〈표 4-18〉 RATIO 10% 감소에 따른 임금의 %증가율	257
〈표 4-19〉 남자의 경력효과와 근속효과	258
〈표 4-20〉 각 연도별 인적자본 및 노동수요측 특성에 의한 설명력	263
〈표 4-21〉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사무관리직과 생산직간의 임금격차	268
〈표 4-22〉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동일 직종내에서의 임금의 총격차	269
〈표 4-23〉 지수로 표시한 연령-임금표 : 남자	273
〈표 4-24〉 신참노동자 및 표준노동자의 정의	281
〈표 4-25〉 순임금격차 추정결과	283
〈표 4-26〉 동일직종에 있어서 사업체 특성별 순임금격차	284
〈표 4-27〉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직종별·학력별 순임금격차	285
〈표 4-28〉 저임금사업체의 고졸생산직을 100으로 했을 때의 순임금격차	287
〈표 4-29〉 성별 순임금격차	288

그림 목 차

〈그림 4-1〉	직장·직무의 분포도	193
〈그림 4-2〉	연도별 제조업 사업체수의 추이	194
〈그림 4-3a〉	1984년의 사업체 분포	204
〈그림 4-3b〉	1989년의 사업체 분포	204
〈그림 4-4〉	한국 제조업 상장회사 450개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분포도 (1989)	205
〈그림 4-5〉	일본 제조업 상장회사 420개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분포도 (1987)	206
〈그림 4-6〉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균형	215
〈그림 4-7〉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성곡선과 산출량 구성	216
〈그림 4-8〉	K의 증가에 따른 생산가능성곡선의 이동	218
〈그림 4-9〉	K의 증가가 국내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219
〈그림 4-10〉	중공업부문 산업별 CR5 (상위 5사 출하집중률)	225
〈그림 4-11〉	경공업부문 산업별 CR5 (상위 5사 출하집중률)	225
〈그림 4-12〉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의 증가 추이	229
〈그림 4-13〉	제조업 대기업 사업체수의 증가 추이	229
〈그림 4-14〉	1973-89년의 로렌츠곡선	240
〈그림 4-15〉	남성노동자의 연령-임금곡선	265
〈그림 4-16a〉	지수로 표시한 연령-임금곡선 : 1973년	274
〈그림 4-16b〉	지수로 표시한 연령-임금곡선 : 1989년	274

부 표 목 차

〈부표 4-1〉	73년 직종별 임금통계 산업별·기업규모별 사업체 분포	302
〈부표 4-2〉	73년 직종별 임금통계 산업별·기업규모별 사업체 분포	302
〈부표 4-3〉	78년 직종별 임금통계 산업별·기업규모별 사업체 분포	303
〈부표 4-4〉	73년 사업체 표본 분포	303
〈부표 4-5〉	78년 사업체 표본 분포	304
〈부표 4-6〉	84년 사업체 표본 분포	304
〈부표 4-7〉	1/0 분류에 의한 산업별 수출액 및 산출액	305
〈부표 4-8〉	대기업 3사 출하집중도	307
〈부표 4-9〉	산업별·기업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	308
〈부표 4-10〉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	309
〈부표 4-11〉	인적자본 특성차 노동수요생산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남자	311
〈부표 4-12〉	인적자본 특성차 노동수요특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여자	312
〈부표 4-13〉	73년 남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314
〈부표 4-14〉	73년 여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316
〈부표 4-15〉	78년 남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318
〈부표 4-16〉	78년 여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320
〈부표 4-17〉	84년 남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322
〈부표 4-18〉	84년 여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324

〈부표 4-19〉 89년 남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326
〈부표 4-20〉 89년 여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328
〈부표 4-21〉 임금의 위계 : 1973, 1978	330
〈부표 4-22〉 임금의 위계 : 1984, 1989	331
〈부표 4-23〉 73년 근로자 표본의 특징	332
〈부표 4-24〉 78년 근로자 표본의 특징	334
〈부표 4-25〉 84년 근로자 표본의 특징	336
〈부표 4-26〉 89년 근로자 표본의 특징	338
〈부록 그림 4-1〉 연령별 임금곡선	340

I. 서 론

본 연구에서 원래 목적인 바는 두가지였다. 첫째는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의 제 특징이 노동수요측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는 노동수요측 특성이 우리나라 임금과 임금구조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산업화과정과 산업구조의 특징, 우리나라 임금과 임금구조의 특징 및 변화를 연결시키는 작업에 관한 체계적 시도로 출발되었다.

사실상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의 결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노동수요측면의 영향은 예컨대 기업규모별 및 산업별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제한되어 있었던 반면, 노동공급측면의 영향은 세련된 계량분석의 기법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임금결정에 산업집중도 또는 재벌기업 여부라는 노동수요측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산업집중도 또는 재벌기업여부가 임금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만 분석되었을 뿐 그러한 특징들이 산업화과정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산업화과정과 노동수요측 특성이 어떻게 연결되고 변화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임금 및 임금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임금과 임금구조의 결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오히려 침체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왔다.

* 본 논문의 통계작업을 도와준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대규, 조인호씨와 조교로서 일을 해준 경희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최상철씨, 그리고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석사과정 황수정씨에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수요측 특성으로서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을 고려하였다.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이 높으면 저임금업체가 되며 그것이 낮으면 고임금업체가 되는데,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가 저임금업체에 속하느냐, 고임금업체에 속하느냐 하는 노동수요측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관찰에 기초하여, 임금 및 임금구조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어온 기존 통계에서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을 계산하는 데 우리는 성공하였다.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이라는 노동수요측 특성은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에 실로 심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밝히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분단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며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들 분야에 관한 연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수요측 특성인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산업화과정의 제 특징이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수요측 특성 및 그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실증분석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원래 목적하였던 바였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연구성파가 이번 논문에 포함되게 되었다. 필자는 평소에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변화된 산업구조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국내요소소유자의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론적 분석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경제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해명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이론적 분석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결여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국제무역론에서의 헉셔-올린무역이론이라는 정태적 장기모형은 단기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고, 산업조직론은 우리나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이 한·미·일 연결형 가공무역구조를 그리고 대내적으로 독과점진전이라는 산업조직을 형성시켰다는 연구성파를 제시하였지만, 그것이 국내의 요소소득소유자의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노동시장론은 산업화과정의 제 특징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결정이라는 대단히 협소한 분야에 천착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이번 연구에서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산업구조 또는 산업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것이 국내요소소득소유자의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해명하는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는데 이는 실증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출발한 이번 연구에서 얻어진 望外의 소득이 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분석틀은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이론작업에 대한 진지한 노력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목적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 세가지가 된다. 첫째,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산업조직 및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요소소득소유자의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일반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둘째, 산업화과정에 나타난 산업조직 및 구조의 특징은 노동수요측 특성인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한다. 셋째, 노동수요측 특성인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은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한다.

Ⅱ. 산업화과정에서의 노동수요측 특성으로서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1.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 그리고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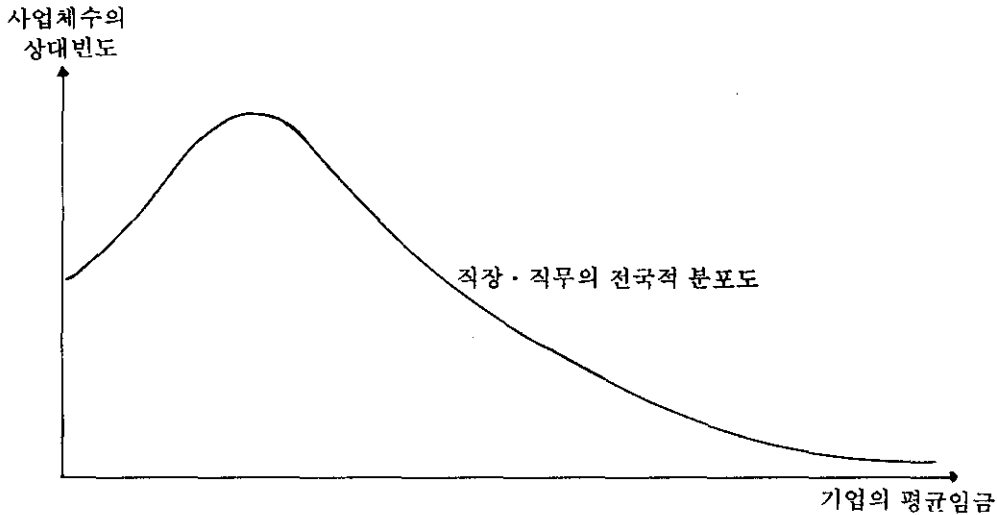
현실의 복잡다단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더로우(L.C.Thurow:참고문헌 [54]의 p98~p128 참조)의 논의는 유용한 출발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그의 논의와 함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기업은 내부에 위계를 갖춘 직무를 제공하기도 하고 위계가 없는 단순직무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 각 기업의 직장·직무위계를 전국적으로 종합하면 전국적인 직장·직무의 분포도(national distribution of job opportunities)를 도출할 수 있는데 더로우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전국적인 직장·직무의 분포도는 <그림 4-1>에 나와 있다. 기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의 직장·직무의 분포도는 고임금업체가 소수, 저임금업체가 소수, 그리고 그 중간의 임금업체가 다수인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국적인 직장분포도는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의 분포도라는 외형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전국적인 직장분포도는 일정시점에서는 고정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에 순응하여 일정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직무를 창출하기도 하고 이를 없애기도 하는 능동적,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생산조직, 작업조직과 관련된 광범위한 혁신을 통하여 전국적 직장·직무의 분포도를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전국적 직장·직무의 분포도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로우가 제시한 전국적 직장·

<그림 4-1>

직장·직무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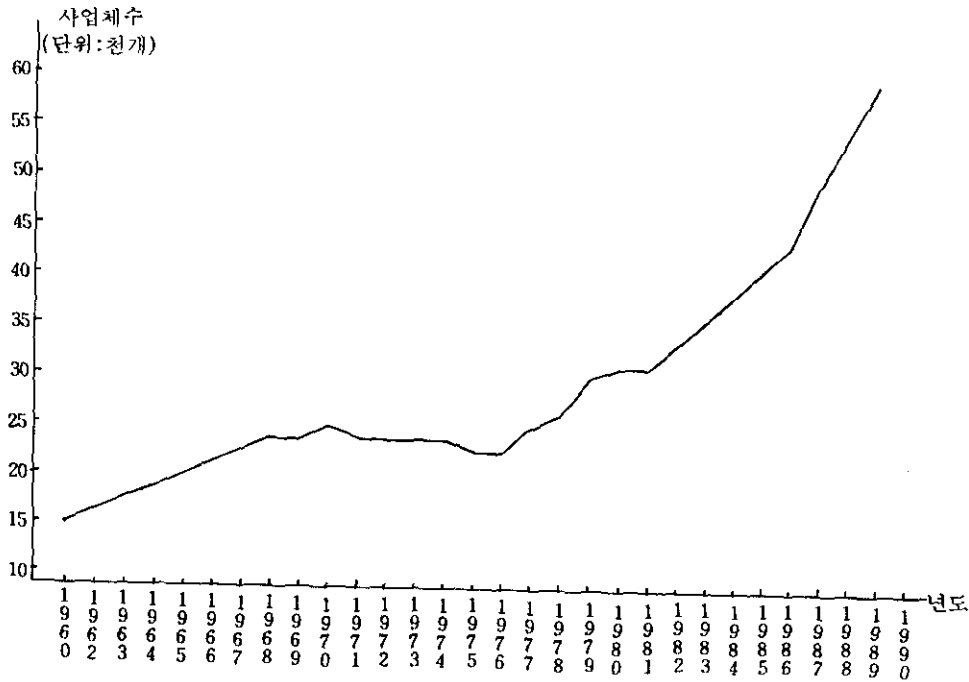
직무의 분포도에 관한 논의는 일정시점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의 분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의 분포도는 변화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을 살펴보면, 1차적인 현상으로는 제조업에서의 공장수 또는 사업체수의 증대가 나타난다. <그림 4-2>에는 제조업 사업체수의 추이가 나와 있다. 이에 의하면, 산업화 초기단계인 1963년에 18,300개의 사업체가 69년에는 25,100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1973년에는 24,109개 사업체로 되어 1970년~1975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정체하는 경향을 보였다.¹⁾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사업체수는 크게 확대되어 1976년 2만 5천개의 사업체가 1988년 5만 5천 9백개의 사업체로 매년 크게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사업체수의 증가는 전국적인 직장·직무의 분포도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즉, 산업화과정은 전국적 직장·직무 분포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노동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노동수요의 특성은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라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며, 이들의 분포도는 산업화과정에서 변화하게 된다.

1) 1970~75년간의 사업체수의 근소한 감소는 사업체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진행된 특징이 있다. 사업체규모는 60, 70년대에는 확대되었으나 77년 이후 사업체 평균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은 70년대 이전은 사업체수와 기업규모가 동시에 확대되었으나 70년대 중반까지는 사업체수의 근소한 감소를 동반하며 평균규모가 확대되었고 70년대 중반 이후는 사업체수의 증가와 평균규모의 축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

연도별 제조업 사업체수의 추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수요측 특성을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의 전국적 분포도로 파악하고자 할 경우, 이를 노동공급자의 직장선택을 통해 살펴보면 더 큰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다. 노동시장에서 직업탐색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노동시장에서 여러 기업에의 취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동일직무에 대해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이 상이할 수 있다는 가정, 즉 동일직무에 대한 임금분포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지만 직무는 기업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1차적인 직무선택은 어느 기업에 취업할 것인가이며, 그 2차적 선택이 기업내부에서의 직무일 것이다.

더우기 현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팀(team)을 이루어 작업하며 개별노동자의 능력과 자질에 의한 생산성은 식별하기 힘들고 집단적 생산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이 맡을 직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갖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직장탐색은 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찾는 행위라기보다는 고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탐색이 되기 마련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고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왔다. 즉, 직무보다 어느 기업에 취업되는가를 고려하는 경향성은 학력에 관계 없는 일반적 현상이었으며 일관된 현상이었다.

더로우의 전국적 직장분포도라는 개념에 의거하거나 혹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직장 선택이라는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거나 간에 노동수요측의 특성은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의 분포로 파악될 수 있다. 산업화과정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결시키는 노동수요측의 연결고리 또한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의 분포의 변화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명제를 우선 확립하고자 한다.

명제 1 : 전국적 직장분포도는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의 분포에 의해서 파악된다.

명제 2 : 산업화과정은 전국적 직장분포도 즉,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의 분포도를 변화시킨다.

이때 제기되는 실증적 문제는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론과 실증분석의 관계에서는 항상 이론적 개념을 현실의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난관이 되기 마련이다.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를 기업체의 지불능력 또는 경영성과로 측정할 수도 있겠다. 즉, 사업체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사업체의 요소 집약도(K/L비율), 사업체의 이윤 등의 기준으로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를 정의할 수도 있겠는데, 이를 변수에 관한 이용가능한 자료는 산업별로만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라는 노동수요측 특성을 엄밀히 측정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더우기 노동수요측 특성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별로 분류된 변수는 더 큰 한계와 제약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의 자료 특히 직종별 임금통계에서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이라는 변수를 직접 포착하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왜냐하면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저임금업체로 정의되고 반대로 그것이 낮으면 고임금업체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사업체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0%에서 100%범위의 값을 가질 것이다. 저임금근

로자의 비중이 낮을수록 고임금업체가 되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고임금업체가 될 것이다. 기존의 통계에서 직접 포착되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라는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변수라고 간주하면, 앞에서 제시한 명제 1과 명제 2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명제 3 : 전국적 직장분포도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의 분포도에 의해서 파악된다.

명제 4 : 산업화과정은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의 분포도를 변화시킨다.

2. 사용된 자료와 표본추출 방법

본 연구에서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의 특징을 살펴본 후 노동수요측 특성인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여기에는 사용된 기초자료는 73년, 78년, 84년, 89년의 직종별 임금통계이다. 60년대에 이러한 자료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다. 70년대 상반기, 70년대 하반기, 80년대 상반기, 80년대 하반기 등의 구분으로 네 시점을 선택하였다. 70년대 상반기로 73년, 70년대 하반기로 78년을 우선 기준시점으로 택하였고,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직종별 임금통계가 89년이므로 이보다 5년전인 84년이라는 시점을 택하게 되었다. 우선 직종별 임금통계의 새로운 이용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조우현·정병석의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영실태분석』(1990)은 기존의 직종별 임금통계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이용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노동수요측 특성이 기존의 통계에서 바로 측정될 수 있게 된다.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통계조사 또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임금실태조사는 근로자개인의 속성과 근로시간 및 임금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표본추출이 전국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전수조사인 사업체노동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사업체가 1차적으로 추출되고 2차적으로 이들 조사대상사업체에 속한 근로자의 정보가 수집된다. 따라서 직종별 임금통계나 임금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체에

관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조우현·정병석은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종전과 달리 조사대상사업체를 토대로 층화추출방법에 의하여 사업체 표본을 뽑고 이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를 모두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다. 조우현·정병석은 이들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계산하여 사업체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노동수요측의 특징이라고 간주하였다. 조우현·정병석은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할 노동자에 현격한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신참고졸생산직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은 고임금업체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저임금업체보다 1986년에는 1.38배, 1989년에는 1.30배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우현·정병석의 연구는 기존통계를 조사대상근로자위주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사업체 위주로 추출하여 새로운 이용방법을 보였고, 이러한 새로운 이용방법으로 해서 각 사업체의 특성, 예컨대 부가가치생산성, 이윤율, 매출액 증가율,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등 중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라는 노동수요측 특성을 原tape에서 직접 잡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조우현·정병석의 연구방법을 연장한 것이다. 즉,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자료 대신 비교적 장기간의 시계열이 가능한 직종별 임금통계를 이용하되, 1973, 1978, 1984, 1989의 4개 시점을 선정하여 原tape에서 직접 포착되는 변수, 즉 사업체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라는 노동수요측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만들고, 사업체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임금결정 및 임금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산업화과정에서 저임금업체 또는 고임금업체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반복하자면 이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주된 목적은 2가지이다. 첫째는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의 제특징이 노동수요측 특성변수인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에 관한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수요측 특성변수인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박훤구·박세일이 언급하기만 하고 넘어간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이나 산업구조의 특징과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의 특징 및 변화를 연결시키는 작업'에 관한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직종별 임금통계의 모집단이 사업체 노동실태조사이기 때문에, 필자는 우선 직종별 임금통계에 나타난 사업체분포를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았다. 직종별 임금통계 1989년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사업체분포는 <표 4-1>에 나와있다. 73년, 78년, 84년의 그것들은 <부표 4-1>, <부표 4-2>, <부표 4-3>에 실었다.

<표 4-1> 89년 직종별 임금통계에 나타난 산업별·기업규모별 사업체 분포

산업분류	사업체규모					계
	1	2	3	4	5	
31	25	27	26	20	49	147
32	77	171	128	57	166	599
33	16	15	7	1	14	53
34	23	41	13	10	14	101
35	45	58	42	28	65	238
36	15	18	14	10	23	80
37	4	10	9	1	20	44
38	109	163	106	60	237	675
39	14	21	25	6	12	78
계	328	524	370	193	600	2,015

- 주 1) [산업 31 : 음식료품 제조업
 산업 32 : 섬유 의복 및 가죽 제조업
 산업 33 : 나무 및 나무 제조업
 산업 34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산업 35 :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산업 3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산업 37 : 제 1차 금속산업
 산업 38 : 조립금속 제품 및 기계 제조업
 산업 39 : 기타 제조업]
- 주 2) [기업규모 1 : 사업체종업원수 10~30인 미만
 기업규모 2 : 사업체종업원수 30~100인 미만
 기업규모 3 : 사업체종업원수 100~300인 미만
 기업규모 4 : 사업체종업원수 300~500인 미만
 기업규모 5 : 사업체종업원수 500인 이상]

〈표 4-1〉에 나타난 산업별, 기업규모별 사업체 분포에서 우리는 1/10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때 사업체 1규모(10인~29인), 2규모(30~99인)의 조사근로자 추출률은 100%이므로 1규모, 2규모에 있어서는 사업체중 1/10표본을 만들었다. 3규모(100~299인), 4규모(300~499인)의 경우, 조사근로자 추출률이 각각 80%, 70%이므로 사업체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1/10) \times (1/0.8)$, $(1/10) \times (1/0.7)$ 로 조정하여 3규모에서는 1/8표본을, 4규모에서는 1/7표본을 추출하였다. 5규모(500인 이상)의 경우 근로자 추출률이 500~999인은 50%, 1,000~4,999인은 30%, 5,000~14,999인은 20%, 15,000인 이상은 10%이다. 이 때, 5규모에 있어서 조사대상 사업체는 600개이며 600개 사업체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수는 304,982명으로 나타나 사업체당 508명이 조사되었고, 508명이 조사되었다면 5규모에서의 500~999인의 사업체가 다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어 500인이상의 5규모에서는 근로자 추출률을 50%로 가정하였고 5규모에서는 $(1/10) \times (1/0.5)$ 로 조정하여 1/5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89년의 사업체표본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분포는 〈표 4-2〉에 나와 있다. 73, 78, 84년의 사업체 표본은 〈부표 4-4〉, 〈부표 4-5〉, 〈부표 4-6〉에 실려있다.

1989년에는 292개 사업체가 표본사업체로 추출되었고, 1984년은 273개, 1978년은 284개 그리고 73년은 283개의 사업체가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이를 「사업체표본」이라고 부르겠다. 다만 1973년과 1978년은 사업체규모가 10~29인, 30~99인, 100~499인 그리고 500인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73년은 100~499인에서 근로자 추출률이 50%였으므로 추출된 근로자의 두배를 사업체 근로자수로 가정하여 3규모 100~299인, 4규모 300~499인 사업체를 구분하였고, 78년에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수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3규모와 4규모를 구분하였다는 점만 여기서 언급하겠다.

이렇게 추출된 사업체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직종별 임금통계에서 조사된 근로자들은 모두 추출되었다. 73년에는 42,711명, 78년 57,700명, 84년 95,302명, 89년 106,657명의 근로자가 추출되었는데 이를 「근로자표본」이라고 부르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근로

자표본」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분포는 직종별 임금통계에서의 근로자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사업체표본」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분포는 직종별 임금통계의 사업체 분포보다 대규모 사업체가 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직종별 임금통계에서의 대기업의 비중이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에서의 대기업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87년 사업체 노동실태조사에서 사업체 규모별 분포는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가 각각 59.2%, 33.6%, 9.8%, 1.7%, 2.0%를 점하고 있는데, 1989년의 직종별 임금통계에서는 각각 16.3%, 26.0%, 18.4%, 9.6%, 30.0%

〈표 4-2〉 89년 사업체표본의 분포

사업체규모 산업분류	1	2	3	4	5	계
31	2	2	4	4	8	20
32	8	18	16	8	32	82
33	2	2	2	1	4	11
34	2	4	2	2	4	14
35	4	6	6	4	12	32
36	2	2	2	2	4	12
37	2	2	2	1	4	11
38	10	16	14	10	48	98
39	2	2	4	2	2	12
계	34	54	52	34	118	292

인 것이다. 직종별 임금통계의 사업체 분포에서 근로자 추출률을 감안하여 뽑은 「사업체표본」에서는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가 89년에 각각 11.6%, 18.5%, 17.8%, 11.6%, 40.4%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된 「사업체표본」은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표본」의 분포는 직종별 임금통계의 근로자분포와 유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국 사업체의 분포 및 근로자 분포와 일치되는 사업체표본과 근로자표본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고용분포와 일치되는 사업체표본을 설

계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두겠다.

3. 저임금의 정의와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영국에서는 Trade Union Congress에 의해 제안되고 Low Pay Unit에 의해 수정·채택된 저임금수준은 모든 남성의 근로소득의 중위값(median)의 2/3 수준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참고문헌 「35」 참조).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 채택된 저임금의 정의를 따르되, 「근로자표본」의 남성의 요소소득을(정액급여 + 연간 상여금의 월할분)으로 하여 이것의 $\frac{2}{3}$ 수준을 저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 임금은 (정액급여 + 연간 상여금의 월할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임금의 정의에서 초과급여를 제외한 것은 노동시간으로 인한 교란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총임금은(정액급여 + 연간 상여금의 월할분 + 초과급여)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정의된 저임금수준은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저임금 수준의 정의 (단위 : 원)

년도	표본에서 남성의 중위값 임금	저임금 수준
1973년	22,400	14,933
1978년	80,583	53,722
1984년	263,875	175,917
1989년	527,850	353,223

표본에 있어서 남성의 평균임금은 73년 28,761원, 78년 101,912원, 84년 304,691원, 89년 593,338원이며, <표 4-3>에 나타난 각 연도의 저임금은 각 연도 남성평균임금의 51.9%, 52.7%, 57.7%, 59.5%으로 50~60%수준에 해당된다. 각 연도에 남성평균임금 대비 저임금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의 축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저임금수준이 정의되면 「근로자표본」을 이용하여 각 사업체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라는 노동수요측의 특징은 직종별 임금통계를 기본적으로 사업체에 관한 조사라고 파악할 때 포착될 수 있다. 그동안의 임금 및 임금구조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직종별 임금통계를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 자료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중심으로 小標本(1만~3만명)을 설계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리고 노동수요측 특성은 사업체규모 및 사업체의 소속산업만이 부수적으로 고려되고, 그 외의 특성은 비록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제약상 인적속성별 요인만을 분석한다는 점이 어느 논문에서나 첩언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료의 제약상 노동수요측의 특성이 포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료이용에 있어서의 선입견으로 해서 노동수요측의 특성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4.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 분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

각 사업체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0%에서 100% 범위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 때 사업체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따라 0%~24%가 되는 사업체, 25%~49%가 되는 사업체, 50%~74%가 되는 사업체, 75%~100%가 되는 사업체로 나누어 이들을 각각 高位高賃金業體, 中位高賃金業體, 中位低賃金業體, 및 低位低賃金業體로 정의하기로 한다.²⁾ 노동수요측 특성인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체표본」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사업체의 분포는 <표 4-4>와 같다.

<표 4-4>가 나타내는 첫번째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위고임금업체층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림 4-3>은 1984년과 1989년의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중위저임금업체, 저위저임금업체의 분포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호리병모양, 즉 X 형을 갖는다는 것으로 중위고임금업체가 취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2) 산업집중도를 논할 때, 상위 3사 출하집중률을 기준으로 고위집중형, 중위집중형, 저위집중형, 경쟁형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참조하여 명명하였다.

〈표 4-4〉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의 분포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73	'78	'84	'89
고위고임금업체 0~ 24	27.1	20.8	17.9	26.0
중위고임금업체 25~ 49	18.7	16.8	14.7	20.2
중위저임금업체 50~ 74	26.4	26.3	30.8	26.0
저위저임금업체 75~100	27.8	36.1	36.6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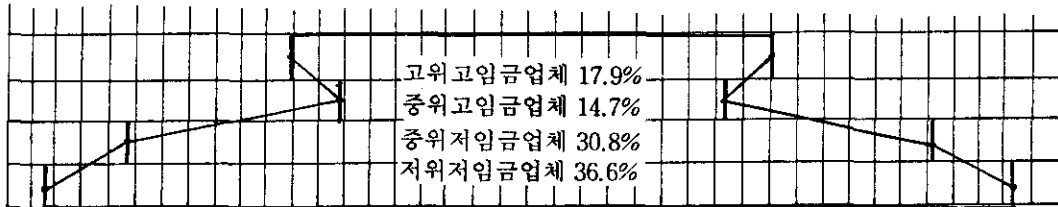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이 높을 때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임금업체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저임금업체가 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은 고부가가치기업과 저부가가치기업으로 양분되며 중간층의 기업군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이 된다(참고문헌 「39」 참조). 이는 3장에서 언급될 한·미·일 연결형 가공무역구조에서는 필요한 자본재와 중간재 등의 생산요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기계공업, 기초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층이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진경제의 경우 노동수요특성별로 본 사업체의 분포는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가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중임금업체가 다수인 그러한 구조인 다이아몬드(◆)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과묵한 탓이겠으나 노동수요측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기업체의 분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미국의 Thurow는 기업체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의 전국적 직장분포도(national distribution of job opportunities)는 〈그림 4-1〉에서 표시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형(◆)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시키나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간접적 자료로 필자는 1987년 일본의 제조업 상장회사 420개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분포도와 1989년 한국의 제조업 상장회사 450개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분포도를 작성해서 이를 토대로 전국적 직장분포도를 추론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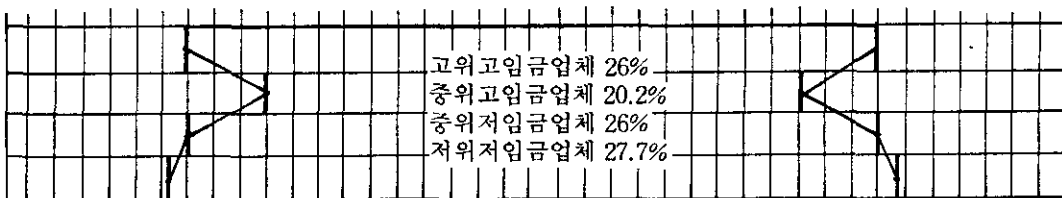
<그림 4-3a>

1984년의 사업체 분포



<그림 4-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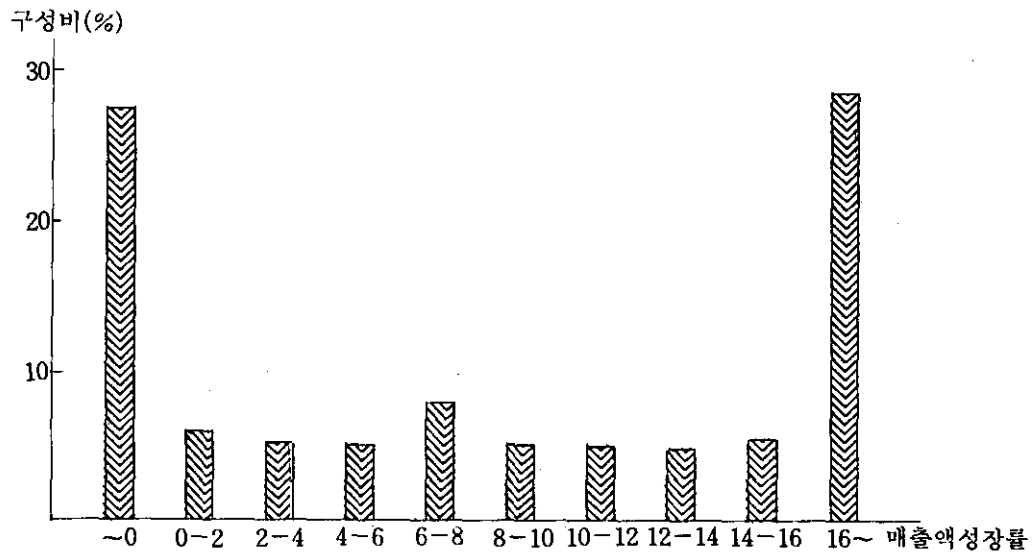
1989년의 사업체 분포



<그림 4-4>는 한국의 매출액성장률을 지표로 한 사업체 분포도이며 <그림 4-5>는 일본의 것이다. 일본은 매출액성장률 10%이상되는 기업체는 전체의 32.2%, 4%미만되는 기업체는 전체의 28.1%이며 그 중간에 39.7%의 기업체가 위치하는 반면, 한국은 매출액성장률 10%이상되는 기업체는 전체의 47.7%, 4%미만되는 기업체는 전체의 38.0%, 그 중간에는 단지 14.3%의 기업만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성장률이라는 사업체 특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기업은 고성장기업과 저성장기업으로 분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추론은 우리나라 기업체는 고부가가치, 고성장의 기업과 저부가가치, 저성장의 기업으로 분단되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 기업체 분포도가 ▽형, 즉 호리병형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중간에 위치하는 企業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 기업체 분포도가 ◆형, 즉 다이아몬드형을 지닐 것이다. 위에 언급한 Thurow의 직관도 미국의 현실에 관한 경험적 관찰에 의거하고 있다고 간주한다면 미

〈그림 4-4〉 한국 제조업 상장회사 450개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분포도(1989)

매출액성장률	회사수	구성비
0% 미만	123	27.3
0-2% 미만	26	5.8
2-4% 미만	22	4.9
4-6% 미만	21	4.7
6-8% 미만	33	7.3
8-10% 미만	24	5.3
10-12% 미만	23	5.1
12-14% 미만	22	4.9
14-16% 미만	27	6.0
16% 이상	129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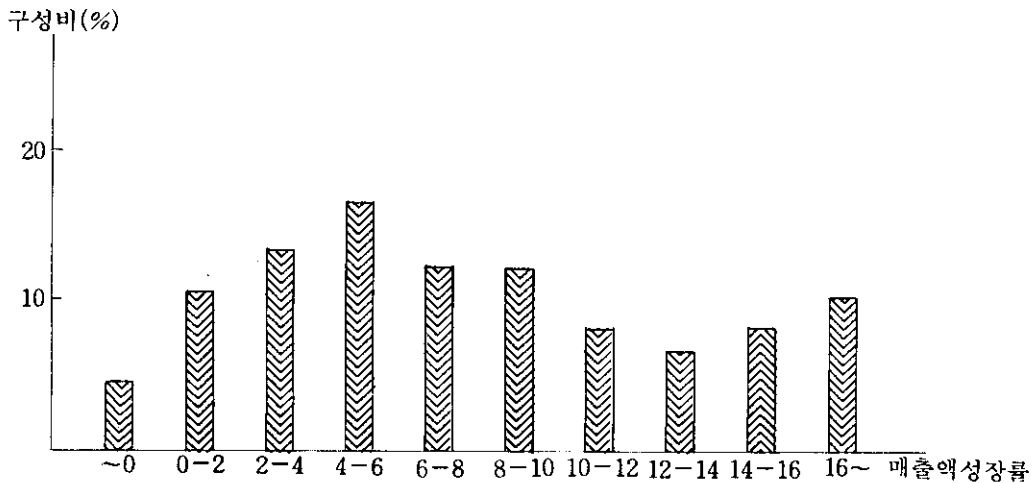
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노동수요특성별로 본 사업체분포도(즉 산업구조)는 ◆형을 지닌다고 가정하여도 될 것이다.

향후 산업구조고도화나 기초소재 및 기계산업의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립경제의 확립은 노동수요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체분포(산업구조)를 호리병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하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표 4-4〉가 나타내는 두번째 특징은 1973년 고위고임금업체는 27.1%, 저위저임금업체

〈그림 4-5〉 일본 제조업 상장회사 420개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분포도(1987)

매출액성장률	회사수	구성비
0% 미만	18	4.3
0-2% 미만	44	10.5
2-4% 미만	56	13.3
4-6% 미만	67	16.0
6-8% 미만	50	11.9
8-10% 미만	50	11.9
10-12% 미만	33	7.9
12-14% 미만	26	6.2
14-16% 미만	33	7.9
16% 이상	43	10.2



는 27.8%였으나, 78년과 84년에는 고위고임금업체가 축소되고 저위저임금업체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89년에 가서야 고위고임금업체의 비중이 증가하여 89년의 분포는 73년의 분포와 유사한 형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84년까지 고위고임금업체의 비중 및 중위고임금업체비중의 축소는 산업화과정에서 75년 이후 기업수가 크게 증가될 때, 저위저임금업체 또는 중위저임금업체가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며 중화학공업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의 진전은

저임금업체의 양적 확대를 낳았을 것이다. 또한 1978년~84년간의 고임금업체의 비중 저하는 대규모조립공장 건설에 따라 고위고임금업체에서 미숙련·반숙련노동력의 고용이 크게 증가된 결과일 것이다. 고위고임금업체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1978~84년간 제조업사업체 중에서 고위고임금업체의 비중은 저하되었을 것이다.

〈표 4-5〉에서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을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중위저임금업체, 저위저임금업체로 나누었을 때 피고용자의 구성이 나와 있다.

〈표 4-5〉 노동수요특성별 피고용자 구성비

		1973	1978	1984	1989
전체	고위고임금업체	21.1	25.8	28.5	37.8
	중위고임금업체	14.6	15.5	12.1	15.4
	중위저임금업체	35.7	24.9	21.8	27.9
	저위저임금업체	28.6	33.8	37.7	18.9
		100.0	100.0	100.0	100.0
남자	고위고임금업체	33.6	38.7	45.9	51.4
	중위고임금업체	15.3	19.3	14.7	15.5
	중위저임금업체	35.0	23.3	22.5	23.3
	저위저임금업체	16.2	18.8	16.9	9.8
		100.0	100.0	100.0	100.0
여자	고위고임금업체	8.7	11.0	5.7	17.1
	중위고임금업체	13.8	11.2	8.6	15.4
	중위저임금업체	36.4	26.9	20.8	34.8
	저위저임금업체	41.4	50.9	64.9	32.6
		100.0	100.0	100.0	100.0

고위고임금업체의 경우, 제조업피고용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년 21.1%, 78년 25.8%, 84년 28.5%로 꾸준히 상승하여온 반면, 저위저임금업체 피고용자가 제조업 피고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년 28.6%, 78년 33.8%, 84년 37.7%로 증가하여 왔다. 즉, 다음 장에서 후술하게 될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이 확산됨에 따라 고위고임금업체에서, 특히 남성

미숙련노동의 고용증가는 고위고임금업체에서 저임금근로자비중을 높여, 78~84년간 고위고임금업체가 전체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86~89년간 3저호황의 결과 대규모 조립공정을 설립한 기업의 수익성이 증대되어 고임금업체의 비중이 증대되고, 대규모사업장에서 노조의 교섭력이 증대되고, 중소기업이나 하청계열기업중 고임금업체가 형성된 결과 89년에는 73년~84년까지의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Ⅲ.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경제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

1.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의 주요특징

산업화과정에서는 1차적으로 사업체수가 크게 증대한다. 사업체수가 크게 변동할 때, 전국적 직장·직무 분포도 또한 변동하기 마련이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집합이 산업이라고 할 때, 산업화과정에서 사업체수의 변동은 산업구조의 변동을 동시에 수반한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동 또한 전국적 직장·직장 분포도를 변동시키게 된다. 이 점에 착안한 전국적 직장분포인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의 분포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산업화과정의 특성들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의 특성은 첫째, 수출지향적인 공업화, 둘째, 중화학공업화의 진전, 셋째, 독과점도의 심화 또는 유지, 넷째, 중소기업 하청계열화의 진전, 다섯째, 지역적 불균등 발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수출, 중화학공업화, 독과점도의 진전,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 그리고 지역적 불균등 발전이라는 산업화과정의 특성은 전국적 직장분포 또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의 분포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의 진전, 독과점도의 심화 또는 유지,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의 진전 그리고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라는 특징은 반드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의 의미 및 일반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명되어야 할 이론적 문제는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1973년 당시 무제한적 노동공급시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았던 자본의 대량투입을 요하는 중화학공업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수출의 확대가 국민경제성장 및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는 것이다. 셋째는 86년 이전에 수출률이 근로자의 임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87년

이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세가지 문제에 대해 경제이론적으로 체계적 일관적인 해명은 학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가 여기에서 위의 세가지 중요문제를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해명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필자는 ‘일반적’이라는 접두어를 강조하고자 한다.

2.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경제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

우리나라 산업은 강철규(참고문헌 [1] 참조)에 의해 분석된 한·미·일 연결형 가공무역구조, 즉, 표준화된 또는 복제가능한 기술, 자본재 및 중간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이를 노동집약적으로 조립가공하여 표준화,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주로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조립가공무역구조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공장조직은 70년대 중반 이후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노동자는 기계제생산방법을 적용한 조립공정에서 세분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강철규는 7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은 한일간 수직적 분업체계 형성과정의 산물로 보고 있다.³⁾ 특히 금속, 기계류, 운송장비 등이 아시아 NICS와 밀접한 분업관계에 있음은 일본 아시아 경제연구소에서 1986년에 각국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국의 제조업생산에 의한 일본과 미국에서의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한 연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간에는 금속, 기계류, 운송장비 뿐만이 아니라 화학과 고무에 있어서도 밀접한 산업간의 의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예

3) 홍원탁은 70년대 중반이후의 생산의 이러한 구조적 전환이 “자본, 기술의 축적과 임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자연적 국제경쟁력 변화의 결과”이며 그 규모와 속도만이 “정부의 강력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때문에 “80년대 들어와서도, ... 기초전자산업, 자동차산업, 기초화학 중간재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부품생산보다는 대규모 자본집약적 조립산업이 정책적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부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심화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화학공업화를 시장경제작용의 자연적 결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구조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 의해 6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수행하고 ‘독재적 정치체제’를 유지하여온 정치적 고려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에 관한 논의는 정치학 전공자의 연구주제라고 간주하여 제외할 것이다.

〈표 4-6〉 일본, 미국과 아시아 제 국가간의 생산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의 정도

유발되는 국가	일 본					
유발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한국
식료품, 음료품, 담배	○					
섬유 및 가죽제품	●	●	●	○	○	●
나무 및 목제품				●		
종이 종이제품 및 인쇄	●	●		●	○	○
화학제품	●	○		●	●	●
석유정제						
고무제품			●		○	●
비금속광물				○		
금속	●	○	●	●	●	●
기계	●	●	○	●	●	●
운수장비	●	●	●	●	●	●
기타제조업	●	○	●	●	○	●
건설업	●	●	○	●	○	○

유발되는 국가	미 국					
유발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한국
식료품, 음료품, 담배						
섬유 및 가죽제품	○	○	○			○
나무 및 목제품				○		○
종이 종이제품 및 인쇄				○		○
화학제품				○		○
석유정제						
고무제품			○			○
비금속광물						
금속						●
기계	○	○		●		●
운수장비			○	○		○
기타제조업			○			○
건설업				○		

주 : ● 유발계수가 0.4 이상

◎ 유발계수가 0.2와 0.4사이

○ 유발계수가 0.1과 0.2사이

자료 : Shunichi Furukawa,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Tokyo, 1986.

: Lo et. al. (1988) P.12에서 재인용.

컨대 상기 각 산업에서 한국의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는 일본의 상기 각 산업에서의 생산 유발계수가 0.4 이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노동집약적 조립공정건설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노동집약형 조립공정에 의한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비록 한일간 수직적 분업체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노동집약형 조립공정이 정부의 여신 및 세금특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특혜 등의 각종 인센티브에 의해 중화학공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집약적 조립공정 자체는 노동력이 풍부한 여타 개도국과 비교할 때, '창출된 특이생산요소(created specific factor of production)'로 되었다. 이때, '특이'(specific)의 의미는 '노동력이 풍부한 여타 개도국에는 없는'이라는 뜻이며, '창출된'의 의미는 '70년대 중반까지의 무제한적 노동공급시기에 있어서 풍부한 요소부존량인 노동자원 집약적 상품에 특화, 생산, 수출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풍부하지 않은 자본의 대량투입을 요하는 조립공정을 형성시킨'이라는 의미이다.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을 창출된 생산요소라고 보는 것은 비교우위론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Michael Porter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Porter는 『경쟁전략』(1980), 『세계적 산업에서의 경쟁』(1986) 그리고 최근에 『국가의 경쟁적 우위』(1990)등의 일련의 책을 발간하였는데 그는 한 국가의 기업 또는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성을 갖는 요인을 영국, 덴마크,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혔다. 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성을 갖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요소창출'(factor creation)에 있다고 하였다. '요소창출'은 요소부존량에 의존하여 비교우위를 설명하는 '요소부존'이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분석틀(paradigm)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Porter 자신도 200년된 경제학의 비교우위론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

필자는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이 창출된 생산요소이고 이 창출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4) Michael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pp 80~81, pp 676~677.

이용하는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통하여 지난 20여년간의 ‘압축형 경제성장’이 가능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세계시장경제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요인에 관한 ‘새로운 분석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교우위에 의한 국제무역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200년된 경제학’의 분석틀이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무역이론에는 ‘특이생산요소(specific factors of production)모형’이 있는데 ‘창출된 생산요소’를 한 국가의 특이생산요소로 간주하면, 창출된 특이생산요소가 존재할 때 무역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국내 요소소유자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Peter Kenen에 의한 특이생산요소모형⁵⁾에서, 특이생산요소를 창출된 특이생산요소라고 간주한 후, 창출된 특이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⁶⁾

우리나라의 총 노동공급량 및 여타생산요소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자. 우리나라가 X와 Y라는 두 상품만을 생산한다고 하자.

X는 특이생산요소인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에 의해서 생산되는 상품(예컨대 가전제품)이라고 하자. Y는 쌀을 주원료로 생산되는 경공업제품이라고 하자. Y의 생산을 위해서는 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가 특이생산요소라고 하자. 노동(L)은 X산업과 Y산업에 이용되며 양 산업간에 이동은 원활히 이루어지나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은 X생산에만 이용되고 토지는 Y생산에만 이용된다. 즉, 노동집약적 조립공정과 토지는 ‘특이생산요소’이다. 이제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을 K, 토지를 D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양 산업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5) Peter Kenen, *The International Economy*(2nd. ed), 1989, pp 69~87이 모형은 D. Ricardo의 모형을 확장한 것이다.

6) 75년 이전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에서는 핵서-울린 모형이 예측하는 바대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수출주력상품이 되었다. “수입된 단추, 실, 직물에 의존하는 의류생산, 수입된 핫 코일을 가공하는 철강관 생산, 수입된 부품을 조립하는 라디오 생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수출산업이란 손이 많이 가는 최종조립가공과정을 의미했다.” 홍원탁, 앞의 책 p 138.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1975~1989년이라는 보다 긴 기간에 관한 분석이다.

$$\begin{aligned}
X &= f(L_x, K) \\
Y &= g(L_y, D) \\
\bar{L} &= L_x + L_y \quad \text{----- (1)} \\
\bar{K} &= K \\
\bar{D} &= D
\end{aligned}$$

X산업에서 개별기업은 K/L를 변동시킬 수 있고 Y산업에서는 D/L을 변화시킬 수 있다. 노동이 K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싸면 X산업의 기업은 노동을 더 이용하여 K/L이 감소하며, 노동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X산업의 기업은 K/L이 증가할 것이다. 즉 각 산업에서 요소집약도는 각 산업에서 사용되는 요소상대가격에 의존한다.

X산업에서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는 요소의 한계생산성(f_L^x, f_K^x)이 실질임금과 같은 점에서 노동을 고용할 때 이루어진다. P_x, P_y 는 X와 Y의 상품가격, W 는 명목임금, r 은 자본에 대한 수익, P_0 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라고 할 때, 이윤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f_L^x = \frac{W}{P_x} \quad \text{----- (2-a)}$$

$$f_K^x = \frac{r}{P_x} \quad \text{----- (2-b)}$$

그리고 Y산업에서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는

$$g_L^y = \frac{W}{P_y} \quad \text{----- (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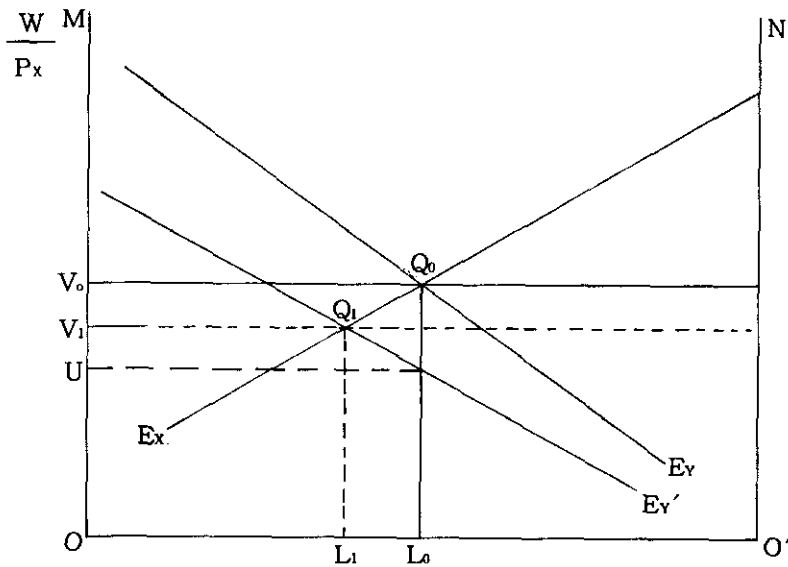
$$g_D^y = \frac{P_d}{P_y} \quad \text{----- (3-b)}$$

(3-a)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도 있다.

$$\frac{g_L^y}{\frac{P_x}{P_y}} = \frac{W}{P_y} \cdot \frac{1}{\frac{P_x}{P_y}} = \frac{W}{P_x} \quad \text{----- (3-a)'}$$

X와 Y산업의 산출량의 동시적 결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산업의 노동수요곡선을 한 그래프에 같이 놓고 노동시장이 균형되는 실질임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림 4-6>에서 가로축은 고용량인데 OO' 는 우리나라에서 이용가능한 총고용량이다. E_Y 는 식 (3-a)'의 $g_L^Y / (P_X / P_Y)$ 이며 OM 축은 W / P_X 이다. E_X 는 식(2-a)의 f_L^X 이며 $O'N$ 축은 W / P_X 이다.

<그림 4-6>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균형



노동시장을 균형시키는 실질임금은 OV_0 수준이며 Y산업의 고용량은 OL_0 , X산업에 있어서 고용량은 $O'L_0$ 가 된다. <그림 4-6>의 점 Q_0 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성곡선의 한 점이 된다.

식 (1)에서

$$dX = f_L^X dL_X \quad dY = g_L^Y dL_Y \text{이므로}$$

$$\frac{dY}{dX} = \frac{g_L^Y}{f_L^X} \cdot \frac{dL_Y}{dL_X} \text{ 인데}$$

$$dL_x = -dL_y \text{ 이므로}$$

$$\frac{dY}{dX} = - \frac{g_L^Y}{f_L^X} \dots\dots\dots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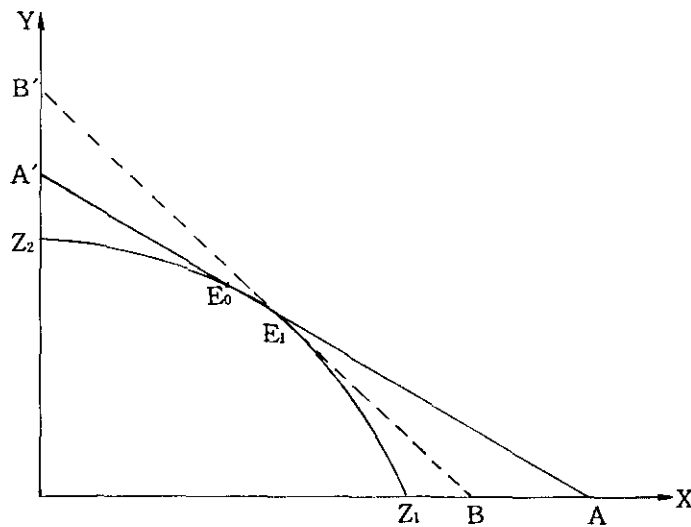
식(4)는 생산가능성곡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노동이 Y에서 X로 이동됨에 따라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의해 f_L^X 는 하락하고 g_L^Y 는 상승하므로 생산가능성곡선은 X 산출량이 증대됨에 따라 그 기울기는 커지게 된다. 그리고 이윤극대화조건에 의하면 식(4)는 다음과 같게 된다.

$$- \frac{g_L^Y}{f_L^X} = - \frac{W/P_Y}{W/P_X} \text{ 이므로}$$

$$\frac{dY}{dX} = - \frac{g_L^Y}{f_L^X} = - \frac{P_X}{P_Y} \text{ 가 된다.}$$

따라서 생산가능성곡선은 <그림 4-7>의 Z_1Z_2 의 모양을 갖고 AA' 의 기울기는 P_X/P_Y 가 된다.

<그림 4-7>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성곡선과 산출량 구성



〈그림 4-6〉의 Q_0 는 〈그림 4-7〉의 E_0 점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때 국제시장에서 상품 상대가격 $(P_x/P_y)'$ 가 국내의 상품 상대가격 $(P_x/P_y)^0$ 보다 높다고 하자. $(P_x/P_y)'$ 가 〈그림 4-7〉에서 BB' 의 기울기를 가질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품 X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요약 ① : 창출된 특이생산요소인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을 이용하는 중화학공업제품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인 저가로 생산될 수 있을 경우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된다.

$(P_x/P_y)'$ 라는 조건에서는 〈그림 4-6〉의 E_y 는 E_y' 로 이동한다. 노동시장의 균형점은 Q_0 에서 Q_1 으로 이동하며 Y의 고용량은 감소하고 X의 고용량은 증가한다. X생산은 노동집약적이 되고 Y산업은 종전보다 덜 노동집약적으로 된다. 노동이 Y산업에서 X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X산출량은 감소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Y산출량은 증가하는 속도로 감소된다. 즉, 〈그림 4-7〉에서도 E_0 에서 E_1 으로 균형산출량이 변화된다.

Q_0 에서 Q_1 으로의 이동은 W/P_x 를 감소시킨다. 즉, X상품가격으로 표시한 실질임금은 감소한다(〈그림 4-6〉에서 OV_0 에서 OV_1 으로 감소). 그러나 〈그림 4-6〉에서 상품상대가격 P_x/P_y 이 증가하는 정도는 UV_0 로 표시되나 W/P_x 가 하락한 정도는 V_0V_1 이기 때문에 즉 전자가 후자를 능가하기 때문에 W/P_y 는 상승한다. 즉, 수출의 전개에 따라 비교우위를 갖는 제품 X의 가격 P_x 로는 실질임금이 감소하며, 비교열위를 갖는 제품 Y의 가격 P_y 로는 실질임금이 증가한다.

수출의 전개에 따라 X산업에서 K/L 이 하락함에 따라 f_x^x 는 증가하며 r/P_x 는 상승한다. P_x 의 구매력은 P_y 의 구매력에 비해 증가하였으므로 r/P_y 또한 상승한다. 반면 Y산업에서는 D/L 이 증가함에 따라 f_0^y 는 감소하며 P_0/P_y 는 하락한다. P_0/P_x 는 더 크게 하락한다.

요약 ② : 특이생산요소인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을 이용하는 중화학공업 제품생산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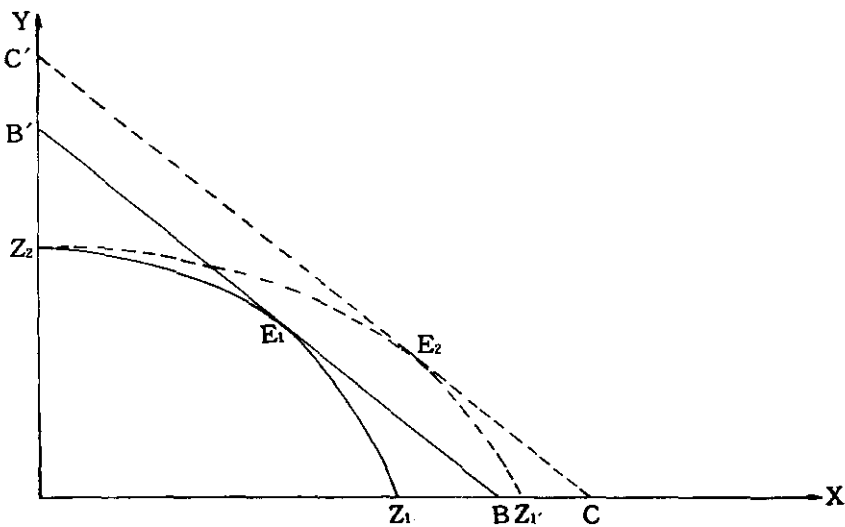
어서 고용은 증대된다.

요약 ③ :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특이생산요소 즉,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의 소유주의 수익은 증대된다. 실질임금은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가격으로는 하락하나,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가격으로는 상승한다(이를 Haberler 정리라고 한다). 한 나라의 국민이 그 소득을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다수 구입하는 소비패턴을 갖고 있으면 실질임금은 감소한다.

특이생산요소인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에 대한 수익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는 증대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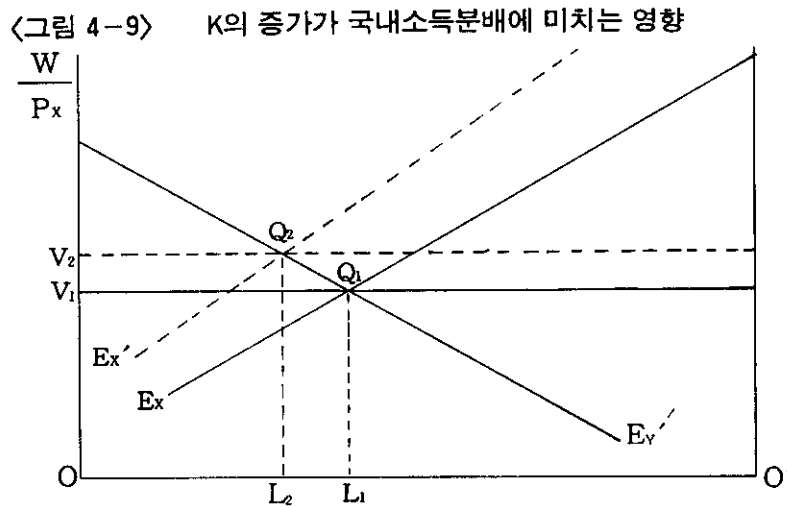
요약 ④ :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의 소유주의 수익이 증대됨에 따라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에 대한 투자는 증대되고 성장이 추구된다.

<그림 4-8> K의 증가에 따른 생산가능성곡선의 이동



노동집약적 조립공정(K)의 증가가 이루어질 때 X상품의 절대량은 증가하고 Y상품의 절대량은 감소한다(Rybczynski정리)(〈그림 4-8〉 참조).

이제 교역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노동집약적 조립공정(K)에의 투자증대가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4-6〉의 E_x 와 E_y' 를 〈그림 4-9〉에 다시 옮겨놓았다. K의 증가는 E_x 를 E_x' 로 이동시킬 것이다. 노동시장의 균



형은 Q_2 가 된다. 실질임금 (W/P_x)은 OV_2 로 증가한다. 교역조건은 불변이므로 W_y/P_y 또한 증가한다.

실질임금은 P_x 나 P_y 로 측정하든간에 관계없이 상승하므로 f_x^L , g_y^L 는 종전보다 높음에 틀림없다. 반면 f_x^K , g_y^K 는 낮아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K의 증가는 K의 실질수익을 낮추며 동시에 D의 실질임대료를 낮춘다.

요약 ⑤ :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을 가진 사업체 또는 산업이 확장될수록 국제교역조건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그리고 노동집약적 조립공정 및 여타 분야에 있어서 요소집약도(K/L)는 증가한다. 반면 특이생산요소의 수익은 감소한다.

이상에서 요약된 특이생산요소 무역모형은 첫째,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수출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산업화과정에서 수출이 근로자의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우선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수출증대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위의 요약 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중화학공업제품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또한 제조업 생산액 중 중화학공업 생산액의 비중이 높아져 중화학공업 분야의 성장기여율이 증가하게 된다(요약④). 동시에 중화학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요약②).

다음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분석도 거의 없다시피한데 배무기·박재윤의 연구(참고문헌 [14] 참조)와 조우현의 연구결과(참고문헌 [36] 참조)는, 1986년까지는 수출은 임금에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우현은 1987년에 이르러서는 특히, 수출지향적 산업에서 수출은 임금에 正(+)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갔다는 앞의 요약 ③과 1987년을 기점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한다는 앞의 요약 ⑤와 일치한다.

여기서 간과될 수 없는 점은 한 미 일 연결형 가공무역구조에서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의 창출과 이의 확대는 미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저기술, 저부가가치를 특징으로 하는 저임금사업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위고임금업체가 취약한 X형의 산업구조를 형성시켰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Porter에 의해서 설명된 특이생산요소의 창출모형과 국제경제이론의 특이생산요소모형을 결합시킬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의 전개가 국내 경제에 미친 일반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우리는 수출이 진전됨에 따라 그것이 경제체계속으로 미치는 방식에 관하여 처음으로 일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우리가 수출은 “경제체계를 자극하여 활동하게 하는 술이라고 주장

7) Keynes,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조순익, 비봉출판사, pp 170~171.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출과 입수 사이에 여러번의 차질이 개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⁷⁾ 왜냐하면 창출된 특이생산요소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제적 비교우위를 갖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또 국제적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노동력⁸⁾이 풍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조립공정을 창출한 결과가 고도의 독과점의 진전이라는 폐해로 나타나면,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성장은 지체될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창출된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에 의한 생산체계를 최상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안주하여, 조립공정 소유주의 수확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세계시장에서 경쟁성을 갖는 제품에 투입될 특이생산요소의 창출을 게을리하거나, 단기적 이익극대화를 위한 재테크에 치중하는 한, 수출은 '경제체계를 자극하여 활동케 하는 술'이 될 수가 없다. 정부가 국제적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에 필요한 특이생산요소 창출의 자극자(prodder), 신호자(signaler) 그리고 촉진자(facilitator)라는 본질적 임무를 수행하여 기업이 계속해서 혁신적이며 동학적일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기업을 발전시키고 자극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기업을 앞서가지 않고 기존의 독과점적 이해의 옹호에 골몰하도록 방조한다면, 수출은 경제를 자극하기는 커녕 해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8) 안병직은 중진국으로서 한국자본주의의 독자적 발전의 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값싸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의 존재를 들고 있다. 안병직은 1930~45년간 근대적 공장규율과 통제물 경험한 100만명의 근대적 노동자, 일제에 징용되어 광산, 토건, 공장노동자로 종사하다가 해방후 귀국한 70만 근대적 노동자, 해방후 보통교육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근대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는 노동력의 형성, 한국전쟁으로 기계화부대에서 소총 정도는 분해 결합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동시에 집단적 규칙생활을 훈련받은 60~100만 수준의 상비군에서 배출된 노동력 등이 양질의 노동력을 규정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안병직,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 경제」, 『사상문예운동』, 1989 겨울, 풀빛, p 23~25) 풍부하고 지리한 노동력은 다른 개도국에도 존재했으나, 양질의 노동력은 개도국 중 한국에만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나라가 독자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IV.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결정하는 요인들

1. 산업화과정의 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량화

산업화과정의 특성들은 전국적 직장분포도를 변화시키고 따라서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분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 중화학공업화의 진전, 독과점도 그리고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 및 지역적 불균등발전을 포착하는 변수와 이를 계량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1) 수 출

‘특이생산요소’인 노동집약형 조립공정을 가진 사업체가 수출의 전개와 더불어 양적으로 팽창할 때(위 모형의 요약 ①②③④에 의하여) 정확성과 민첩성을 발휘하는 단순 또는 반숙련 노동자가 대량 고용된다. 따라서 노동집약형 조립공정에 의한 수출은 저임금사업체를 수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며, 사업체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높이게 작용할 것이다. 즉,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의 결정에 수출은 정(+)의 효과를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전개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상승하며(위 모형의 요약 ⑤에 의하여), 수출이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게 될 것이다.

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필자는 분석대상연도에 있어서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에서 3자리산업별 수출액을 제조업 3자리 산업분류별 생산액으로 나누어 3자리산업별 수출비중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를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만드는 데 이용하였다.

수출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수출률} = \frac{\text{제조업 3자리 산업분류별 수출액}}{\text{제조업 3자리 산업분류별 생산액}}$$

〈부표 4-7〉에는 분석대상기간에 있어서 I/O분류에 의한 수출액이 산업별로 수록되어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75년, 80년, 85년 그리고 87년의 경우에 이용가능하므로 75년, 80년, 85년, 87년의 수출률을 각각 73년, 78년, 84년, 89년의 수출률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률이 25~50% 미만이면 EXPD2 = 1, 나머지는 0
50~75% 미만이면 EXPD3 = 1, 나머지는 0
75~100%이면 EXPD4 = 1, 나머지는 0 그리고
0~25% 미만이면 EXPD2=EXPD3=EXPD4=0

이라는 더미변수를 만들어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로 하였다.

(2) 산업집중도

강철규(참고문헌 [1] 참조)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초기부터 독과점화되었고 조립가공 위주의 수출주종산업의 대규모화를 추진함에 따라 독과점도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였다. 이규억등의 연구는 1970년에 213개 세세분류 제조업 산업에 있어서 대기업 3사 매출액 가중평균 산업집중율은 1974년 58.5%에서 1981년 331개 세세산업분류의 경우 62.0%로 3.5%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85년의 그것은 61.5%로서 81년과 거의 유사하다. 이중에서도 85년까지 생산재 및 내구소비재의 산업집중은 대단히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⁹⁾ 김형기에 의

9) 이규억(1977, 1980), 이규억·이재형·김주훈(1984).

해 작성된 <그림 4-10>과 <그림 4-11>은 산업화초기인 60년대 중반에서 중화학공업초기인 70년 중반기에 독과점화가 크게 진전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산업화초기에 조기독과점화현상과 7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공업화는 기존의 독과점화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부표 4-8>에는 우리가 분석하는 해에 있어서 대기업 3社 출하집중도 추이가 나와 있다. 1984년 이후 상위3사 집중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그림 4-2>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체수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위3사 출하집중율의 자료는 KDI에서 작성된 자료이며 1989년의 것은 현재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1987년의 자료를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1973년의 상위3사 출하집중율은 옥규성이 KDI의 자료를 이용하여 4자리 산업분류로 구한 상위3사 출하집중율을 4자리 산업분류의 매출액을 가중치로 하여 3자리 산업분류의 출하집중율로 전환한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의 주요특징이 고도의 독과점 산업구조의 형성이라고 할 때, 독과점을 나타내는 변수가 분석대상 연도에 있어서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결정하는 데 독립변수로 들어가게 된다. 산업의 독과점정도와 사업체저임금근로자 비중의 분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산업집중율과 이윤사이의 관계에는 정(+의 관계가 있고¹⁰⁾ 독점적 이윤의 일부는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일부 배분될 경우 이들 산업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분석에서는

산업의 상위3사 출하집중율이 60%이상이면 $CR3D = 1$

그 미만이면 $CR3D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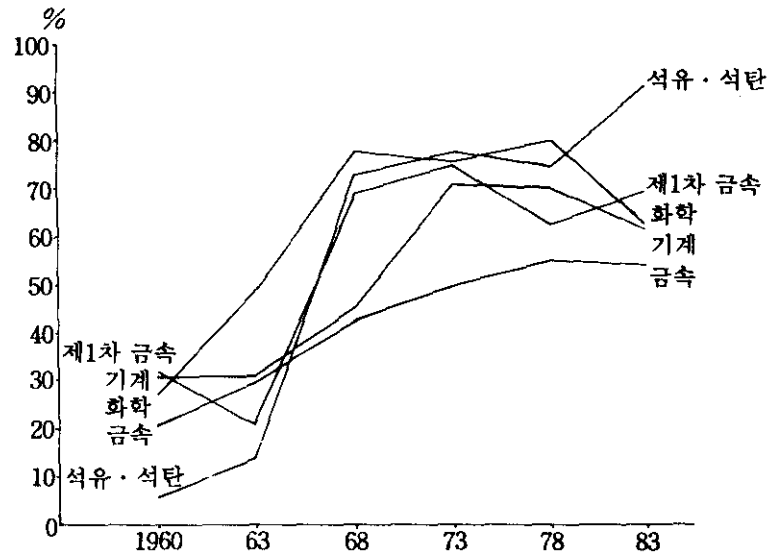
이라는 더미변수를 이용하기로 한다.

10) 장지상, 「경제력 집중」, 『한국경제론』, 유헌출판사, 1989, p. 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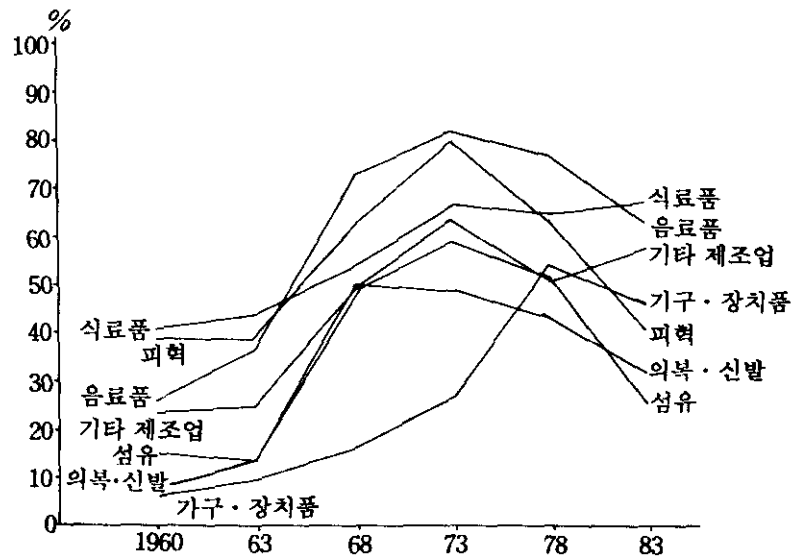
(3) 자본장비율의 제고와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의 증대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이후 중·저가격, 저기술,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림 4-10〉 중공업부문 산업별 CR5 (상위5사 출하집중률)



〈그림 4-11〉 경공업부문 산업별 CR5 (상위5사 출하집중률)



자료 : 김형기[4], p.182, 각년도.

〈표 4-7〉

공업구조의 추이 (부가가치)

(단위 : %)

	1962	1974	1978	1980	1985	1987	1988
경 공 업	74.9	45.9	46.6	44.1	44.1	36.6	35.2
음 식 료 품	21.3	16.6	18.0	16.6	13.8	11.7	11.4
섬 유, 의 복	26.1	20.7	20.0	19.5	16.5	16.4	15.4
나 무, 나 무 제 품	6.0	2.1	2.8	1.7	1.5	1.4	1.6
종 이, 인 쇄	7.2	4.6	4.0	4.4	4.6	4.6	4.5
기 타 제 조 업	14.3	1.9	1.8	1.9	1.9	2.5	2.3
중 화 학 공 업	25.1	54.1	53.4	55.9	61.7	63.4	64.8
화 학	7.0	20.0	17.6	20.5	18.5	17.3	17.5
비 금 속 광 물	3.5	5.4	5.0	5.8	4.8	4.3	4.3
제 1 차 금 속	3.4	9.1	6.6	7.8	7.8	7.1	7.2
금속제품기계장비	11.2	19.5	24.2	21.8	30.6	30.2	33.2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및 『산업센서스보고서』
 1962년은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표 4-7〉에 나타난 공업구조의 추이에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부문과 家電기기와 자동차부문이 노동집약적 조립가공형 중화학공업화의 주된 핵심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에서 기계조립공장의 양적 성장은 근로자 1인당 자본장비율(K/L)을 높이고 따라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다.

K/L의 증가는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따라서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결정하는 독립변수 중의 하나로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려할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평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상승하므로 산업간에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의 격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3자리 산업분류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를 제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산업에 있어서도 기업 규모별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차이가 나므로 우리는 3자리 산업별, 기업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를 제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로 나누었다.

$$\frac{\text{제조업 평균대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비율)}}{\text{3자리 산업별, 기업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 = \frac{\text{제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text{제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에 관한 정보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였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는 3자리 산업분류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가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종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3자리 산업분류별,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를 이용하되 3자리 산업분류별, 기업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를 각 연도에 있어서 제조업 전체의 1인당 부가가치로 나누어 그 비율을 이용하였다.

<부표 4-9>에는 본 연구에 이용된 산업별, 기업규모별 제조업 평균 대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비율)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89년의 산업분류별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정보가 이용가능하나 산업집중률, 수출률에 관한 정보를 87년의 것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우리는 87년의 산업분류별 기업규모별 제조업평균 대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를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결정하는 독립변수중의 하나로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가 들어간다. 중화학공업화의 진전은 노동자 1인당 자본장비율을 높이고 따라서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므로 사업체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낮추게 할 것이다. 이 변수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이 설정된다.

(4) 중소기업 하청계열화의 진전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의 확장은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이 유의되어야 한다. 노동집약형 조립공정의 확산은 독과점 대기업 위주로 그 하부에 하청협력업체가 대량으로 창출되어갔다는 특징을 갖는다. 선진국들은 산업간 그리고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본의 집적과 집중에 의한 독과점화가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화초기 조기독과점에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대량의 중소기업의 창출되고 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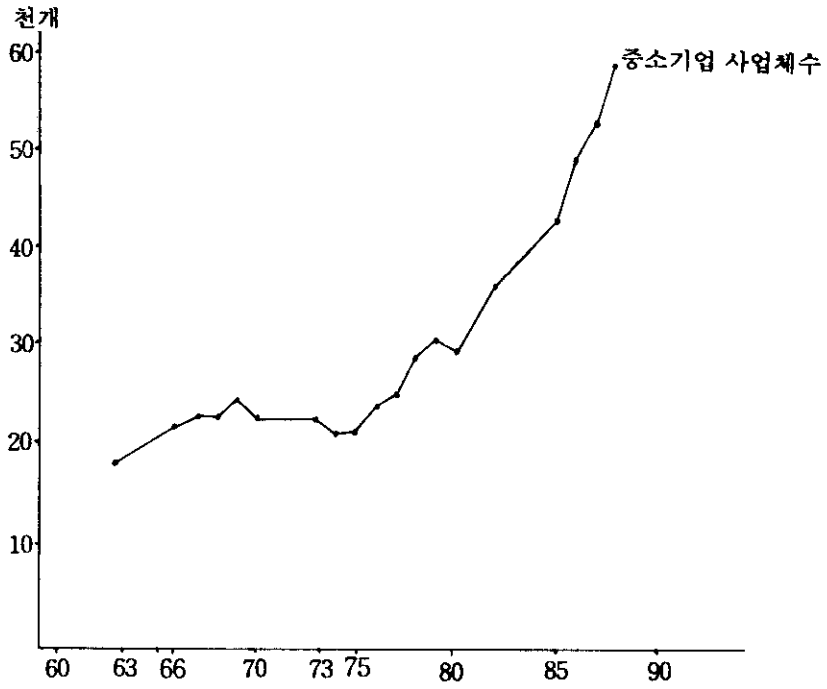
독과점 대기업과 하청협력관계로 연결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체의 수는 <그림 4-12>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69년에서 1974년까지 약간씩 감소하다가, 74년을 기점으로 그 추세가 반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4-13>에는 대기업사업체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기업체의 수는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하였던 기간을 포함하여 1969~76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1973년을 기점으로 대기업의 정의가 종전의 200이상 사업체에서 300이상 사업체로 바뀌는데 1973년 이전의 정의 즉, 200이상 사업체로 한다면 73년, 74년은 대기업 사업체가 각각 1천개, 1천 2백개로 1972년의 800개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이다. <그림 4-13>에서는 대기업체의 수가 73년은 감소하고 74년은 72년과 유사한 것은 대기업의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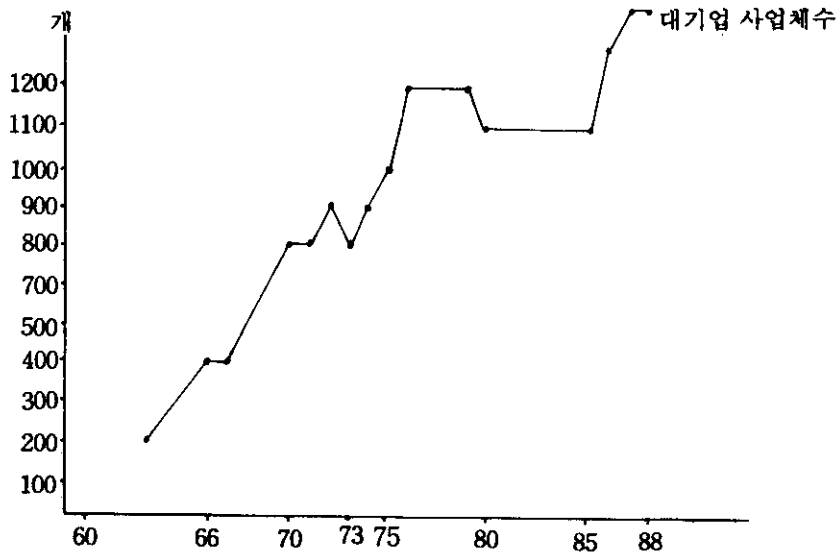
1976년에서 78년까지 대기업체의 수는 1,100개로 유지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80~85년까지 대기업체의 수는 1,000개로 감소된 채로 유지되었으나 80~85년 기간 중소기업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86~87년간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수가 동시에 증가하였다. 88년에는 대기업은 전년수준인 1,300개 사업체였으며 중소기업은 5만8천6백개로 전년에 비해 5천5백개가 증가하였다.

<표 4-8>에는 중소기업중 수급업체 비율의 추이가 나와 있는데, 1969년 11.9%에 머물던 것이 약 20년 후인 1988년에는 65.5%가 되어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가 크게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6년 이후 1985년까지 대기업 사업체수가 1,000~1,100개로 정체되고 있었던 시기에 수급업체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존 중소기업이 하청계열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이 대다수 하청 계열기업으로 출발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3低好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7년에 대기업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하청계열화는 더욱 촉진된 것처럼 보인다. 1986년 중소기업중 수급업체의 비율은 42.5%에서 88년에는 55.5%로 급상승하였던 것이다. 또한 <표 4-8>은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975년 이후 일반기계, 전기전자, 수송용 기기 등에서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 하청계열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2〉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의 증가 추이



〈그림 4-13〉 제조업 대기업 사업체수의 증가 추이



<표 4-8>

중소기업 수급업체의 비율 추이

(단위 : %)

	1969	1975	1980	1984	1985	1986	1987	1988	일본(1981)
체 조 업	11.6	17.4	30.0	41.7	42.2	42.5	48.5	55.5	65.5
일 반 기 계		31.3	50.0	63.1	67.9	63.5	73.7	77.2	84.1
전 기 전 자		43.1	58.3	62.6	77.6	76.8	65.4	82.9	85.3
수송용기기		40.0	23.4	66.4	77.5	73.8	78.8	80.5	87.8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우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사업체 규모가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체규모 더미변수를 이용할 것이다.

즉, 사업체가 100인 미만이면 $FIRM_{12} = 1$, 나머지는 0
 300~500인 미만이면 $FIRM_4 = 1$, 나머지는 0
 500인 이상이면 $FIRM_5 = 1$, 나머지는 0 그리고
 200~300인 미만이면 $FIRM_{12} = FIRM_4 = FIRM_5 = 0$ 으로 하였다.

만약 중소기업의 대기업에의 하청관계를 통하여 지배-종속 관계라면, 즉 노동과정의 분할에 기초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저임금을 간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대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한정되었다면 중소기업 더미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대기업 더미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하청계열화를 특징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 기계, 원자재 및 부품 등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완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수출한다면 기업규모 더미변수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5) 지역적 불균등 발전

1988년 현재 경기지역이 사업체 전체의 29.5%, 서울 28.6%, 경북 11.6%, 부산 10.9%, 경남 5.7% 등의 순이다(〈부표 4-10〉 참조).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가 32.8%로 가장 높다. 경기지역은 사업체수도 급증하고 있다. 강원, 충청, 전라지역의 사업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은 경인, 경부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과 공업화의 편중성을 보여준다.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지역더미를 고려하였다.

즉, 사업체의 소재가

부산이면	REG2 = 1, 나머지는 0
경기이면	REG3 = 1, 나머지는 0
강원, 충청, 전라도이면	REG4 = 1, 나머지는 0
경상도이면	REG5 = 1, 나머지는 0
서울이면	REG2 = REG3 = REG4 = REG5 = 0

2. 회귀모형의 설정 및 추정

(1) 회귀모형의 설정

이상에서 논의한 산업화과정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인 득과점도 더미변수, 1인당 부가가치수준(비율)변수, 수출 더미변수, 사업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그리고 사업체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역더미변수 이외에 사업체가 속한 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ext{RATIO}_i = & \alpha_0 + \alpha_1 \text{ADD} + \alpha_2 \text{CR3D} + \alpha_3 \text{FIRM12} + \alpha_4 \text{FIRM4} + \alpha_5 \text{FIRM5} \\
 & + \alpha_6 \text{EXPD2} + \alpha_7 \text{EXPD3} + \alpha_8 \text{EXPD4} + \sum_{i=2}^9 d_i \text{IND}_i \\
 & + \sum_{i=2}^5 r_i \text{REG}_i + \varepsilon
 \end{aligned}$$

위 식에서

RATIO :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단위:0에서 1.0의 값을 가짐)

음식료품 제조업이면	$IND_{32} = \dots = IND_{39} = 0$
섬유 의복 및 가죽 제조업이면	$IND_{32} = 1$, 나머지는 0
나무 및 나무 제조업이면	$IND_{33} = 1$, 나머지는 0
종이 및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면	$IND_{34} = 1$, 나머지는 0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면	$IND_{35} = 1$, 나머지는 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이면	$IND_{36} = 1$, 나머지는 0
제 1차 금속산업이면	$IND_{37} = 1$, 나머지는 0
조립금속 제품 및 기계제조업이면	$IND_{38} = 1$, 나머지는 0
기타 제조업이면	$IND_{39} = 1$, 나머지는 0

그 외의 변수는 본문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2) 회귀모형의 추정 및 그 결과 - 횡단면 분석 -

73, 78, 84, 89년의 추정결과는 각각 <표 4-9>와 <표 4-10>에 실려 있다.

첫째, 각 연도에 있어서 산업별 기업규모별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비율)은 예상한 바와 같이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을 결정하는 데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계수는 73년과 78년에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84년과 89년에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산업별 기업규모별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이 제조업평균에 대비하여 증가할수록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진다.

〈표 4-9〉

73년, 78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OLS)

	73년		78년	
CONSTANT	0.620	(6.18)	0.545	(6.14)
ADD	-0.111	(2.12)	-0.076	(2.53)
CR3D	-0.112	(1.69)	-0.124	(2.18)
FIRM12	-0.008	(0.17)	0.017	(0.41)
FIRM4	-0.028	(0.44)	-0.012	(0.22)
FIRM5	-0.037	(0.80)	-0.074	(1.72)
EXPD2	0.252	(3.52)	0.144	(2.01)
EXPD3	0.211	(2.39)	0.339	(4.55)
EXPD4	-		-	
IND2	-0.146	(1.33)	-0.022	(0.22)
IND3	-0.226	(1.70)	-0.195	(1.59)
IND4	-0.211	(1.99)	-0.163	(1.61)
IND5	-0.190	(2.18)	-0.127	(1.70)
IND6	-0.046	(0.43)	-0.088	(1.01)
IND7	-0.034	(0.32)	-0.181	(1.64)
IND8	-0.252	(2.55)	-0.100	(1.13)
IND9	-0.234	(1.65)	-0.222	(1.80)
REG2	0.113	(2.37)	0.184	(3.96)
REG3	0.058	(1.09)	0.159	(3.47)
REG4	0.192	(3.37)	0.161	(3.01)
REG5	0.018	(0.31)	0.122	(2.45)
\bar{R}^2	0.21		0.35	
N	283		273	
RATIO의 평균값	0.53		0.55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 「사업체표본」

〈표 4-10〉 84년, 89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OLS)

	84년		89년	
CONSTANT	0.559	(5.82)	0.625	(8.14)
ADD	-2.666	(4.90)	-0.168	(3.58)
CR3D	-0.035	(0.70)	-0.155	(2.84)
FIRM12	-0.018	(0.42)	0.088	(2.03)
FIRM4	0.127	(2.33)	0.052	(0.89)
FIRM5	0.034	(0.75)	-0.039	(0.86)
EXPD2	0.077	(0.94)	0.030	(0.50)
EXPD3	0.095	(1.02)	0.141	(2.30)
EXPD4	0.068	(0.66)	-0.008	(0.10)
IND2	0.209	(1.98)	0.062	(0.69)
IND3	0.115	(1.14)	-0.157	(1.64)
IND4	-0.068	(0.69)	-0.203	(2.34)
IND5	0.109	(1.39)	-0.147	(1.94)
IND6	0.067	(0.80)	-0.143	(1.60)
IND7	0.038	(0.42)	-0.147	(1.43)
IND8	0.066	(0.74)	-0.178	(2.34)
IND9	0.089	(0.68)	-0.092	(0.85)
REG2	0.134	(2.83)	0.191	(3.72)
REG3	0.133	(3.21)	0.045	(1.09)
REG4	0.116	(2.29)	0.153	(2.77)
REG5	0.081	(1.91)	0.113	(2.33)
\bar{R}^2	0.38		0.39	
N	272		291	
RATIO의 평균값	0.57		0.50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 「사업체표본」

둘째, 산업집중도미의 계수는 84년을 제외하고 78년과 89년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73년은 10% 유의수준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추정된 계수의 부호는 예상한 바와 같이 각 연도에 있어서 負의 값을 가진다. 즉, 산업집중도가 높은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간에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에 있어서 체계적 차이가 있어, 산업집중도가 높은 산업에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이 낮다. 산업집중도의 계수의 크기는 84년을 제외하고 계속 커져왔다는 것은 산업집중도가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을 낮추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독과점 산업구조가 진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73년과 78년에 수출률이 25~50% 미만, 50~75% 미만인 산업이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수출터미계수 EXPD2, EXPD3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수출률이 높을수록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고 할 것이다. 84년은 수출변수가 正의 부호를 가지나 그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89년에는 EXPD3가 정의 부호를 가지며 그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EXPD2는 73, 78년과는 달리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에서의 요약 ⑤와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84년에는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 약간의 이변이 관찰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수출은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높이도록 작용하였다. 동시에 수출은 저임금사업체수를 크게 확대시켰을 것이다.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이 높아지고, 저임금사업체수의 수적 확대는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대시켰을 것이다. 89년 EXPD3는 <부표 4-10>에 의하면 중화학공업 부문이므로 중화학공업화로 인한 수출증대의 결과,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또한 가능해진다.

넷째, 사업체규모 더미변수의 계수는 78년 500인 이상 대기업 더미계수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호도 일관되지 않다. 사업체규모 자체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의 특징으로서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이거나간에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이 확산된 결과, 대기업이라고 해서 저임금근로자비중이 낮아야 할 경제적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업체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역더미변수의 계수는 흥미있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서울지역과 대비해 부산을 제외한 경상도지역은 1973년에는 저임금사업체의 비중이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78년, 84년에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 늘어났다. 부산지역은 서울 대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체가 계속하여 많으며 강원, 충청, 전라지역 또한 서울에 비해 1973, 78, 84, 89년이라는 시점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경기지역은 1973년에 서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78, 84년에는 저임금사업체가 늘어났고, 1989년에는 서울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서울지역의 기업이 경인지역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한 결과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89년 현재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은 기업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여타지역에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이 편재하고 있다.

이상의 변수들과 2자리 산업분류더미가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bar{R}^2 의 값은 1973년 0.21, 1978년 0.35, 1984년 0.38, 1989년 0.39로 설명력은 78년 이후에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

(3) 73, 78, 84, 89년 횡단면 자료의 혼용(pooling)에 의한 분석

73, 78, 84, 89년 각 연도에 있어서 회귀분석을 한 후 우리는 이를 자료로 혼용(pooling)하여 시기별 더미 즉,

78년이면	$T_{78} = 1$, 나머지는 0
84년이면	$T_{84} = 1$, 나머지는 0
89년이면	$T_{89} = 1$, 나머지는 0
73년이면	$T_{78} = T_{84} = T_{89} = 0$

등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시기별 횡단면자료를 혼용할 때, 교란항의 성질에 따라 횡단면 異分散 및 시계열 자기상관모형(Cross-sectional Heteroskedastic and Time-wise Auto-regressive Model) 또는 Error Components 모형에 의해 추정될 필요가 있다. 더우기 73, 78, 84, 89년에 있어서 방정식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면 횡단면 자료의 혼용에 의한 계수추정에는 심각한 편기(bias)가 야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량경제학적 기법의 세련화는 추후과제로 남겨놓기로 하고 혼용된 자료에 통상의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였다.

횡단면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혼용했을 때 추정계수는 <표 4-11>에 나와 있다. 추정 결과는 횡단면 추정결과 분석과 거의 예외없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시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보면 73년에 비해 78년과 84년에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89년의 경우는 73년에 비해 사업체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졌으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요약하면 독과점도가 높으면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이 낮으며,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이 높으면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이 낮으며, 수출산업일수록 저임금사업체가 많고 지방의 사업체일수록 저임금사업체가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앞의 이론분석에서 세운 가설과 일치한다. 그리고 혼용에 의한 분석결과는 73년 84년에 이르기까지는 저임금사업체가 전체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고임금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1>

73, 78, 84, 89년 횡단면 자료의 혼용에 의한 추정결과

(OLS)

	계 수 치	
CONSTANT	0.554	(13.28)
T78	0.043	(1.98)
T84	0.066	(2.96)
T89	-0.033	(1.48)
ADD	-0.137	(7.02)
CR3DD	-0.093	(4.07)
FIRM12	0.021	(1.01)
FIRM4	0.031	(1.12)
FIRM5	-0.037	(1.67)
EXPD2	0.126	(4.23)
EXPD3	0.169	(4.96)
EXPD4	0.148	(2.94)
IND2	0.033	(0.74)
IND3	-0.073	(1.41)
IND4	-0.162	(3.51)
IND5	-0.088	(2.35)
IND6	-0.061	(1.37)
IND7	-0.097	(2.01)
IND8	-0.111	(2.76)
IND9	-0.083	(1.45)
REG2	0.154	(6.49)
REG3	0.096	(4.36)
REG4	0.157	(5.87)
REG5	0.080	(3.35)
\bar{R}^2	0.32	
N	1122	
RATIO의 평균값	0.54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 「사업체표본」

V.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작용한 방식과 노동소득불평등도의 감소

1. 노동소득불평등도의 감소

산업화과정에서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의 분포가 변화하며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는 노동력 고용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것은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의 분포를 결정하며 변화시키는 요인에 관해서였다. 이장에서는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고용함에 따라 노동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제 6장과 7장에서는 임금과 임금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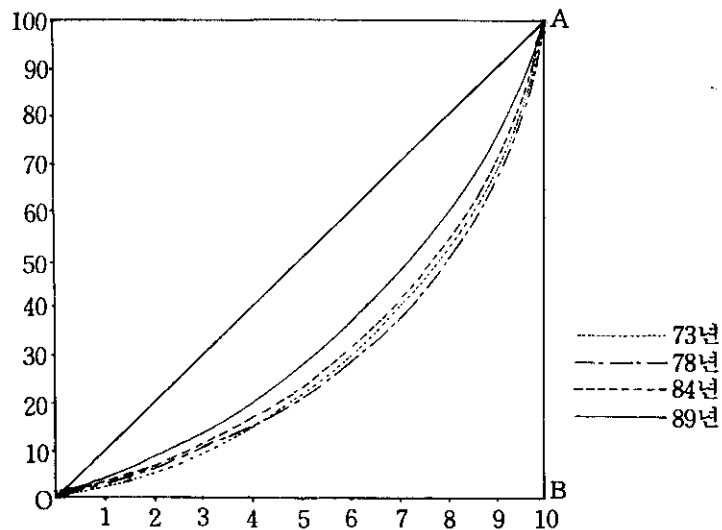
고도경제성장의 과정에서 1975년 전후에는 노동시장에서 미숙련노동력에 대한 무제한적 공급조건이 소멸되어, 미숙련노동력의 좌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으로 인하여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이 급속히 상승, 미숙련노동자와 숙련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노동자간의 소득불평등도가 축소된다는 점은 흔히 지적되어 왔다.¹¹⁾ 우선 우리의 「근로자표본」에서도 노동자간 소득불평등도의 감소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를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및 임금소득십분위의 분위별 분포도를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난 후 노동자

11) 특히 배진한(참고문헌 [28])은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간의 소득불평등도 또한 축소되었다고 하였다. 수출산업은 첫째, 대체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비교적 높은 산업이므로 이들 산업의 구성비가 높아져서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둘째, 소위 경제의 전환점을 앞당겨서 과잉노동력을 축소시키고 생산성상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였다고 하였다. 일본·대만과 비교해볼 때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제의 전환점을 훨씬 앞당겨 노동소득분배율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배진한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우·조우현(참고문헌 [31])은 1987년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상대적 소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간의 소득불평등도의 축소 또는 확대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간의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킨 원천으로서 저임금업체와 고임금업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종전의 분석과 다른 점은 미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를 낳은 요인을 식별해내는 것이다.

우선 <그림 4-14>는 1973-89년간 제조업에 있어서 노동소득분배의 변화를 로렌츠곡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로렌츠곡선이 대체로 73년 이후 대각선 OA에 보다 근접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노동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하고 있다고 하겠다. 78년의 경우는 하위 40% 또는 하위 50%의 노동력의 소득분배상의 위치는 73년보다 호전되었으나 그 이상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73년보다 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도가 감소될수록 로렌츠곡선의 위치가 대각선 OA에 보다 근접하므로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과 OAB의 면적간의 비율로 정의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1973년 0.4282에서 78년 0.4363으로 근소하게 증가하였다가 그후에 크게 감소하여 84년 0.4010, 89년 0.3312로 되었다. 이원덕의 연구¹²⁾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니계수가 1972년 0.4022에서 1976년에는 0.3985로

<그림 4-14> 1973~89년의 로렌츠곡선



12) 이원덕, "Economic Growth and Earnings Distribution in Korea," *Making Economies More Efficient and More Equitable: Factors Determining Income Distribution*, ed. by T. Mizoguch, 1991, Oxford University Press, p 75-76.

1972년과 거의 동일하고 1980년 0.3673, 1984년 0.3537, 1988년 0.3138로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 추세적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2〉에서 십분위 분위별 임금비중을 볼 때 하위 40%의 임금분배율은 1973년 14.61%, 78년 15.04%, 84년 16.18%, 89년 19.99%로 70년대에는 점진적으로 80년대 후반에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상위 20%의 분배율은 73년 48.33%에서 78년 50.39%로 상승하였다가 84년 46.64%, 89년 41.35%로 되어 73~78년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되었다. 하위 40% 근로자계층의 임금분배율의 상위 20% 근로자계층의 임금분배율에 대한 비율은 73~78년간은 0.30으로 동일하나 84년은 0.35, 89년은 0.48로 80년대 뚜렷이 증가하며 특히 80년대 후반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4-12〉 십분위 분위별 임금비중과 십분위분배율, 지니계수

	1973			1978		
	평균임금	점유율	누적점유율	평균임금	점유율	누적점유율
제 1십분위	4,931	2.00	2.00	23,346	2.64	2.64
제 2십분위	7,944	3.22	5.22	30,633	3.46	6.10
제 3십분위	10,297	4.17	9.39	36,197	4.09	10.19
제 4십분위	12,879	5.22	14.61	42,876	4.85	15.04
제 5십분위	15,911	6.45	21.06	52,079	5.89	20.93
제 6십분위	19,768	8.01	29.07	64,533	7.30	28.23
제 7십분위	24,545	9.95	39.02	82,250	9.30	37.53
제 8십분위	31,168	12.63	51.65	106,847	12.08	49.61
제 9십분위	41,610	16.87	68.52	149,398	16.89	66.50
제 10십분위	77,590	31.46	100.00	296,230	33.50	100.00
하위 40%(A)			14.61			15.04
상위 20%(B)			48.33			50.39
십분위분배율(A/B)			0.30			0.30
지니계수			0.4286			0.4363
표본근로자수(명)			42,711			57,700

	1984			1989		
	평균임금	점유율	누적점유율	평균임금	점유율	누적점유율
제 1십분위	72,308	2.76	2.76	173,686	3.48	3.48
제 2십분위	96,593	3.68	6.44	229,015	4.59	8.07
제 3십분위	115,868	4.42	10.86	274,426	5.50	13.57
제 4십분위	139,648	5.32	16.18	320,275	6.42	19.99
제 5십분위	171,287	6.53	22.71	371,451	7.45	27.44
제 6십분위	212,120	8.09	30.80	434,432	8.71	36.15
제 7십분위	263,184	10.03	40.83	511,332	10.25	46.40
제 8십분위	328,656	12.53	53.36	609,702	12.23	58.63
제 9십분위	431,488	16.45	69.81	766,158	15.36	73.99
제 10십분위	791,768	30.19	100.00	1,296,253	25.99	100.00
하위 40%(A)			16.18			19.99
상위 20%(B)			46.64			41.35
십분위분배율(A/B)			0.35			0.48
지니계수			0.4010			0.3312
표본근로자수(명)			95,302			106,657

이러한 추세치를 종합하면 70년대 후반기까지는 하위 40%의 저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지위가 호전되었으나 동시에 상위 20%계층의 근로자의 지위 또한 상대적으로 호전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저임금근로자의 지위가 뚜렷이 상승하여 전반적 소득불평등도를 크게 축소시키게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작용한 방식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는 노동시장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미숙련노동 또는 저임금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1) 저임금업체의 비중증대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수요증대

우리는 <그림 4-2>에서 1970년에서 1976년까지 사업체수는 근소히 감소하였음을 그리고 주1)에서 이 기간에 있어서 사업체 평균규모가 확대되었음을 논의하였다. 사업체수가

근소히 감소하고 사업체 평균규모가 확대됨은 총고용량의 증대를 낳기 마련이다. 이때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위저임금업체의 확대 및 고위고임금업체의 축소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인데, 1973~78년에 있어서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증대는 총고용량에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1978~84년간의 경우 <그림 4-2>가 보여주듯이 77년 이후 사업체수가 크게 증가할 때 각 임금 수준에서 사업체의 저임금근로자 고용량의 수평적 합계로 도출되는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업체저임금근로자 비중이 73년에 비해 84년에 증가했다는 것은 저임금사업체 내에서 저임금근로자수의 증가에 따른 저임금근로자 수요증가를 의미한다. 이 둘은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저임금업체에 의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1978~84년간에 크게 증대시켰다고 하겠다.

(2) 고임금업체에서의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수요증대의 성격

반면 고임금업체가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3년에 비해 78년 및 84년에 감소하였다. 이는 <고임금사업체의 저임금근로자수/고임금사업체 전체근로자수>라는 비율이 증가한 결과이다. 동시에 이 장의 2절에서의 계량분석은 고생산성·고독점산업에서 고임금업체가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때 산업화과정에서 고생산성·고독점산업의 고임금업체는 고성장을 보였을 것이며, 저생산성·저독점산업의 저임금업체는 저성장을 보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고임금업체가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하는 고생산성·고독점산업의 고임금업체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빠를 때, 고임금업체에서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이 고임금업체의 전체근로자의 고용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임금업체의 고성장으로 고임금업체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율 이상으로 저임금근로자 고용증가율이 컸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는 「근로자표본」에서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

고임금업체, 중위저임금업체와 저위저임금업체를 묶은 저임금업체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고용량의 구성 및 그 변화를 <표 4-5>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표 4-5>에 의하면 남자고용량중 고위고임금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은 73년에 33.6%, 78년에 38.7%, 84년에 45.9%, 89년에는 51.4%로 증가하였고 여성고용량 중에서는 고위고임금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은 73년 8.4%에서 78년 11.0%, 89년 17.7%로 증가하였다. 반면 남자고용량중 저임금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은 73년 51.2%, 78년 42.1%, 84년 39.9%, 89년 32.8%로 감소하고 여성고용량중 저임금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은 73년 77.8%, 78년 77.8%, 84년 85.7%로 증가하다가 89년 67.4%로 감소하였다.

저임금근로자가 생산직, 사무직 일부, 여자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때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전문직 및 행정직, 사무직, 생산직이라는 직종별 고용량의 구성을 살펴볼 수도 있겠다. <표 4-13>에 의하면 생산직은 1973년에서 72.8%에서 1989년 64.1%로 감소하여 남성전문직 및 행정직은 73년 9.1%에서 89년 14.4%, 남성사무직은 73년 18.1%, 89년 21.5%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고위고임금업체에 작용된 남성생산직의 비중은 증가하고 저임금업체에 고용된 남성생산직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저임금업체와 고임금업체간에 생산직근로자의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산업화과정에서 특히 고용량 중에서 생산직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고임금업체에 고용된 생산직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한다는 것은 고생산성·고독점의 고임금업체의 고성장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이 크게 확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임금업체에 있어서 미숙련 및 반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 있다. 고임금업체의 고성장과정에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여 고임금업체에서 고임금근로자수와 저임금근로자수의 합인 총근로자수 중에서 저임금근로자비중이 높아졌다고 할 지라도, 고임금업체에서 고임금근로자의 총량은 증가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만약 비교적 동질적인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가 갖는 유사한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예컨대 고임금업체에 고용되는

<표 4-13>

피고용자의 직종별 구성

(단위 : %)

	남 자				여 자			
	73	78	84	89	73	78	84	89
전 체								
전문직 및 행정직	9.1	7.3	12.4	14.4	0.4	0.4	0.5	1.1
사무직	18.1	16.1	19.2	21.5	4.4	7.9	9.3	13.9
생산직	72.8	76.6	63.4	64.1	95.2	92.3	90.2	8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위고임금업체								
전문직 및 행정직	4.7	4.6	7.8	8.4	0.1	0.2	0.2	0.5
사무직	8.2	6.8	8.3	10.8	1.2	2.7	3.0	5.4
생산직	20.7	27.3	29.8	32.2	7.1	8.2	2.4	11.2
중위고임금업체								
전문직 및 행정직	1.3	1.2	1.8	3.0	0.1	0.1	0.1	0.3
사무직	2.7	2.8	4.2	3.9	0.8	1.0	2.5	2.9
생산직	11.3	15.4	8.7	8.6	12.9	10.0	6.0	12.2
저임금업체								
전문직 및 행정직	3.1	1.5	2.7	3.0	0.2	0.1	0.2	0.3
사무직	7.2	6.6	6.7	6.8	2.4	3.6	3.7	5.6
생산직	40.8	33.9	29.9	23.0	75.2	74.0	81.9	6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 아니면 저임금업체 고용되는가에 따라 고임금근로자 또는 저임금근로자가 되기도 한다. 면 고생산성, 고독점산업의 고임금업체에서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에 투입될 근로자에 대해 종전보다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어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의 확보를 둘러싼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는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더 크게 증대시켜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① 73~78년간은 저임금업체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증대 및 총고용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증대

② 78~84년간은 저임금업체의 숫적 증대, 저임금업체의 저임금근로자비중 증대에 의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수요증대

③ 78~84년간은 고임금업체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 수요증대

④ 고임금업체의 고용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로 인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수요증대

등의 요인들이 임금불평등도를 장기적으로 축소시킨 원천이라고 결론짓는다.

이제 노동수요측 특성인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 및 그 분포가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차례가 된다.

Ⅵ. 노동수요측 특성인 사업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임금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 평가

우리나라의 임금 및 임금구조의 결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노동공급측면의 영향과 노동수요측면의 영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동수요측면의 영향은 예컨대 기업규모별 및 산업별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제한되고 있었던 반면 노동공급측면의 영향은 세련된 계량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본 연구에서 노동수요측의 요인을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라는 특질로 파악한다는 방법론을 택하게 될 때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의 분석에는 이러한 기업특성이 임금과 임금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가설은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를 결정하는 1차적 요인은 노동자가 고임금업체에 고용되어 있는가 아니면 저임금업체에 고용되어 있는가의 여부라는 점이다. 노동공급측의 특성 또는 인적자본적 특성인 학력, 경력, 근속년수, 나이, 성 등의 요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교육 및 기능의 등급에 따른 개인간의 임금격차는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라는 노동수요적 특성이 임금결정에 미치는 지배적 영향에 비하면 부수적 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박환구·박세일의 『한국의 임금구조』(1984)에서는 “개인적 속성이 제거된 후 노동자집단간의 순임금격차의 정도”를 추정하는 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환구·박세일 자신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이나 산업구조의 특징과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특징 및 변화를 연결시키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37]). 다만 박환구·박세일은 우리나라의 임금이 ‘속인급적 성격’이 압도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금 = 생계비’ 가설이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는 주장 즉,

“성, 연령, 학력의 차이에 따른 노동자개인의 노동공급가격의 차를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 그리고 “우리의 연구에서 산업, 직종, 규모, 지역 등의 고용 특징은 전체의 임금분포를 설명함에 비교적 큰 기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 등에 필자는 본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노동수요측의 요인이 우리나라의 임금과 임금구조를 분석하는 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성은 분단노동시장론을 주장하는 이효수와 김형기의 연구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효수의 『한국노동시장 구조론』(1984)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학력과 성별로 분단되어 있음을, 김형기의 『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1988)에서는 노동시장이 정신노동자 육체노동자로 분단되어 있음을 논하고 있다. 특히, 김형기는 “한국의 경우 ...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생산노동자에 있어서 독점기업과 비독점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현격한 임금격차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생산노동자의 경우, 독점기업과 비독점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노동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임금격차도 근소하기 때문에 육체노동시장의 기업별 분단현상은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라고 논하고 있다.

이원덕의 연구 *Earnings Distribution and The Role of Enterprises in Korea*(1987)에 있어서는 노동수요측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으나 노동수요측의 특성으로 들어가는 변수는 기업 규모이다. 즉,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그리고 산업집중도가 낮은 산업을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간주하여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분석하였다.

박원구·박세일의 연구에서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데 동일한 논리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고집중, 고부가가치의 기업은 대기업임이 분명하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집중, 고부가가치의 기업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기업규모별 차이는 노동수요측의 한 특징이나 핵심적 특징은 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저집중, 저부가가치의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유사한 임금결정 메카니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수요측의 특성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임금결정연구로는 박영범 ‘Concentration and

Earning in Open Economy : A Case of Keorea',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987년, (1987)과 정인수 『한국의 임금구조 - 6.29 이후의 변화(1991)』가 있다. 박영범은
 1982년 직종별 임금통계 표본사업체 명단을 이용, 조사대상 사업체의 주된 생산품을 4
 자리 또는 5자리 산업분류로 바꾸어 4자리 또는 5자리 산업분류별 상위 3사 출하집중
 률을 외삽하여 이 집중률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밝혔다. 박영범은 산업집
 중률이 10% 증가함에 따라 임금은 1.3%씩 증가함을 추정한 후 “고집중산업에 있어서
 노동자는 여타부문에 고용된 유사한 생산성을 갖는 노동자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박영범은 2,000개 가량의 사업체의 3자리 산업분류를 4자리
 또는 5자리 분류로 전환하는 상당한 작업을 한 결과 그러한 추정을 하였으나 사용된
 자료가 1982년 한 연도에 국한된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정인수는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간의 노동자 임금격차를 추정하였는데 재벌기업
 과 비재벌기업간의 순임금격차는 21.6%가 되고 이중 남자생산직의 순임금격차는 17.3%,
 남자사무직의 순임금격차는 23.4%가 됨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간
 의 순임금격차는 1986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정인수는 직종별임금통계 표본사
 업체명단에서 50대 계열기업에 속하는 기업을 확인한 후 그 정보를 직종별 임금통계에 외
 삽함으로써 재벌 비재벌이라는 노동수요특성에 기인하는 임금결정을 보였던 것이다.

박영범과 정인수의 연구는 노동수요측의 특성이 임금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요한
 문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된 점은 산업집중도별 또는 재벌여부간의 임금결정
 모형을 표본사업체 명단을 입수하여 그 명단과 관련된 정보를 외삽함으로써 실증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산업화과정 → 노동수요측의 특성 및 그 변화 → 임금 및 임금구조의
 결정이라는 전체적 과정에서 노동수요측의 특성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을 뿐, 노동수요측 특성이 산업화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가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박영범과 정인수의 연구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2. 모형의 설정 및 추정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축차형(recursive form) 임금결정모형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text{RATIO} = & \alpha_0 + \alpha_1 \text{ADD} + \alpha_2 \text{CR3D} + \alpha_3 \text{FIRM12} + \alpha_4 \text{FRM4} + \alpha_5 \text{FIRM5} \\
 & + \alpha_6 \text{EXPD2} + \alpha_7 \text{EXPD3} + \alpha_8 \text{EXPD4} \\
 & + \sum_{i=2}^9 d_i \text{IND}_{3i} + \sum_{i=2}^5 r_i \text{REG}_i + \varepsilon \quad \dots\dots\dots(1)
 \end{aligned}$$

$$\begin{aligned}
 \ln \text{WAGE} = & \beta_0 + \beta_1 \text{EDUC} + \beta_2 \text{EXPER} + \beta_3 \text{TENURE} + \beta_4 \text{EXPSQ} + \\
 & \beta_5 \text{TENSQ} + \beta_6 \text{RATIO} + \beta_7 \text{BLUE} + \beta_8 \text{FIRM}_{12} + \beta_9 \text{FIRM}_4 \\
 & + \beta_{10} \text{FIRM}_5 + \sum_{i=2}^9 g_i \cdot \text{IND}_{3i} + \sum_{i=2}^5 s_i \cdot \text{REG}_i + \varepsilon \quad \dots\dots\dots(2)
 \end{aligned}$$

- 위 식에서
- ln WAGE : 임금의 자연대수값
 - EDUC : 정규학교 졸업 기준으로 한 교육년수
 - EXPER : 현재의 직종에 종사한 연수
 - EXPSQ : 경력년수의 자승
 - TENURE : 현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
 - TENSQ : 근속년수의 자승
 - BLUE : 직종 더미 (사무관리전문직이면 0, 생산직 1)
- 단, 구간으로 구분된 자료는 중앙값을 취함

식(1)은 앞장에서 이미 설명되었다. 식(2)의 독립변수들인 교육(EDUC), 경력년수(EXPER, EXPSQ), 근속년수(TENURE, TENSQ)는 개인의 생산성지표를 나타낸다. 인

적자본론에 의한 임금함수모형은 이들 개인의 생산성지표가 개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개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변수 이외에 기업규모, 산업, 지역 그리고 직종 등의 노동시장구조를 나타내는 변수가 임금함수모형에 통상적으로 통합되어 왔는데 우리는 추가적으로 노동수요측 특성을 나타내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RATIO)을 새로운 변수로 넣었다. 즉, 식(2)는 전통적 임금함수 모형에 노동수요측 특성을 나타내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단위 :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가짐)을 넣은 것이다.

산업화과정의 제(여러) 특징은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라는 노동수요측 특성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행한다는 것이 위의 임금결정모형 식(1), (2)가 의미하는 바이다. 식(1)과 (2)는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이나 산업구조의 특징과 우리나라 임금 및 임금구조의 특징 및 변화를 연결시키는 구조식(structural equations)이 되는 것이다.

식 (2)에서 RATIO_i의 계수(β_6)는 여타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즉,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종, 성, 기업규모, 산업, 지역 등이 동일할 때, 저임금사업체비중이 변화함에 따른 근로자임금의 변화 즉,

$$\frac{\partial \ln WAGE}{\partial RATIO} \Bigg|_{\text{여타의 조건 일정}} = \frac{\frac{\partial WAGE}{\partial RATIO}}{WAGE} = \beta_6$$

가 된다.

만약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면,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노동의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이 확립된다. 즉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종 등 여타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歸無가설(null hypothesis: H_0)은 $\beta_6=0$ 이 될 것이다. 만약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에 노동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구조화된 노동시장일 경우 對立가설(alternative hypothesis: H_A)은 $\beta_6 \neq 0$ 이 된다.¹³⁾

13) 동질적 근로자가 고임금업체에 속하느냐 저임금업체에 속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前提하면 RATIO가 독립변수로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동어반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질적 노동자는 고임금업체에 들어가든 저임금업체에 들어가든 간에 비교적 동일한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경쟁시장가설을 귀무가설로 설정하면 RATIO를 임금결정의 독립변수로 하는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추정된 계수(β_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와야 할 것이다.

식 (2)를 남녀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14>에서 <표 4-17>에 실려 있다. 남녀별로 회귀분석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임금결정과정의 구조적으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수요측 특성인 RATIO의 계수는 각년도 남녀 각각에 있어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근로자의 인적속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RATIO에 따라 상이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노동시장이 비구조적이며 경쟁적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RATIO의 추정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RATIO는 근로자개인의 임금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RATIO의 단위에 관해서이다. 한계적 개념에 의하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 증가할 때 임금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 많다, 적다라고 식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0% 많다 적다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한계개념으로서 10% 변화를 기본단위로 하겠다. 저임금근로자비중의 계수를 해석함에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한계적 기본단위 10%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임금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겠다.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RATIO)의 기본단위를 10%로 했을 때 RATIO가 10% 감소함에 따라서 여타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임금의 %증가율은 <표 4-18>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4>

73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율을 포함한 임금함수의
남녀별 추정결과

(OLS)

73년	남	자	여	자
CONSTANT	9.577	(421.92)	9.629	(393.46)
EDUC	0.063	(49.33)	0.001	(13.33)
EXPER	0.065	(28.82)	0.110	(27.88)
TENURE	0.050	(18.14)	0.036	(7.97)
EXPSQ	-0.001	(16.05)	-0.004	(14.96)
TENSQ	-0.001	(10.20)	-0.001	(2.81)
RATIO	-0.932	(80.75)	-0.992	(83.73)
BLUE	-0.336	(40.06)	-0.442	(34.61)
FIRM12	0.013	(1.04)	-0.018	(1.59)
FIRM4	0.039	(3.60)	-0.016	(1.61)
FIRM5	0.043	(5.10)	0.084	(11.44)
IND32	0.196	(15.05)	0.263	(24.56)
IND33	-0.027	(1.69)	0.086	(4.91)
IND34	-0.049	(3.11)	0.264	(12.13)
IND35	0.067	(5.21)	0.361	(28.33)
IND36	0.097	(5.76)	-0.010	(0.50)
IND37	-0.090	(5.81)	-0.025	(0.55)
IND38	-0.001	(0.12)	0.270	(22.99)
IND39	-0.025	(1.06)	0.365	(28.16)
REG2	-0.077	(9.06)	-0.120	(14.69)
REG3	-0.038	(3.74)	-0.047	(5.87)
REG4	0.011	(0.94)	-0.151	(16.72)
REG5	-0.039	(3.92)	-0.077	(9.99)
\bar{R}^2	0.62		0.56	
N	21612		21091	
ln WAGE의 평균값	9.99		9.23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 「근로자표본」

<표 4-15>

78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을 포함한 임금함수의
남녀별 추정결과

(OLS)

78년	남자	여자
CONSTANT	10.766 (579.59)	10.767 (832.98)
EDUC	0.068 (66.99)	0.017 (22.17)
EXPER	0.055 (34.66)	0.051 (26.24)
TENURE	0.063 (31.99)	0.061 (26.95)
EXPSQ	-0.001 (16.72)	-0.001 (8.16)
TENSQ	-0.001 (16.62)	-0.003 (14.52)
RATIO	-0.630 (68.98)	-0.633 (102.23)
BLUE	-0.401 (63.76)	-0.267 (45.24)
FIRM12	-0.003 (0.35)	-0.029 (3.90)
FIRM4	0.043 (4.80)	-0.031 (5.39)
FIRM5	0.046 (6.43)	0.084 (17.89)
IND32	0.061 (5.18)	0.077 (12.07)
IND33	-0.070 (5.41)	0.075 (8.49)
IND34	-0.039 (2.83)	0.094 (7.63)
IND35	0.003 (0.33)	0.103 (14.39)
IND36	-0.002 (0.19)	0.050 (4.81)
IND37	-0.132 (10.68)	0.031 (1.60)
IND38	-0.062 (5.85)	0.048 (7.18)
IND39	-0.069 (4.39)	-0.026 (2.64)
REG2	-0.015 (2.14)	-0.050 (10.75)
REG3	-0.025 (3.52)	-0.026 (5.53)
REG4	0.050 (5.42)	-0.046 (10.02)
REG5	-0.112 (15.43)	-0.020 (4.42)
\bar{R}^2	0.67	0.65
N	28668	25030
ln WAGE의 평균값	11.30	10.57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 「근로자표본」

<표 4-16>

84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을 포함한 임금함수의
남녀별 추정결과

(OLS)

84년	남자	여자
CONSTANT	11.904 (969.32)	11.692 (1049.09)
EDUC	0.050 (76.50)	0.021 (31.49)
EXPER	0.023 (17.19)	0.056 (30.75)
TENURE	0.078 (74.90)	0.043 (26.02)
EXPSQ	-0.0002 (2.83)	-0.003 (20.40)
TENSQ	-0.002 (35.73)	-0.0007 (4.91)
RATIO	-0.609 (106.10)	-0.485 (72.46)
BLUE	-0.280 (78.18)	-0.167 (35.97)
FIRM12	0.025 (3.13)	0.034 (4.56)
FIRM4	-0.022 (3.35)	-0.020 (3.90)
FIRM5	-0.005 (0.96)	0.044 (10.89)
IND32	0.066 (9.87)	0.037 (6.42)
IND33	-0.049 (5.52)	0.203 (21.44)
IND34	0.051 (5.93)	0.175 (12.87)
IND35	-0.059 (8.64)	0.095 (14.65)
IND36	0.030 (3.97)	0.081 (7.26)
IND37	-0.163 (22.91)	0.036 (2.34)
IND38	0.004 (0.80)	0.135 (22.69)
IND39	0.065 (5.91)	0.106 (11.40)
REG2	-0.018 (3.43)	-0.086 (20.08)
REG3	-0.030 (6.51)	-0.156 (41.90)
REG4	-0.058 (11.31)	-0.053 (11.69)
REG5	0.065 (15.09)	-0.092 (25.69)
\bar{R}^2	0.68	0.54
N	53955	41345
ln WAGE의 평균값	12.46	11.60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 「근로자표본」

〈표 4-17〉 89년의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을 포함한 임금함수의
남녀별 추정결과

(OLS)

89년	남 자		여 자	
CONSTANT	12.494	(1108.78)	12.397	(1312.86)
EDUC	0.049	(89.82)	0.019	(37.65)
EXPER	0.049	(41.13)	0.041	(31.72)
TENURE	0.038	(45.37)	0.052	(46.95)
EXPSQ	-0.001	(22.91)	-0.002	(24.95)
TENSQ	-0.0005	(13.64)	-0.001	(21.16)
RATIO	-0.562	(128.10)	-0.529	(122.69)
BLUE	-0.222	(80.66)	-0.109	(39.20)
FIRM12	-0.061	(10.38)	-0.041	(7.59)
FIRM4	-0.041	(8.83)	0.038	(8.99)
FIRM5	0.047	(12.49)	0.082	(22.81)
IND32	0.108	(16.26)	0.089	(16.14)
IND33	-0.025	(3.13)	0.131	(17.03)
IND34	0.019	(2.50)	0.040	(4.58)
IND35	0.041	(6.17)	0.121	(19.11)
IND36	0.050	(6.56)	-0.015	(1.73)
IND37	0.063	(8.24)	0.026	(1.93)
IND38	0.033	(5.12)	0.107	(19.10)
IND39	0.007	(0.79)	0.117	(16.52)
REG2	-0.105	(21.51)	-0.090	(26.62)
REG3	-0.060	(16.60)	-0.019	(6.87)
REG4	-0.074	(15.67)	-0.017	(4.36)
REG5	-0.011	(3.03)	-0.064	(22.35)
\bar{R}^2	0.70		0.67	
N	60536		38371	
ln WAGE의 평균값	13.18		12.53	

주 : ()안의 수치는 추정계수 t-값의 절대치임.

자료 : 「근로자표본」

〈표 4-18〉 RATIO 10% 감소에 따른 임금의 %증가율

(단위 : %)

연도	남자	여자
1973	9.3	9.9
1978	6.3	6.3
1984	6.1	4.9
1989	5.6	5.3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 이외의 요인들이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이 미치는 영향의 추정계수는 남녀 모두 각 년도에 있어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남자의 경우 교육이 1년 증가할 때 임금상승률은 1973년, 78년, 84년, 89년에 각각 6.3%, 6.8%, 5.0%, 4.9%로 78년에는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율이 증가하였다가 84년과 89년에는 감소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율은 1973, 78, 84, 89년에 각각 1.8%, 1.7%, 2.1%, 1.9%로 남자의 교육투자수익률보다 대단히 낮다. 이러한 교육투자수익률의 차이는 남녀간에 존재하는 임금 및 고용차별의 결과라고 하겠는데, 흥미로운 점은 여자의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의 증가에 따른 남녀격차의 완화가 아니라, 여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이 1.7%~2.1%내외로 안정적인 반면, 남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이 감소함에 남녀간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적 인적자본론에 의한 임금결정모형에서는 경력 또는 근속이 증가함에 임금이 정의 영향을 미치나, 경력 또는 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상승률은 체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력자승(또는 근속자승)의 계수는 負의 값을 갖는 것이 예측되고 있다. 즉,

$$\frac{\partial \ln WAGE}{\partial EXPER} = \beta_2 - 2\beta_4 EXPER ; \quad \frac{\partial \ln WAGE}{\partial TENURE} = \beta_3 - 2\beta_5 TENURE$$

우리는 〈표 4-14〉~〈표 4-17〉에 나타난 β_2 과 β_4 을 이용하여 남자의 경력효과를 추정하고 β_3 과 β_5 를 이용하여 남자의 근속효과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19〉에 요약되

어 있다.

〈표 4-19〉 남자의 경력효과와 근속효과

연 도	$\hat{\beta}_2 - 2\hat{\beta}_4$	$\hat{\beta}_3 - 2\hat{\beta}_5$
1973	0.066 - 0.032 = 0.062	0.050 - 0.002 = 0.048
1978	0.055 - 0.002 = 0.053	0.064 - 0.003 = 0.061
1984	0.023 - 0.000 = 0.023	0.078 - 0.004 = 0.074
1989	0.049 - 0.003 = 0.046	0.039 - 0.001 = 0.038

직종경력 1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률은 남자의 경우 73년 6.2%, 78년 5.3%, 84년 2.3%, 89년 4.6%로 84년까지 하락하다가 그 후 상승하였다. 근속 1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율은 직종경력년수 증가와 반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73~84년까지 상승하다가 84년 이후 하락하였다.

셋째, 생산직을 나타내는 직종더미의 계수는 남자의 경우 73년 -0.34, 78년 -0.40, 84년 -0.28, 89년 -0.22로 사무관리전문직과 생산직간의 임금격차는 78년에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축소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직 더미계수의 추정값은 73, 78, 84, 89년에 있어서 각각 -0.44, -0.27, -0.17, -0.11로 여성의 직종간 임금격차는 계속하여 크게 감소되고 있다.

넷째, 사업체규모 더미변수의 계수에 관해서이다. 남자의 경우 200~300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미만 사업체의 계수는 73년과 78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84년은 100인 미만 사업체가 더 높은 임금을, 89년은 100인 미만 사업체가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남자의 경우 200~300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500인의 사업체는 73년과 78년에는 보다 높은 임금을, 84년과 89년에는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역시 남자의 경우 200~300인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인 이상의 대규모사업체는 73년, 78년, 89년(84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남자의 경우 500인 이상의 대규모사업체에 있어서는 거의 일관되게 200~300인

의 중규모사업체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외의 규모에 있어서는 추세적으로 일관된 영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연령, 교육년수, 근속년수 및 경력년수의 차이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은 박원구·박세일의 연구¹⁴⁾ 및 여타의 문헌¹⁵⁾이 이미 밝히고 있다. 무엇이 500인 이상의 대규모사업체의 임금을 여타기업보다 높게 하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통제상실(control loss)가설에 의거하겠다. 대규모사업장에서는 관리 감독자가 지휘 통솔할 수 있는 통제의 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상실이 초래되기 마련인데, 이를 방지하자면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¹⁶⁾ 즉,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사업장에서 통제상실로 오는 비효율성을 만회하는 한 방법이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가설은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을 가진 대규모사업장에는 의미를 지니리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지역더미변수의 계수에 의하면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의 경우 여타 지역은 서울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단, 84년 경상도 더미변수의 계수의 영향을 제외함). 여성의 경우 78년의 경우(REG4, REG5)를 제외하고는 서울 이외의 지역은 서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임금격차의 추세와 노동시장의 힘

여타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이 10% 감소함에 따른 임금증가율은 <표 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73년에서 89년에 이르기까지 감소한다. 그 이유가 설명

14) 박원구·박세일, 『한국의 임금구조』, KID, 1984, pp 278~281.

15) 박덕제·조우현·이원덕, 『노동경제학』, 비봉출판사, 1989 p 242.

16) 이는 J.Garen의 오하이오 주립대 학위논문 초고 *The Effect of Firm Size on Wage Rates*(1980. 9)에서 제시되었다.

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는 이미 산업화과정에서 사업체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개별적 기업의 노동수요의 수평적 합계인 시장수요가 크게 증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1984년에 이르기까지 사업체 저임금근로자비중 분포에서 저임금업체가 증대됨을 그리고 사업체 구성에서 고임금업체의 비중이 감소됨을 살펴보았다. 사업체수가 증대되고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의 종합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고임금업체의 고용에 있어서 비중은 높아졌고, 동시에 고임금업체에 있어서 생산직의 고용량은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직근로자비중의 하락추세와는 달리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의 확산에 의한 것이다. 이들 요인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하면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임금격차의 크기가 감소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모형은 逐次型이므로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1) 시계열적으로 독과점이 심화되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지고 따라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임금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다.

$$\left[\frac{\partial \ln WAGE}{\partial RATIO} \cdot \frac{\partial RATIO}{\partial CR3} > 0 \right]$$

(2) 시계열적으로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가 중화학공업화(또는 K/L의 증대)로 증가하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지고 따라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임금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다.

$$\left[\frac{\partial \ln WAGE}{\partial RATIO} \cdot \frac{\partial RATIO}{\partial ADD} > 0 \right]$$

독과점도가 진전되고 부가가치생산성의 격차의 확대가 저임금업체와 고임금업체간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고 하더라도 73~89년에 이르기까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확대가 이러한 경향성을 압도하여 노동시장에서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격차를 축소시키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배무기(참고문헌 [11])는 1970년대 중반경에 미숙련노동의 무제한적 공급이 소멸되고 그 이후에는 右上向하는 통상의 노동공급곡선을 갖게 되었다는 전환점(turning point)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필자는 73년 이후 특히, 저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수요확대는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상대적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시장적 힘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4. 노동시장의 분단

비록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에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타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예컨대 근로자 인적속성이 동일할 때에 있어서도 노동수요측 특성인 사업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주는 영향은 각 분석년도에 실로 강력하다는 점에 대해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근로자임금이 노동수요측 특성에 의해 주요한 영향을 받을 때 특히, 고임금업체에 고용되는가 아니면 저임금업체에 고용되는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할 노동자가 갖는 유사한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측 특성에 의해 임금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저임금업체의 근로자들이 고임금업체에 취업경쟁을 벌임에 따라 고임금업체의 근로자 임금은 낮아지고, 저임금업체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이 발생하여 임금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동질의 노동에게는 동일임금이 확립되기 마련인데, 왜 임금이 사업체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가?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면, 임금의 개인간 격차는 주로 개인간의 지식 및 숙련수준의 차이 즉 생산성 격차를 반영할 것이 아닌가? 지식 및 숙련을 축적하는 데에는 인적자본투자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횡단면에서 개인간의 임금격차는 개인간의 질적 차이, 생산성의 차

이에 기인하므로 개인의 임금을 설명하는 데 인적속성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커야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개인간의 임금격차가 사업체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가?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쟁적이지 않고 사업체특성에 의해 분단되고 있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노동시장이 노동수요측 특성에 의하여 분단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은 임금이 인적자본량의 차이 즉, 노동자개인이 갖는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지 아니면 임금이 노동수요측 요인의 차이 즉, 고용이나 사업체의 특성 또는 직무의 특성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박세일(참고문헌 [7])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노동소득의 전반적 불평등도중 얼마만큼이 인적자본형의 개인적 특성(공급측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이 고용이나 직무적 특성(수요측 요인)에 기인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A : 임금은 인적자본에 의존한다

모형 B : 임금은 고용이나 직무적 특성에 의존한다

인적자본속성인 교육, 경력 등에 의한 임금불평등도의 설명력(\bar{R}^2)은 남자의 경우 0.56이며 고용이나 직무적 특성에 의한 설명력(\bar{R}^2)은 16.3으로 전자가 후자의 3배 이상이고, 여자의 경우 인적자본 속성에 의한 임금불평등도 설명력(\bar{R}^2)은 0.48, 고용이나 직무적 특성에 의한 설명력(\bar{R}^2)은 19.4로 된 것을 밝힌 후 인적자본특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박세일은 결론지었다.

필자는 박세일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되 노동수요측 요인으로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넣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text{모형 A : } \ln W = \gamma_0 + \gamma_1 \text{ EDUC} + \gamma_2 \text{ EXPER} + \gamma_3 \text{ TENURE} \\ + \gamma_4 \text{ EXPSQ} + \gamma_5 \text{ TENSQ} + \varepsilon$$

$$\text{모형 B : } \ln W = \delta_0 + \delta_1 \text{ RATIO} + \delta_2 \text{ BLUE} + \delta_3 \text{ FIRM12} + \delta_4 \text{ FIRM4}$$

$$+ \delta_5 \text{ FIRM5} + \sum_{i=2}^9 h_i \cdot \text{IND } 3i + \sum_{i=2}^5 v_i \cdot \text{REG}_i + \varepsilon$$

추정결과는 <부표 4-11>과 <부표 4-12>에 수록되어 있는데 \bar{R}_2 만을 <표 4-20>에 정리하였다.

<표 4-20> 각 연도별 인적자본 및 노동수요측 특성에 의한 설명력

	남 자				여 자			
	1973	1978	1984	1989	1973	1978	1984	1989
인적자본에 의한 설명력	0.45	0.55	0.53	0.54	0.23	0.37	0.34	0.36
노동수요 특성에 의한 설명력	0.49	0.48	0.45	0.47	0.45	0.50	0.40	0.53

남자의 경우 노동수요측 특성에 의한 설명력과 인적자본 특성에 의한 설명력은 유사하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노동수요측 특성에 의한 설명력이 훨씬 더 높다.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할 노동자에 대해 노동수요측 특성에서 기인하는 분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분단은 고착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화과정에서 서서히 퇴조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89년에 있어서도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에 구조화된 노동시장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은 유의되어야 한다.

이때 제기되는 문제는 노동수요측 특성 중에서 직무적 특성 즉 직종별 분단화가 분단의 1차적 요인인가 아니면 사업체 특성 즉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에 의한 분단화가 분단의 1차적 요인인가라는 것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서 관찰되는 직종별 구조를 살펴본 후 사업체 특성에 의한 분단이 보다 주요한 지배적 요인임을 밝혀질 것이다.

Ⅶ.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의 임금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

1. 임금구조의 분석방법

임금구조를 분석하는 통상적 방법은 성별, 학력별, 연령별, 직종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유무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수요의 특성인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인적속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우리는 앞서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중위저임금업체, 저위저임금업체를 정의한 바 있는데, 이 장에서는 중위저임금업체와 저위저임금업체를 저임금업체로 묶어 우선 총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한 임금구조를 개관한 후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및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직종별 임금구조의 특징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게 된다. 이 장의 마지막 소절에서는 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 및 직종별로 표본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한 후 근로자의 학력, 근속년수, 경력년수, 나이가 동일할 때 발생하는 순임금격차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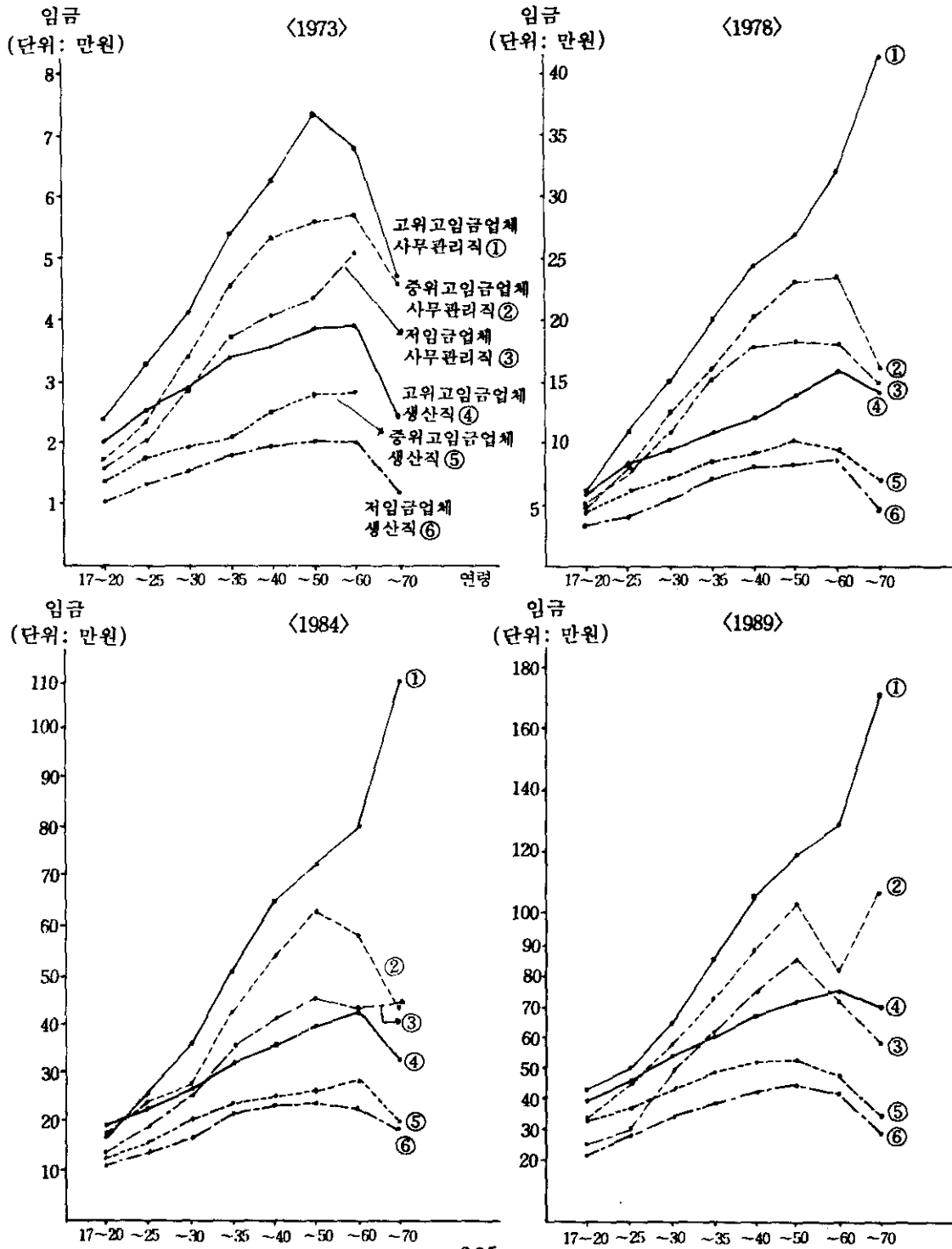
2.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의 직종별·연령별 임금구조

고위임금업체와 중위임금업체 및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직종별·연령별 임금표는 남자의 경우 <부표 4-13> <부표 4-20>까지 실려 있다. 이들 표들은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각 개개인이 자신의 임금과 여타사람과의 임금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량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들 표에는 직종을 전문, 행정, 관리직(앞으로 전문관리직이라고 부르겠음), 사무, 판

<그림 4-15>

남성노동자의 연령-임금곡선



때, 서어비스직(앞으로 사무직이라고 부르겠음), 생산·노무직(앞으로 생산직이라고 부르겠음)으로 나누어 노동수요특성별 연령별 임금이 수록되어 있고 동시에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을 하나로 묶어 사무관리직으로 통합한 연령별 임금에 관한 통계치가 수록되어 있다. 연령별 임금구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사무직이 나이가 들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무관리직과 생산직의 연령별 임금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림 4-16〉에는 남성의 경우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및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사무관리직과 생산직의 연령별 임금곡선이 73, 78, 84, 89년의 각 년도 별로 정리되어 있고, 〈부록 그림 4-1〉에는 여성의 연령-임금곡선이 나와 있다. 남성의 연령-임금곡선의 특징들을 요약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징 1〉

1973~89년까지 대체로 고위고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 중위고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 저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 고위고임금업체의 생산직, 중위고임금업체의 생산직, 저임금업체의 생산직 등의 순으로 임금위계를 보이고 있다.¹⁷⁾

〈특징 2〉

사무관리직과 생산직간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및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공통된 현상이다. 〈표 4-21〉에는 근로자의 생산활동이 비교적 왕성한 20~40세에 있어서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사무관리직 임금/생산직 임금〉간의 비율을 보여주

17) 전문관리직, 사무직, 생산직으로 직종을 나누어 평균임금의 위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로 사업체를 나누었을 때 또한 이를 성별로 나누었을 때 18개 계층의 평균임금의 위계가 나오게 된다. 〈부표 4-21〉과 〈부표 4-22〉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73년, 89년도만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는데 73, 78, 84, 89년에서 일관된 현상은 저임금업체에서 적중간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하며, 그 다음에 중위고임금업체 그리고 고위고임금업체의 순서이다.

		1973년의 임금순위	1989년의 임금순위	비고
고위고임금업체	남자 전문관리직	1	1	
고위고임금업체	남자 사무직	2	2	
고위고임금업체	남자 생산직	4	4	
중위고임금업체	남자 전문관리직	3	3	
중위고임금업체	남자 사무직	7	5	▲
중위고임금업체	남자 생산직	8	8	
저임금업체	남자 전문관리직	9	6	▲
저임금업체	남자 사무직	12	11	
저임금업체	남자 생산직	16	14	▲
고위고임금업체	여자 전문관리직	5	7	▼
고위고임금업체	여자 사무직	11	9	
고위고임금	여자 생산직	6	10	▼
중위고임금업체	여자 전문관리직	10	12	▼
중위고임금업체	여자 사무직	13	15	▼
중위고임금업체	여자 생산직	14	16	▼
저임금업체	여자 전문관리직	15	13	▲
저임금업체	여자 사무직	17	17	
저임금업체	여자 생산직	18	18	

2단계 이상의 계층상승은 ▲표로, 2단계 이상의 계층하강은 ▼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남자 전문관리직은 계층상승하고 여자 전문관리직은 계층하강하였으며 고위고임금업체의 여자 생산직과 중위고임금업체의 여자 생산직도 계층하강을 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위고임금업체의 남자 생산직은 중위고임금업체의 사무직, 저임금업체의 전문관리직, 사무직보다 73년과 89년에 모두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음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위고임금업체의 남자 생산직도 73년과 89년에 저임금업체의 사무직보다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89년 현재 고위고임금업체의 여자 생산직은 저임금업체의 남자 생산직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으며, 중위고임금업체의 여자 전문관리직보다도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표 4-21〉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사무관리직과 생산직간의 임금격차

(생산직 =100)

	73				78			
	20~25	25~30	30~35	35~40	20~25	25~30	30~35	35~40
고위고임금업체 사무관리직/생산직	128	144	160	179	138	166	183	197
중위고임금업체 사무관리직/생산직	129	173	209	206	130	182	197	224
저임금업체 사무관리직/생산직	154	196	203	204	166	206	218	222

	84				89			
	20~25	25~30	30~35	35~40	20~25	25~30	30~35	35~40
고위고임금업체 사무관리직/생산직	115	132	167	182	109	123	140	159
중위고임금업체 사무관리직/생산직	148	141	174	214	119	139	149	175
저임금업체 사무관리직/생산직	139	153	170	180	127	144	163	170

〈특징 3〉

동일한 직종에 있어서도 즉, 사무관리직 및 생산직에 있어서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그리고 저임금업체라는 노동수요특성의 차이에 따라 현격한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표 4-22〉에는 근로자의 생산활동이 비교적 왕성한 시점인 20~40세까지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에서 저임금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사업체특성별 임금격차를 실었다.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 사무 관리직의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예컨대 1989년에 있어서 〈표 4-21〉에 의하면 저임금업체 사무 관리직을 100으로 했을 때 1.36배 1.45배의 높은 임금을 고임금업체의 사무 관리직은 받고 있었다. 같은 생산직이라고 할지라도 〈표 4-22〉에 의하면 1989년에 있어서 저임금업체 생산직을 100으로 했을 때 고위고임금업체의 생산직은 1.55~1.68배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표 4-22〉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동일 직종내에서의 임금의 총격차

	73				78			
	20-25	25-30	30-35	35-40	20-25	25-30	30-35	35-40
고위고임금업체 관리사무직	161 248	138 271	147 298	156 319	152 252	131 269	133 289	141 312
중위고임금업체 관리사무직	114 176	116 227	124 251	130 266	106 176	107 220	106 232	118 262
저임금업체 사무관리직	100 154	100 196	100 203	100 204	100 166	100 206	100 218	100 222
고위고임금업체 생산직	194	188	186	178	182	162	158	158
중위고임금업체 생산직	136	131	120	129	135	121	118	117
저임금업체 생산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4				89			
	20-25	25-30	30-35	35-40	20-25	25-30	30-35	35-40
고위고임금업체 관리사무직	146 203	140 214	147 250	158 284	144 183	136 196	138 225	145 247
중위고임금업체 관리사무직	128 178	112 172	119 202	132 238	126 160	121 174	115 188	121 206
저임금업체 사무관리직	100 139	100 153	100 170	100 180	100 127	100 144	100 163	100 170
고위고임금업체 생산직	177	163	150	156	168	159	161	155
중위고임금업체 생산직	120	122	116	111	135	125	126	118
저임금업체 생산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남자생산직의 경우 이러한 격차는 73년에는 더 심각하였다. 78, 84, 89년에는 73년보다 축소되었지만 생산직에 있어서 노동수요특성별로 여전히 심각한 임금격차는 유지된 것처럼 보인다. 김형기가 생산직의 경우 “1970년 후반 이후에는 독점부문과 비독점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노동시장분단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특성별로 같은 직종에 있어서도 현격한 임금격차가 관찰되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에서 사업체특성별로 분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특징 4〉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고위고임금업체의 생산직은 25세까지는 중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보다 임금이 높으며, 25~30세까지는 저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보다 임금이 높다는 사실이다. 1984년까지 유사한 구조가 지속되다가 1989년에 이르러서는 고위고임금업체 생산직은 25세까지는 여전히 중위고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30~35세까지는 저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뿐만아니라 1989년에는 중위고임금업체의 생산직이 20~25세에 있어서 저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25세에 있어서 저임금업체의 생산직은 저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과 거의 유사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30~35세까지의 사무관리직의 현격한 상대적 지위하락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김형기는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효수가 주장한 바와 같은- 학력과 성에 의해 분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종(대분류)과 성에 의해 분할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직종 학력 등에 의한 分斷은 부수적 요인이며,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라는 노동수요측 특성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특징 1〉, 〈특징 3〉 그리고 〈특징 4〉에 의하여 필자는 박원구, 박세일이 우리나라 임금이 ‘속인급적 성격’이 압도적이라고 한 주장, 그리고 ‘임금=생계비’가설을 부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임금은 근로자가 고임금업체에 고용되는가 저임금업체에 고용되는가에 의해 1차

적으로 결정된 후에 각 사업체 내에서 '숙임급적 성격'이 반영되어 결정될 것이다. 이 때 고부가가치생산성, 고독점의 사업체가 고임금업체가 되는 것은 4장에서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임금은 '임금==생계비'가설이라는 노동공급측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기보다 오히려 고부가가치생산성이라는 경쟁적 요인, 고도의 독과점이라는 제도적 요인 등의 노동수요측 특성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징 5>

연령-임금곡선은 일정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다가 정점을 이루고 난 후 하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나이 증가에 따라 경험이 증대된 결과 인적자본축적이 진행되나, 일정시점 이후에는 인적자본퇴화(depreciation)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기 때문이다. <그림 4-16>에서 근로자의 정년시점을 50~60세 사이로 보도록 하겠다. 73, 78, 84, 89년에 있어서 고위고임금업체의 사무 관리직은 73년을 제외하고 연령-임금곡선이 계속 상승하며, 고위고임금업체의 생산직은 전기간에 계속 상승하고 있다. 중위고임금업체의 사무 관리직은 1984년, 1989년에 40~50세 사이에서 정점이 되며, 중위고임금업체의 생산직은 1978년에는 40~50세 사이에서 정점이 되었다가, 1984년에는 정년인 50~60세까지 정점없이 계속 상승하였고, 1989년에 40~50세 사이에서 정점이 되고 있다. 저임금업체의 사무 관리직은 1978년에 40~50세 사이에서 정점이 있으며 그러한 추세는 89년까지 지속되며, 저임금업체의 생산직은 정년을 50~60세로 할 때 1984년 이후부터 40~50세 사이에서 정점이 되고 있다. 1989년 현재 정년을 50~60세로 할 때 고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과 생산직에 있어서 연령-임금곡선은 계속 상승하나, 그 이외의 사업체에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40~50세 사이에서 연령-임금곡선의 정점이 되고 있다. 박원구·박세일은 한국의 임금구조에 대한 주요 특징을 예시하면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연령-임금곡선상의 특징이다. 우리나라 임금수준은 고용초기에 가장 낮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여 그 증가경향은 고용관계 종료시점까지 계속되어 60세 이후에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

은 특히 외국의 경우와 대비하여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바,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45~49세경에.... 미국의 경우는 50세 전후, 캐나다의 경우는 40세 전후에 각각 정점에 달하고 나서는 하락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1989년에 있어서 고위고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과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40~50세 사이가 연령-임금곡선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연령-임금곡선이 정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박원구·박세일의 논의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외국과 유사하게 정점이 40~50세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연령-임금곡선을 또 다른 방법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25~30세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연령-임금지수곡선을 만들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임금상승의 정도가 보다 정확히 포착될 수 있다. <표 4-23>은 연령-임금지수표이며, <표 4-23>에 나타난 각 년도의 연령-임금지수 중 1973년과 1989년의 것만 각각 <그림 4-16a>와 <그림 4-16b>에 나타냈다. 연령이 증가함에 임금이 상승하는 정도는 노동생애에 있어서 숙련과 경험이 증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림 4-16>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 <특징 6>과 <특징 7>로 요약된다.

<특징 6>

고위고임금업체 및 중위고임금업체의 사무관리직은 25~3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정도는 73년과 89년에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저임금업체 사무관리직은 89년에 있어서 중위고임금업체의 그것과 거의 같아졌다.

<특징 7>

한 시점에 있어서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및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남자 생산직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정도는 대단히 완만하다는 의미에서 거의 유사하다. 특히, 남자생산직의 경우 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정도에 있어서 16년간의 시차가 있는 1973년과 1989년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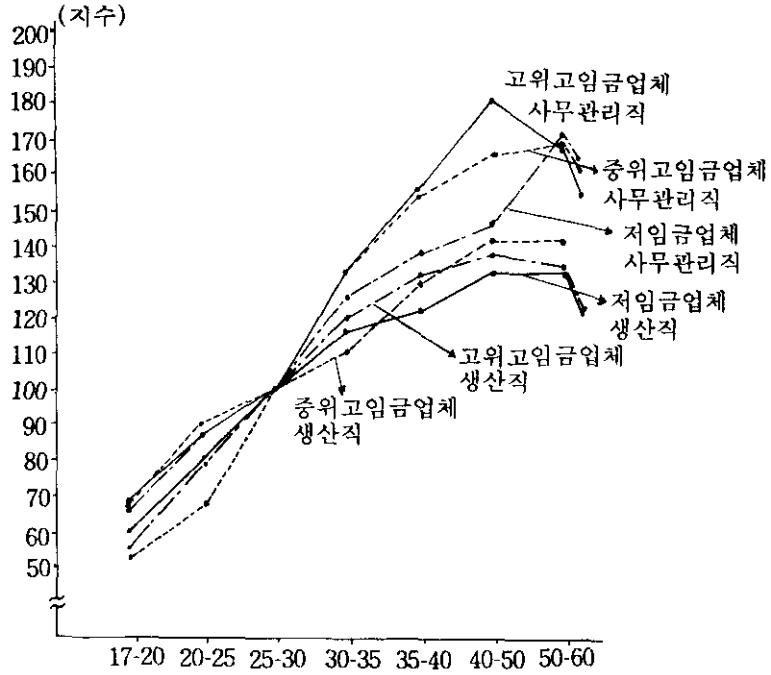
지수로 표시한 연령 - 임금표 : 남자

<표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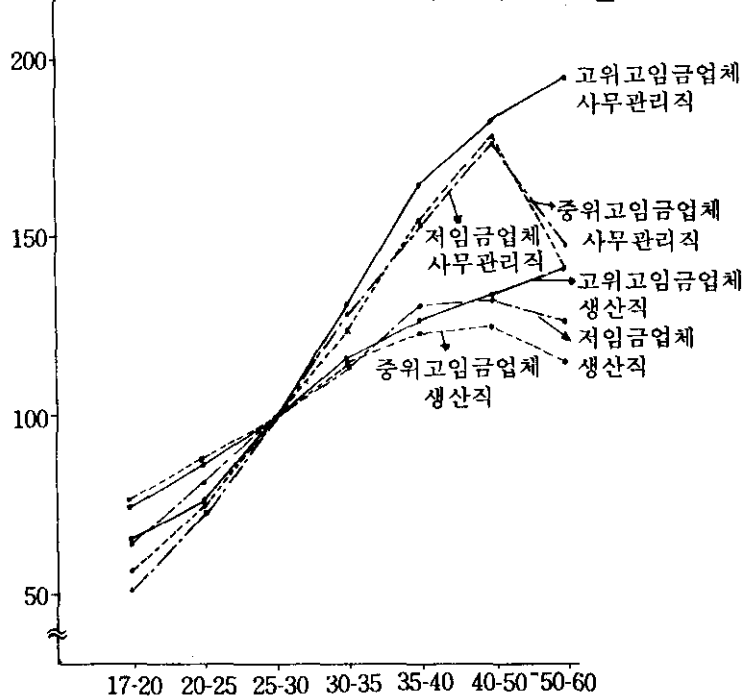
구분 연령	1973						1978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	
	사무관리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17-20	60	68	52	67	55	66	44	73	40	65	43	59
20-25	80	87	67	90	68	87	73	87	62	86	63	78
25-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35	133	115	133	100	125	120	132	120	130	120	130	123
35-40	155	121	154	129	137	131	160	135	164	133	148	138
40-50	180	132	165	141	145	137	175	153	187	149	153	140
50-60	167	132	168	141	171	134	213	173	189	141	152	147

구분 연령	1984						1989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	
	사무관리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17-20	48	69	62	61	55	64	66	75	57	77	51	65
20-25	74	85	81	77	71	78	77	87	75	88	73	82
25-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35	146	116	147	119	139	125	131	116	124	115	129	114
35-40	183	132	191	126	162	138	165	127	155	123	154	131
40-50	203	148	219	132	181	142	183	134	179	125	177	133
50-60	226	160	204	142	170	137	195	141	141	115	148	127

<그림 4-16a> 지수로 표시한 연령-임금곡선 : 1973년



<그림 4-16b> 지수로 표시한 연령-임금곡선 : 1989년



3.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의 직종별·연령별 임금구조에 나타난 문제점

(1) 사무관리직과 생산직간의 임금격차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이 확산될 때, 사무관리전문직의 연령-임금곡선은 사무관리전문직이 가장 큰 수혜자였음을 보여준다. 고임금업체의 남자 사무관리전문직은 저임금업체 생산직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25세, 25~30세, 30~35세, 35~40세의 연령계층에 있어서 2.5배, 2.7배, 3.0배, 3.2배 등의 임금을 받았고 1989년에 있어서는 위의 연령계층에서 1.8배, 2.0배, 2.3배, 2.5배의 임금을 받았다 (<표 4-22> 참조). <표 4-22>에 의하면 73년과 78년은 유사한 격차를 보여주며 84년은 73년, 78년보다 그 격차가 축소되고 89년은 더 축소되었다.¹⁸⁾ 임금격차는 각 연도에 있어서 그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생산직과 사무관리직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앞의 <특정 7>에서 이미 요약한 바 있다.

사무관리전문직은 산업화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이 확산됨에 따라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과 생산물의 해외판매를 위하여 외국어 해독능력이 있는 동시에 전문지식 교육을 받은 대졸자가 사무관리전문직을 맡게되고 이들에게 고임금이 지급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정부지도자 및 관료와의 연계이고 고성장을 위해서는 그 연계가 필수적이었으므로, 그 연계 유대를 담당하며 특혜적 조세, 금융, 행정적 지원을 얻는데 주된 활동을 한 사무관리직에 과도한 프리미엄이 지불되었다.

18) 박원구·박세일은 1977, 78년 전후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격차가 확대되다가 그 이후에는 축소되었다고 요약하고 있다(p.105). 77·78년 이후에 그 격차가 축소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생산현장에서 고가의 자본설비를 다루고 연속적인 흐름생산(flow production) 체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근무태만과 부주의에 의한 불량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한국기업들은 생산직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고학력의 사무관리직을 통하여 위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위계적 통제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사무관리직 노동자가 노동통제기능에 순응하고 직무에 대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졸 사무관리직에게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였다. 특히, 기업규모가 대규모화함에 따라 기업내부의 직무위계가 길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유경영자의 명령이 아래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통제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무관리직으로 하여금 스스로 통제를 효율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학력의 사무관리직에게 높은 임금이 지불되었다.

사무관리직과 생산직간의 현격한 임금격차는 73, 78년에 대단히 심각하였고, 84년에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89년에는 더 크게 축소되었다. 이 89년 직종간 임금격차의 축소는 87년 여름이후의 거대기업 남성생산직 노사분규의 파급효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산업화과정에서 고임금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 고임금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노동공급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동자간의 경쟁은 노동수요측의 요인에 의해 자극된 것처럼 보인다. <표 4-13>에는 남성의 경우 노동력의 직종별 구성은 전문·행정직은 1973년에 9.1%에서 1989년 14.4%로, 사무직은 1973년 18.1%에서 1989년 21.5%로 각각 그 구성비에 있어 증가하였다. 특히 고위 및 중위 고임금업체에 있어서는 이들에 대한 수요증대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할 수 있다. 즉, 고임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고학력을 취득하는 경쟁을 벌이고 바로 이러한 경쟁은 노동수요측 요인에 의해 자극되고 개인은 그러한 투자를 할 유인을 시장에서 제공받는다. 그러므로 고학력을 추구하여 사무관리전문직에 취업하려는 노동자간의 경쟁은 학력수준의 전반적 상승을 일으킴에 따라 고학력자는 취업난, 고율의 실업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초과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는 직종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고위고임금업체에서 생산직에 대한 수요확대와 노동집

약적 조립공정형 사업체수가 확대되면서 이루어진 생산직에 대한 수요확대이다. 2장의 <표 4-13>에는 고위고임금업체에서 남자생산직이 전체 남성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7%에서 1989년에는 32.2%로 증가되었고 고위고임금업체 여자생산직은 전체여성근로자 대비 7.2%에서 11.2%로 증가된 반면, 저임금업체에서는 남자생산직이 전체남성근로자 대해 40.8%에서 1989년에 23.0%로 감소되었고 여자생산직은 전체여성근로자에 대해 75.2%에서 61.5%로 감소되었다. 비록 산업화과정에서 생산직이 전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전문직, 행정직 및 사무직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고위고임금업체에서는 생산직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고 저임금업체에서는 생산직의 비중이 낮아지는 사업체특성별 구성변화는 실로 생산직과 사무관리직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발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동집약적 조립공정 사업체의 확산을 통한 노동수요의 증대는 동시에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증가시켜 생산직과 사무관리직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고임금업체 생산직의 상대적 지위상승과 다른 한편으로 생산직 일반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연령임금곡선의 <특징 4>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저임금업체 사무관리직의 상대적 지위를 영락시키게 되었다.

박원구·박세일은 “77년, 78년을 기점으로 직종별 임금격차가 축소되는데 이러한 70년대의 직종별 임금구조의 변화를 주도한 요인은 노동수요측면보다 주로 공급측면에서 연유된 것... 특히, 1978년 이후부터 생산직 임금이 비생산직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농촌의 노동력 공급여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상급학교 진학률이 제고되어 국졸, 중졸의 연소 노동력공급이 빠르게 고갈됨에 따라 생산직의 임금상승은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비해 대졸자와 고졸진학자의 절대수가 증가하여 비생산직에 대한 공급여력이 점차 확대되었던 데에 기인한다고 보인다”¹⁹⁾ 라고 하였다. 필자는 ‘비생산직에 대한 공급여력이 점차 확대’가 노동수요측 특성에 의한 자극과 유인의 결과이므로 노동수요측 특성, 예컨대 고임금기업, 저임금기업간에 존재하는 현격한 직종별 임금격차가 1차적 요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

19) 『한국의 임금구조』 p108.

한 미숙련 반숙련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된 것도 산업화과정에서 고임금업체에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급속히 증대되고 노동집약적 조립공정 사업체가 수적으로 증대된 것 등에 기인하므로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통한 직종간 임금격차의 축소는 노동수요측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2) 생산직 근로자의 '비극'

연령-임금곡선이나 연령-임금지수곡선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나라 남성생산직 근로자의 '悲劇'을 엿볼 수 있다. 중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의 남성생산직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특징 2>, 임금이 상승하는 정도가 대단히 완만하다는 것<특징 7>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숙련이나 지식이 증가하는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뿐만아니라 고위고임금업체의 생산직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정도는 중위고임금업체 및 저임금업체의 생산직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숙련이나 지식이 증가하는 정도는 마찬가지로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우리나라 남성생산직의 '비극'이라 함은 남성생산직 전체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숙련과 지식 등의 인적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구조가 1973년이래 198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가? 한·미·일 연결형 가공무역구조에서 우리나라 사업체는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의 사업장으로 특징지워지고 있었으며, 생산직노동자는 세분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 생산직노동자에게는 엄격한 통제와 규율하에서 작업에 있어서의 신속성과 정확성만이 요구되었고, 근로자자질로는 근면성과 성실성 그리고 복종성만이 요구되었다.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식의 공장조직과 세분화된 일을 단순반복적으로 행하는 작업조직은 생산직노동자에게 고도의 숙련과 지식의 형성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장기근속의 노동자에게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임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화과정에서 이러한 공장조직과 작업조직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이는 미숙

런 반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증대로 연결되어 이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되었으나 연령에 따른 숙련과 지식의 증대는 예나 지금이나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 직업훈련 및 현장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순환보직근무제를 통하여 기계의 구조, 기능 및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기계를 분해, 청소하여 재조립하는 능력을 갖추어 생산성을 높이게 됨에 따라 일본의 대기업 생산직의 연령-임금곡선은 구미의 사무관리직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연령-임금곡선에서 <특징 3>과 <특징 7>이 나타나는 것은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에서 작업조직이 노동자의 숙련과 지식이 요구되지 않았고, 그 결과 생산직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이 지난 20여년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순임금격차 추정의 필요성

우리는 연령-임금곡선의 <특징 3>에서 동일한 직종에 있어서도 즉, 사무관리직 및 생산직 각각에 있어서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그리고 저임금업체라는 노동수요측 특성의 차이에 따라 현격한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동일직종 내에서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현격한 임금격차는 고임금업체(또는 저임금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학력, 경력연수, 근속연수 등의 구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다²⁰⁾. 또한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할 근로자가 갖는 유사한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예컨대 고임금업체에 고용되는가 아니면 저임금업체에 고용되는가에 따라 고임금근로자가 될 수도 저임금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학력, 경력연수, 근속연수를 동일하게 한 후에도 발생하는 임금의 순격차 즉 순임금격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의 분석에서 주로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에 존재하는 임금격차를 위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순임금격차의 분석에서도 분석의 간명성을 위하여 고위고임금업

20)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그리고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평균연령, 평균교육연수, 평균경력연수, 생산직의 비중, 여성의 비중, 평균임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총임금은<부표4-23>~<부표4-26>에 실었다.

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만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4.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

(1) 순임금격차의 추정방법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임금의 총격차는 두 그룹의 월평균임금의 상대비를 의미하고 순임금격차는 산업구성, 지역구성, 기업규모, 직종, 학력, 근속연수, 경력연수, 연령, 性 등의 차를 제거한 후의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이다. 순임금격차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근로자자료를 남과 여로 나눈 후,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서의 사무관리직과 생산직으로 표본을 나누었다. 남녀별, 고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별 그리고 사무관리직·생산직별로 8개의 표본을 나눈 후, 6장 <식 2>의 임금함수에 연령더미변수를 첨가한 회귀모형을 73, 78, 84, 89년에 각각 추정하였다.²¹⁾ 연령더미변수는 <그림 4-16>의 연령-임금곡선에 나타난 연령 카테고리 와 동일하게 하였다. 순임금격차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 순서를 따른다.

① 우리는 교육, 경력, 근속연수, 나이의 측면에 있어서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할 신참노동자를 설정하였다. 신참노동자는 남자, 여자의 경우 경력 1년, 근속연수 1년, 나이 20-25세 미만 그리고 교육은 생산직의 경우를 고졸로 보아 12년, 사무관리직은 대졸로 간주하여 16년으로 하였다(<표 4-24>참조). 동시에 생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근로자를 표준근로자로 정의하고 남자의 경우 경력 8년, 근속 4년, 나이 30~35세 미만 그리고 교육은 생산직의 경우 고졸인 12년, 사무관리직은 대졸인 16년으로 하였다.

② 회귀모형을 추정한 후 교육(EDUC), 경력(EXPER, EXPSQ), 근속연수(TEN, TENSQ)의 추정계수에 <표 4-24>에 나타난 교육, 경력, 근속연수의 값을 각각 곱한 후 상수항을 합하여 계산된 값을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신참노동자와 표준노동자 임금의 자연대수(natural log) 값을 풀어 얻은 값을 구하였다.

21) 추정결과를 우리는 <부표4-27>~<부표4-30>에 실었다.

<표 4-24>

신참노동자 및 표준노동자의 정의

	교육(년)	경력(년)	근속(년)	나이(세)
〈신참 노동자〉: 남자 및 여자				
신참고졸 생산직	12	1	1	20~25
신참고졸 사무관리직	12	1	1	20~25
신참대졸 사무관리직	16	1	1	20~25
〈표준 노동자〉: 남자				
표준고졸 생산직	12	8	4	30~35
표준고졸 사무관리직	12	8	4	30~35
표준대졸 사무관리직	16	8	4	30~35

위의 ①②③의 과정을 모형에 의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Y_i^H 는 임금의 자연대수값이며, 윗첨자 H는 고위고임금업체, 윗첨자 L은 저임금업체를 의미한다고 하자. μ_i^H, μ_i^L 은 교란항일 때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Y_i^H = \beta_0 + \sum_{j=1}^m \beta_j^H \cdot X_{j_i}^H + \mu_i^H$$

$$Y_i^L = \beta_0 + \sum_{j=1}^m \beta_j^L \cdot X_{j_i}^L + \mu_i^L$$

회귀식에서 설명되는 격차는 $\sum_j \beta_j^H \cdot \bar{X}_j^H - \sum_j \beta_j^L \cdot \bar{X}_j^L$ 이 되며 통상적으로 차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항의 차이로 설명되는 격차는 $(\beta_0^H - \beta_0^L)$ 이 된다. 이때 회귀식에서 설명되는 격차 $(\sum_j \beta_j^H \cdot \bar{X}_j^H - \sum_j \beta_j^L \cdot \bar{X}_j^L)$ 중에서 인적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β_1 에서 β_g 이고 기업체규모, 산업,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β_{g+1} 에서 β_m 까지라고 하자. 독립변수 \bar{X}_{g+1} 에서... \bar{X}_m 의 각각의 평균값 \bar{X}_{g+1} 에서 X_m 은 기업체규모의 구성, 산업구성, 지역별 구성을 나타낸다. 이들 사업체규모의 구성, 산업구성, 지역별 구성을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회귀식에서 설명되는 격차는 $(\sum_{j=1}^g \beta_j^H \cdot \bar{X}_j^H - \sum_{j=1}^g \beta_j^L \cdot \bar{X}_j^L)$ 이 된다.

우리가 근로자의 속성을 <표 4-23>과 동일하게 정의하면 고임금업체와 저임금 업체의 임금격차로써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sum_{j=1}^g (\beta_j^H - \beta_j^L) \cdot \bar{X}_j$ 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임금격차는 두부분으로 구성된다.

상수항의 차이 : $\beta_o^H - \beta^L$

동질적 인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차이: $\sum_{j=1}^K (\beta_j^H - \beta_j^L) \cdot \bar{X}_j$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사업체규모의 구성, 산업구성, 지역별 구성이 동일하며 비교적 동질적 노동자 계층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순임금격차(자연대수값)은 다음과 같게 된다.

$$\beta_o^H - \beta^L + \sum_{j=1}^K (\beta_j^H - \beta_j^L) \cdot \bar{X}_j$$

이 격차는 자연대수값이므로 이 자연대수값을 풀어 값을 구하면 순임금격차가 계산되는 것이다.

(2) 동일직종 내에서 노동수요특성별로 존재하는 순임금격차

이 소절에서 해명하려는 문제의식 즉, 고졸생산직(고졸사무직, 또는 대졸사무직)에 있어서 발생하는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주제로 되돌아가기로 한다.

<표 4-25>에는 각년도에 있어서의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가 나와 있다. <표 4-25>을 기초로 작성된 <표 4-26>에 의하면 신참 남자고졸생산직의 경우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가 1973년에 61%, 1978년 46%, 1984 53% 그리고 1989년에는 38%로서 순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지만 그 크기는 대단히 크다. 표준 남자 고졸생산직근로자의 경우,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는 1973년 50%, 1978년 31%, 1984년 46%, 1989년 29% 수준이다.

대졸사무직과 고졸사무직에 있어서도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는 현격한데 1973년과 1989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신참 남자 고졸사무직에 있어서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는 1973년에 40%, 1989년에는 47%로 그 격차가 약간 확대되었으나 신참 남자 대졸사무직에 있어서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는 1973년 52%에서 1989년 37%로 하락하였고 표준 남자 대

<표 4-25>

순임금격차 추정결과

▶ 신참근로자

	남 자			여 자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1973 고위고임금업체	17,391	31,868	62,089	8,156	23,070	42,450
저임금업체	90,812	22,815	40,912	6,597	17,202	30,928
1978 고위고임금업체	61,449	77,566	147,497	51,473	71,254	103,383
저임금업체	41,982	54,089	118,640	29,431	49,288	80,586
1984 고위고임금업체	182,840	221,961	387,179	134,604	229,500	383,490
저임금업체	119,395	136,005	251,610	94,144	128,484	198,508
1989 고위고임금업체	386,222	369,380	559,560	330,823	296,562	409,972
저임금업체	280,753	250,799	408,226	208,925	243,519	323,581

▶ 표준근로자

	남 자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1973 고위고임금업체	24,238	72,005	84,505
저임금업체	16,079	46,697	55,980
1978 고위고임금업체	82,591	176,050	207,326
저임금업체	62,905	133,167	175,583
1984 고위고임금업체	228,170	448,632	562,307
저임금업체	155,780	301,209	372,044
1989 고위고임금업체	458,690	644,418	805,382
저임금업체	355,708	466,339	577,550

졸 사무직의 그것은 1973년 51%에서 1989년 39%로 하락하였다.²²⁾

1989년 현재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순임금격차가 신참 남자 고졸생산직

22) 정인수는 우리와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추정결과는 84~89년간 순임금 격차가 축소되는 데 비해 정인수는 분석기간인 86~89년에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간 순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참고문헌 [34]의 p.39~p.40)

〈표 4-26〉 동일직종에 있어서 사업체 특성별 순임금격차

▶ 신참근로자

	남 자			여 자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1973 고위고임금업체	161	140	152	124	134	138
저임금업체	100	100	100	100	100	100
1978 고위고임금업체	146	143	124	175	145	128
저임금업체	100	100	100	100	100	100
1984 고위고임금업체	153	163	154	143	179	193
저임금업체	100	100	100	100	100	100
1989 고위고임금업체	138	147	137	158	122	127
저임금업체	100	100	100	100	100	100

▶ 표준근로자

	남 자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1973 고위고임금업체	150	154	151
저임금업체	100	100	100
1978 고위고임금업체	131	132	118
저임금업체	100	100	100
1984 고위고임금업체	146	149	151
저임금업체	100	100	100
1989 고위고임금업체	129	138	139
저임금업체	100	100	100

에서 38%, 신참 남자 고졸사무직에서 47%, 신참 대졸 사무직에서 37%이며 표준 남자 고졸생산직에서 29%, 표준 남자 고졸사무직에서 37%, 표준남자 대졸사무직에서 39% 라는 것은 비교적 동질적인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수요 특성별로 현격한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앞의 장의 분석과 일치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수요특성별로 분단되고 있다고 하겠다.

분단을 야기시키는 요인은 우리의 逐次형 방정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산업 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사업체,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사업체, 경인지역의 사업체 그리고 최근에 수출률이 50~75% 미만인 산업 특히 중화학공업의 사업체 등의 요인이 분단을 낳는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표 4-27〉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직종별·학력별 순임금격차

▶ 신참근로자

	남 자			여 자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1973 고위고임금업체	100	183	357	100	282	518
저임금업체	100	211	379	100	261	468
1978 고위고임금업체	100	126	240	100	138	201
저임금업체	100	129	282	100	168	274
1984 고위고임금업체	100	121	141	100	171	285
저임금업체	100	114	211	100	137	211
1989 고위고임금업체	100	96	145	100	90	124
저임금업체	100	89	145	100	117	155

▶ 표준근로자

	남 자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1973 고위고임금업체	100	298	349
저임금업체	100	213	251
1978 고위고임금업체	100	213	251
저임금업체	100	212	279
1984 고위고임금업체	100	206	246
저임금업체	100	193	239
1989 고위고임금업체	100	140	176
저임금업체	100	125	162

(3)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직종별·학력별 순임금격차

〈표 7-6〉을 기초로 작성된 〈표 7-8〉과 〈표 7-9〉를 이용하면 직종별 학력별 순임금격차와 성별 순임금격차에 대한 정보가 이용가능하므로 이 두가지 주제를 (3)과 (4)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표 7-8〉에는 직종별 학력별 순임금격차 지수가 나와 있는데 고임금업체의 신참 남자 고졸생산직을 100으로 했을 때 신참 고졸사무직과 신참 대졸사무관리직의 임금지수는 1973년에 183, 357이었으나 그 격차는 매년 감소하여 1989년에는 각각 90, 145로 크게 축소 되었다. 신참 고졸사무관리직의 임금은 1989년 신참 고졸생산직보다 오히려 조금 낮게 되었다. 저임금업체에서도 고임금업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임금업체에 있어서 표준 남자 고졸생산직을 100으로 했을 때 표준 고졸사무관리직과 표준 대졸사무직은 1973년에 298, 349였으나 1989년에는 각각 140과 176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저임금업체에서도 직종별임금격차는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8〉은 고졸과 대졸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는 데도 유용한데, 고졸사무직과 대졸사무직을 비교하면 학력증가에 따른 학력별 임금격차가 포착될 수 있다. 1973년에는 고임금업체의 신참 남자 대졸사무직은 고임금업체의 신참 남자 고졸사무직보다 1.95배의 높은 임금을 받았으나 1989년에 이르면 약 1.5배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고임금업체 표준근로자의 경우 대졸사무직은 고졸사무직보다 1973년에 1.17배, 1978년에 1.18배, 1984년에 1.19배, 1989년에는 1.26배로 되었다. 신참근로자의 경우 학력별 임금격차는 크게 축소되었으나 표준근로자의 학력별 임금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저임금업체의 신참 남자 고졸생산직을 100으로 했을 때 고임금업체 신참 남자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및 대졸사무직의 임금지수를 살펴보면 비교적 동질적 노동자가 고임금업체에 속하게 되고 직종이 달라짐에 따라 엄청난 순임금격차가 존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 4-28〉에 의하면 고임금업체의 신참 남자 대졸사무직, 고졸사무직, 고졸생산

작은 저임금업체의 신참 남자 고졸생산직에 비해 1973년에는 각각 5.8배, 3.0배, 1.6배, 1989년에는 각각 2.0배, 1.32배, 1.38배의 높은 임금을 받았다. 고임금업체의 표준 남자 대졸사무직, 고졸사무직, 고졸생산직은 1989년에 저임금업체의 표준 남자 고졸생산직보다 각각 2.3배, 1.8배 그리고 1.3배의 높은 임금을 받았다. 비교적 동질적 노동자에 대한 순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수요특성과 직종간의 특성에 의해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표 4-28〉 저임금사업체의 고졸생산직을 100으로 했을 때의 순임금격차

▶ 신참근로자

	남 자			여 자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1974 고위고임금업체	161	295	575	124	350	644
저임금업체	100	211	379	100	261	468
1978 고위고임금업체	146	185	351	175	243	352
저임금업체	100	129	282	100	168	274
1984 고위고임금업체	153	186	324	143	244	408
저임금업체	100	114	211	100	137	211
1989 고위고임금업체	138	132	199	158	142	196
저임금업체	100	89	145	100	117	155

▶ 표준근로자

	남 자		
	고졸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1973 고위고임금업체	150	447	525
저임금업체	100	290	348
1978 고위고임금업체	131	280	330
저임금업체	100	212	279
1984 고위고임금업체	146	288	361
저임금업체	100	193	239
1989 고위고임금업체	129	181	226
저임금업체	100	131	162

(4) 고위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에 있어서 성별 임금격차

여성은 결혼, 출산과 관련되어 근속년수가 짧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우 젊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일정한 나이, 예컨대 25세를 넘긴 여성에 대해 별로 고용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격차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신참 남성근로자와 신참 여성근로자간의 순임금격차만을 검토하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고임금업체에 있어서 <여자 고졸생산직임금/남자 고졸생산직임금>, <여자 고졸사무직임금/남자 고졸사무직임금>, <여자 대졸사무직임금/남자 대졸사무직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수화하였다. 저임금업체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 성별 임금격차를 구했는데 그 결과는 <표 4-29>에 나와 있다.

<표 4-29>에 의하면 고위고임금업체에 있어서 여자 고졸생산직은 73년 남자의 47%밖에 받지 못했으나 89년에는 86%를 받았고, 저임금업체에서는 여자 생산직은 73년에 남자의 61%, 89년에 74%를 받았다. 생산직의 경우 고위고임금업체의 여자 생산직에서 성별격차의 축소는 더 명확하다고 하겠다. 고위고임금업체의 여자 고졸사무직은 73년에 남자의 75%, 89년에 80%를 받았고 저임금업체에서는 73년 75%, 89년 97%를 받아 사무직의 경우 저임금업체의 여자사무직에서 성별 임금격차의 축소가 더욱 뚜렷하다. 고위고임금업체의 여자 대졸사무직은 73년 남자의 68%, 89년에는 73%이며, 저임금업체의 여자 대졸사무직은 73년 남자의 76%, 89년 7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성별 순임금격차

		신참고졸생산직	신참고졸사무직	신참대졸사무직
1973	고위고임금업체	47	72	68
	저임금업체	61	75	76
1978	고위고임금업체	84	92	70
	저임금업체	70	91	68
1984	고위고임금업체	74	103	99
	저임금업체	79	94	79
1989	고위고임금업체	86	80	73
	저임금업체	74	97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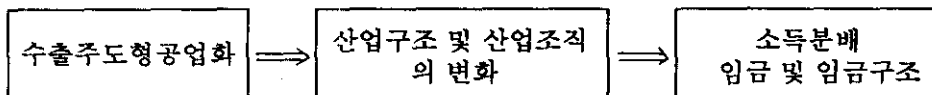
Ⅷ. 요약 및 향후 정책과제

본 연구는 수출주도형 공업화과정에서 나타난 제 특징이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이 변수가 우리나라 소득분배,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실로 국제무역론, 산업조직론 그리고 노동경제론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주제를 도식화하여 이 결론 부분에 제시하면 이 연구를 통해 필자가 분석하려 했던 바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요약

(1) 본 연구를 관통하는 논리는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산업조직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산업구조 및 산업조직은 노동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 근로자 임금결정과 근로자간의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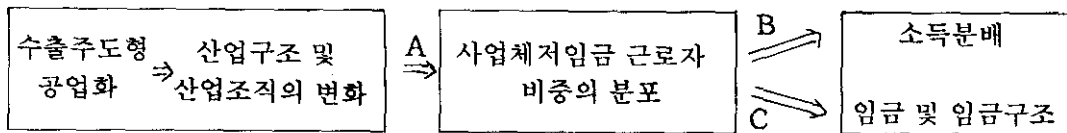


이와같은 과정을 일관되게 해명하는 이론적 시도는 제3장에서 Porter의 창출된 생산요 소이론과 Ricardo모형의 연장인 특이생산요소모형을 접합함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특

히 필자는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을 창출된 특이생산요소로 간주하였다.

(2) 수출주도형 공업화 및 산업구조·산업조직의 변화는 제 2장에서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 분포에 의해 파악되었다.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사업체의 특성이며, 사업체의 집합이 산업이라고 할 때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은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 분포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식 1>은 다음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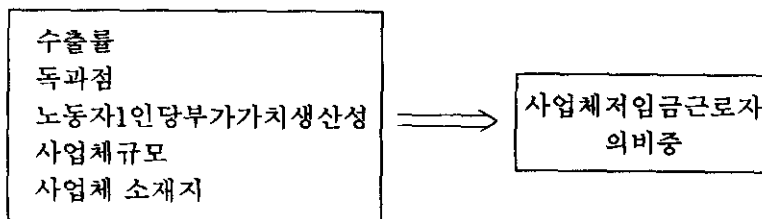
<도식 2>



2장에서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 분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은 호리병모양(Ⅹ형)을 가지며 중위고임금업체가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계량분석은 4장에서 행하여 졌다. 수출률, 독과점도, 노동자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사업체규모,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등이 사업체저임금근로자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을 고려되었다. 즉 <도식 2>의 [A]부분은 다음과 같이 된다.

<도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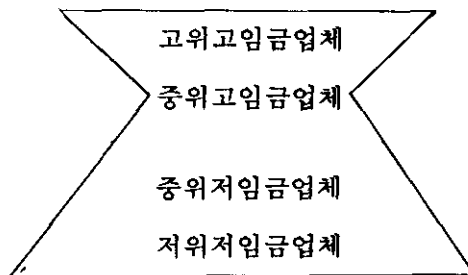
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저임금사업체	고임금사업체
*수출률이 높은 산업	*수출률이 낮은 산업
*독과점도가 낮은 산업	단, 1989년은 수출률이 50~75%되는 산업
*노동자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산업	*독과점도가 높은 산업
*기업규모는 중요치 않음	*노동자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산업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	*기업규모는 중요치 않음
	*서울, 경기 지역

(4) 근로자간의 소득불평등의 감소(<도식 2>의 과정 [B])는 산업화과정에서 고임금업체가 노동고용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작용한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5장에서 설명되었다.

특히 고위고임금업체가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동시에 고위고임금업체의 고용에서 생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에서의 일반적인 감소추세와는 달리 오히려 증대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아래와 같은 호리병모양을 지닐 때,



고위고임금업체의 고용 비중증대 및 생산직 비중증대시 필고위고임금업체의 고용비중증대 및 생산직 비중증대시 필요한 고용력의 충원은 신규학졸자의 채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겠지만 중위저임금업체 또는 저위저임금업체의 고용을 흡수하는 방식을 통하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게 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강조하였다.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의 확산에 따른 미숙련·반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가 근로자간 임금소득불평등도

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천이었던 것이다.

(5)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친 영향(〈도식 2〉의 과정 [C])은 6장과 7장에서 분석되었다. 추정결과 중 강조하고자 하는 점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89년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0% 감소하면 여타조건이 동일할 때, 남자 임금은 5.6% 증가하고 여자임금은 5.3% 증가한다.

② 1973년에는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0% 감소하면 여타조건이 동일할 때, 남자임금은 9.3%, 여자임금은 9.9% 증가한 것에 비하면 노동수요측 특성인 사업체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영향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힘이 작용한 결과이다.

③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은 분단되어 있으며 특히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라는 기업특성별로 분단되어 있다.

④ 1989년 현재 20~25세의 신참 남자고졸 생산직의 임금의 순격차를 살펴보면, 고위고임금업체 신참 남자고졸 생산직은 저임금업체의 신참 남자고졸 생산직에 비해 38%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생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30~35세의 표준 남자고졸 생산직의 임금의 순격차를 살펴보면, 고위고임금업체의 표준 남자고졸 생산직은 저임금업체의 표준 남자고졸 생산직보다 29%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⑤ 1989년 현재 신참 남자대졸 사무관리직의 임금의 순격차를 살펴보면, 고위고임금업체 신참 남자대졸 사무관리직은 저임금업체의 신참 남자대졸 사무관리직보다 37%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생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고위고임금업체의 표준 남자대졸 사무관리직은 저임금업체의 표준 남자대졸 사무관리직보다 39%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⑥ 생산직 근로자는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에 속하든지 관계 없이 연령에 따른 임금상승의 정도는 대단히 완만하며, 이러한 구조는 1973년 이래 198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의 '비극'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속인급이라는 박원구·박세일의 주장과는 달리 근로자는 고임금업체 또는 저임금업체에 속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일차적으로 결정되고 고임금 또는 저임금사업체에 속한 후의 임금은 속인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동수요측 특성은 임금결정에 1차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공급측 요인이 2차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우리는 노동시장분단론에서 기업체특성별 분단은 없고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로 분단되어 있다는 김형기의 주장과는 달리 기업체특성별 분단이 더 지배적임을 밝혔다.

2.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은 창출된 특이생산요소이며 이는 지난 20년간에 걸쳐 우리나라에 '압축형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역동적 기초였다.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은 양질의 풍부하고도 저렴한 노동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현재, 임금은 크게 올랐고 노동집약적 조립공정 소유주의 수익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숙련 또는 기술집약적 생산공정이 창출된 특이생산요소로 되어야 한다. 숙련 또는 기술집약적 생산공정이라는 특이생산요소를 창출하는 데 성공할 때, i) 고부가가치의 제품, ii) 고도로 진전된 자동화장치에 의한 제품생산, 그리고 iii) 기계, 설비, 소재 및 부품의 자체생산을 통한 한일간 수직적 분업체계의 청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숙련 또는 기술집약적 생산공정이라는 특이생산요소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자극자, 신호자 그리고 촉진자라는 본질적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이 계속하여 혁신적이며 동학적일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여야 한다.

(2) 사업체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결정하는 요인분석에서 우리는 대기업은 고임금업체이며 중소기업은 저임금업체라고 하는 통상적인 관찰이 옳지 않음을 밝혔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산업정책을 시사한다. 흔히 사양산업, 쇠퇴산업 또는 저성장산업이라

는 분야, 예컨대 신발, 도자기, 의복, 가죽산업에 있어서 저성장, 저부가가치로 특징지워지는 대기업의 자원을 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또한 사양산업, 쇠퇴산업 또는 저성장산업을 중소기업의 전문영역으로 하여 이들 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제품개발을 자극케 하여 고성장,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저성장, 저부가가치 산업에서의 대기업이 고성장,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이동케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저성장, 저부가가치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제품차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고 고성장, 고부가가치를 갖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산업구조 중에 가장 흥미로운 점은 비교열위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 이는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즉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쟁력을 잃었어야 할 사양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차별화를 낳는 제품개발 및 기술혁신을 행하여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화학, 전기 및 전자, 운수장비, 기계, 조립금속 등의 향후 성장산업에 있어서도 소재, 부품, 기계류 등의 중간재 생산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 고성장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에 보조금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숙련 또는 기술집약적 생산공정의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공업계 고등학교 인력양성규모는 고교졸업생수로 볼 때, 1981년 59천명에서 1989년에 62천명이며 같은 기간중 공업계 고등학교수는 100개에서 104개로 거의 증가가 없었던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졸업생수가 1981년에 279천명에서 1989년에 450천명, 같은 기간중 일반계 고등학교 수는 748개에서 1,052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미숙련 또는 반숙련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노동집약적 조립공정과 직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일반학생들의 대학진학을 통한 고임금 추구욕구만을 충족시켜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제도로는 숙련 또는 기술

을 갖춘 인력이 양성될 수 없다.

(4) 숙련 또는 기술집약적 생산공정의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생산직 노동자의 '비극'을 종식시켜야 한다. 특히 고성장, 고부가가치의 대기업에서는 생산직 노동자에게 직업훈련 및 현장훈련과 순환보직제를 통하여 기계의 구조, 기능 및 작동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기계를 분해, 청소하며 재조립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다능공으로서 회사전체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때 대규모기업과 중규모기업간의 분업, 중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간의 분업 등의 분업구조를 중층적으로 하여 대기업이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 설계 및 제작, 디자인공정의 연구개발 등에 특화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를 통하여 전문화된 부품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이를 토대로 한 유기적, 협력적 분업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기적 분업구조에서만 대기업에게 있어 각 공정에 깊은 이해를 갖고 전체적 입장에서 일을 할 다능공 및 숙련공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적 투자가치를 지닐 것이다. 현재 거대작업장에 모든 종류의 공정이 집결되어 있고 숙련, 반숙련 및 미숙련노동력을 모두 고용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공정 및 작업과정의 분할 및 재배치가 없이는 다능공을 훈련시킬 직업훈련 또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은 막대한 비용만 들 뿐이다.

(5) 우리나라 생산직 노동자들이 숙련 및 기술을 축적케 하는 동기부여책의 일환으로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업경영성과가 가시적으로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것이 확인되지도 않기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가 기계의 능숙한 조작과 기계에의 능란한 적용 그리고 작업과 생산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 제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숙련과 기술축적에는 소극적이며 오히려 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회사의 번영이 노동자 자신의 번영과 일치될 때, 숙련과 기술축적을 통해 높은 생산성증대에의 유인을 가질 것이며 근로자의 높은 근로의욕의 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다섯가지 정책방안은 서로 분리되어 추진될 수 없으며 사업체 저임금근로자 비중분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현재의 (▲)형에서 선진국형인 ◆형으로 전환시켜, 성장과 분배형평을 동시에 조화시키는 국민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책방안들이다. 이들 정책방안들은, 타당하면 다같이 타당하고 무너지면 다같이 무너지며,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는 반드시 다른 네개를 논리적으로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모두 동일한 하나의 결론 즉 숙련 또는 기술집약적 생산공정의 창출에 귀착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철규·장석인, 『가공무역과 산업조직』, 산업연구원, 1987.
2. 강철규, 「산업발전전망과 산업조정」, 『산업환경변화와 산업구조조정방향』, 산업연구원, 1988.
3. 김태기, 『생산성과 기업의 인력관리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1.
4. 김형기, 『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까치, 1988.
5. ———, 「임노동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경제평론2』, 한국사회경제학회편, 한울, 1990.
6. 박기성, 「지역차별의 경제학」, 『한국경제논집』, 1990.
7. 박세일, *Wages in Korea*, Cornell Univ. 박사학위논문, 1980.
8. 박영범, “Concentration and Earnings in an Open Economy: A Case Study of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한국국제경제학회, 1987 봄.
9. 박훤구·박세일, 『한국의 임금구조』, KDI, 1984.
10. 배무기(편), 『한국의 임금』, 문학과 지성사, 1985.
11. 배무기,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Developing Economies*,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Tokyo Japan, 1982.
12. ———, *Export-Led Industrialization and Wages and Labour Conditions in Korea*, 서울대, 1986.
13. ———,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와 개선방안」, 1991.
14. 배무기·박재윤, 『한국의 공업노동연구』, 서울대경제연구소, 1978.
15. 배진한,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16. 안병직, 「중진국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 『사상문예운동』, 풀빛, 1989 겨울.
17. 옥규성, 「중소기업정책의 전개」, 1991.
18. ———, *Government Policies, Industrial Structure and Performance in Korea, 1972~84*, Univ. of North Carolina 박사학위논문, 1989.
19. 윤봉준, *Manufacturing Wages Structure of Production Workers in an ExportLed Industrializing Economy : The Case of South Korea*, SUNY-Binghamton, 1989.
20. 이각범(편), 『현대자본주의와 노동시장』, 한울, 1989.
21. 이규억·이재형·김주훈, 『시장과 시장구조』, KDI, 1984.
22. 이규억, 『시장규제와 독과점규제』, KDI, 1977.
23. ———, 「한국 제조업의 산업조직」, 『한국개발연구』, KDI, 1980 2권 4호.
24. 이대근, 『우리나라 임금구조에 대한 소고』, 금융 16-5, 산업은행, 1969.
25. 이대근·박덕제·조우현·김기석,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력(I)-노동통계의 정비·해설편』, 한국경제연구원, 1990.
26. 이성섭, 「급변하는 경제여건과 전통적 무역이론에 대한 재해석」, 『관세』, 한국관세연구소, 1990. 11.
27. 이원덕, *Earnings Distribution and The Role of Enterprises in Korea*, Boston Univ. 박사학위논문, 1987.
28. ———, “Economic Growth and Earnings Distribution in Korea”, *Making Economies More Efficient and More Equitable*(ed by Mizoguc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29. 이정우, 「한국의 경제발전과 임금구조-역U자 가설의 응용」, 『노동경제논집』, 1984.
30. ———, 「임금불평등의 한일비교」, 『한일자본주의의 비교』, 경북대, 1989.
31. 이정우·조우현, 「임금과 근로자생활」, 한국노동경제학회, 1991년 3월 발표논문.
32. 이효수, 『한국노동시장구조론』, 범문사, 1984.

33. 장지상, 「경제력 집중」, 『한국경제론』(변형운 편), 유평출판사, 1989.
34. 정인수, 「한국의 임금구조-6.29 이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1991.
35. 조우현·정병석,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0.
36. 조우현, 「한국수출산업에 있어서의 임금, 임금구조 및 노동시간」, 『노동경제논집』, 1989.
37. _____, 「한국의 임금구조 서평」, 『사회과학논평』, 사회과학연구회, 1988.
38. _____, 「노사관계제도 개혁의 논리와 정책과제」, 1991.
39. _____, 「한계기업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노동경제논집』, 1989.
40. _____, 「전자산업의 중소기업 노사관계 사례연구」, 『노사관계』 1권 2호, 1989.
41. _____, 「중소기업의 상대적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한·미·일 대만의 중소기업 비교 연구』, 숭실대, 1989.
42. _____, 「'87, '88 노사분규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노사관계 정립에 던지는 함의」, 『노동경제논집』, 1990.
43. 홍원탁, 「기रो에 선 한국경제」, 『계간 사상』, 1989 여름.
44. Blinder, Alan,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Form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Fall, 1973.
45. Garen J., *The Effect of Firm Size on Wage Rate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0. 9.
46. Kenen, Peter, *The International Economy*(2nd. ed.), Prentice Hall, 1989.
47.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조순 역, 비봉출판사, 1985).
48. Kmenta, Jan, *Elements of Econometrics*,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1.
49. Koike, Kazuo, *Understanding Industrial Relations in Modern Japan*, MacMillan Press, 1988.
50. _____,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Political Economy of Japan*(ed by Yamamura and Yasuba), vol. 1, Stanford

Univerity Press, 1987.

51. Porter, Michael,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1990.
52. _____,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6.
53. _____, *Competition Strategy*, Free Press, 1980 (조동성 · 정몽준 역, 경문사, 1985).
54. Thurow, Lester, *Generating Inequality*, Basic Books, Inc., 1975.

부 표

<부표 4-1> 73년 직종별 임금통계 산업별·기업규모별 사업체 분포

사업체 규모 산업분류	사업체 규모					계
	1	2	3	4	5	
31	79	41	33	10	11	174
32	142	97	134	51	62	486
33	34	8	4	1	8	55
34	35	32	25	8	7	107
35	53	43	42	9	30	177
36	27	29	18	10	9	93
37	9	8	8	6	7	38
38	97	80	49	25	37	288
39	20	17	25	8	11	81
계	496	355	338	128	182	1499

<부표 4-2> 73년 직종별 임금통계 산업별·기업규모별 사업체 분포

사업체 규모 산업분류	사업체 규모					계
	1	2	3	4	5	
31	25	35	36	14	27	137
32	72	173	188	58	140	631
33	16	13	10	8	14	61
34	24	42	30	14	12	122
35	36	77	57	25	55	250
36	9	27	19	14	27	96
37	11	16	15	5	24	71
38	68	134	107	53	97	459
39	10	26	30	7	11	84
계	271	543	492	198	407	1911

<부표 4-3> 78년 직종별 임금통계 산업별·기업규모별 사업체 분포

사업체 규모 산업분류	사업체 규모					계
	1	2	3	4	5	
31	36	25	26	20	41	148
32	77	120	161	72	168	598
33	7	14	12	5	16	54
34	27	27	15	11	18	98
35	33	60	40	24	67	224
36	12	23	30	9	29	103
37	8	10	15	7	20	60
38	67	142	83	50	171	513
39	11	22	31	9	10	83
계	278	443	413	207	540	1881

<부표 4-4> 73년 사업체 표본 분포

사업체 규모 산업분류	사업체 규모					계
	1	2	3	4	5	
31	8	5	5	2	6	26
32	14	10	26	10	32	92
33	4	2	2	1	4	13
34	4	4	6	2	4	20
35	6	4	9	2	16	37
36	2	2	4	2	4	14
37	2	2	1	3	3	11
38	10	8	10	6	19	53
39	2	2	6	2	6	18
계	52	39	69	30	94	284

<부표 4-5>

78년 사업체 표본 분포

사업체 규모 산업분류	사업체 규모					계
	1	2	3	4	5	
31	4	4	4	2	6	20
32	8	18	22	9	28	85
33	2	2	2	2	4	12
34	2	4	7	2	1	16
35	4	8	8	4	12	36
36	2	2	4	2	6	16
37	2	2	2	2	4	12
38	8	14	14	8	20	64
39	2	2	4	2	2	12
계	34	56	67	33	83	273

<부표 4-6>

84년 사업체 표본 분포

사업체 규모 산업분류	사업체 규모					계
	1	2	3	4	5	
31	4	2	4	4	8	22
32	8	12	20	10	32	82
33	2	2	2	2	4	12
34	2	2	2	2	4	12
35	4	6	6	4	12	32
36	2	2	4	2	6	16
37	2	2	2	2	4	12
38	8	14	10	8	34	74
39	2	2	4	2	1	11
계	34	44	54	36	105	273

<부표 4-7>

I/O 분류에 의한 산업별 수출액 및 산출액

(단위 : 백만원)

	1975		1980		1985		1987	
	산출액	수출액	산출액	수출액	산출액	수출액	산출액	수출액
311 - 312	2,448,431	158,702	7,362,479	322,859	13,839,065	474,744	16,593,896	847,225
313	353,989	3,092	1,302,984	4,076	2,107,839	24,586	2,620,251	57,869
321	1,584,838	505,465	5,547,596	1,721,596	9,640,930	3,137,614	14,139,897	5,183,329
322	551,469	287,041	1,777,268	1,002,291	3,090,673	2,498,985	4,788,221	3,928,531
323	149,671	38,185	597,411	256,164	1,167,518	381,927	1,839,859	601,208
324								
331	261,898	104,639	983,470	274,112	1,392,386	138,286	1,684,042	265,912
332								
341	214,986	12,040	991,974	84,417	2,117,763	114,912	3,331,443	269,580
342	111,769	7,064	486,035	7,552	1,289,055	16,108	1,611,573	29,211
351	342,916	18,584	1,888,436	216,938	3,410,042	460,924	4,468,252	544,556
352	772,750	22,368	2,947,297	275,300	5,883,001	375,918	7,372,774	488,843
353	-	-	-	-	-	-	-	-
354	1,020,717	56,923	5,289,798	68,338	8,419,766	872,215	7,948,863	634,596
355	184,415	98,524	999,143	575,367	2,153,509	1,358,256	3,462,048	2,298,796
356	151,382	52,202	704,178	91,517	1,873,900	369,816	3,205,709	804,889
361	338,419	45,159	1,762,680	240,106	3,376,353	265,328	4,333,126	453,558
362								
369								
371	685,962	106,965	4,215,912	935,388	8,131,632	1,467,588	11,229,639	1,747,890
372	90,762	5,658	574,653	67,978	1,211,161	132,175	1,937,527	252,216
381	181,327	52,700	1,107,163	509,675	3,204,901	1,412,169	4,468,829	1,564,299
382	212,521	38,975	1,353,264	178,396	4,354,592	323,437	7,234,416	802,274

383	645,463	237,730	3,407,816	1,162,727	8,455,073	3,740,181	15,552,071	8,394,381
384	422,164	83,160	1,674,227	493,468	6,041,192	2,392,402	8,848,998	3,413,386
385	65,387	31,967	406,940	163,097	739,164	270,592	1,160,570	476,930
390	244,510	141,291	987,985	518,731	1,984,624	1,243,185	3,360,290	2,249,891

*주 : 제조업에 대한 산업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311-석료품제조업
- 313-음료품제조업
- 321-섬유제조업
- 322-의복제조업, 신발제의
- 323-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 324-신발 제조업(성형고무 및 플라스틱 제외)
- 331-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 제조업
- 332-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가구 제외
- 341-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42-인쇄, 출판 및 판권산업
- 351-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 353-석유 정제업
- 354-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355-고무제품 제조업
- 356-탈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361-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 362-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369-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 371-제 1차 철강산업
- 372-제 1차 비철금속산업
- 381-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 382-기계제조업
- 383-진기기계 기구 제조업
- 384-운수장비 제조업
- 385-과학계측 및 고정용기 제조업
- 390-기타 제조업

자료 : 한국은행

<부표 4-8>

대기업 3사 출하집중도

	1973	1978	1984	1987
311	0.74	0.74	0.68	0.60
312	0.46	0.46	0.48	0.48
313	0.77	0.74	0.66	0.69
321	0.46	0.42	0.42	0.39
322	0.34	0.42	0.30	0.22
323	0.66	0.48	0.36	0.27
324	0.47	0.68	0.47	0.50
331	0.49	0.33	0.28	0.32
332	0.32	0.49	0.37	0.33
341	0.41	0.50	0.48	0.46
342	0.40	0.40	0.40	0.34
351	0.67	0.68	0.75	0.72
352	0.42	0.57	0.53	0.54
353	0.96	0.99	0.89	0.89
354	0.21	0.44	0.35	0.37
355	0.64	0.74	0.49	0.37
356	0.34	0.66	0.25	0.23
361	0.47	0.55	0.71	0.55
362	0.71	0.65	0.73	0.70
369	0.41	0.60	0.58	0.51
371	0.63	0.59	0.76	0.76
372	0.80	0.47	0.72	0.74
381	0.48	0.45	0.44	0.41
382	0.56	0.62	0.62	0.55
383	0.55	0.57	0.64	0.58
384	0.66	0.81	0.76	0.73
385	0.27	0.59	0.78	0.66
390	0.23	0.45	0.39	0.40

*주 : 산업별 분류는 <부표 4-7>과 동일함
 자료 : KDI

<부표 4-9>

산업별·기업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

	1973			1978			1984			1987		
	총합	대기업	중소기업	총합	대기업	중소기업	총합	대기업	중소기업	총합	대기업	중소기업
311	1,082	1,105	469	3,234	3,546	2,423	7,148	7,828	4,365	9,071	9,957	6,096
312												
313	1,860	1,960	846	6,708	6,537	7,575	11,083	11,263	7,548	15,412	15,582	13,469
321	1,259	1,294	465	2,386	2,517	1,899	6,274	6,586	5,174	11,043	11,817	8,523
322	508	522	407	1,195	1,227	957	3,755	3,984	3,407	5,948	6,149	5,664
323	550	564	421	1,642	1,699	1,200	5,584	6,274	4,737	7,611	8,615	6,543
324	474	724	390	1,631	2,492	1,342	2,889	2,783	4,155	4,554	3,702	5,073
331	1,299	1,307	980	2,573	2,577	2,554	4,563	4,721	4,297	6,776	7,565	5,854
332	480	492	419	2,458	2,631	2,313	4,878	5,355	3,889	5,868	6,169	5,954
341	1,898	2,078	520	3,189	3,736	2,260	8,205	11,169	4,903	11,716	16,370	6,452
342	913	934	558	2,220	2,026	2,749	9,612	12,953	6,751	12,313	15,339	9,884
351	3,840	4,000	1,063	5,268	5,744	4,331	13,513	20,260	5,332	19,146	27,675	8,089
352	1,394	1,453	800	3,888	4,215	3,150	7,917	8,415	6,695	10,396	10,669	9,708
353	8,109	-	-	21,772	23,899	7,648	34,451	38,738	8,915	45,110	47,574	15,949
354	866	875	776	3,751	3,813	3,717	10,256	12,444	9,144	13,036	15,088	11,817
355	536	540	386	2,011	1,995	2,353	6,423	8,804	3,167	9,265	12,041	5,486
356	897	1,085	429	3,492	3,587	1,869	7,586	13,278	5,631	10,526	18,315	7,692
361	411	-	-	1,169	1,171	1,165	3,480	3,359	6,244	4,718	5,146	7,035
362	1,388	1,451	324	2,460	3,052	2,080	9,333	12,341	4,509	12,916	16,922	6,043
369	2,350	2,540	485	3,975	4,676	2,170	10,483	13,833	4,483	13,404	17,953	6,052
371	2,333	2,418	565	5,528	6,352	2,355	15,870	19,739	5,743	22,869	28,566	8,429
372		1,193	1,023		4,436	2,700	7,998	9,673	4,283	14,509	14,509	9,622
381	680	696	633	2,294	2,293	2,296	5,596	7,806	4,617	9,119	11,836	8,022
382	711	775	540	2,544	2,781	2,071	7,896	8,968	5,875	10,587	11,022	9,634
383	726	743	512	2,056	2,203	1,578	6,355	7,059	4,110	9,689	10,933	5,746
384	1,161	1,195	536	3,079	3,076	3,101	9,375	10,280	5,148	13,353	14,956	6,851
385	790	891	586	1,948	1,910	1,986	4,511	4,676	4,236	6,606	7,055	5,985
390		419	396		1,365	1,504	3,746	5,123	2,956	6,321	6,321	4,654

* 주 : 산업별 분류는 <부표4-7>과 동일함

자료 : 한국은행

〈부표 4-10〉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

(단위 : %)

	1968			1974			1985			1988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서울	25.2	34.6	33.5	25.8	31.8	30.1	30.9	19.8	15.0	28.6	17.7	13.1
부산	8.0	17.2	14.9	8.8	16.9	14.4	11.8	15.1	9.2	10.9	13.2	7.6
경기	9.0	9.5	11.3	10.5	16.3	15.5	23.9	27.5	28.5	23.6	23.1	25.2
강원	4.2	2.3	2.5	3.3	1.6	1.2	1.9	0.9	1.8	1.6	0.1	1.6
충북	3.2	2.3	3.1	2.8	2.3	2.3	1.6	2.0	2.6	1.4	2.4	3.0
충남	8.0	5.3	6.3	7.0	4.4	4.2	4.0	4.1	4.2	2.1	2.0	1.6
전북	6.5	4.4	3.7	5.3	3.0	2.9	3.1	2.6	2.7	2.8	2.5	2.5
전남	11.9	5.6	3.6	11.7	3.9	4.3	4.6	2.9	4.8	2.8	1.9	2.8
경북	15.5	12.2	8.2	17.5	10.6	11.3	12.2	12.0	12.2	4.0	6.4	9.3
경남	7.5	6.0	12.5	6.3	8.8	13.5	5.5	13.1	18.1	5.7	12.9	16.8
제주	1.0	0.5	0.3	0.9	0.3	0.2	0.5	0.1	0.1	0.03	0.01	0.01
대구										7.6	5.9	4.2
인천										5.9	7.7	7.6
광주										1.2	1.3	2.1
대전										1.6	1.8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4,087)	(748)	(3,014)	(22,632)	(1,298)	(18,672)	(44,037)	(2,437)	(26,736)	(59,928)	(3,120)	(48,342)

*주 : ()안의 단위는 개(사업체수), 천명(종업원수), 억원(부가가치)

자료 :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경제 기획원

<부표 4-11> 인적자본 특성차 노동수요특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남자

[Model A]
종속변수 : Ln W

독립변수	1973		1978	
	추정계수	(T)	추정계수	(T)
CONSTANT	8.298	(596.34)	9.958	(867.30)
EDUC	0.118	(98.13)	0.124	(129.22)
EXPER	0.093	(34.99)	0.062	(33.84)
TENURE	0.055	(16.71)	0.080	(35.35)
EXPSQ	-0.002	(17.85)	-0.001	(15.77)
TENSQ	-0.002	(10.97)	-0.002	(19.13)
\bar{R}^2	0.45		0.54	
N	21612		28668	

[Model B]
종속변수 : Ln W

독립변수	1973		1978	
	추정계수	(T)	추정계수	(T)
CONSTANT	10.876	(713.69)	12.176	(822.70)
BLUE	-0.619	(76.25)	-0.683	(101.18)
RATIO	-1.165	(90.64)	-0.905	(80.19)
FIRM12	-0.100	(6.91)	-0.065	(5.33)
FIRM4	0.022	(1.83)	0.021	(17.76)
FIRM5	0.079	(8.05)	0.161	(17.76)
IND2	0.193	(12.85)	0.094	(6.33)
IND3	0.003	(0.19)	-0.057	(3.51)
IND4	0.028	(1.56)	0.052	(2.97)
IND5	0.072	(4.89)	-0.029	(2.00)
IND6	0.049	(2.52)	-0.066	(3.61)
IND7	-0.049	(2.79)	-0.161	(10.39)
IND8	0.014	(1.03)	-0.128	(9.55)
IND9	0.005	(0.20)	-0.174	(8.66)
DREG2	-0.094	(9.55)	-0.063	(7.05)
DREG3	0.014	(1.25)	-0.090	(9.77)
DREG4	0.020	(1.49)	-0.071	(6.08)
DREG5	-0.056	(4.82)	0.047	(5.18)
\bar{R}^2	0.49		0.48	
N	21612		28668	

1984		1989	
추정계수	(T)	추정계수	(T)
10.979	(1321.60)	11.654	(1544.12)
0.090	(140.10)	0.089	(169.75)
-0.002	(1.77)	0.036	(24.66)
0.119	(99.78)	0.072	(73.33)
0.001	(10.33)	-0.001	(14.31)
-0.003	(53.69)	-0.001	(34.00)
0.53		0.54	
53955		60536	

추정계수	(T)	추정계수	(T)
13.058	(1298.55)	13.627	(1395.47)
-0.484	(123.67)	-0.383	(126.82)
-0.838	(114.29)	-0.735	(127.71)
-0.042	(3.88)	-0.108	(13.71)
0.011	(1.34)	0.010	(1.74)
0.078	(11.39)	0.111	(22.22)
0.133	(15.18)	0.139	(15.67)
-0.109	(9.35)	-0.071	(6.56)
0.128	(11.35)	0.013	(1.22)
-0.051	(5.75)	0.022	(2.45)
0.008	(0.88)	-0.060	(5.89)
-0.128	(13.71)	0.064	(6.27)
-0.042	(5.48)	-0.015	(1.73)
0.029	(2.00)	-0.081	(6.56)
-0.056	(7.85)	-0.145	(22.26)
-0.019	(3.28)	-0.098	(20.25)
-0.045	(6.64)	-0.010	(1.59)
0.041	(7.28)	-0.028	(5.70)
0.45		0.47	
53.955		60.536	

<부표 4-12> 인적자본 특성차 노동수요특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여자

[Model A]
종속변수 Ln W

독립변수	1973		1978	
	추정계수	(T)	추정계수	(T)
CONSTANT	8.324	(606.48)	9.859	(1200.53)
EDUC	0.075	(43.39)	0.053	(60.68)
EXPER	0.109	(21.45)	0.036	(14.20)
TENURE	0.063	(10.87)	0.105	(35.75)
EXPSQ	-0.004	(11.39)	-0.0006	(3.44)
TENSQ	-0.002	(4.94)	-0.004	(15.72)
\bar{R}^2	0.23		0.37	
N	21091		25030	

[Model B]
종속변수 : Ln W

독립변수	1973		1978	
	추정계수	(T)	추정계수	(T)
CONSTANT	10.210	(557.29)	11.207	(1040.23)
BLUE	-0.548	(41.34)	-0.317	(48.51)
RATIO	-1.080	(83.16)	-0.718	(37.64)
FIRM12	-0.083	(6.30)	-0.008	(0.97)
FIRM4	-0.072	(6.50)	0.011	(1.64)
FIRM5	0.114	(13.98)	0.137	(24.71)
IND2	0.270	(22.70)	0.077	(10.16)
IND3	0.064	(3.26)	0.041	(3.87)
IND4	0.260	(10.68)	0.167	(11.28)
IND5	0.309	(21.69)	0.092	(10.71)
IND6	0.011	(0.48)	-0.010	(0.81)
IND7	0.002	(0.04)	0.004	(0.19)
IND8	0.237	(18.03)	0.058	(7.22)
IND9	0.348	(24.25)	-0.047	(3.91)
DREG2	-0.117	(12.98)	-0.074	(13.17)
DREG3	-0.045	(4.96)	-0.029	(5.18)
DREG4	-0.129	(12.83)	0.040	(7.32)
DREG5	-0.111	(12.88)	0.030	(5.57)
\bar{R}^2	0.45		0.50	
N	21091		25030	

1984		1989	
추정계수	(T)	추정계수	(T)
10.816	(1443.76)	11.695	(1562.82)
0.060	(36.21)	0.059	(95.57)
0.045	(21.00)	0.006	(3.47)
0.061	(31.24)	0.093	(62.58)
-0.001	(9.53)	-0.0002	(1.70)
-0.001	(6.12)	-0.003	(29.19)
0.34		0.36	
41345		38371	

추정계수	(T)	추정계수	(T)
12.190	(1444.33)	12.852	(1585.09)
-0.219	(42.28)	-0.148	(45.16)
-0.621	(81.78)	-0.588	(115.23)
0.00004	(0.006)	-0.044	(6.76)
-0.012	(2.06)	0.073	(14.42)
0.059	(12.75)	0.123	(28.96)
0.097	(14.68)	0.100	(15.05)
0.235	(21.49)	0.211	(22.96)
0.196	(12.54)	0.074	(6.98)
0.151	(20.23)	0.127	(16.67)
0.098	(7.63)	0.035	(3.37)
0.046	(2.56)	0.051	(3.13)
0.191	(27.99)	0.131	(19.39)
0.176	(16.44)	0.159	(18.67)
-0.110	(22.39)	-0.113	(27.89)
-0.170	(39.76)	-0.061	(18.26)
-0.061	(11.79)	-0.029	(6.28)
-0.108	(26.34)	-0.105	(30.43)
0.40		0.53	
41345		38371	

<부표 4-13>

73년 남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고위 고임금업체			중위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전문직 및 행정직	17-20	1.00	30206.67	-
	20-25	17.00	42375.34	2025
	25-30	214.00	44667.35	2530
	30-35	387.00	54027.27	3035
	35-40	222.00	68521.58	3540
	40-50	143.00	87501.27	4050
	50-60	24.00	79517.67	5060
	60-70	1.00	60000.00	-
사무직	17-20	12.00	24114.53	1720
	20-25	74.00	30491.97	2025
	25-30	456.00	39271.23	2530
	30-35	592.00	54677.46	3035
	35-40	344.00	60055.16	3540
	40-50	256.00	66092.37	4050
	50-60	25.00	58013.24	5060
	60-70	4.00	43603.33	6070
전문, 행정, 사무직	17-20	13.00	24583.15	1720
	20-25	91.00	32711.94	2025
	25-30	670.00	40994.77	2530
	30-35	979.00	54420.44	3035
	35-40	566.00	63375.91	3540
	40-50	399.00	73765.24	4050
	50-60	49.00	68546.02	5060
	60-70	5.00	46882.67	6070
생산직	17-20	99.00	20108.20	1720
	20-25	390.00	25557.79	2025
	25-30	1167.00	29403.30	2530
	30-35	1380.00	33859.19	3035
	35-40	769.00	35459.25	3540
	40-50	548.00	38789.64	4050
	50-60	94.00	38845.36	5060
	60-70	2.00	24529.67	-

* 주 : 연령의 4자리수는 앞 2자리의 연령과 뒤 2자리 연령간의 연령계층을 의미한다.

고임금업체		저 임금업체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	--	-	-	-
9.00	32739.63	2025	15.00	26425.63
55.00	39193.25	2530	143.00	35101.48
78.00	48766.33	3035	236.00	40822.77
73.00	59617.56	3540	143.00	42615.84
53.00	70945.11	4050	103.00	51732.89
10.00	73782.00	5060	36.00	74921.66
-	--	6070	1.00	70000.00
12.00	17735.58	1720	40.00	16239.36
48.00	21372.75	2025	120.00	19498.97
157.00	32761.80	2530	394.00	27670.72
188.00	44595.78	3035	398.00	34866.71
83.00	47178.62	3540	296.00	39510.76
74.00	46459.13	4050	241.00	39374.50
14.00	46433.33	5060	58.00	35648.45
1.00	46000.00	6070	7.00	35395.24
12.00	17735.58	1720	40.00	16239.36
57.00	23167.52	2025	135.00	20268.60
222.00	34355.18	2530	537.00	29649.49
266.00	45818.72	3035	634.00	37083.79
156.00	52999.41	3540	439.00	40522.21
127.00	56677.69	4050	344.00	43074.83
24.00	57828.61	5060	94.00	50589.25
1.00	46000.00	6070	8.00	39720.83
109.00	13428.96	1720	1134.00	10024.97
316.00	17969.83	2025	1705.00	13181.08
706.00	19900.64	2530	2640.00	15134.83
745.00	21943.40	3035	1756.00	18235.34
318.00	25676.64	3540	811.00	19890.04
209.00	28052.92	4050	524.00	20674.13
32.00	27997.97	5060	127.00	20213.02
-	-	6070	4.00	12627.50

<부표 4-14>

73년 여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고위 고임금업체			중위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전문직 및 행정직	-	-	-	1720
	2025	10.00	34378.92	2025
	2530	3.00	46397.78	2530
	3035	2.00	52760.00	3035
	3540	3.00	68347.78	-
	4050	1.00	21100.00	-
사무직	1720	28.00	18425.87	1720
	2025	163.00	26486.13	2025
	2530	55.00	34021.21	2530
	3035	7.00	32303.55	3035
	3540	1.00	106000.00	3540
	4050	7.00	36463.60	4050
	-	-	-	5060
	-	-	-	-
전문, 행정, 사무직	1720	28.00	18425.87	1720
	2025	173.00	26942.36	2025
	2530	58.00	34661.38	2530
	3035	9.00	36849.43	3035
	3540	4.00	77760.83	3540
	4050	8.00	34543.15	4050
	-	-	-	5060
생산직	1720	369.00	16301.56	1720
	2025	947.00	19286.99	2025
	2530	108.00	22402.37	2530
	3035	24.00	15470.02	3035
	3540	16.00	18060.23	3540
	4050	22.00	18834.61	4050
	5060	2.00	16312.50	5060

* 주 : 연령은 <부표 4-13>과 동일함

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1.00	8700.00	-	-	-
7.00	2199.71	2025	11.00	20795.45
5.00	27890.00	2530	4.00	25166.67
1.00	26100.00	3035	5.00	39439.33
-	-	3540	6.00	34338.78
-	-	4050	19.00	57747.81
23.00	13727.72	1720	84.00	12251.17
100.00	20528.91	2025	280.00	18107.97
29.00	28577.02	2530	67.00	27118.27
5.00	24668.78	3035	34.00	45764.79
2.00	21228.33	3540	23.00	25527.13
2.00	29910.00	4050	19.00	22634.76
1.00	19000.00	5060	1.00	8460.00
-	-	6070	1.00	21666.67
24.00	13518.24	1720	84.00	12251.17
107.00	20718.59	2025	291.00	18209.56
34.00	28475.99	2530	71.00	27008.32
6.00	24907.32	3035	39.00	44953.84
2.00	21228.33	3540	29.00	27350.23
2.00	29910.00	4050	38.00	40191.28
1.00	19000.00	5060	1.00	8460.00
-	-	6070	1.00	21666.67
927.00	14216.73	1720	5741.00	8628.25
1548.00	16165.16	2025	7890.00	10360.35
121.00	16527.43	2530	794.00	12648.68
31.00	16145.94	3035	202.00	10163.07
36.00	16203.99	3540	219.00	11047.11
41.00	14752.15	4050	230.00	11358.82
2.00	11540.00	5060	25.00	8453.33

<부표 4-15>

78년 남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고위 고임금업체			중위
	연령	표본의 수	임금	연령
전문직 및 행정직	1720	4.00	63026.67	1720
	2025	114.00	128342.40	2025
	2530	378.00	176197.89	2530
	3035	284.00	246785.30	3035
	3540	209.00	308683.79	3540
	4050	232.00	354740.32	4050
	5060	80.00	407558.91	5060
	6070	11.00	449651.82	6070
사무직	1720	32.00	68277.22	1720
	2025	147.00	98069.61	2025
	2530	500.00	134945.22	2530
	3035	531.00	177536.18	3035
	3540	368.00	207399.72	3540
	4050	297.00	199711.71	4050
	5060	69.00	228991.71	5060
	6070	2.00	247998.33	6070
전문, 행정 사무직	1720	36.00	67693.83	1720
	2025	261.00	111292.21	2025
	2530	878.00	152705.48	2530
	3035	815.00	201667.16	3035
	3540	577.00	244086.67	3540
	4050	529.00	267701.57	4050
	5060	149.00	324866.72	5060
	6070	13.00	418628.21	6070
생산직	1720	264.00	67600.74	1720
	2025	1049.00	80377.11	2025
	2530	2269.00	92060.68	2530
	3035	1926.00	110475.86	3035
	3540	1352.00	123892.29	3540
	4050	844.00	140654.74	4050
	5060	131.00	159632.09	5060
	6070	4.00	142522.71	6070

* 주 : 연령은 <부표 4-13>과 동일함

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5.00	60202.00	1720	1.00	62520.00
28.00	77090.66	2025	16.00	74947.99
75.00	157775.44	2530	63.00	155541.45
65.00	206366.28	3035	103.00	197436.70
64.00	271306.05	3540	98.00	244510.08
71.00	346231.72	4050	120.00	255379.35
17.00	344426.72	5060	36.00	309297.53
6.00	232606.96	6070	5.00	288536.67
9.00	44037.04	1720	45.00	49726.44
57.00	78197.66	2025	161.00	73307.00
198.00	112431.45	2530	481.00	112382.74
229.00	149253.03	3035	458.00	142021.95
129.00	171700.17	3540	329.00	152476.18
131.00	171881.78	4050	311.00	149886.50
23.00	155219.95	5060	87.00	124468.54
10.00	111940.15	6070	15.00	103622.18
14.00	49810.24	1720	46.00	50004.56
85.00	77833.00	2025	177.00	73455.33
273.00	124888.59	2530	544.00	117380.90
294.00	161880.11	3035	561.00	152196.14
193.00	204730.10	3540	427.00	173598.72
202.00	233163.20	4050	431.00	179258.06
40.00	235632.82	5060	123.00	178564.83
16.00	157190.20	6070	20.00	149850.30
281.00	44581.55	1720	1405.00	33650.42
765.00	59472.92	2025	2173.00	44134.67
1098.00	68757.60	2530	2226.00	56865.34
977.00	82621.72	3035	1728.00	69758.48
668.00	91604.40	3540	1182.00	78265.70
518.00	102296.76	4050	756.00	79407.87
81.00	96753.80	5060	108.00	83745.55
4.00	72350.00	6070	12.00	48950.13

<부표 4-16>

78년 여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고위 고임금업체			중위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전 문 직 및 행 정 직	2025	25.00	106557.51	2025
	2530	10.00	144148.13	2530
	3035	3.00	134912.47	-
	3540	2.00	97933.33	3540
	4050	1.00	309200.00	-
	5060	1.00	97500.00	-
사 무 직	1720	51.00	60841.13	1720
	2025	481.00	79866.03	2025
	2530	91.00	108464.69	2530
	3035	9.00	129621.15	3035
	3540	3.00	113183.47	3540
	4050	24.00	92403.26	4050
	5060	4.00	101021.88	5060
	-	-	-	6070
전 문, 행 정, 사 무 직	1720	51.00	60841.13	1720
	2025	506.00	81184.78	2025
	2530	101.00	111997.70	2530
	3035	12.00	130943.98	3035
	3540	5.00	107083.42	3540
	4050	25.00	101075.13	4050
	5060	5.00	100317.50	5060
	-	-	-	6070
생 산 직	1720	399.00	55281.34	1720
	2025	1228.00	63091.58	2025
	2530	318.00	83417.31	2530
	3035	20.00	89462.50	3035
	3540	29.00	66029.96	3540
	4050	44.00	73592.10	4050
	5060	9.00	71782.87	5060
	-	-	-	-

* 주 : 연령은 <부표 4-13>과 동일함

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8.00	80433.31	2025	17.00	81540.26
5.00	132522.67	2530	10.00	123586.83
-	-	3035	3.00	92083.33
1.00	207000.00	3540	1.00	52300.00
-	-	4050	2.00	110134.17
-	-	5060	2.00	533833.33
33.00	46596.13	1720	119.00	40037.13
157.00	65796.39	2025	517.00	57397.49
33.00	77313.79	2530	104.00	69054.68
10.00	59910.06	3035	41.00	47866.15
8.00	44843.25	3540	51.00	42738.98
13.00	61141.57	4050	58.00	40733.27
1.00	65750.00	5060	12.00	44750.82
1.00	44530.00	6070	1.00	32666.67
33.00	46596.13	1720	119.00	40037.13
165.00	66506.06	2025	534.00	58166.08
38.00	84578.12	2430	114.00	73838.21
10.00	59910.06	3035	44.00	50380.95
9.00	62860.67	3540	52.00	42922.84
13.00	61141.57	4050	60.00	43046.63
1.00	65750.00	5060	14.00	114519.75
1.00	44530.00	6070	1.00	32666.67
857.00	47793.48	1720	6340.00	32475.21
1413.00	50763.16	2025	9562.00	37999.16
90.00	55661.89	2530	764.00	38983.10
32.00	44569.31	3035	402.00	35650.33
44.00	42859.70	3540	514.00	35378.44
74.00	48374.54	4050	414.00	37646.76
6.00	44027.71	5060	39.00	35820.40
-	-	6070	5.00	32505.60

<부표 4-17>

84년 남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고위 고임금업체			중위
	연령	표본의 수	임금	연령
전문직 및 행정직	1720	53.00	170744.97	1720
	2025	312.00	272744.50	2025
	2530	1378.00	373701.72	2530
	3035	1098.00	552855.46	3035
	3540	682.00	777145.70	3540
	4050	583.00	968134.63	4050
	5060	105.00	1165640.71	5060
	6070	8.00	1212394.79	6070
사무직	1720	32.00	170448.44	1720
	2025	173.00	243639.45	2025
	2530	1217.00	331741.78	2530
	3035	1337.00	488156.06	3035
	3540	904.00	549442.30	3540
	4050	708.00	510351.55	4050
	5060	114.00	464281.38	5060
	6070	1.00	287500.00	6070
전문, 행정, 사무직	1720	85.00	170633.33	1720
	2025	485.00	262362.70	2025
	2530	2595.00	354023.40	2530
	3035	2435.00	517330.57	3035
	3540	1586.00	647357.63	3540
	4050	1291.00	717080.86	4050
	5060	219.00	800549.55	5060
	6070	9.00	1109628.70	6070
생산직	1720	152.00	184861.95	1720
	2025	1652.00	229508.51	2025
	2530	4615.00	269249.72	2530
	3035	4300.00	311076.93	3035
	3540	2708.00	355282.19	3540
	4050	2353.00	398292.98	4050
	5060	251.00	431769.79	5060
	6070	3.00	328027.78	6070

* 주 : 연령은 <부표 4-13>과 동일함.

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28.00	180080.65	1720	9.00	152525.00
106.00	262696.38	2025	107.00	205197.27
363.00	314644.19	2530	445.00	288159.66
180.00	461620.37	3035	254.00	419616.47
138.00	663777.90	3540	237.00	519852.85
151.00	901726.38	4050	326.00	664324.59
20.00	1035707.50	5060	85.00	743495.88
6.00	497055.56	6070	12.00	850559.03
53.00	174692.14	1720	33.00	136185.10
214.00	213782.13	2025	174.00	164625.81
875.00	273227.61	2530	918.00	237211.79
558.00	404998.92	3035	861.00	333458.41
288.00	487261.02	3540	676.00	373865.43
230.00	441182.10	4050	761.00	370005.91
47.00	388628.37	5060	167.00	272442.22
2.00	251250.00	6070	21.00	210292.46
81.00	176554.84	1720	42.00	139686.51
320.00	229984.97	2025	281.00	180074.73
1238.00	285371.57	2530	1363.00	253845.54
738.00	418809.03	3035	1115.00	353085.45
426.00	544442.55	3540	913.00	411761.40
381.00	623707.52	4050	1087.00	458274.44
67.00	581786.32	5060	252.00	431329.37
8.00	435604.17	6070	33.00	443116.67
152.00	124174.40	1720	1016.00	105621.37
580.00	155306.34	2025	3370.00	129309.64
1253.00	202407.91	2530	4916.00	165566.89
977.00	241398.77	3035	2876.00	207260.53
768.00	254024.63	3540	1842.00	228305.48
810.00	266517.23	4050	1781.00	235472.57
133.00	287155.14	5060	265.00	226424.25
3.00	198544.44	6070	14.00	185469.05

<부표 4-18>

84년 여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고위 고임금업체			중위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진 문 직 및 행 정 직	1720	6.00	216569.44	-
	2025	38.00	289172.81	2025
	2530	29.00	354277.59	2530
	3035	9.00	629225.93	3035
	3540	6.00	771925.93	3540
	4050	3.00	1828750.00	4040
	5060	2.00	810000.00	-
	6070	2.00	1088841.67	-
사 무 직	1720	172.00	159700.29	1720
	2025	766.00	211164.46	2025
	2530	179.00	257049.02	2530
	3035	40.00	321677.92	3035
	3540	38.00	217412.94	3540
	4050	47.00	208982.27	3540
	5060	9.00	162663.89	5060
	-	-	-	-
전 문, 행 정, 사 무 직	1720	178.00	161617.23	1720
	2025	804.00	214851.42	2025
	2530	208.00	270604.93	2530
	3035	49.00	378166.33	3035
	3540	44.00	293028.22	3540
	4050	50.00	306168.33	4050
	5060	11.00	280361.36	5060
	6070	2.00	1088841.67	-
생 산 직	1720	57.00	154737.56	1720
	2025	552.00	208748.60	2025
	2530	183.00	253637.30	2530
	3035	49.00	181047.28	3035
	3540	55.00	187483.64	3540
	4050	75.00	192284.11	4050
	5060	9.00	210423.15	5060
	-	-	-	-

* 주: 연령은 <부표 4-13>과 동일함

고임금업체		저 임금업체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	-	-	-	-
14.00	171063.10	2025	37.00	194076.35
15.00	257130.56	2530	22.00	207704.55
3.00	282202.78	3035	6.00	251473.61
2.00	505512.50	-	-	-
1.00	176841.67	4050	3.00	261877.78
-	-	5060	3.00	476016.67
-	-	-	-	-
169.00	142981.16	1720	127.00	106116.54
670.00	170136.68	2025	834.00	141372.28
127.00	222869.36	2530	232.00	185840.34
13.00	239044.23	3035	55.00	152981.06
21.00	174724.60	3540	80.00	152363.54
36.00	156832.41	4050	158.00	141386.71
6.00	226565.28	5060	47.00	156724.47
-	-	6070	3.00	142536.11
169.00	142981.16	1720	127.00	106116.54
684.00	170155.64	2025	871.00	143611.15
142.00	226488.50	2530	254.00	187734.09
16.00	247136.46	3035	51.00	162668.85
23.00	203488.77	3540	80.00	152363.54
37.00	157373.20	4050	161.00	143631.88
6.00	226565.28	5060	50.00	175882.00
-	-	6070	3.00	142536.11
497.00	111168.63	1720	11539.00	94741.11
1624.00	140392.33	2025	14999.00	114498.33
198.00	191387.92	2530	1742.00	124893.94
50.00	160436.50	3035	1023.00	104610.79
34.00	114070.83	3540	940.00	106490.63
32.00	136177.08	4050	1269.00	109143.61
10.00	137766.67	5060	167.00	99869.01
-	-	6070	4.00	88981.25

<부표 4-19>

89년 남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고위 고임금업체			중위
	연령	표본의 수	임금	연령
전문직 및 행정직	1720	82.00	438682.53	1720
	2025	305.00	524915.46	2025
	2530	1851.00	679582.33	2530
	3035	1367.00	886833.27	3035
	3540	747.00	1223806.70	3540
	4050	837.00	1472992.71	4050
	5060	182.00	1640633.79	5060
	6070	18.00	1922485.65	6070
사무직	1720	51.00	425599.32	1720
	2025	327.00	478403.98	2025
	2530	2194.00	632269.04	2530
	3035	1965.00	837507.56	3035
	3540	1212.00	987068.08	3540
	4050	1026.00	972420.40	4050
	5060	186.00	919564.25	5060
	6070	6.00	1080372.22	6070
전문, 행정, 사무직	1720	143.00	433101.75	1720
	2025	632.00	500850.18	2025
	2530	4045.00	653965.46	2530
	3035	3332.00	857744.13	3035
	3540	1959.00	1077340.54	3540
	4050	1863.00	1197315.21	4050
	5060	368.00	1276180.16	5060
	6070	24.00	1711957.29	6070
생산직	1720	213.00	399223.44	1720
	2025	2138.00	460568.05	2025
	2530	6151.00	531725.18	2530
	3035	5067.00	614396.59	3035
	3540	3280.00	675291.28	3540
	4050	3264.00	711911.34	4050
	5060	613.00	749640.08	5060
	6070	5.00	706511.67	6070

* 주 : 연령은 <부표 4-13>과 동일함.

고임금업체		저 임금업체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5.00	389633.33	-	-	-
126.00	491509.19	2025	67.00	402808.71
821.00	646174.13	2530	623.00	551824.24
474.00	794115.24	3035	515.00	714148.41
209.00	1063886.40	3540	252.00	940831.85
254.00	1343163.39	4050	394.00	1146750.72
44.00	1228733.71	5060	81.00	1333458.85
7.00	1844654.76	6070	7.00	1619722.62
12.00	302804.17	1720	16.00	243599.48
183.00	399830.97	2025	185.00	329600.63
921.00	521322.41	2530	1267.00	446102.73
663.00	662867.37	3035	1259.00	582575.69
371.00	803789.67	3540	712.00	670646.59
274.00	753981.05	4050	696.00	680909.48
66.00	541348.36	5060	231.00	492070.17
7.00	298196.43	6070	27.00	310606.79
17.00	328342.16	1720	16.00	243599.48
309.00	437214.32	2025	252.00	349064.68
1742.00	580164.70	2530	1890.00	480951.67
1137.00	717582.84	3035	1774.00	620771.83
580.00	897514.18	3540	964.00	741275.93
528.00	1037413.46	4050	1090.00	849296.13
110.00	816302.50	5060	312.00	710507.61
14.00	1071425.60	6070	34.00	580130.64
173.00	322291.81	1720	672.00	215084.90
937.00	368536.02	2025	2328.00	274057.22
1769.00	417981.78	2530	3952.00	333462.12
1138.00	480171.09	3035	3133.00	380815.54
611.00	515988.58	3540	1927.00	435734.27
722.00	524382.57	4050	2356.00	443829.33
163.00	478681.49	5060	564.00	423023.18
3.00	338333.33	6070	15.00	293746.76

<부표 4-20>

89년 여자의 직종별·연령별 임금

	고위 고임금업체			중위
	연령	표본의 수	임금	연령
전문직 및 행정직	1720	25.00	411349.00	1720
	2025	114.00	473481.87	2025
	2530	54.00	675463.27	2530
	3035	14.00	678728.57	3035
	3540	7.00	845160.71	3540
	4050	5.00	1230955.00	4050
	5060	2.00	603583.33	-
	-	-	-	-
사무직	1720	251.00	367241.33	1720
	2025	1337.00	426560.27	2025
	2530	432.00	509856.33	2530
	3035	80.00	474752.08	3035
	3540	56.00	413047.32	3540
	4050	111.00	412083.48	4050
	5060	30.00	398552.78	5060
	6070	2.00	374883.33	6070
전문, 행정, 사무직	1720	276.00	371236.59	1720
	2025	1451.00	430246.74	2025
	2530	486.00	528257.10	2530
	3035	94.00	505131.56	3035
	3540	63.00	461059.92	3540
	4050	116.00	447379.67	4050
	5060	32.00	411367.19	5060
	6070	2.00	374883.33	6070
생산직	1720	710.00	330615.62	1720
	2025	2898.00	365143.42	2025
	2530	427.00	407571.12	2530
	3035	170.00	405577.89	3035
	3540	155.00	404530.16	3540
	4050	263.00	439480.29	4050
	5060	96.00	460190.80	5060
	-	-	-	6070

* 주 : 연령은 <부표 4-13>과 동일함

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		
표본의 수	임 금	연 령	표본의 수	임 금
1.00	540450.00	-	-	-
68.00	398724.26	2025	61.00	329444.13
49.00	639228.91	2530	47.00	463788.12
3.00	755963.89	3035	13.00	558863.46
3.00	736911.11	3540	3.00	665733.33
5.00	909040.00	4050	7.00	1109588.10
-	-	5060	1.00	2528333.33
-	-	6070	1.00	2479166.67
170.00	294791.13	1720	209.00	234226.75
762.00	349735.86	2025	1263.00	293158.59
159.00	429449.00	2530	404.00	355638.16
31.00	533304.30	3035	76.00	378479.06
30.00	367738.61	3540	99.00	308071.89
50.00	338936.50	4050	224.00	304185.79
13.00	368577.56	5060	85.00	287374.31
3.00	519216.67	6070	8.00	302496.88
1012.00	296674.93	1720	5282.00	224129.17
3404.00	329804.40	2025	11043.00	262358.31
198.00	349194.53	2530	2104.00	262748.81
96.00	335779.08	3035	1391.00	243167.61
101.00	315035.07	3540	1552.00	249923.88
186.00	303799.28	4050	2678.00	250350.36
44.00	274207.39	5060	629.00	228906.76
3.00	329875.00	6070	53.00	187308.86
171.00	296227.13	1720	209.00	234226.75
830.00	353749.37	2025	1324.00	294830.36
208.00	478868.31	2530	451.00	366908.78
34.00	552950.74	3035	89.00	404827.34
33.00	401299.75	3540	102.00	318591.34
55.00	390764.09	4050	231.00	328591.92
13.00	368577.56	5060	86.00	313431.98
3.00	519216.67	6070	9.00	544349.07

<부표 4-21>

임금의 위계: 1973, 1978

		'73 (남)		'73 (여)	
		(전체순위)	임금	(전체순위)	임금
전문 기술 및 행정 직	1. 고위고임금업체	1	60367.54	5	42876.10
	2. 고임금업체	2	54331.12	11	23446.29
	3. 저임금업체	4	43190.25	6	40663.43
사무 직	1. 고위고임금업체	3	52171.71	10	27937.55
	2. 고임금업체	7	39427.28	13	21308.53
	3. 저임금업체	8	32978.88	14	20613.02
생산 직	1. 고위고임금업체	9	32621.54	15	18674.58
	2. 고임금업체	12	21480.88	17	15467.27
	3. 저임금업체	16	15482.10	18	9711.58
전 체			28084.45		11776.02

		'78 (남)		'78 (여)	
		(전체순위)	임금	(전체순위)	임금
전문 기술 및 행정 직	1. 고위고임금업체	1	256050.70	7	121731.50
	2. 고임금업체	2	232336.71	9	108077.50
	3. 저임금업체	3	223035.49	8	121101.08
사무 직	1. 고위고임금업체	4	169722.16	11	83735.53
	2. 고임금업체	5	140775.15	14	63601.67
	3. 저임금업체	6	128407.38	16	53925.82
생산 직	1. 고위고임금업체	10	106074.91	13	65290.00
	2. 고임금업체	12	76627.82	17	49623.55
	3. 저임금업체	15	57678.27	18	35958.16
전 체			102174.49		42361.91

<부표 4-22>

임금의 위계: 1984, 1989

		'84 (남)		'84 (여)	
		(전체순위)	임금		
전문 기술 및 행정직	1. 고위고임금업체	1	578968.79	5	443584.74
	2. 고임금업체	2	485538.41	9	236751.90
	3. 저임금업체	3	455133.06	11	217927.46
사무직	1. 고위고임금업체	4	449228.42	12	213837.51
	2. 고임금업체	6	344350.56	15	172976.92
	3. 저임금업체	8	310780.57	16	146487.11
생산직	1. 고위고임금업체	7	311756.72	13	209076.79
	2. 고임금업체	10	224069.52	17	138081.92
	3. 저임금업체	14	177269.85	18	105465.60
전체			304670.62		117511.01

		'89 (남)		'89 (여)	
		(전체순위)	임금	(전체순위)	임금
전문 기술 및 행정직	1. 고위고임금업체	1	955046.00	7	558895.66
	2. 고임금업체	2	825407.49	9	527129.78
	3. 저임금업체	4	797740.46	10	480685.53
사무직	1. 고위고임금업체	3	800752.66	12	435974.35
	2. 고임금업체	5	616353.57	15	357763.70
	3. 저임금업체	8	554749.97	16	302756.05
생산직	1. 고위고임금업체	6	600765.62	13	372614.46
	2. 고임금업체	11	445880.80	17	321542.17
	3. 저임금업체	14	352108.14	18	247373.84
전체			593370.10		290195.18

<부표 4-23>

73년 근로자 표본의 특징

	평균연령	평균교육년수	평균경력년수	평균근속년수
<73년 표본 전체>				
고위고임금업체	30.62	11.14	5.03	3.34
중위고임금업체	26.54	9.34	3.61	2.48
저임금업체	24.34	8.48	2.79	2.21
전체	25.98	9.17	3.37	2.49
남자사무관리직				
고위고임금업체	33.53	13.80	5.51	4.03
중위고임금업체	33.10	13.44	4.73	3.08
저임금업체	33.65	12.17	4.98	3.61
전체	33.51	13.12	5.19	3.73
남자생산직				
고위고임금업체	32.21	10.06	5.76	3.37
중위고임금업체	30.38	9.31	4.70	2.87
저임금업체	27.93	8.99	3.20	2.51
전체	29.53	9.35	4.16	2.81
여자사무관리직				
고위고임금업체	23.59	12.03	3.01	2.65
중위고임금업체	23.04	11.99	2.33	2.13
저임금업체	25.10	11.05	2.74	2.59
전체	24.35	11.47	2.74	2.53
여자생산직				
고위고임금업체	21.77	9.26	2.36	2.08
중위고임금업체	21.23	7.88	2.36	1.97
저임금업체	20.99	7.58	2.21	1.84
전체	21.08	7.74	2.24	1.87

여성의비중	총근로시간	평균임금(원)	평균초과급여(원)	평균총임금(원)
0.20	210.27	37129.71	7070.17	44199.88
0.47	224.99	22014.06	4860.68	26874.75
0.60	221.53	13946.40	5296.84	19243.24
0.49	219.65	20012.68	5607.79	25620.47
—	203.01	55153.89	7248.77	62402.66
—	215.42	44217.19	5016.37	49233.56
—	223.82	35771.27	7947.00	43718.28
—	212.80	46128.14	7188.53	53316.67
—	203.08	28951.23	1909.73	30860.96
—	213.16	21478.58	2158.15	23636.74
—	211.11	21050.20	6292.33	27342.53
—	209.32	23222.74	4435.97	27658.71
—	218.81	32621.54	8689.52	41311.07
—	241.26	21480.88	7494.45	28975.33
—	226.79	15482.10	6739.64	22221.74
—	226.78	21288.73	7411.49	28700.22
—	199.50	18674.58	2854.05	21528.63
—	214.16	15467.27	2617.59	18084.86
—	218.66	9711.58	4078.51	13790.09
—	216.62	11160.17	3789.05	14949.21

<부표 4-24>

78년 근로자 표본의 특징

	평균연령	평균교육년수	평균경력년수	평균근속년수
〈78년 표본 전체〉				
고위고임금업체	30.02	11.10	4.76	3.87
중위고임금업체	28.05	9.65	4.01	2.96
저임금업체	24.66	8.75	2.76	2.31
전체	26.57	9.50	3.47	2.82
남자사무관리직				
고위고임금업체	33.55	13.69	5.20	4.77
중위고임금업체	33.92	12.98	5.15	3.87
저임금업체	34.25	12.38	4.68	4.00
전체	33.86	13.12	5.01	4.35
남자생산직				
고위고임금업체	31.06	10.51	5.18	3.77
중위고임금업체	30.53	9.51	4.56	2.99
저임금업체	28.13	9.19	3.36	2.69
전체	29.66	9.72	4.25	3.14
여자사무관리직				
고위고임금업체	23.50	11.77	2.69	2.61
중위고임금업체	24.20	11.28	2.77	2.41
저임금업체	25.11	10.91	2.37	2.21
전체	24.39	11.28	2.55	2.38
여자생산직				
고위고임금업체	22.70	9.03	3.22	3.28
중위고임금업체	21.56	8.24	2.68	2.56
저임금업체	21.60	7.96	2.23	1.91
전체	21.69	8.09	2.36	2.10

여성의비중	총근로시간	평균임금(원)	평균초과급여(원)	평균총임금(원)
0.20	254.65	122124.05	23495.59	145619.64
0.34	260.17	80259.93	22138.06	102398.00
0.62	267.00	51218.20	16072.02	67290.22
0.47	262.75	74020.78	18928.34	92949.12
—	224.07	204486.75	18830.47	223317.22
—	231.19	167788.66	18673.74	186462.39
—	237.57	146314.69	16185.63	162500.33
—	229.95	178156.69	17885.39	196042.09
—	218.64	85999.12	5115.04	91114.15
—	223.71	65758.39	6911.96	72670.35
—	235.16	56278.30	8051.78	64330.08
—	227.47	68535.87	6811.92	75347.79
—	269.27	106064.32	30143.43	136207.74
—	268.85	76560.10	27556.18	104116.28
—	280.36	57368.29	23495.67	80863.96
—	274.09	78601.65	26683.02	105284.67
—	259.69	65263.93	11846.70	77110.63
—	261.78	49609.92	15881.71	65491.63
—	265.31	35728.74	12568.54	48297.28
—	264.43	39879.35	12867.55	52746.89

<부표 4-25>

84년 근로자 표본의 특징

	평균연령	평균교육년수	평균경력년수	평균근속년수
<84년 표본 전체>				
고위고임금업체	31.86	11.59	6.11	5.32
중위고임금업체	28.99	11.48	5.19	4.09
저임금업체	25.42	9.81	3.87	2.56
전체	27.68	10.52	4.66	3.53
남자사무관리직				
고위고임금업체	32.99	13.79	6.41	5.79
중위고임금업체	31.27	13.35	5.91	4.92
저임금업체	34.66	12.64	7.16	5.47
전체	33.16	13.36	6.54	5.53
남자생산직				
고위고임금업체	32.27	10.43	6.21	5.39
중위고임금업체	32.37	10.43	6.38	4.98
저임금업체	29.62	10.10	4.96	3.22
전체	31.12	10.29	5.69	4.39
여자사무관리직				
고위고임금업체	24.11	11.87	3.73	2.75
중위고임금업체	23.32	11.89	3.22	2.44
저임금업체	26.80	11.06	3.94	2.78
전체	24.97	11.55	3.67	2.68
여자생산직				
고위고임금업체	25.80	10.70	5.05	3.74
중위고임금업체	22.04	10.82	2.82	2.02
저임금업체	21.96	9.19	2.84	1.80
전체	22.07	9.34	2.90	1.87

여성의비중	총근로시간	평균임금(원)	평균초과급여(원)	평균총임금(원)
0.09	238.35	368271.93	61275.13	429547.06
0.31	249.45	247280.06	56203.89	303483.95
0.63	249.67	149360.34	41055.11	190415.45
0.43	246.42	223484.38	48637.62	272122.00
—	218.44	511975.30	38922.96	550898.26
—	223.65	387299.89	31861.04	419160.93
—	228.92	352383.02	42655.50	395038.52
—	222.56	440546.16	38688.66	479234.82
—	251.90	311756.72	78885.02	390641.74
—	278.77	224069.52	92971.43	317040.96
—	258.14	177269.85	59880.60	237150.45
—	258.04	241787.73	72357.61	314145.34
—	215.10	230040.91	16531.63	246572.54
—	213.70	175049.46	13086.63	188136.09
—	230.73	149637.59	22723.73	172361.31
—	220.97	183269.68	18083.19	201352.87
—	225.48	209076.79	33542.54	242619.34
—	243.53	138081.92	37490.94	175572.86
—	249.65	105465.60	32709.66	138175.26
—	248.60	110401.49	33048.86	143450.34

<부표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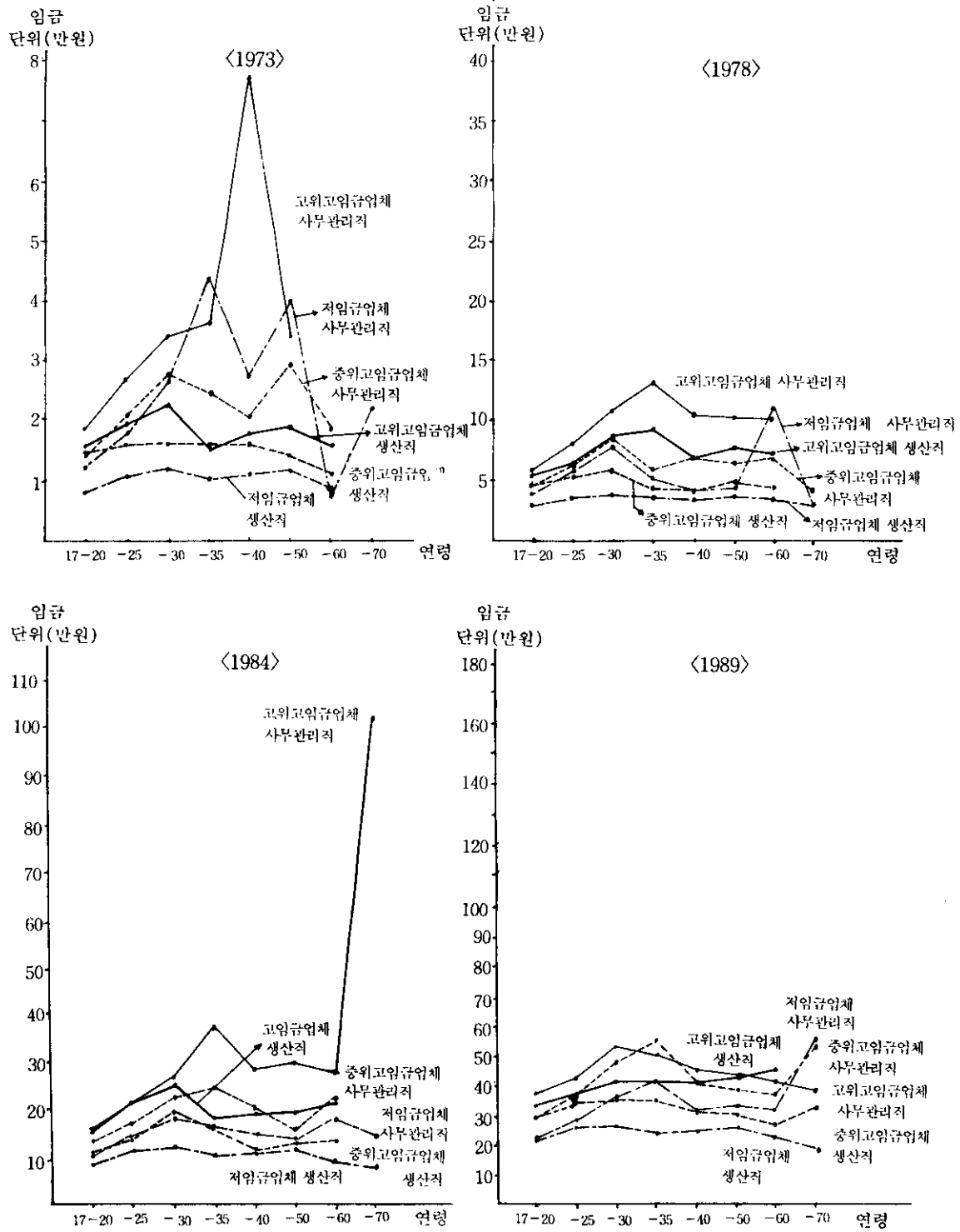
89년 근로자 표본의 특징

	평균연령	평균교육년수	평균경력년수	평균근속년수
〈89년 표본 전체〉				
고위고임금업체	31.21	12.06	6.33	5.72
중위고임금업체	28.04	11.95	4.81	3.42
저임금업체	28.69	10.53	4.80	3.29
전체	29.59	11.35	5.41	4.27
남자사무관리직				
고위고임금업체	32.86	14.15	6.99	6.29
중위고임금업체	31.91	13.86	5.89	4.39
저임금업체	34.05	13.32	6.74	5.32
전체	33.01	13.87	6.72	5.68
남자 생산직				
고위고임금업체	32.64	11.06	6.82	6.31
중위고임금업체	30.92	11.06	5.99	3.97
저임금업체	31.66	10.46	5.86	4.03
전체	32.07	10.85	6.37	5.21
여자 사무 관리직				
고위고임금업체	24.56	12.00	3.83	3.05
중위고임금업체	24.42	11.94	3.43	2.59
저임금업체	26.58	11.47	4.24	2.96
전체	25.34	11.78	3.93	2.93
여자 생산직				
고위고임금업체	24.33	11.16	3.92	3.12
중위고임금업체	22.44	11.33	2.92	2.18
저임금업체	25.82	9.78	3.75	2.38
전체	25.11	10.20	3.65	2.46

여성의비중	총근로시간	평균임금(원)	평균초과급여(원)	평균총임금(원)
0.18	224.04	641828.57	101378.56	743207.13
0.39	227.31	469382.74	73663.21	543045.94
0.57	234.74	335769.02	64793.88	400562.90
0.39	229.39	476972.99	80607.84	557580.83
-	208.81	864615.92	59330.19	923946.11
-	212.69	705827.11	56170.24	761997.35
-	217.08	633648.85	49443.22	683092.06
-	211.75	773307.93	56086.77	829394.70
-	233.56	597933.71	139809.31	737743.02
-	239.20	442367.21	102350.21	544717.42
-	242.79	362946.47	95959.16	458905.63
-	237.53	495370.63	119558.70	614929.33
-	207.90	444147.52	33235.59	477383.11
-	212.10	366510.07	31652.84	398162.91
-	222.44	312662.13	37705.87	350368.00
-	214.41	378246.92	34730.94	412977.86
-	229.73	374006.62	76789.09	450795.71
-	229.81	324175.20	66076.68	390251.88
-	235.65	247604.36	53013.43	300618.30
-	233.96	276782.93	58307.44	335090.37

〈부록 그림 4-1〉

연령별 임금곡선



• 研究報告書案内 •

◀ 研究叢書 ▶

第1-81-01卷	現行稅制의 綜合評價와 1982年度 稅法改正方向研究	1981
第2-81-02卷	韓國經濟 短期豫測模型	1981
第3-82-01卷	우리나라 企業의 人件費支拂能力評價와 資金對策	1982
第4-82-02卷	韓國企業의 成長 및 財務行態	1982
第5-82-03卷	租稅負擔의 測定과 適正負擔率에 관한 研究	1982
第6-82-04卷	韓國의 私金融市場에 관한 研究	1982
第7-82-05卷	稅法體系의 整備와 改善에 관한 研究	1982
第8-82-06卷	所得稅體系 合理化를 위한 基礎研究	1982
第9-82-07卷	財政技能의 再調整과 行政技能 官僚制度의 改編方案 研究	1982
第10-82-08卷	韓國租稅文化의 反省과 稅制의 綜合改善方向	1982
第11-83-01卷	稅收推計模型의 精密化와 中長期 稅收展望	1983
第12-83-02卷	韓國企業의 準租稅負擔에 관한 理論的 考察과 負擔 水準의 實證的 分析	1983
第13-83-03卷	段階的 貿易自由化에 對應한 關稅率과 關稅行政의 改編方向	1983
第14-83-04卷	80年代 產業構造 高度化를 위한 輸入自由化와 關稅 政策의 方向	1983
第15-83-05卷	法人所得과 配當所得의 二重課稅調整에 관한 研究	1983
第16-84-01卷	韓國의 貿易發展과 綜合貿易商社의 役割	1984
第17-84-02卷	韓國의 赤字財政 研究	1984
第18-84-03卷	韓國의 土地稅制 改編方向 研究	1984

第19-84-04卷	臺灣의 產業政策	1984
第20-85-01卷	韓國의 地方財政 研究	1985
第21-85-02卷	纖維產業의 構造調整에 관한 實證研究	1985
第22-85-03卷	稅法上 實質課稅에 관한 研究	1985
第23-85-04卷	金融費用增加와 物價上昇에 관한 微視的 分析	1985
第24-85-05卷	經濟體質強化를 위한 租稅政策方向	1985
第25-85-06卷	韓國貿易構造의 決定要因과 變化推移에 관한 研究	1985
第26-85-07卷	韓國企業의 經營特性要因에 관한 研究(I)	1985
第27-85-08卷	半導體產業의 現況과 育成政策	1985
第28-86-01卷	信用配分과 金融自律化의 方向	1986
第29-86-02卷	우리나라 通貨의 役割과 產業別 資金配分の 效率性 分析	1986
第30-86-03卷	市場經濟體制의 高度化와 公正去來秩序	1986
第31-86-04卷	產業別 技術革新過程과 政策課題	1986
第32-86-05卷	製造業部門 比較優位構造의 變化推移에 관한 研究	1986
第33-86-06卷	非上場株式 課稅評價方法의 合理化方案	1986
第34-86-07卷	韓國과 臺灣의 通貨政策 및 物價	1986
第35-86-08卷	企業의 準租稅負擔에 관한 實證的 研究	1986
第36-86-09卷	韓國經濟學 研究序說	1986
第37-86-10卷	韓國의 中小企業과 系列化	1986
第38-87-01卷	海外轉換社債發行과 企業財務戰略	1987
第39-87-02卷	政府와 市場	1987
第40-87-03卷	開放經濟下의 賃金政策	1987
第41-87-04卷	換率變動에 따른 韓·日의 產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	1987
第42-87-05卷	韓國의 地下經濟에 관한 研究	1987
第43-87-06卷	企業集團의 形成메카니즘과 評價	1987

第44-87-07卷	韓國 企業그룹의 多角化戰略 研究	1987
第45-87-08卷	換率變動에 따른 國際競爭力과 産業內貿易의 變化 推移	1987
第46-87-09卷	中小企業의 知識集約化에 관한 研究	1987
第47-87-10卷	우리나라 相續課稅制度的 改編方案 研究	1987
第48-88-01卷	技術革新의 産業組織的 特性에 관한 研究	1988
第49-88-02卷	企業의 技術擴散에 관한 研究	1988
第50-88-03卷	公企業 및 政府出資企業의 民營化 推進方向에 관한 研究	1988
第51-88-04卷	産業內貿易의 變化推移와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1988
第52-88-05卷	臺灣의 租稅構造와 貯蓄·投資	1988
第53-88-06卷	韓國貿易收支와 主要産業 輸出構造 分析	1988
第54-88-07卷	美國貿易의 政治經濟學과 韓國의 對應方案	1988
第55-88-08卷	經濟發展에 있어서 國家財政의 役割	1988
第56-88-09卷	韓國資本主義의 이데올로기 再定立方向	1988
第57-88-10卷	韓國企業의 準租稅에 관한 研究	1988
第58-88-11卷	資本自由化의 巨視經濟的 側面	1988
第59-88-12卷	産業集中度의 決定要因 및 變化要因과 最適企業 規模에 관한 研究(Ⅰ)	1988
第60-89-01卷	開放經濟下의 金利政策	1989
第61-89-02卷	韓國 大企業集團의 生成環境과 進路	1989
第62-89-03卷	産業集中度의 決定要因 및 變化要因과 最適企業 規模에 관한 研究(Ⅱ)	1989
第63-89-04卷	經濟民主化와 金融通貨政策	1989
第64-89-05卷	南北韓 産業 및 技術協力の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1989

第65-89-06卷	蘇聯·東歐諸國의 政治 및 經濟政策의 變化와 産業 및 技術協力에 관한 研究	1989
第66-89-07卷	3高現象이 企業採算性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研究	1989
第67-89-08卷	適正換率分析에 관한 理論定立	1989
第68-89-09卷	民間主導型 尖端技術革新을 위한 政策 및 企業戰略 에 관한 研究	1989
第69-89-10卷	우리나라 所得不平等의 現況과 要因分析	1989
第70-90-01卷	日本의 新産業戰略과 技術革新	1990
第71-90-02卷	勞動費用과 國際競爭力	1990
第72-90-03卷	韓國經濟 分期計量模型	1990
第73-90-04卷	韓國의 工業化와 勞動力(Ⅰ)	1990
第74-90-05卷	主要産業別 向後 投資需要 推定 및 最適 資金調達戰略	1990
第75-90-06卷	開放經濟下의 企業稅制 改編方向	1990
第76-90-07卷	韓國의 租稅行政에 관한 研究	1990
第77-90-08卷	우리나라 相續課稅制度의 改編 試案	1990
第78-91-01卷	우리나라 政府基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991
第79-91-02卷	金融自由化·國際化에 따른 金融政策의 方向	1991
第80-91-03卷	韓國企業의 多角化戰略과 國際競爭力	1991
第81-91-04卷	韓國의 勞動生産性과 適正賃金	1991
第82-91-05卷	資本市場開放에 對備한 通貨政策과 市場平均換率 制度의 改善 方案	1991
第83-91-06卷	大規模 企業集團에 관한 研究	1991
第84-91-07卷	韓國의 工業化와 勞動力(Ⅱ)	1991

◀研究調查資料▶

第1-81-01卷	아시아·太平洋地域の 貿易 및 産業調整	1981
第2-81-02卷	現行 租稅의 問題點	1981
第3-82-01卷	民主資本主義의 將來	1982
第4-82-02卷	地方歲入의 地域的 不均衡에 관한 經驗的 研究	1982
第5-83-01卷	政府規制 緩和方向과 美國經濟 展望	1983
第6-83-02卷	韓國經濟學의 摸索	1983
第7-83-03卷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1983
第8-83-04卷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成長	1983
第9-83-05卷	民主主義와 民間調整機構	1983
第10-83-06卷	韓國과 第4次 産業革命 : 1960~2000	1983
第11-83-07卷	企業稅制 合理化의 基礎研究	1983
第12-83-08卷	民主資本主義와 韓國의 發展	1983
第13-83-09卷	國民租稅意識의 調查研究	1983
第14-84-01卷	成長經濟에 있어서의 資本所得에 관한 適正稅率과 歸着分析	1984
第15-84-02卷	資本主義精神과 反資本主義心理	1984
第16-84-03卷	美·日의 産業政策과 韓國의 對應	1984
第17-84-04卷	企業의 社會奉仕	1984
第18-85-01卷	中共의 經濟法令 解說	1985
第19-85-02卷	우리나라 通貨의 役割과 通貨信用政策의 方向	1985
第20-85-03卷	家計貯蓄増大를 위한 租稅政策方向	1985
第21-88-01卷	轉換期の 勞使問題와 對應方向(Ⅰ)	1988
第22-88-02卷	轉換期の 勞使問題와 對應方向(Ⅱ)	1988
第23-88-03卷	換率變動의 輸出入價格에의 轉嫁度와 示唆點	1988

第24-88-04卷	金融自律化的 效率的 推進方向	1988
第25-88-05卷	원貨切上에 따른 輸出企業 對應戰略	1988
第26-88-06卷	中國의 經濟改革과 韓國企業의 進出	1988
第27-88-07卷	國際收支 黑字管理과 巨視經濟政策	1988
第28-89-01卷	원高·賃金上昇의 物價 및 企業利潤에 미치는 影響 分析	1989
第29-89-02卷	韓國의 物價要因과 金利 및 通貨政策方向	1989
第30-89-03卷	韓國企業의 資本構造와 資本費用	1989
第31-89-04卷	賃金構造와 產業構造 再編方向	1989
第32-89-05卷	換率政策의 課題와 展望	1989
第33-89-06卷	研究開發活動에 있어서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役割과 課題	1989
第34-89-07卷	勞總·經總 賃金指針의 比較分析	1989
第35-90-01卷	우리나라 企業의 成長推移 및 規模變動要因分析	1990
第36-90-02卷	南美的 經驗과 韓國經濟	1990
第37-90-03卷	金利自由化의 成果와 課題	1990
第38-90-04卷	金融實名去來制 導入實施에 따른 經濟的 波及效果 및 企業體 設問調查結果 分析	1990
第39-90-05卷	混合企業의 經濟的 效果	1990
第40-90-06卷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產業改編方案	1990
第41-90-07卷	人的資源의 企業에 對한 貢獻度 測定	1990
第42-90-08卷	勞動時間 短縮과 勞使葛藤構造	1990
第43-90-09卷	勞動費用 上昇과 國際競爭力	1990
第44-90-10卷	勞總·經總 賃金指針의 改善方向	1990
第45-90-11卷	世界經濟의 展望과 韓國經濟	1990

第46-91-01卷	經濟民主化와 政府規制	1991
第47-91-02卷	不動産 保有課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991
第48-91-03卷	不動産 投機와 不動産價格	1991
第49-91-04卷	金融의 國際化와 規制緩和	1991
第50-91-05卷	生産職 勤勞者의 職業倫理와 生産性	1991
第51-91-06卷	企業의 準租稅實態에 관한 研究	1991
第52-91-07卷	政府主導型 業種專門化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991
第53-91-08卷	進入規制 合理化를 위한 理論的 考察 및 適用	1991
第54-91-09卷	開放化와 産業規制	1991
第55-91-10卷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原因과 對策에 관한 研究	1991
第56-91-11卷	土地의 效率的 利用을 위한 서울地域 土地利用 精密調査	1991
第57-91-12卷	우리나라 賃金交渉의 構造와 慣行	1991
第58-91-13卷	解雇制限 規定과 企業의 勞動力調整	1991
第59-91-14卷	우리나라 住宅市場의 構造와 住宅政策의 方向	1991
第60-91-15卷	金融改革과 資本市場開放	1991
第61-91-16卷	韓國經濟學의 새로운 體系定立	1991
第62-91-17卷	金利變動과 通貨政策指標의 選擇問題	1991
第63-91-18卷	勞動組合과 生産性	1991

◀研究報告▶

第1-85-01卷	金融革新과 通貨金融政策 改編方案	1985
第2-85-02卷	金融自律化 및 銀行與信管理 改善方案	1985

第3-86-01卷	現行經濟法の 問題點 및 改善方向	1986
第4-87-01卷	우리나라에 있어서 金利가 貯蓄·投資에 미치는 影響	1987
第5-87-02卷	日本の 貿易·資本自由化와 그 對應政策	1987

◀政策研究▶

第1-86-01卷	財政規模의 持續的 膨脹과 是正方案	1986
第2-86-02卷	經濟力集中에 대한 視角과 認識	1986
第3-86-03卷	1987년 通貨政策 運用方向	1986
第4-87-01卷	經濟民主化와 市場經濟體制의 定立	1987
第5-87-02卷	賃金調整과 對應政策課題	1987
第6-88-01卷	經濟民主化의 基本構想	1988
第7-89-01卷	3高時代의 對應戰略	1989